

현장과 함께한 희망 정책

박홍수 농림부장관 정책사례집

농 립 부



목차

제 1 장 참여정부 농업정책 여건과 성격	1
1. UR이후 농정의 대응과 평가	3
2. 참여정부 출범당시의 농업·농촌 상황	11
3. 참여정부의 농정 구상	17
제 2 장 박홍수장관 농업정책의 흐름과 성과	27
1.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대응	29
가. 쌀 재협상	29
나. 한미 FTA 협상	35
다. 기타 FTA 협상	47
라. DDA 협상	53
2. 농업성장 기반 구축 및 농업인 경영안정	65
가. 신규 농업인력 확보 및 농업경영체 활성화	65
나. 농업인 교육 및 컨설팅 확대	77
다. 직접지불제 확충	84
라. 농작물 재해보험 및 재해복구 지원	90
마. 농업경영회생지원제도	99
바. 농지은행 도입	103
사. 친환경농업 육성	108
아. 자연순환농업 추진	117
자. 종자산업 육성	126
차. 농식품 수출 확대	134
카.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141
타. AgriX, PCRM	144
파. 현장농정 구현	158
하. 새만금 사업 추진	165

3. 품목별 경쟁력 제고	173
가. 양정제도 개편(공공비축 및 쌀소득보전직불제)	173
나. 민간유통기능 강화 및 쌀 브랜드 사업	184
다. 축산물 브랜드화 추진	192
라. 가축개량	202
마. 가축공제	219
바. 가축방역종합대책 추진(AI, 소부루세라 등 포함)	222
사.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233
4. 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	243
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243
나.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경감	251
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	255
라. 대학생 학자금 지원	258
마. 농촌지역개발사업 체계화	261
바.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265
사. 도농교류 활성화	271
아. 농촌체험관광(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275
자.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280
차.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및 향토산업육성	286
5. 농식품 안전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	295
가. GAP 도입	295
나. 이력추적제도 도입	304
다. HACCP 강화	316
라. 농산물 안전성 조사	320
마.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333
바. 포장유통 확대	337
사. 식품산업 육성	344
제 3 장 농업·농촌의 비전과 정책과제	357
별 첨 1. 입법추진 일지	374
2. 규제개혁 일지	383

현장과 함께한 희망 정책

박홍수
농림부장관
정책사례집

제 1 장

참여정부 농업정책 여건과 성격

제 1 장 참여정부 농정 여건과 성격

1 UR이후 농정의 대응과 평가

가. UR 협상과 개방농정의 시작

1970년대 말까지의 우리나라 농정은 식량 자급에 몰두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른바 ‘녹색혁명’이라고 일컬어지듯이 다수확 품종인 통일벼를 개발하고 조금이라도 더 소출을 늘리기 위한 식량증산에 주력하여 왔다. 개간과 간척사업을 통하여 농지로 확장하고 수리시설 확충과 경지정리 사업도 대대적으로 시행하였다.

당시 농정의 주안점도 주곡의 증산을 위한 기술 개발과 보급, 이중곡가제에 의한 가격지지 등에 두어졌고, 이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농어민 소득증대사업과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1980년대에는 중반 이후 농어가 부채가 늘어나고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등 농어촌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가 심화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추진되었다. 1986년에 수립된 「농어촌종합대책」은 종합대책의 첫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은 주로 농촌공업화를 통한 농외소득원 개발, 농어촌 생활여건의 개선, 농어민의 부담 경감 등을 강조하였으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농어업의 체질 강화와 구조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국제적인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수입제한에 대해

관대했던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로부터 국내 농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1989년에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의 BOP(국제수지조항)를 졸업하게 되면서 정부는 농림수산물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을 발표하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쌍무협상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농업 시장개방을 둘러싼 논쟁은 1993년 12월 UR 협상의 타결과 함께 정점에 달했으며, 시장개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1990년대 초의 우리나라 농업과 농정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농업인은 물론 소비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까지 농촌의 붕괴를 우려할 만큼 총체적 위기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개방 진전에 대응하여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농정제도의 개혁과 함께 구조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UR 협상이 타결된 1994년부터 우리나라 농업 정책이 ‘개방농정’ 체제로 전환되었다고 일컬어진다. 개방농정의 개략적인 추진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 이후 농림수산정책의 전개 과정

연 도	농어정 여건, 주요정책 내용
1991. 7	농어촌구조개선대책(총 42조원 투자계획) 발표
1993. 12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1994. 6	문민정부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 발표 농어촌발전특별세사업(총 15조원) 신설
1995. 1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1997. 12	외환·금융위기 돌발, IMF 관리체제 진입
1998. 10	국민의정부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
1999. 2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수산업발전특별법 제정
2000. 1	농업기반공사 설립(농조, 농조연, 농진공 3개 기관 통합)
2001. 7	통합농업협동조합(농협, 축협, 인삼협) 설립
2002. 1	DDA 협상 개시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설치
2003. 2	참여정부 출범,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구상
2004. 2	농업·농촌종합대책, 수산업·어촌종합대책 발표 한·칠레 FTA 협상결과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05. 11	쌀 관세화유예 협상결과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06. 6	한·미 FTA 협상 개시

먼저, 1993년 2월에 출범한 김영삼 대통령 정부(이하 ‘문민정부’라 함)는 UR협상이 타결된 후 1994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촌발전 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어촌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동 위원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그 해 6월에 「농정개혁과 농어촌발전대책」을 수립하여, 1992~2001년까지로 계획되었던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1998년까지 3년 앞당겨 실현하도록 하였으며, 국민성금 성격의 ‘15조원 농어촌특별세사업’을 신설하여 2004년까지 투입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충하였다.

문민정부(1993 ~ 97년)가 추진한 ‘농어촌발전대책’의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개방 시대에 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이끌고 갈 프로정신을 갖춘 농업인의 육성·발굴과 영농규모 확대에 중점을 둔 점, 둘째, 농업인이 농산물의 단순한 생산자에서 유통·가공에도 참여하는 기업가로, 농촌이 생산기지에서 복합적 산업기지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을 시도한 점, 셋째, 낙후된 생산기반을 현대화함으로써 기계화·자동화된 영농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품질의 기술·자본집약적 농업을 실현하도록 한 점, 넷째, 농촌의 인구 유지를 위하여 생활여건, 교육, 의료, 문화환경 등의 개선을 추진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1998년 2월에 김대중 대통령 정부(이하 ‘국민의 정부’라 칭함)가 출범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1997년 말에 급습한 외환·금융위기라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하였다. 나라경제는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농업 부문도 예외 없이 내외외환의 시련을 맞게 되었다. 이렇게 불안해진 농어촌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국민의 정부 전반기의 농정은 농가의 경영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동시에 협동조합 등 농업관련 조직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그리고 1998년까지 완료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성과를 보완하면서 지속적인 농업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농촌발전계획」(’98.8)을 수립하고,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중기재정계획에 해당하는 총 45조원 규모의 제2단계 농업·농촌투

용자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국민의 정부(1998 ~ 02년)가 추진한 농정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규모로 부가가치 증대를 도모하는 친환경농업 및 안정적 가족농 육성에 중점을 둔 점, 둘째,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금리인상 최소화 및 농·축산 경영자금 확대 공급, 정책자금 및 농·축협의 상호금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부문 특별지원 등을 추진한 점, 셋째,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직거래 확대, 공영도매시장 거래방식의 다양화, 유통명령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개혁을 추진한 점, 넷째, 농·축·인삼협동조합의 통합,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발조합·농지개발조합연합회의 통합, 농업통계와 농산물검사소를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통합하는 등 농림조직의 개혁을 추진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나. 90년대 농정의 성과와 한계

1990년대 농정의 가장 큰 특징은 시장개방 진전에 대응하여 농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선시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농촌 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고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구조개선사업과 농어촌특별세사업을 필두로 대규모의 재정투융자 계획이 연이어 수립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농촌 분야의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특히 1995년에는 국가전체예산 대비 농림 예산의 비율이 12.8%에 달하였다.

한편, 이와 같이 농촌에 대한 재정투융자의 외형은 크게 증가했지만, 실제 국고지원은 상당히 부풀려졌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1992~2002년간 농업 분야에 투입된 자금은 총 59조 4,809억원에 달하지만, 여기에는 국가에 상환해야 할 용자원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차보전액으로 환산하면 실제 투자액은 34조 9,294억원이고, 나아가 지방비 부담을 제외한 국고 지원액만은 29조 1,601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정부의 재정 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즉, 농업구조개선사업은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면서 생산비를 낮추어 외국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책의 목표이다. 이것은 사업과 관계없이 소득을 보전하는 것과는 다른 성격이다. 따라서 정책자금의 용자를 그 금액 자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은 농가 또는 생산자에게 돌아간 보조 수준을 측정하는 데는 일리 있는 주장이겠지만, 재정투용자의 규모를 측정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90년대 국가예산과 농림예산의 추이

단위: 억원

	1991	1993	1995	1997	1999	2000	2001	2002
국가예산 (A)	329,295	421,835	594,011	742,225	910,539	981,198	1,109,162	1,155,118
농림예산 (B)	27,338	48,360	76,151	81,541	78,939	83,649	88,100	92,852
B/A(%)	8.3	10.4	12.8	11.0	8.7	8.5	7.9	8.0

주 : 일반+ 재특+ 농특+ 국특+ 책특 순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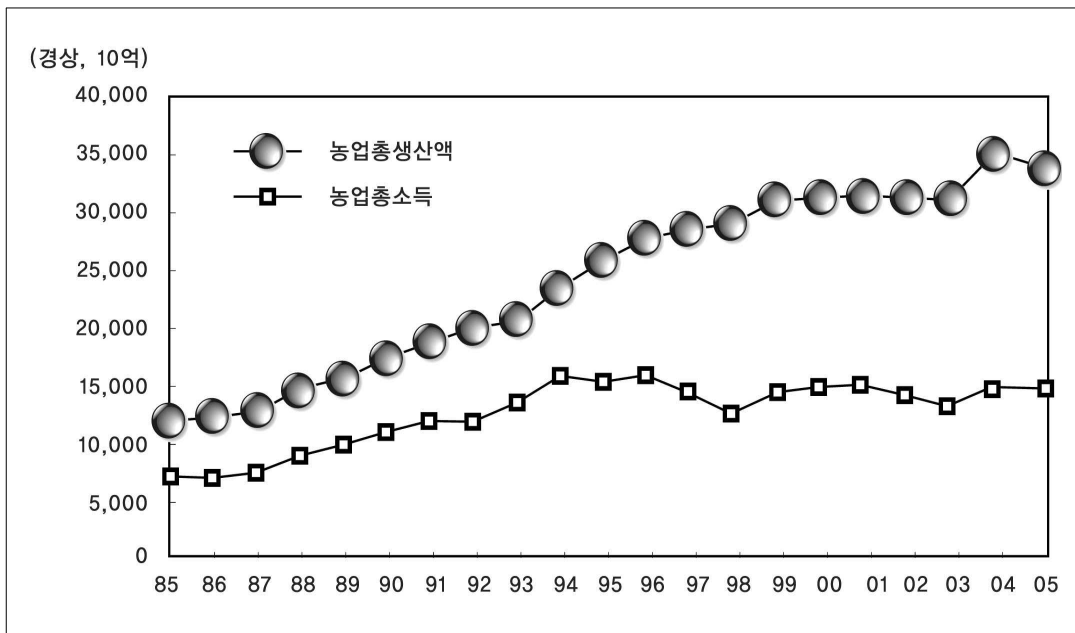
자료 : 농림부, 「예산개요」 각년도

어떻든 1990년대 들어 농촌에 대한 재정투용자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투용자 확충에 힘입어 농업 고정자본은 '94 ~ '02년간 연평균 9% 이상 증가하였고, 농업생산은 연평균 2.3%('86 ~ '90년은 1.3%)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생산성이 향상되고 게다가 수입이 늘어나면서 농산물의 공급 과잉 시대로 진입하게 되어 농산물 실질가격은 1994 ~ '02년간 연평균 1%('86 ~ '90년은 1.4%)씩 하락하였다. 농산물 소비는 가격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수요는 크게 늘어나지 못하였다. 반면에 환율 인상과 노임 상승으로 농업용품 실질가격은 1994 ~ '02년간 연평균 1%('86 ~ '90년은 -5.7%)씩 상승하여 농업경영 수지를 악화시켰다.

여기서 농산물의 공급 과잉의 원인이 시장개방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나, 1994~'02년간의 농산물 공급의 증가 원인을 분석하면 수입 증가의 효과가 23%를 차지하고 나머지 77%는 국내 생산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우리나라 농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쌀 등 일부 품목은 관세화가 유예되고 나머지는 고율관세가 인정되어 상당한 무역장벽이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결국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소비자의 이익은 증가하였으나, 반면에 생산자의 소득은 줄어들기 시작하여 1994~'02년간 호당 실질 농업소득은 연평균 1.7%('86~'90년은 6.9%)씩 감소하였다. 많은 선진국들이 1980년대 중반에 경험하였듯이 생산성 향상으로 인하여 농업 부문은 성장하지만 개별농가의 소득은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농업총생산액과 농업총소득 추이



주 : 1998년은 외환금융위기 영향

자료 :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에서 작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 농정은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하여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발전 전략을 추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와 문제점이 노출된 것으로 지적된다.

첫째, 선진농가 육성을 통한 산업적인 발전에 치중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추진된 구조정책은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경쟁력 있는 농가를 선별하여 규모화·전문화를 지원하는 선진농가 육성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만성적인 영세소농 구조인 실정에서 대다수 농가는 선진 농가군에 진입하지 못하고 상층농가와 소득 격차를 더욱 확대시켜 농촌사회의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다.

둘째, 사업 중심·정부 중심의 농정이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시장기능 활성화를 표방하면서도 다양한 정책사업을 기획하였으며, 예를 들어 경쟁력 있는 분야, 품목, 시설과 경영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산물의 수급 균형과 가격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생산과 소비를 조절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농업인들의 과잉 기대를 형성하였으며, 때로는 농산물의 가격 하락에 실망한 농민들로 하여금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셋째,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전장치가 부족하고 사안별로 대응했다는 점이다.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소득의 하락과 불안정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여 농민단체의 격렬한 개방 반대 운동이 발생하였다. 특히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정치권으로부터 과대 포장된 정책 지원이 추가됨으로써 농가의 도덕적 해이와 농업의 정치논리 지배구조가 형성되었다.

넷째, 대규모 투융자사업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특히 중앙정부 주도의 의욕적인 정책 추진에 비하여 농업인이나 지자체 등의 수용주체에 대해서는 역할 정립이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예를 들어 농가의 경영능

력이나 사업성에 대한 평가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부적격자가 선정될 수밖에 없었으며, 일부 지자체는 지역안배식으로 사업을 세분하여 집행함으로써 사업 초기부터 부실을 안을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이 정부는 UR 이후 10여년에 걸쳐 거액의 재정투융자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재계나 산업계 등에서는 농어업의 투자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정도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농업·농촌에 많은 정책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국제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며, 농가부채의 누적과 농가인구 고령화, 농촌지역 공동화 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 무역자유화를 더욱 요구하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이보다 더 개방 수준이 높은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으로 농업의 위기의식은 UR 때보다 더 큰 것으로 보여진다.

90년대 농업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평가 시각

	농업계 시각	비농업계 시각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비자 후생 증대 ② 물가안정 기여 ③ 농업성장세 회복 ④ 규모화를 통한 구조조정 ⑤ 생산성 제고와 생산비 절감 ⑥ 안정적 생산 유통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업생산 안정 및 재해대응력 제고 ② 농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시설 확충 ③ 급격한 농가소득 하락의 완충
한계 및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구조조정 성과가 크지 않음 ② 농업성장과 농가소득간 괴리 ③ 정책수단과 정책목표간 부조화 ④ 시장개방에 대응한 대책의 부적절 ⑤ 구조조정을 위한 체계적 대책 부족 ⑥ 고투입 집약생산으로 환경부하 가중 ⑦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및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외개방 취약, 소득증대 미흡 ② 쌀 공급과잉과 구조조정 지연 ③ 과도한 하드웨어 위주의 지원 ④ 농산물의 품질차별화 미흡 ⑤ 빈번한 부채대책으로 지원방향 왜곡 ⑥ 국내 산림자원 조성 미흡

자료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농어촌대책T/F(2003.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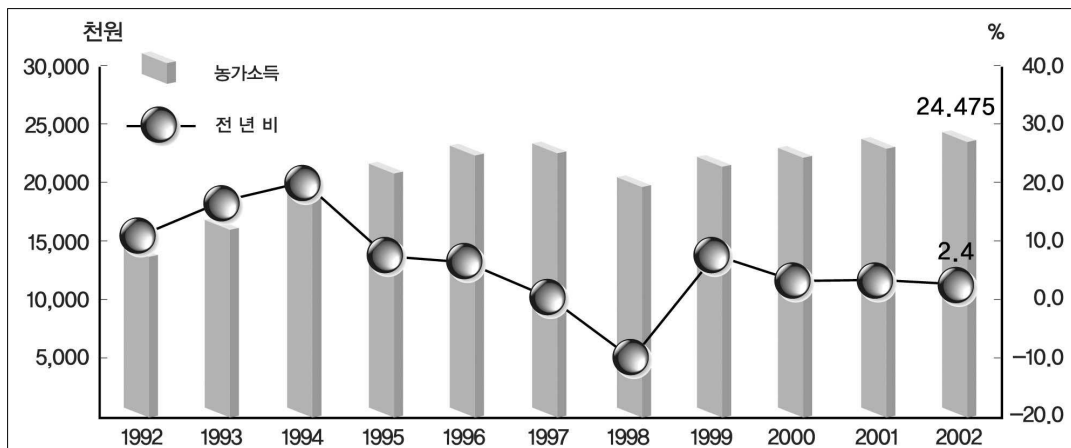
2 참여정부 출범당시의 농업·농촌 상황

가. 농가경제 수지 악화와 도농간 소득격차

참여정부 출범 당시의 나라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농업 부문도 활력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된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농가 경제수지는 더욱 악화되었다. 2002년 농가의 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73%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그래서 농민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점점 커지게 되었다.

더욱 큰 문제는 농가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어 농가의 이질화가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94~'02년간 호당 농업소득(명목) 변화를 보면, 경지규모 0.5ha 이하 농가의 소득은 5% 감소, 3~5ha 농가의 소득은 11% 증가, 5ha 이상 농가의 소득은 44% 증가하였다. 그 결과 1994~'02년 사이에 농가의 최상위·최하위 소득 20% 계층의 1인당 소득격차가 5.5배에서 7.1배로 확대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에 도시가구의 최상·최하위 소득격차는 4.4배에서 5.4배로 확대되었으므로, 농가의 계층간 소득 격차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농가소득 변화 추이



주 : 통계청, ()는 전년비임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연평균 증감율별 농가분포('98~'02)

단위 : 호, (%)

	-5% 이하	-5~0%	0~5%	5~10%	10% 이상	합 계
농가소득	560 (23.9)	371 (15.8)	363 (15.4)	375 (16.0)	679 (28.9)	2,348 (100.0)
농업소득	783 (33.3)	340 (14.5)	351 (14.9)	257 (11.0)	617 (26.3)	2,348 (100.0)

자료 : 농가경제통계 표본농가 2,348호 원자료 분석

농가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부채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농가경제통계에 의하면 1998 ~ 2002년간 소득은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농가가 전체농가의 22.4%나 되었다. 그리고 2002년 현재 부채비율(부채/자산)이 40%를 넘는 경영위기 농가가 12%나 되고, 이 중 41%(총 농가의 5.2%)는 최근 5년 중 3년 이상이 가계수지 적자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동안 농가부채대책으로 추진된 무차별적인 상환유예와 금리인하 대책은 소수 농가만이 수혜대상으로 하여 소득분배 왜곡과 재정적인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2000 ~ 2002년간 정책자금은 1.4% 농가에게 20.8% 자금이 지원되었고,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은 2.7% 농가에게 12.7% 자금이 지원되어 부채대책의 혜택이 소수농가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부채 상환능력 지표별 농가분포 추이

단위: %

연도	단기 지급능력 부족 농가			지급능력 양호	합 계
	경영수지 적자	가계수지 적자	원금상환능력 적자		
1997	1.2	26.5	35.2	64.8	100.0
1998	8.8	40.2	49.9	51.1	100.0
1999	2.0	32.4	40.5	59.5	100.0
2000	3.3	30.5	38.3	61.7	100.0
2001	3.8	24.5	31.0	69.0	100.0
2002	4.7	22.5	30.3	69.7	100.0

자료: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분석

나. 농가계층 양극화 : 대농의 증가와 영세농 잔류

우리나라의 농가 수는 1970년을 기점으로 감소로 반전되어 연평균 1.9%씩 감소하였으며, 경지면적은 1968년을 기점으로 감소로 반전되어 대략 연평균 0.6%씩 감소하였다. 이렇게 농가호수는 빠르게 감소한 반면 경지면적 감소는 상대적으로 완만하여 호당 경지규모 확대가 진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호당 경지면적은 1980년 1.02ha에서 1990년 1.19ha로, 그리고 2002년에는 1.46ha로 늘어났다.

이와 같이 농가의 평균적인 경영규모 확대는 미미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전업농에게 농지와 가축 등의 자원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렇게 영농규모 확대가 진행되면서 대농 층의 생산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다. 예를 들어 논 3ha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는 1990년에 호수로 1.2%, 면적으로 6.2%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에는 호수 비중이 3.8%, 면적 비중이 20%로 증가하였다. 또, 한우는 20두 이상 농가가 1990년 호수 비중 1.1%, 두수 비중 14.1%였으나, 2000년에는 호수 비중 6.5%, 두수 비중 49.9%로 크게 높아졌다. 시설원예와 축산 등은 대농의 생산 집중이 현저하며, 특히 양계는 1만 수 이상을 사육하는 2.7%의 농가가 94.1%의 닭을 생산하였다.

대규모 농가의 생산 집중 실태(2000년)

단위: %

구 분	호수 비중	면적 비중	구 분	호수 비중	두수 비중
논 3ha 이상	3.8	20.0	한우 20두 이상	6.5	49.9
밭 1ha 이상	10.6	45.2	젓소 50두 이상	26.4	54.1
과수원 1ha 이상	14.1	44.3	돼지 1천두 이상	9.8	62.1
시설 2천평 이상	10.5	47.1	닭 1만수 이상	2.7	94.1

자료: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이렇게 대농 층으로 자원이 집중되는 반면, 농가는 영세농 계층으로 누적되어 2002년에 경지면적 0.5ha 미만 농가가 전체 경종농가의 35%를 차지하게 되었다. 2000년도 농업총조사를 이용하여 영세농의 일반적인 성격을 살펴보면, 경지면적 0.5ha 미만 농가가 44.1만호인데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0.4세이고 65세 이상이 41.5%를 차지하였다. 또, 0.5 ~ 1ha 계층의 농가는 37.9만호인데 이들 경영주의 31.2%가 65세 이상이었다.

영세농의 농업적 지위와 경영체 성격(2000년)

항 목	0.5ha 미만	0.5~1.0ha
총농가수 (천호)	440.6	378.7
보유 경지면적 (천ha)	127.8	283.5
경영주 연령 평균 (세)	60.4	59.5
65세 이상 경영주 비율 (%)	41.5	31.2
호당 가구원 수 (명)	2.61	2.83
호당 농업종사자 수 (명)	1.78	2.00
후계자 보유 비율 (%)	8.07	11.07

자료: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는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었다. 일반적으로 40세 이상의 취업자는 직업 전환이 매우 어렵다고 알려지는데, 농업경영자의 94%가 40세 이상인 실정에서 전직이 거의 불가능한 영세 고령농은 농업에 누적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영세농은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영농을 하기 때문에 사업성을 중시하는 전업농가에 비하여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경영비가 보상되므로 영농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다. 농촌 사회의 활력 저하

농촌사회를 특징짓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도 인구의 고령화이다. 농촌 인구의 동향을 보면,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 이후 계속적으로 읍면 지역의 인구가 크게 감소하면서 특히 유소년 및 청장년이 빠르게 줄어들고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는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읍면 지역의 0~14세 유소년 인구의 구성비는 1960년 41.2%에서 2000년에는 18.6%로 22.6% 포인트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구성비는 1960년 4.2%에서 2000년에는 14.7%로 10.5% 포인트 증가하였다. 또한 고령화지수를 보면 동 지역의 경우 25.3인데 비하여 읍면 지역은 78.7로 동 지역보다 53.4가 높아, 읍면 지역의 고령화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동안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한 이촌향도형(離村向都型) 인구 이동과 읍면 지역의 도시 편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읍면의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1960, 2000년)

단위: 천명, %

구 분	1960년			2000년		
	계	동지역	읍면지역	계	동지역	읍면지역
인 구	24,989	6,997	17,992	45,985	36,642	9,34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세(%)	40.6	39.1	41.2	21.0	21.6	18.6
15~64세(%)	55.6	58.4	54.5	71.7	73.0	66.7
65세이상(%)	3.7	2.5	4.2	7.3	5.4	14.7
고령화지수	9.2	6.4	10.3	35.0	25.3	78.7

자료: 통계청, 인구센서스 자료

이렇게 농촌 지역의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고령화되면서 지역사회로서의 자생력이 상실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읍면 지역의 인구 비중은 1980년 42.7%에서 2000년에는 20.3%로 감소하였으며, 인구 2천명 미만

면이 1985년에 9개에서 2000년 170개 지역으로 늘어났고, 특히 인구 1천명 이하인 면도 17개나 발생하였다. 농촌 인구가 감소한 배경에는 농업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통계청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농촌지역의 농가 비율이 1990년 57%에서 2000년 39%로 감소하였으며, 따라서 농업의 수익성 저하에 따른 지역농업의 쇠퇴가 농촌인구 감소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농촌 인구가 감소하는 배경에는 경제적인 이유와 함께 교육·문화 등 생활기초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2000년 통계를 이용하여 농촌과 도시의 몇 가지 지표를 비교해 보면,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도시는 4.6%인데 비하여 농촌은 20.4%에 달하고, 상·하수도 보급률이 도시는 각각 97%와 83%인데 비하여 농촌은 46%와 19%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농촌 지역의 초등학교나 보건지소 등이 통폐합되면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이 과소화되면서 많은 초등학교가 폐교되기에 이르렀으며, 교육·문화시설을 비롯하여 생활편익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주요지표 비교(2000년)

구 분		농촌(읍·면)	도시	전국
인구	인구수(천명)	9,622	38,355	47,977
	연평균 증감률	-1.7	1.3	0.6
	노령화지수	78.7	25.3	34.3
노후주택률(30년 이상)		20.4	4.6	8.7
도로포장율 ()는 농어촌도로 포함		- (32.2)	86.2 -	55.1 (75.8)
상수도 보급율		46.3	97.3	87.1
하수도 보급율		18.6	83.4	70.5

자료: 농림부

가. 대통령 선거공약

2002년 12월 19일,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첫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7천만 온 겨레가 하나 되는 대통합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면서 “정치·행정·경제·언론·법조 등 사회시스템을 높은 국민의식 수준에 걸맞게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것이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며, 차기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면서 “반드시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국민들께 보답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농어촌 분야에 대해서는 “농어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 불우이웃과 장애인 등 모든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나라를 만들어드리겠다”고 역설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여러 차례 ‘농민의 아들인 만큼 농업을 반드시 살리겠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농업예산의 확충과 아울러 직접지불제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약속하였다. 이러한 농업분야의 선거공약은 2002년 12월 4일 새천년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농어업대책본부(본부장 김영진)에서 종합적으로 발표되었는데, 당시의 ‘대선 농정공약’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림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10% 수준으로 확충하여 농촌의 활력 증진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중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가 허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농림예산의 20%를 직접지불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둘째, 농어가부채대책으로 ‘농어업인부채특별법’을 개정하여 농어업인들의 금

융부담을 줄이고, 농어업인 회생프로그램을 만들며, 각종 정책자금의 상환조건을 5년거치 15년 장기분할로 바꾸고 금리도 1.5%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셋째, 쌀 대책으로서, 2004년 쌀 협상에서 쌀 관세화유예를 관철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자급률 유지, 가격안정, 고품질 쌀 생산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식량자급과 소득안정을 위하여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을 ha당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넷째, 농업통상은 개방이 불가피할 때는 개방을 하되 국내 농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DDA 협상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별 대책을 수립하고, 한·칠레 FTA 추진·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섯째, 농어촌복지에 대해서는 교육·문화·의료 등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촌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어촌복지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내용이다. 농어촌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도록 하여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지역 중심의 의료기관으로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기능을 보강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교육특별법’을 제정하고 농어민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들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센터 운영 및 보육료 50%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여섯째, 농작물 재해복구비의 보조율을 상향조정하여 자부담을 해소하고, 융자금에 대한 금리도 인하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채소류까지 확대하고, ‘농어업재해상해보험제’를 마련하여 농작업 중의 상해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산재보험과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곱째, 농산물가격안정 생산자는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하고, 소비자는 안전한 농수산물을 적정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학생들에게 질 좋은 우리농산물을 공급하고 농가소득이 안정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수출 농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격화·고급화와 아울러 품목별 전문수출업체 육성, 수출종사자에 대한 정책지원 등도 포함되어 있다.

여덟째, 협동조합의 단계적 신·경 분리, 농지제도 개선, 인력육성 등을 통해 농어업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친환경축산의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축산농가의 소득경쟁력을 제고하고, 동식물검역과 질병방역 업무부서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여 통합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유도하여 농가소득 증대, 농촌환경 보전, 소비자의 식품안전성 확보 등을 도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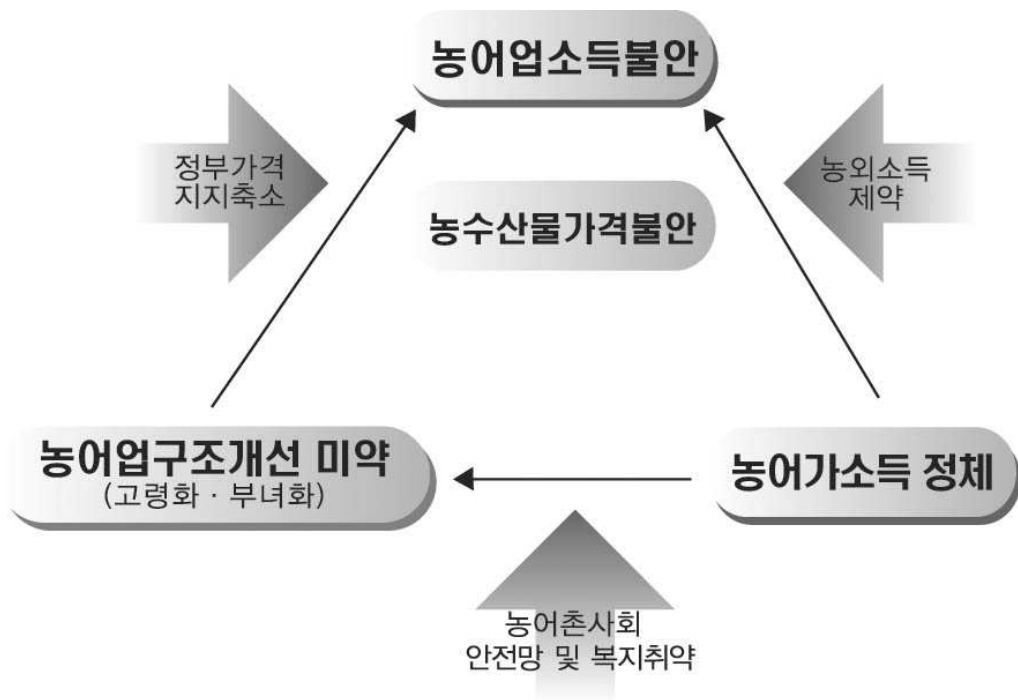
나. 대통령직 인수위의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구상

2003년 1월 6일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농업분과 위원으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한 정명채 박사가 임명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먼저, 인수위는 1월 15일까지 부처별 주요 현안 및 업무보고를 받고 1월 말까지 국정과제를 정리한 후, 2월 초부터 주요 국정과제별 실천방안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여 2월 중순에 국정 방향을 발표하는 절차로 추진되었다.

참여정부 국정운영의 기본 틀은 2003년 2월 16일에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보고서에 정리되어 있으며, 농림수산 정책은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이라는 표제로 담겨져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DDA 농업협상과 시장개방 폭 확대, 농업분야의 세계경제흐름 편입 등을 전제

로 새 정부가 이끌어갈 농정의 큰 틀인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의 기본틀을 구상하였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추진할 농정기조로서 ①공익적 기능과 시장을 지향하는 농어업, ②개방화 시대의 농어업인 소득안정, ③농어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④신해양시대의 어업기반 구축 등 4대 실천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는 새 정부가 농어촌 문제에 대하여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농어정을 국가경영 전략 차원에서 다룬다는 의지의 표명임과 동시에, 시장지향적인 산업정책과 이를 보완하는 소득정책 및 사회복지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농어촌 문제의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개편한다는 적극적인 정책기조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농어촌 문제의 악순환 구조



당시 인수위 농업분과에서는 WTO 체제하에서 농업소득의 정체가 농외 소득 성장의 한계와 맞물려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즉, 시장개방 확대와 정부의 가격지지 축소로 농수산물 가격 불안이 심화되고 농어업소득은 정체되었으며, 농촌인력의 고령

화로 농외취업에 한계가 노출되었고, 직접지불제와 농어촌관광은 도입 단계로 농외소득원이 제약되어 있었다. 영세·고령농어가의 재촌탈농을 유도할 수 있는 농어촌사회안전망이나 복지 기반도 취약하여 활력을 잃어가는 악순환 구조의 상황이라는 인식이었다.

이에 WTO 체제하에서의 새로운 농정의 기본틀은 농어촌사회안전망과 직접지불제를 양대 축으로 농어촌·농어업·농어민정책 간의 연계성과 보완성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로 개편한다는데 바탕을 두게 되었던 것이다. 즉, 농어업·농어촌정책을 농어촌사회안전망 구축 등 복지정책과 직접지불제 등 소득안정 정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농어촌사회안전망이 보장되어야 구조조정의 연착륙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프랑스의 국토경영계약제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제고하면서, 농어촌복지 지원 및 직접지불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전략을 구상하였던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산업간 이익 조정자 역할을 강화하여 개방화 혜택을 받는 분야와 불이익을 받는 분야간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당시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농업예산을 전체 국가예산의 10%까지 확대한다는 전략도 빠트리지 않았다. 이와 같은 구상은 추후에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재원대책인 119조원 투융자계획의 모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산업정책은 고객 만족, 규모화·조직화, 수출농어업을 지향하도록 하고, 소득정책은 직접지불제 확충·농어민의 유통가공 참여·고품질 농업을 추구하도록 하며, 사회정책은 교육·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향토산업 육성 등에 주력하도록 하였다. 특히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 등의 범정부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하여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로, 먼저 공익적 기능과 시장을 지향하는 농어업에 대

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섯 분야의 세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첫째,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방향에서 농어업정책과 환경정책의 조화·통합을 추진하고, 식량(주곡)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며, 숲 가꾸기를 통한 산림 자원화 및 국민의 숲 조성을 추진한다.

둘째, 농어업의 시장지향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에서 공공비축제 도입과 연계하여 양정제도를 재정립하고,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쌀 생산능력은 보유하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감축해 나가며,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수급안정 역량을 확충한다.

셋째, DDA협상에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에서 개도국 지위 및 쌀 관세화 유지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EU·일본 등 NTC그룹과 공조체제를 강화하며, 농민단체 의견수렴 등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협상을 추진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주요 농정과제

분야	중점추진 과제명	추진내용
공 익 적 기 능 과 시 장 지 향	농업의 공익기능 확충	친환경농업직불제 확대·개편 주요식량자급률 목표 설정
	농업의 시장지향성 강화	공공비축제 도입 수매가 국회동의제 폐지
	DDA협상에 우리 입장 반영	NTC 그룹과 공조 농민단체와 협의
	농업구조조정 연착륙	경영이양직불제 강화, 신규창업농 지원 농업종합자금제 강화
	소비자 및 수출지향 품질경쟁력 제고	모범농업관리지침(GAP) 제정 축산물HACCP의무화, 학교급식법 개정
	농협개혁 및 산지유통혁신	중앙회 신경분리 등 슬림화 일선조합 합병·규모화, 산지유통 혁신
농 가 소 득	직접지불제 확충	직불예산 20%까지 확충 논농업직불제 등 제도개선
	부채경감 대책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한 연장
	수급조절 강화 및 가격안정	농업관측 강화 및 자조금제도 활성화

분야	중점추진 과제명	추진내용
안정	재해보험 및 재해지원 확대	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운영비지원 확대 재해보상제도 현실화
	농의소득원 개발	농촌관광 활성화 농어업인의 유통·가공사업 참여
농어촌복지	기초 복지 인프라 확충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농어촌복지및지역개발특별법 제정 농어촌복지 중장기계획 수립
	농촌형 사회안전망 확충	농어업인 연금제 개선 건강보험료 감면율 확대 등
	농어촌 지역개발 활성화	주민참여형 지역개발 방식 도입 녹색농촌·어촌 체험마을 확대

넷째, 농어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향에서 시장에서 선택된 우수 농가를 집중 지원하여 전업농으로 육성하고, 경영이양직불제를 대폭 보완하여 고령농의 조기은퇴를 촉진하며, 후계자 육성제도를 신규 창업농 육성방식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농지가격 불안에 대비하여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다섯째, 소비자 및 수출지향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모범농업 관리지침(GAP) 제정 및 고품질농수산물 생산을 강화하고, 학교 및 군 급식 확대로 우수한 우리 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며, 해외시장 우위 가능 품목 중심의 전략 수출상품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 전통식문화 수출을 위하여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아이디어도 포함하였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최근 국가이미지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한옥·한글·한복 세계화 등과 함께 추진하는 한식 세계화 정책 추진으로 결실을 보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여섯째, 농협개혁과 산지유통 혁신의 방향에서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 추진 등 슬림화를 추진하고, 일선 조합의 합병·규모화로 경제사업 역량을 확대하며, 품목별 연합조직 활성화 및 RPC(미곡종합처리장)·APC(산지유통센터) 중심으로 산지유통 혁신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개방화시대의 농어업의 소득안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분야의 세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첫째, 직접지불제 확충을 위하여 농업의 공익적 기능 지원시스템을 검토하고, 논농업지불제를 친환경지불제로 개편하며, 친환경축산지불제를 도입한다. 또한 소득보전지불·경영이양지불을 확충하고 어선 감척보상제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불제 예산을 농업예산의 20%까지 연차별로 확충한다는 구상도 담았다.

둘째, 부채경감 대책으로서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장기분할 상환 및 워크아웃 방식을 도입하며, 정상 상환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종합자금제를 정착시킨다. 그리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제도 개선 및 기금 출연의 확대를 추진한다.

셋째, 자율적 수급조절 가격 안정 및 재해보험 확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의 자조금 활성화를 지원하고, 계약재배와 예약출하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수급 조절을 도모한다. 또한 생산자단체와 협동조합의 자율적 유통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확대와 아울러 운영비를 100% 지원하며, 보험 성립이 어려운 품목의 재해지원 수준을 확대한다.

넷째, 다양한 소득원 개발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농촌관광 활성화 등 1차+3차 산업 모델을 확대하고, 전통산업·녹색관광과 친환경농업의 연계를 강화하며, 생산자·생산자단체의 전통식품 등 유통가공업의 참여를 확대한다.

그리고 농어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최근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시책을 농정의 핵심영역으로 취급한다는 외국의 사례를 전향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세 분야의 세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첫째, 농어촌형 사회안전망(safety-net)을 확충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연금제도를 강화하여 농업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50% 수준까지 점차 확대하며, 재해공제사업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확대한다.

둘째,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에서 농어촌 교사 인센티브 제공 등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개선하며, 농어촌 영유아 보육과 여성농업인 및 노인복지를 강화한다. 또한 ‘농어촌 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 특별법’ 및 ‘농어촌교육특별법’을 제정하고, 농특세 시한 연장 및 용도 조정으로 농어촌 복지재원을 충당한다.

셋째, 농어촌 지역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참여형 농어촌지역발전 모델을 개발하고 농어촌계획제도를 도입하며, 농어촌주택 추가 취득시의 양도세 면제 및 지방세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제 2 장
박홍수장관 농업정책의
흐름과 성과

제 2 장 박홍수 장관 농업정책의 흐름과 성과

1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대응

가. 쌀 재협상

(1) 쌀 협상 배경과 의의

UR 협상 이후 출범한 WTO 체제하에서는 농산물 협정 대상의 모든 품목의 관세를 양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우리나라도 UR 당시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 함으로써 시장을 개방했으나, 쌀에 대해서는 관세화 예외 조치를 인정받아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고, 10년차에 연장 여부를 재협상 하도록 하였다. 10년 유예라는 예외조치의 댓가로 국내 소비량의 1~4% 상당의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데 합의하였다.

쌀 협상은 UR 협상에서 결정된 유예기간이 2004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관세화 유예 추가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후속협상이다. WTO 농업협정 문에는 2005년 이후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해서는 2004년 중 협상을 완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협상 상대국에게 추가적이고 수락 가능한 양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쌀 협상 이해득실의 분석기준이 되는 DDA 세부원칙이 없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 농업계가 희망하는 관세화 유예 연장을 전제로 WTO협정에 따라 2004년에 재협상을 추진하였다. 국별 이해관계를 잘 활용하여 관세화 유예를 유리한 조건으로 얻어낸 후, WTO 전회원국의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05.4.12)함으로써 10년간의 추가연장에 성공하였다.

쌀 협상을 통해 특별우대조치 연장의 대가가 결정되면, 농업협상에서 논의되는 의제, 특히 특별품목과 민감품목의 대우, 개도국 지위 유지 등이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관세화 유예의 연장기간이 10년으로 결정된다면 이는 UR농업협정에서 개도국의 이행기간과 일치하므로 DDA에서도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유지에 유리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 그러나 쌀 협상 결과가 실제로 농업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2) 쌀 협상 경과

2004년 1월 관세화 유예 연장 여부를 협상하겠다는 의사를 WTO에 통보한 이후 9개 WTO 회원국이 협상참가의사를 표명하였다. 9개국과 개별적으로 추가적이고 수락 가능한 양보 수준에 대해 협상한 후 2004년 12월 쌀 관세화 관련 협상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와 동시에 쌀 협상 결과를 담은 우리의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하였다.

2005년 1월 WTO 사무국은 우리나라의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WTO 회원국에 회람하였으며 1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3개월간 검증을 거쳐 이의제기 국가가 없음을 확인하고 통보된 원안대로 확정하였다.

2005년 4월 WTO 사무총장이 검증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공식인증을 발급함에 따라 다자차원에서 협상결과가 확정되어 정부가 이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쌀 협상 결과에 대한 정부의 언론 브리핑 이후, 일부 언론에서 이면합의 의혹이 제기되어 국회의 국정조사가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5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35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에 실패하고 국정조사가 종료되었다.

정부는 국정조사과정에서 특별한 의혹이 확인되지 않자 국정조사가 끝나는 시점인 6월 7일 쌀 협상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

회는 국정조사과정에서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고 농업계의 반발이 거센 만큼 비준동의안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5차례 상정 끝에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10월 27일 쌀 협상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였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쌀 협상 비준 동의안 의결의 부대조건으로 농민단체의 미수용 건의를 중심으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2005년 11월 23일 쌀 협상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관세화에 의한 쌀 시장 개방을 추가로 10년간 유예하게 되었다. 이로써 2005년 6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쌀 협상 국회 비준 동의안은 약 5개월 반 만에 처리되었다.

(3) 쌀 협상의 주요 쟁점

UR 협상 이후 특히 2000년 이후 국내적으로 쌀 협상에 대한 논의는 조심스럽게 이루어져 왔으며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관세화가 유리하나 관세화 유예가 유리하나에 관한 원론적인 논의였다. 일부 농민단체는 추가 시장개방 절대 반대를 주장하기도 하고 또 다른 농민단체와 학자들은 관세화 유예 연장을 주장하였다. 반면 일부 학자를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관세화가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국내 쌀산업의 현황, DDA 협상 전망, 협상 주요 상대국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전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협상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관세화 유예라는 명분에 사로잡혀 관세화 유예에 지나치게 무게중심을 두는 경우 협상 상대국이 요구하는 대가가 지나치게 커질 수밖에 없고, 관세화를 주장하는 경우 국내적으로 거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쌀 협상이 2004년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관세화로 전환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둘러싼 것이었다. 쌀 협상이 2004년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WTO 협정상의 원칙인 관세화로 전환된다는 자동관세화론 또는 관세화의

무발생론에 대해 일부에서는 자동관세화가 맞다면 상대방이 우리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고의를 협상을 결렬시킬 수도 있으며, 관세화는 우리나라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만큼 자동관세화는 맞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자동관세화 여부는 협상의 전반적인 전략을 구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었다. 즉, 자동관세화 또는 관세화의무발생론이 맞다면 정해진 시한 내에 협상을 종료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세화로 전환되므로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는 쌀 협상에서 쌀 이외의 품목이 협상대상에 포함되느냐의 문제였다. 이 쟁점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WTO 협정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는 협상의 특성상 관세화 유예를 위해 상대방이 요구한다면 다른 품목에 대한 양보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긍정론과 다른 품목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농민단체의 주장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협상 쟁점에 대해 정부는 협상초기단계에 입장을 정리하였다. 즉 협상의 기본방향을 ‘관세화 유예를 전제로 협상에 임하되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함으로써 실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관세화 유예를 위한 지나친 양보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쌀 이외의 품목이 협상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쌀 협상은 쌀에 관한 협상으로 한정하며 협상 상대국이 쌀 이외 품목의 협의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채널을 통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4) 쌀 협상의 주요 결과

쌀 협상의 결과로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게 되었고, 유예기간 중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다.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은 2005년 225,575톤('88~'90 소비량의 4.40%)에서 2014년 408,700톤(7.96%)까지 매년 균등 증량하여야 한다. MMA중 기준물량(205천톤)은 '01~'03년 수입 실적을 반영하여 미국, 중국, 태국, 호

주 4개국에 국가별 키타로 배정되며, 향후 증량되는 물량은 총량 키타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입방식은 현행과 같이 전량 국영무역방식을 유지하게 되고 밥쌀용 시판물량은 '05년 수입물량의 10%에서 '10년 30%까지 균등 증량한 후 '14년까지 30%를 유지해야 한다.

협상과정에서 상대국들은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 논의되고 있던 양자현안을 쌀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우리는 분리원칙으로 대응하였다.

(5) 쌀 협상의 평가와 시사점

관세화 유예를 연장한 것은 우리 쌀산업의 현황, DDA 협상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쌀협상에서 관세화를 10년간 유예하게 됨에 따라 쌀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쌀 정책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쌀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협상과정에서 정부의 협상노력, 국내 공감대 형성노력, 국내 보완대책 마련 노력은 국내 쌀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본다. 특히 ‘실리를 추구하고 협상에 따른 국내농업피해를 최소화’한다는 협상목표의 설정이나 주요국 중심의 단계적 접근전략 등은 협상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결과를 도출하는데 유효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협상이라는 영역의 특성상 정보의 공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협상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모두 공개한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협상과 관련된 의혹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거나 이 과정에서 우리의 협상전략이 공개될 수 있고 협상상대방의 입장 등이 공개되면서 불신이 발생하게 되고 국제적인 관례에도 맞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쌀 협상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협상동향을 공개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설명한 결과 농업인은 물론 일반국민의 쌀 산업과 쌀 협상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쌀 협상의 결과로서 시장접근물량의 증량수준은 과거 UR 당시의 시장접근물량 수준(이행 최종연도 5%), 일본과 대만의 협상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국별 쿼타를 인정한 것은 상대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우리 입장에서 유리한 협상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효율적인 협상전략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수입물량 중 소비자 시판물량을 일부 인정한 것은 정부에게는 수입물량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정책과제를, 농업인에게는 수입쌀과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쌀협상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움은 남는다. 우선, 정보공개에 한계, 농업인단체와 정치권의 정치적 입장 등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너무 많았다는 점이다. 사실 쌀 협상처럼 협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협상이 종료되고 국회비준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논란이 끊이지를 않았던 협상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물론 협상과정에서 건전한 지식과 토론을 기초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것은 효과적인 협상 추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쌀협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치적 입장이 고려된 주장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쟁점화 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다.

다음으로는 협상과정에서 정부와 농업인단체간의 파트너십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첫 번째 이유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이기는 하지만, 협상과정에서 정부와 농업인단체는 모두 쌀산업을 위한다는 목적은 동일했으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접근방법에 큰 차이가 있었다. 결국 정부와 농업인단체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힘을 모아가야 하는 시점에 서로 오해하고 갈등을 빚는 모습으로 일반국민들에게 비춰진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나. 한미 FTA 협상

(1) 한·미 FTA 협상의 의의

한·미 FTA 협상은 우리 기업의 수출환경을 개선하고, 개방을 통해 서비스산업 등의 경쟁력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하여 국가경쟁력 및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분야는 협상 결과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고 국내 보완대책도 충실히 마련한다는 정부 전체의 공감대 하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농업협상 주요 목표는 민감 품목에 대한 예외적 취급 확보였다. 그러나 미국은 농업협상에서의 성과를 최대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여 강도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였고 협상 마지막까지 예외없는 관세 철폐 원칙을 견지하였다. 이렇게 양측이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협상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입장차이는 크게 좁혀지지 않았고 협상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양측은 협상기간 내내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절충하고 각자의 우선순위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창의적으로 모색하였고,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최종 협상에서 핵심 품목에 대한 양허방향에 합의를 할 수 있었다.

농업분야의 경우 한·미 FTA 협상은 이전에 우리가 체결한 여타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체결되었으나, 세번 분리, 농산물 셰이프가드, 수입쿼타(TRQ) 등 다양한 양허방안을 도입함으로써 민감품목에 대해 예외적 취급방안을 마련하였다.

(2) 한·미 FTA 협상 경과

협상 준비

양국 정부는 사전실무점검회의(3회), 통상장관회의(6회) 등을 거쳐 2006년 2월 3일 한·미 FTA 협상 출범을 선언하였다. 양측은 2006년 중에는 6월, 7월, 9월, 10월, 12월 모두 5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2007년 일정은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협상진행을 위해서 모두 17개의 분과(Negotiating Group)와 2개의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하였고, 정부는 우리측 협상 목표 및 협정문 초안 작성을 완료하여 2006년 5월 12일 국회에 보고하고 5월 19일 미국과 협정문 초안을 교환했다.

농림부는 농업분과와 SPS(위생 및 검역) 분과의 협상을 총괄하고, 원산지·서비스·지재권 등 농업과 관련된 분과 협상에도 참여하였다. 범정부적 FTA 추진에 대응하여 농림부에서는 농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한·미 FTA 대책추진단’을 설치하고 협상은 물론 국내 대책 및 홍보 등을 총괄하였다.

2006년 협상

제1차 협상(미국 워싱턴, '06. 6. 5. ~ 9)에서는 농업분과는 양측의 기본입장 설명, 협정문 초안 검토 및 양국 현황 및 각종 제도에 대한 정보 교환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우리측은 양허에 있어 농업의 민감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미측은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원칙을 표명하였다. SPS분과도 양국간 검역제도 소개를 위주로 논의하였고, 협정문에서는 양국간 SPS 현안에 관해 협의하는 협의채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

제2차 협상(서울, '06. 7. 10 ~ 14)에서는 농업 협정문 관련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수입쿼터(TRQ)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양국간 의견 차이

가 커 통합협정문을 작성하지 못했다. 양허안 기본원칙(framework)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나, 상품분야에서는 합의를 도출한 반면 농업 및 섬유분야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여 일단 각자의 방식대로 양허안을 작성키로 했다. SPS 분과는 1차 협상에 이어 양국의 검역제도를 소개하였으며 의견교환을 통해 상대방의 검역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였다. SPS 분과는 이견이 있는 부분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2차 협상에서 일단 통합협정문을 작성했다.

제3차 협상을 앞둔 2006년 8월 15일 양측은 양허안을 최초로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농산물 1,531품목(HS 10단위 기준)중 284개 품목을 예외적 취급 대상인 미정(Undefined) 항목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후 개최된 제3차 협상(미국 시애틀, '06. 9. 6. ~ 9)에서 양허안을 처음 논의했으나, 양측은 농산물 양허에 대한 서로의 기대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을 뿐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우리측은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적 취급 및 관세철폐 이행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반면, 미측은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주장하며 우리 양허안 개선을 요구하였다. 농산물세이프가드 도입에 대해서도 양국간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 우리측은 민감품목 논의를 위해선 세이프가드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반면, 미국측은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논의를 위해서는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SPS분과 협상에서는 양국의 검역제도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4차 협상부터는 협정문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시키기로 하였다.

제4차 협상(제주, '06. 10. 23 ~ 27)에서는 농업 협정문에 대해 상세한 논의를 하여 일부 쟁점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절충하고 입장차가 있는 부분은 양측 입장을 병기하는 수준에서 통합협정문을 작성하였다. 양국은 협정문에 농산물세이프가드 조항을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발동기준 등 세부세항은 추후 논의를 계속하여 구체화하기로 했다. 협상 마지막 날 우리측은 양허안 관련 그간의 논의내용 및 미측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을 중심으로 미정 품목을 235개로 줄이고 일부 품목의 관세

철폐 기간을 단축하는 수정 양허안을 미측에 전달하였다. 그 결과 약 500여 개 품목을 제외하고 양국간 의견이 접근하였다. 미측도 일부 품목의 양허를 개선한 수정 양허안을 제공했다. SPS분과는 협정문에 대해 논의했으나 투명성 규정 및 협의채널 문제에 대한 상호 입장을 확인하였다.

제5차 협상(미국 몬타나, '06.12. 4~8)에서 우리측은 농산물 양허와 관련하여 축산물, 과일류 등의 품목별 민감도를 상세히 설명하고 미국측의 관심 정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235개 미정(Undefined) 품목을 포함한 민감품목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해 향후 품목별 양허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기초작업을 하였다. SPS분과는 제5차협상에서는 논의하지 않고 2006년 12월중 미국 워싱턴 DC에서 별도로 협상을 하기로 하였으나, 의제에 합의하지 못하여 협상이 무산되었다.

2007년 협상

제6차 협상(서울, '07.1.15~19) 및 제7차 협상(미국 워싱턴, '07.2.11~14)에서는 농산물 양허에 있어 품목별로 민감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미측이 예외없는 관세철폐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가 컸으나,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상당수준 의견접근을 이룸으로써 향후 민감품목에 협상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 오렌지, 사과, 포도 등 약 300여개 품목이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었다. 농산물 세이프가드 및 수입쿼타(TRQ) 관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세부 사항에 대해 양측의 입장차가 큰 상태임을 확인하였을 뿐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 SPS 분과는 의제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제6차 협상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제7차 협상에서 협의채널에 대해 양측 입장을 절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상당 수준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제8차 협상(서울, '07.3.8 ~ 12)도 6, 7차 협상과 마찬가지로 농업분야는 양측간 이견의 폭이 상당히 크고 타결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였다. 우리측은 민감품목에 수입쿼타, 계절관세, 세번 분리 등 대안을 마련하는 대신 관세는 현행수준을 유지해야 함을 주장하였으나, 미측은 예외 없는 관세철폐 원칙에는 신축성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에 따라 고위급 협의 채널을 최대한 가동하여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8차 협상 전후로 2차례의 농업분과 고위급 협의('07.3.5, 3.19 ~ 22)를 개최하였다. 제1차 고위급 협의는 기존 실무급 협의와 비슷한 기조 하에서 큰 진전이 없었으나, 최종단계 협상을 앞두고 개최된 제2차 고위급 협의에서는 미측이 우리측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예외 없는 관세철폐 입장에서 다소 신축성을 내비침에 따라 일부 과일류 및 곡물에 대해 상당히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시켰다. 그러나 핵심품목은 여전히 입장차가 큰 상태로 협의를 종료한 채, 최종 협상만을 남겨놓게 되었다.

최종 협상(서울, '07.3.26 ~ 4.2)은 우리측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Karan Bhatia) 미 USTR 부대표 및 고위급을 포함한 양측 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양측은 2007년 4월 2일 오후 한·미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였다. 농업분야는 8차까지의 공식협상 및 두차례 고위급 협의에서 논의한 대안을 바탕으로 주요 핵심 품목의 양허방향 및 협정문을 확정하였다. SPS 분야도 협의채널 구성, 투명성 규정삭제 등 핵심이슈에 대해 절충점을 찾음으로써 협정문을 마무리하였다. 중요한 사항은 모두 최종 협상에서 확정된 것인데, 이는 그전까지 양측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함으로써 가능한 방안을 폭넓게 탐색해 왔기에 가능하였다.

한·미 FTA 협상은 농업계의 깊은 우려와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협상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였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기대수준도 상당히 높았다. 따라서 주요 협상 전략의 보안 유지와 협상 진행의 투명성 확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정부는 매 협상 직전 광범위한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민·

관·학 워크숍을 개최하여 정부의 협상 대응방향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워크숍을 비공개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협상 진행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우리 협상전략의 대외 보안유지가 가능하였다.

(3) 주요 협상 결과

농산물 양허

농산물 양허수준은 우리가 체결한 여타 FTA에 비해서는 높으나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수입쿼타(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세번 분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안 및 15년 이상의 관세철폐 기간을 확보하였다. 다만,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즉시에서 10년까지 철폐기간을 차별화하고, 국내 영향이 없거나 이미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국내 수입수요가 거의 없는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다.

예외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였다. 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꿀, 오렌지(성출하기) 등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대신 일정물량의 수입쿼타 제공하는 방식으로 양허하였다.

포도, 오렌지, 칩용 감자 등 국내 수확·유통 기간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는 품목은 계절관세를 적용하여 우리나라 수확·유통 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하였다.

사과, 배 등 양국의 주력 품종이나 용도가 구분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세번을 분리하여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호하였다. 예를 들어 사과의 경우 후지는 20년간 관세를 철폐하고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를 철폐하는 방안으로 합의하였고, 감자와 대두의 경우 식용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가공용은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한편,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등 주요 민감 품목에 농산물 셰이프가드를 도입하여 수입량이 일정물량 이상으로 급증하면 추가관세를 부과하여 예측치 못한 수입증가로부터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측 농산물 양허안 개요

양허 유형	품목수	비중	수입액 (천불)	비중(%)	주요 품목
양허제외	16	1.0%	25,555	0.9%	쌀
현행+ TRQ	15	1.0%	209,334	7.0%	오렌지(성출하기), 식용대두, 식용감자, 탈지·전지분유, 연유, 천연꿀
17, 계절관세	1	0.1%	4,099	0.1%	포도
15, 계절관세	0(1)	0.1%	0	0.0%	칩용 감자
18+ TRQ	4	0.3%	1	0.0%	인삼(수삼, 백삼의 본삼·미삼·잡삼)
15+ TRQ	10	0.6%	93,504	3.1%	치즈, 사료용 근채류, 맥주맥, 보리, 옥수수전분
12+ TRQ	6	0.4%	8,370	0.3%	보조사료, 변성전분
10+ TRQ	11(1)	0.8%	3,233	0.1%	버터, 조제분유(유아용), 유장(식용), 체다치즈
20	0(2)	0.1%	0	0.0%	사과(후지), 배(동양배)
18	3	0.2%	0	0.0%	홍삼(본삼·미삼·잡삼)
16	2	0.1%	1,057	0.0%	설탕
15	98(2)	6.5%	353,259	11.8%	육우, 쇠고기, 계란, 녹용, 녹각, 고추, 마늘, 양파, 생강, 표고버섯, 키위, 호두(미탈각), 감귤, 녹차, 밥, 잣, 참깨, 참기름, 주정, 전분, 혼합조미료 등
12	34	2.2%	13,504	0.5%	젓소, 닭고기(냉동가슴살, 냉동날개), 난황(건조, 기타), 냉동양파, 수박, 멜론 등
10	332	21.4%	121,840	4.1%	산 돼지, 복숭아, 감, 단감, 감귤주스, 사과주스(브릭스 20 이내),

양허 유형	품목수	비중	수입액 (천불)	비중(%)	주요 품목
					있담배, 자두, 로얄젤리, 인조꿀, 닭다리(냉동), 돼지고기(냉장 삼겹살·목살·갈비 등), 고구마, 사과(후지 제외), 배(동양배 제외), 찐쌀, 쌀의 배아, 송이·느타리·팽이·영지버섯 등
9	1	0.1%	0	0.0%	신선딸기
7	41	2.6%	59,293	2.0%	맥주, 아이스크림, 살구, 팝콘용 옥수수, 옥수수(가공용), 포도(조제저장처리), 사과(조제저장처리), 사과주스(브릭스 20 초과) 등
2014.1.1까지	21	1.4%	57,689	1.9%	돼지고기(냉장 도체 및 이분도체, 냉장 전·후지, 냉동육, 설육, 가공품)
6	2	0.1%	13,070	0.4%	옥수수유(기타), 호두(탈각)
5	317(2)	20.6%	347,007	11.6%	오렌지주스(냉장), 토마토주스, 크랜베리 주스, 자두주스, 완두콩, 감자(냉동), 위스키, 스파케티, 국수, 당면, 냉면, 인스턴트 커피, 간장, 고추장 등
3	33	2.1%	66	0.0%	해조류 등
2	6	0.4%	6,921	0.2%	아보카도, 레몬, 프룬(건조자두), 콜라베이스 등
즉시 철폐	578(9)	37.9%	1,665,517	55.8%	오렌지주스(냉동), 포도주스, 산동물, 종축, 원피, 면화·마 등 섬유 원료, 화훼류, 커피, 포도주, 밀, 사료용 옥수수, 대두(채유용, 장류제조용), 사료용 완두, 사료용 유장 등
계	1,531(17)	100%	2,983,317	100%	

* ()안 품목은 세번 분리된 품목

우리측과는 달리 미측은 자국의 모든 농산물 관세를 15년 이내에 완전히 철폐하기로 하였다. 또한 라면, 배, 음료, 주류, 장류, 김치, 삼계탕 등 우리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 유망품목은 대부분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미국측 농산물 양허안 개요

양허유형	품목수	비중(%)	수입액 (백만불)	비중(%)	주요 품목
10년 철폐, 수입쿼타	26	1.4%	0.32	0.1%	낙농품 (300MT)
15	65	3.6%	0.03	0.0%	멤쌀, 쇠고기, 치즈
10	154	8.5%	4.33	1.9%	설탕, 면화
7	91	5.0%	30.92	13.8%	담배, 대두유(조유), 채소(조제 저장)
6	1	0.1%	0.00	0.0%	호두(탈각)
5	401	22.1%	4.56	2.0%	아이스크림, 버섯
2	10	0.6%	0.20	0.1%	자두(조제저장), 단백질계 물질
즉시철폐	1,065	58.7%	184.33	82.0%	라면, 배, 조제식료품, 음료, 주류, 간장, 된장, 고추장, 삼 계탕, 김치, 포도주스, 오렌지 주스(냉동)
합계	1,813	100%	224.70	100%	

농업 협정문

농업분야 협정문은 총 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정문 적용 대상 및 범위, 수입쿼타(TRQ) 관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농업위원회, 정의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 핵심은 수입쿼타 관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농업위원회 등 세가지라고 볼 수 있다.

수입쿼타 관리에 대해서는 한미 FTA에서 신설된 수입쿼타 품목을 대상으로 상세한 규범을 마련하였다. 당초 미측은 선착순 방식만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으나, 우리 입장을 반영하여 선착순, 수입권 공매, 수입허가(실수요자 배정) 방식 도입에 합의하였다. 또한 쿼타 수입을 인위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각종 요소에 대해 WTO 협정의 수입쿼타 관리규범과 유사한 형태의 규범을 도입하였다.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총 30개 품목(HS 10단위 기준 75 세번)에 대해 수입 물량이 발동기준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도입하였다. 협정문의 부속서에 각 품목의 연도별 발동기준물량 및 이를 초과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추가관세율을 명시하였다. 발동기준물량은 과거 최대 수입물량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설정하였고, 추가관세율은 여타 WTO 회원국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행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동일 품목에 대해 여타 세이프가드 조치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였으며, WTO 농업협정상의 특별 긴급관세는 양국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관세철폐시까지만이나,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 주요 품목은 관세가 철폐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업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업분야 협정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양국간 번갈아가며 매년 1회 개최하고, 의사결정은 합의(consensus) 방식으로 하기로 하였다.

농업 이외의 분과

SPS(위생 및 검역) 조치 관련 양국간 관련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SPS 정례위원회를 설치하되, 동 기구가 통상압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명문규정¹⁾을 마련하였다. SPS 정례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양국의 규제 당국간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SPS 기술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아울러 검역조치에 관한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양국간 검역문제는 과학적 위험평가와 전문기관간 기술협의를 통해 다루고, 동 위험평가는 양국의 해당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함.

원산지 협상은 FTA 체결 당사국 간에 적용되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협상이다. 신선 농산물은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화훼, 채소, 과일, 곡물류는 당사국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농산물에 대해서만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등 제3국에서 재배하거나 수확한 작물을 수입한 후 우리나라에 재수출하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닭고기를 제외한 육류는 제3국산 생축을 수입해 도축한 경우도 원산지를 인정(도축국 기준)받아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FTA 원산지기준은 수입가능성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협정문에 명시함으로써 위생·검역 조건을 우회한 수입 우려를 해소하였다.²⁾ 가공 농산물의 경우는 민감한 품목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라면, 소주, 청주 등 대미 수출이 많거나 우리나라산 선호가 높은 품목은 제3국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원산지 기준을 마련하였다.

서비스는 ‘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호 필요성이 높은 민감한 분야만 유보하고, 유보안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업은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협상을 하였다. 유보안은 현재유보(부속서 I)와 미래유보(부속서 II)로 구분 작성되었다. 현재유보는 현재 외국인에 대한 차별·제한이 있는 분야에 대해 이러한 차별·제한을 한미 FTA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데, 농업분야에서는 벼·보리재배업·육우사육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금지 및 지분제한, 수의서비스, 유통서비스(육류도매, 가축시장, 공영도매시장, 공판장) 등이 포함되었다. 미래유보는 현재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제한이 없으나 향후 규제 도입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미리 밝히는 것인데, 농업분야는 농지, 쌀·인삼·홍삼 유통서비스, 농촌관광, 인증·검사·등급판정업, 쌀저장업, 농림업부수서비스(쌀·보리 도정업, RPC 포함) 등이 포함되었다.

2) 쇠고기는 도축국 기준을 적용해도 위생·검역조건에 의해 캐나다산 생우를 미국에서 도축한 경우 수입이 금지되고, 멕시코산 생우는 미국 내에서 100일 이상 사육 후 도축해야 수입이 가능함.

(4) 한·미 FTA의 영향

농업분야는 한미 FTA 협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쌀을 제외한 주요 2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업분야 예상 영향을 분석³⁾한 결과를 보면 협상 이행기간 동안 생산액은 한·미 FTA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연평균 6,149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분석범위> 쌀 이외 우리나라 주요 농산물 대부분을 포함

곡 물	두류, 맥류, 기타 곡물
축 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낙농품), 기타 축산
과 일	사과, 배, 포도, 감귤, 복숭아, 기타 과일
채소, 특작	고추, 마늘, 양파, 과채류, 인삼, 기타 채소·특작

* 상기 분석 품목과 쌀의 생산액 합계는 농업총생산액(35조원)의 91%에 해당

수입액 변화를 보면, 수입선 전환 및 무역창출 효과로 연평균 3억 7,000만 달러 대미 수입증가가 추정되었으나⁴⁾, 타 국가로부터 수입액은 수입선 전환 효과로 연평균 1억 4,300만 달러 감소가 추정되었다.

(5) 향후 계획

2007년 양국 통상장관간 서명으로 한미 FTA 협상은 종결되었고 협정문을 포함한 일체의 협상 결과 문서가 공개되었다. 남은 것은 의회의 비준 및 국내 법 및 제도적으로 한·미 FTA 협정 이행을 준비하는 절차 등이다.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총량모형인 KREI-ASMO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동 모형은 품목별로 수입산과 국내산과의 대체효과, 미국산과 제3국산과의 수입선 대체효과를 고려하도록 설계되었다. 분석에 가공식품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과일농축액·주스 등 신선농산물과 밀접한 1차 가공품은 생과일로 환산해 분석에 포함시켰다.

4) '06년 기준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총 108.7억 달러인데 이중 미국산의 비중은 23.7%였다. 분석대상 품목의 수입액은 총 58억달러이며 이중 미국산의 비중은 31.6%였다.

농업분야는 한미 FTA 협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이므로 국내 보완 대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수입 급증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직접지불 확충 등 피해보전장치를 마련하고, 피해 품목에 대한 경쟁력 제고 지원을 확대하며, 농업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체질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농촌을 다양한 산업공간과 국민 생활공간으로 조성키 위한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기반 확충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 기타 FTA 협상

(1) 도입배경 및 의의

수출주도형인 우리경제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범세계적인 지역주의 흐름에 대응하여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는 2002년 한·칠레 FTA 협상 타결을 시작으로 이후 여러 나라와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FTA 추진은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EFTA,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여 협정문이 발효 중이며 한·아세안 FTA의 경우 상품협정이 '06년 8월에 타결되어 2007년 6월 1일부터 발효 중이다. 또한, 캐나다 및 인도와도 2007년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거대경제권 중의 하나인 EU와도 올해 5월 협상출범을 공식 선언하였다. 아울러 중국, 호주·뉴질랜드와도 공동연구를 통해 FTA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2) 정책입안과정 및 평가

성공적인 FTA추진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FTA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부는 2004년 6월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을 마련하여 협상의 각 단계별 필요

한 절차를 규정하였다.

특히, 전통적으로 취약한 농업분야의 경우 FTA체결로 인하여 가장 많은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로서 무엇보다도 적절한 의견수렴 과정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FTA 추진상황 설명회, 품목단체협의회 등을 통해 FTA 농업협상 동향을 지속적으로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협상시 부분감축, 관세할당 등 다양한 양허전략을 활용하여 국내농업에 대한 민감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FTA체결에 따른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등 효과적인 국내농업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주요 내용 및 추진 성과

한·아세안 FTA

ASEAN과 2004년 11월에 개최된 ASEAN+ 3 정상회담에서 2005년 상반기 중 FTA 협상을 개시하여 2년 이내에 협상을 마무리 짓고, 2009년까지 최소한 관세부과 대상 품목의 80%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2005년에는 대아세안 수출입 통계를 분석하여 개별 품목에 대한 연구 및 분석모형 검토가 선행되었다.

한·ASEAN FTA는 2005년 2월에 개시되어 2005년 11월까지 8차례 협상을 진행하였다. 양측은 기본협정문과 경제협력 분야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다. 또한 상품양허 기준인 관세철폐방식(Modality)에서도 합의를 이룬 상태이다. 이에 따라 양측 정상들은 2005년 12월 13일 한·ASEAN 정상회담에서 기본협정문에 서명하였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기존에 역내 자유무역협정(AFTA : Asean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하여 회원국 상호간 관세 인하 협정을 맺은 바 있으며, 2005년 한-아세안 FTA 협상 진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2005년 협상 개요 및 진행 상황

협상 시기	협상 주요 내용
1차(2.23-25)	◦ 협상 시작, 자유화 범위 논의
2차(4.19-21)	◦ 자유화 범위·방식 논의
3차(6.8-11)	◦ 협정 당사자 및 성격(양자·다자협정) 논의
4·5차(7·8월)	◦ 일반 품목의 자유화 문제 논의
6차(9.23-26)	◦ 상품 자유화 방식(modality), 민감품목군 크기 결정 기준 ◦ 초민감품목 처리 방식
7차(10.9-13)	◦ 원산지 협정문 합의(불인정공정, 직접운송, 개성공단 제외)
8차(11.16-18)	◦ 상품협정 쟁점(SPS, 수출세, 세이프가드, BOP 등) 논의 ◦ 상품 협정문 협상 종결

한·캐나다 FTA협상 대응

지난 7월 15일 한국과 캐나다 양국통상장관이 한-캐나다 FTA 협상 출범을 공식선언함으로써 캐나다가 칠레, 싱가포르, EFTA에 이어 한국의 6번째 FTA 협상 파트너가 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북미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에 한발 내딛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양국의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로 적은 조정 비용으로 양국간 교역 및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국은 2005년 두차례의 예비협약(1월, 3월)을 통해 수준 높은 FTA 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관심사를 확인하였다. 이후 공청회, FTA 실무추진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국내외견 수렴절차를 거쳐 캐나다를 FTA 추진 대상국으로 확정하였다.

캐나다는 2005년 현재 세계 제3위 농산물 수출국으로서 NAFTA, 이스라엘, 칠레, 코스타리카와 FTA를 맺고 있다. '04년 현재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라면, 감귤, 배, 파스타 등이고, 주요 수입품목은 돼지고기, 밀, 우지, 유장, 감자, 유채유 등이다. 향후 협상에서 이들 주요 수입품목에 대한 캐나다의 관세철폐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캐나다 FTA협상은 '07년 6월 현재 제10차 협상까지 진행되었다. 제1

차 협상(7.28, 서울)은 분과구성, 협상일정 등 향후 협상의 틀을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실질적인 논의는 없었다. 이는 캐나다가 자국의 정치 상황으로 FTA 협상개시를 미루자 우리측의 요구로 1차 협상을 개최하되 우선 부담이 덜 되는 행정사항을 논의하게 된 것이다.

2차 협상(9.27~30, 서울)은 캐나다가 9월초 마련한 협정문 초안에 대한 우리측 검토의견을 토대로 협정문 완성을 목표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결국 양국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이었고 미합의 사항은 추후 협상을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상기 협상에서 캐나다는 관세철폐 수준 (Scope of Tariff Offers)과 관련하여 농산물에 대해서는 '02~'04년 수입액의 99%이상을 양허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농업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농산물 분야 관세철폐율이 저조할 것을 우려하여 높은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3차 협상에서는 협정문의 잔여쟁점과 관세철폐안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캐측은 자국의 조선·자동차 시장 개방을 알리면서 전반적인 이익의 균형을 위해 우리의 농산물 시장의 포괄적인 자유화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캐측은 조선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를 비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철강·자동차 관련 반덤핑관세 조항을 거부하고 있어 사실상 전면 개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구실로 농산물 시장 개방의 압력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다만, 관세철폐안 협상의 진전을 위해 캐나다는 2차 협상시 제기한 최근 3년간 수입액 99%이상 품목 관세철폐안을 철회하고 그 대신 제4차 협상에서 양허제외품목과 7년이상 장기관세철폐 품목의 리스트를 교환기로 합의하였다.

제 5차 협상('06.4.24~27, 캐나다 오타와)에서 1차 상품 양허안을 교환하였으며 제 7차 협상('06.9.25~28, 캐나다 오타와)에서 2차 양허안을 교환하였다.

이후 제 8차 협상('06.11.20~23, 서울)부터 농업소분과를 설치하고 양측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양허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향후 캐나다와 농업협상은 평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캐나다의 일반특혜관세(GPT) 수혜국이고 대(對) 캐나다 수출품목에 대한 적용 관세는 무관세이거나 10%이하의 저율관세가 부과되어 있을 뿐이다. 반대로 캐나다의 대한(對韓) 농산물 수출액 규모는 한국보다 약 10배 이상 많고 대부분 고관세 품목이라 캐나다로서는 우리나라의 관세 양허를 통한 실질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더욱 공세적 입장을 취할 것이다. 또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캐나다는 조선·자동차 등 민감 분야에 대한 전면 개방 가능성을 알리고 농산물에 대한 높은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측은 협상목표로서 양허이득의 분야별 상호 균형을 강조함과 동시에 농산물의 민감성을 계속 주지시키는 한편 양허안 작성시 예외품목의 확보, 양허수준의 다양화, 농산물에 관한 특별세이프가드의 도입 등 다각적 접근과 전략으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인도 CEPA 협상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FTA와 동일한 성격

한·인도 CEPA 협상은 2004년 10월 양국 정상이 CEPA협상 추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양국의 산·관·학으로 구성된 공동연구그룹의 설치에 합의함으로써 검토가 개시되었다. 2005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친 공동연구그룹회의 개최 결과, CEPA 협상 추진을 양국 정부에 건의하는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한·인도 CEPA협상은 2007년 타결을 목표로 2006년 3월부터 추진되고 있다.

'07.1월까지 6차례 개최된 협상을 통해 양국은 7개 분과별 협상작업반(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기타규범 및 경제협력, 일반조항 및 분쟁해결, 원산지, 통관) 회의를 개최하여 협정문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양측

모두 적극적이고 유연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전 부문에 걸쳐 통합협정문 작성에 진전을 이루었으며, 특히 상품분야 협정문안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조항에서 합의 문안을 마련하였다.

상품 자유화 방식에 있어 양측은 모두 극히 민감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되, 전체적으로 일정한 수준이상의 개방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인식과 양국의 경제수준 등을 감안하여, 특히 민감품목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체상품의 7%에 해당하는 품목을 ‘양허제외’에, 5%에 해당하는 품목을 ‘관세 50%감축’ 유형에 배치하기로 하고, 인도는 15%에 해당하는 품목을 ‘양허제외’에, 5%를 ‘관세 50%감축’ 유형에 배치한다는데 양측이 잠정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07.7월로 예정된 제7차 협상에서는 상품 자유화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 국가로서 자급자족적 농업 형태에 하부구조도 열악하고, 우리나라로의 농산물 수출 규모도 약 2.3억불(’03~’05평균) 수준이다. 그러나 인도의 대세계 농산물 수출실적을 고려할 때 양국간 농산물 교역 잠재력은 크다고 예상된다.

인도가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을 통해 상품분야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가 농림수산업 외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콩, 참깨 등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민감 농산물을 전세계로 수출하고 있어 농산물 양허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양허제외’ 및 ‘관세 50%감축’ 유형에 농산물이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인도측에도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한·인도 CEPA협상 타결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라. DDA 협상

(1) DDA 농업협상 출범 배경 및 의의

DDA 농업협상 출범 배경

UR협상에서 처음 다루어진 농업과 서비스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자유화 정도가 미약하므로 2000년 1월부터 추가협상을 하도록 WTO농업협정문 20조에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WTO회원국들은 199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2차 WTO각료회의에서 농업, 서비스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협상(일명 ‘뉴라운드’ :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이은 새로운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이라는 의미)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다.

1999년말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 3차 WTO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선진국 위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것에 대한 개도국들의 반발과 반덤핑, 농업 등 협상의제에 대한 주요국간 합의도출 실패로 뉴라운드 출범이 무산되고 말았다.

시애틀 각료회의에서의 실패 이후 WTO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조치, 개도국의 능력배양 및 기술지원사업 강화, WTO의사결정의 투명성 증대 등의 분야에서 와해된 신뢰구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협의를 기초로 2001년초 WTO 일반이사회에서 제4차 각료회의를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이후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었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에서 농업, 서비스, 공산품, 반덤핑협정·보조금협정 개정(수산보조금 포함),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일부 환경문제 등 다양한 의제를 포괄하는 새로운 다자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을 출범시켰다.

DDA 농업협상의 의의

WTO는 지역주의가 확산 되어가는 세계무역 상황 속에서 DDA 협상을 출범시킴으로써 다자무역체제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도하각료회의에서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을 승인함으로써 WTO의 위상도 더욱 높아졌다.

도하 각료 선언문에 의하면 ‘시장개방의 상당한 진전’, ‘수출보조의 철폐’, ‘무역왜곡적인 국내보조의 상당한 감축’을 농업협상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효과적이고 적절한 개도국 우대조치가 충분히 반영돼 개도국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는 과거 선진국 중심의 다자무역협상과는 달리 이번 협상에서는 개도국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룸으로써 개도국 이슈가 주요한 세계무역이슈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2) DDA 농업협상 경과

DDA 농업협상은 2001년 11월 UR협상 결과의 토대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목표 하에 출범하였다. 당초 정해진 협상일정에 따르면 2003년 3월말까지 세부원칙(Modality)을 확정하고, 2003년 9월 제5차 WTO 각료회의 이전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며, 2004년 말까지 협상을 완료하도록 했다.

2003년 3월말까지 세부원칙을 확정한다는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하빈슨 농업협상 의장은 그간의 논의내용을 기초로 세부원칙 초안을 제시했으나 회원국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실패하였다.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에서 완전한 형태의 세부원칙을 합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그 중간단계로 기본골격에 합의하려 했으나 그마저 실패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2004년이 되자 농업협상 그룹은 7월말까지 우선 기본골격을 타결시킨다

는 목표로 밀도 있는 협상을 시작했고, 그 결과 2004년 8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기본골격을 토대로 2005년 7월말까지 세부원칙 초안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하였으며, 10월 이후 미국, EU, G10, G20, ACP 등 주요 국가그룹 및 주요국이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2006년 4월까지 농업과 비농산물 분야의 세부원칙을 확정하고, 2006년 7월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다는 향후 DDA 협상일정을 제시하고, 수출보조 철폐일시에 합의함으로써 DDA 협상진전의 모멘텀을 유지하였다.

2006년 7월 국내보조, 시장접근등 주요 이슈에서 미국과 EU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잠정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11월 Lamy 사무총장이 재개를 선언하여 협상이 정상화되었다.

2007년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DDA 협상을 본격 재개기로 합의한 후 양자간, 복수국간, 그룹간 다양한 활동이 본격화 되었다. 미국, EU, 브라질 등 주요국은 고위급협의를 개최하여 향후 협상일정, 관세감축 폭, 민감품목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고, G10, G20, G33, 케언즈 그룹 등 주요 이해 관계그룹도 민감품목, 개도국 특별품목 등에 대한 내부 협의를 진행하였다.

2007년 4~5월 팔코너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다자협상에서 주요쟁점에 대한 논의 진전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의장 문서를 제시하였다. 관세감축률, 민감품목, 국내보조 감축률 등은 그간의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였고, 개도국 특별품목은 의장 자신의 구상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장문서 발표를 계기로 활발한 다자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금년 6~7월이 연내 DDA협상 타결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월 중순 G4(미국, EU, 브라질, 인도) 장관급 협의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였으나, 팔

코너 의장은 7월 중순 세부원칙 초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제네바차원의 다자협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3) DDA 농업협상 주요 쟁점별 논의내용

시장접근 분야

관세감축 폭

제안별 관세 감축율 비교

	미국	G20	EU	G10	ACP
감 축 율	60%이상:	(선진국)	(선진국)	(단순선형시 예시)	(선진국)
	90%	- 75%이상: 75%	- 90%이상: 60%	- 70%이상: 45%	- 80%이상: 42%
	40~60%:	- 50~75%: 65%	- 60~90%: 50%	- 50~70%: 37%	- 50~80%: 35%
	80%	- 20~50%: 55%	- 30~60%: 45%	- 20~50%: 31%	- 20~50%: 30%
	20~40%:	- 0~20% : 45%	- 0~30% : 35%	- 0~20% : 27%	- 0~20% : 23%
	70%	(개도국)	(20~45)	(신축성 부여시 예시)	(개도국)
	0~20% : 60%	- 130%이상: 40%	(개도국)	- 70%이상:	- 150%이상: 30%
	* 개도국에는	- 80~130%: 35%	- 130%이상: 40%	50%±10%	- 100~150%:
	더 낮은 감	- 30~80%: 30%	- 80~130%: 35%	- 50~70%: 42%±9%	25%
	축율	- 0~30% : 25%	- 30~80%: 30%	- 20~50%: 36%±8%	- 50~100%: 20%
			- 0~30% : 25%	- 0~20%: 32%±7%	- 0~50% : 15%
			(10~40)	* 개도국은 30/70 /100 으로 구간 구분	

관세 감축은 양허 관세율의 수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고, 관세율이 높을수록 감축률이 커지는 구간별 감축방식이 대세다. 구간경계는 G20의 제안인 20/50/75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며, 관세감축률은 최상위 구간이 60~85%로 예상된다. 이하 구간 감축률은 최고구간 감축률에 비례해서 설정될 것이다.

평균 관세감축률은 50% 이상으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상한(100~200%) 도입 여부는 현재 논의 중에 있다.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

각 회원국은 자국에 중요한 일부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해 일반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 감축률보다 낮은 감축률을 적용할 수 있다. 민감품목이 보통 높은 관세율로 보호되고 있는 만큼 민감품목의 개수와 대우에 대해서 주요국간 입장차가 매우 크다. 관세감축을 일반 품목보다 적게(일반품목 관세 감축률의 50% 수준)하는 대신 소비량 대비 일정부분 TRQ 물량을 증량함으로써 실질적인 시장접근 개선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 대세다.

민감품목의 개수는 전체 세번의 1~5% 수준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EU의 입장조정으로 인해 전체 세 번의 4%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민감품목의 대우 관련하여 국내소비량 대비 5% 수준의 TRQ 증량이 예상되는데, 미국, G20 등은 국내소비량 대비 6~7%수준의 TRQ 증량을, EU는 3% 수준의 TRQ 증량을 주장하고 있다.

관세감축 폭 예외 정도(deviation)와 TRQ 증량 연계도 논의되고 있다.

특별품목(special product)

개도국은 식량안보, 생계보장, 농촌개발 등의 지표틀 기초로 일부 품목에 한정하여 관세 감축과 TRQ 증량 등 시장개방 폭에 있어 최대한의 신축성이 부여 가능한 특별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현재 개도국그룹(G33)이 특별품목 선정지표(indicators)를 마련한 상태이나 수출국들은 지표가 국제자료 등을 통해 검증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품목 개수와 관련하여 G33은 전체 품목의 최소 20%를, 미국은 5개 품목을 주장하고 있는데, 입장차가 너무 커서 향후 기술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특별품목 대우와 관련하여 G33은 특별품목 중 1/2은 관세감축 면제를, 1/4은 관세 5% 감축을, 1/4은 10% 감축을 제안하였으나, 미국과 수출개도

국 등은 특별품목도 시장접근(TRQ, 관세감축, 관세상한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보조 분야

무역왜곡보조총액(Overall Trade-Distorting Support: OTDS)

국내보조 감축은 개별 보조들의 감축뿐만 아니라 최종 양허수준 AMS, 최소허용보조, 블루박스 등 개별보조들로 구성된 무역왜곡보조 총액(OTDS) 상한을 설정하여 감축하는 이중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사용 비중이 매우 높은 특정 보조에 대한 감축률이 낮게 결정될 경우, 합의된 감축률 이상으로 감축하여 회원국 간 총보조액의 격차를 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무역왜곡보조총액 한도가 감축대상보조, 블루박스, 최소허용보조의 합계보다 적을 경우 개별보조를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 무역왜곡보조총액은 지원규모에 따라 3개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감축률을 상이하게 설정하는 것이 대세다.

구 간	구 간 경 계(십억불)	감 축 폭
1 (기타)	0 ~ 10, 개도국	31 ~ 70%
2 (미국, 일본)	10 ~ 60	53 ~ 75%
3 (EU)	> 60	70 ~ 80%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이 무역왜곡보조총액을 과감히 축소(225→150억 불 수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1구간 감축률은 50% 수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안별 국내보조 감축률 비교

		E U	미 국	G20	G10
무역왜곡 보조총액	1구간(EU)	70%감축	75%감축	80%감축	75%감축
	2구간(미·일)	60%	53%	75%	65%
	3구간(기타)	50%	31%	70%	45%
AMS	1구간(EU)	70%감축	83%감축	80%감축	70%감축
	2구간(미·일)	60%	60%	70%	60%
	3구간(기타)	50%	37%	60%	40%
Blue Box	신규 Blue Box 제한규정 필요		농업총 생산액의 2.5%(상한)	품목별 상한설정 등 기준강화	신규 블루박스 추가논의 필요
de-minimis	선진국 80% 감축		50% 감축	AMS 없는 개도국 감축면제	-
Green Box	현행 규정 유지		현행 규정 유지	개도국 관련규정 완화	현행 규정 유지

* OTDS 구간경계 : 600억불이상, 100~600억불, 100억불 이하

* AMS 구간경계 : 250억불이상, 120~250억불, 120억불 이하

감축대상보조(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

감축대상보조는 지원규모에 따라 3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감축률을 상이하게 설정하는 것이 대세다.

1구간(기타)은 AMS의 37~60% 감축이, 2구간(미국·일본)은 60% 감축이, 3구간(EU)은 70% 감축이 예상된다. 개도국은 선진국 대비 2/3 수준으로 감축될 전망이다.

품목특정 AMS지원은 기준기간('95~'00년) 동안 지원규모 이하로 지원하고, AMS 지원실적이 없는 품목은 연도별 생산액 대비 5%이하 또는 최근 2개년 평균 지원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루박스 (Blue Box)

블루박스의 총액 상한은 농업총생산액의 2.5%(현행 5%)로 축소한다는 데 이견이 없으며, 품목별 상한 등 세부규율에 대해서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여타국들의 공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현행 생산액의 5%(개도국은 10%)인 최소허용보조수준을 최소 50%(각국 제안별로 최대 80% 수준)를 감축하되, 무역왜곡보조총액 허용한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추가적으로 감축될 전망이다.

(4) 주요 성과

정부는 수출국들의 급진적인 공세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개혁추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농산물 수입국 그룹(G10) 국가들과 공동제안서 작성 논의에 수차례 참여하여 우리입장 적극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개도국 특별품목 그룹(G33) 핵심회의에도 참여하여 특별품목,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SSM) 등 공동제안서 작성에 주도적인 역할로 개도국 유지를 위한 공감대 형성 및 분위기 저변확대 여건조성에 기여하였다.

국내적으로는 농업인단체의 협상동행 등 NGO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협상 동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의 투명성 제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협상에 대한 다양한 설명회, 의견수렴 절차 등을 통해 DDA 농업협상에 대한 언론·농업인 등의 인식제고와 협상결과 수용을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을 하고 있다.

(5) 향후 대응계획

DDA 협상 결과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협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다.

시장접근분야에서는 관세상한, 민감품목, 특별품목 등 우리의 이해관계가 큰 쟁점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하고, 국내보조분야에서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과도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감축대상보조 한도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다만, 수매, 가격지지 등 시장왜곡적인 정부 지원은 허용보조 요건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타결이 타결될 것에 대응하여서는 G10, G33 등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 공조를 바탕으로 협상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또한 DDA 협상 전개의 핵심변수인 미국 무역촉진권한(TPA) 갱신, 농업법 개정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EU, 인도, 브라질 등 여타 주요국의 움직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해관계 반영을 위한 미국, EU 등 주요국과의 양자협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향후 세부원칙이 정해질 경우, 이에 따른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작업과 아울러 국내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이행계획서 작성에도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협상동향을 상세하고 투명하게 국내에 홍보하는 한편, 협상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 노력들을 더욱 배가시켜 나가고, 국내 대책 마련에 있어서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나갈 것이다.

UR·DDA 협상 추진경과 비교

구 분	UR 협상	DDA 협상
협상출범	1986.9월 (우루과이 Punta del Este)	2001.11월 (카타르 도하)
합의추진 과 정	1988.12월 (몬트리올각료회의 결렬) 1990.6월 (1차 초안제시) 1990.12월 (브뤼셀각료회의 결렬) ※브뤼셀각료회의 결렬 이후 던켈총장에게 협상진전을 위한 막후 절충 권한 부여 1991.12월 (던켈총장 초안제시)	2002.3월 (하빈슨의장 초안 제시) 2003.9월 (칸쿤각료회의 결렬) 2004.8월 (세부원칙 기본골격 합의) 2005.12월 (홍콩각료회의 : 시한연장) ※홍콩각료회의 시한내 타결 실패 이후 라미총장에게 협상 진전 역할 부여 2006.7월 (라미총장 협상 일시중단 선언)
미·EU 합의 (블레이하우스합의*)	1993.1월	-
미 행정부 TPA 연장	1993.1월	- (2007.7.1. 미 TPA 만료)
이행계획서 최종제출	1994.3월	-
협상종결	1994.4월 (마라케쉬 각료회의)	-

주) 블레이하우스 합의란 미국과 EU가 백악관 블레이하우스에 모여 농업 국내보조 합의를 도출한 것(블루박스 보조 등 합의)으로 UR 타결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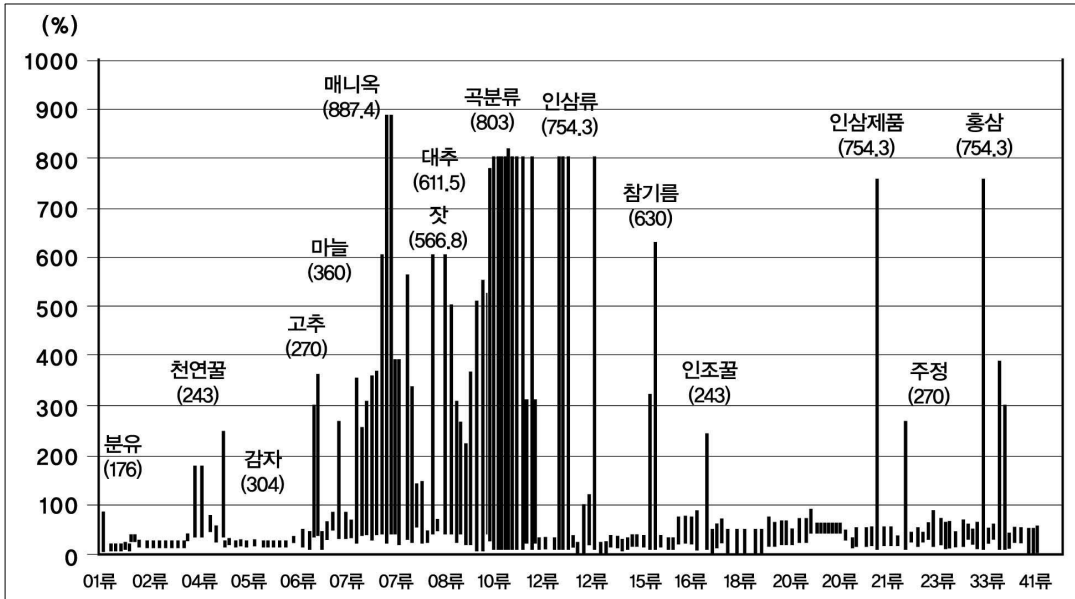
DDA 농업협상 주요국 및 주요그룹 현황

구분	대상 국가	기본입장	비 고
G6	미국, EC, 브라질, 인도(이상 G4국가), 일본, 호주		농업 협상 주요국 그룹
G10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대만,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모리셔스	- 농산물 수입국 입장 대변 ·관세상한 설정 반대 ·관세감축 신축성 주장	수입국 그룹
케언즈 그룹	캐나다,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파키스탄, 페루,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남아공,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 농산물 수출국 입장 대변	수출국 그룹
G20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중국, 칠레, 과테말라, 인도, 멕시코, 파라과이, 필리핀, 남아공, 태국, 쿠바,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이집트,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탄자니아, 우루과이, 짐바브웨	- 개도국 입장 대변 ·선진국의 국내보조 대폭 감축, 수출보 조 철폐 ·개도국 우대 강화	강경 개도국 그룹
G33	한국, 중국, 도미니카,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케냐, 마다가스칼, 모리셔스, 몽골,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니카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필리핀, 세네갈, 스리랑카, 터키, 우간다, 베네수엘라 등	- 개도국 입장 반영 ·특별품목(SP) 및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SSM)에 중점	특별 품목 그룹
G90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Group (ACP),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Africa Union(AU) 국가들로 구성(모리셔스, 남아공, 이집트 등)	-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일부국가 포함	
ACP 그룹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 79개 국가	- 개도국 특혜관세 혜택 유지 주장	

참 고 3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 분포

양 허 세 율 평 균 : 63.2
실 행 세 율 평 균 : 54.2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 구조

양허관세	품목수	품목예시
500%이상	46	매니옥, 곡분류, 참깨, 인삼류, 맥주보리 등
200~499	78	대두, 전분, 고구마, 감자, 마늘, 고추, 밤 등
100~199	18	분유, 감귤, 양파, 보리분, 사료용근채류 등
50~99	189	오렌지, 과일혼합주스, 면류, 당면, 고추장 등
40~49	132	과일류, 쇠고기, 버섯류, 수박, 오이, 당근 등
30~39	147	치즈, 주류, 유제품, 과일음료 등
20~29	249	닭고기, 냉동채소류, 돼지고기, 식용유 등
10~19	381	곡물조제품, 물, 과당, 포도당, 과수요목 등
0.1~9.9	183	섬유원료, 원피, 모피, 밀, 당밀류 등
0	29	종자류, 가축정액 등
미양허	16	쌀 관련 품목
계	1,452	

2 | 농업성장 기반 구축 및 농업인 경영안정

가. 신규 농업인력 확보 및 농업경영체 활성화

(1) 도입 배경 및 의의

우리나라의 농업은 대외적으로 WTO 체제의 출범으로 세계화·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농업도 세계일류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농업·농촌의 여러 구조적인 문제, 농산물 가격 파동, 농촌인구의 노령화 및 부녀화, 유통과정의 문제점 등이 각종 채널을 통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정부는 물론 각종 사회기관, 연구기관에서 강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이 처해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나아가 농산물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급 전문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효율적인 농업경영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핵심적 과제로 대두된다.

고급 전문 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농고, 농대 등 농업계 학교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선진국형 농업인력 전문양성교육기관인 한국농업대학 운영 지원을 하고 있으며, '81년이후 매년 일정 기준에 적합한 청장년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하여 영농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농촌 지도기관, 농과계 대학, 농업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을 추진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지식농업인'을 선발하여 이들의 경영사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함으로써 농업의 활력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업경영체의 활성화는 경영체의 규모화·전문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업분야 창업보육센터 시설비 확장지원, 전문투자조합결성, 농업법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 창업인프라를 정비하여 오고 있다.

농업정책을 세우고 수행함에 있어 정책의 내용(what)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누구인가(who)의 문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가진 정책이라 하더라도 수행하는 주체가 그것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그 정책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농업의 주체가 효율성을 갖추는 일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활력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고 할 것이며 신규농업인력을 확보하고 농업경영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2)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신규농업인력 확보

정부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농업·농촌종합대책을 통해 농업인력육성 대책을 강화해오고 있다. 이는 대내적으로 농업인력의 고령화, 대외적으로 시장개방 확대 등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인력을 성장단계별로 지원하여 전문농업인력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젊은 우수인력의 농촌유입을 위한 신규인력 유입대책 강화, 성장가능성이 높은 농업인 위주의 규모화·전문화 지원 등의 전업농 육성, 전업농 중심의 경영·소득 안정 및 고령농의 안정적 은퇴 지원 등이 그 내용이 된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농업인력의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젊고 능력있는 농업인을 확보하기 위해 '81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일정기준에 적합한 청장년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하여 영농기반 확보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한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81년부터 2006년까지 후계농업경영인 125천여 명을 선정하고 2조 4,37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 후계농업인 1,500명을 선정하여 8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육성대상자는 특·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선정된 자에게 사업계획에 따라 연리 3.0%에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1인당 2천만원~2억원의 사업비가 차등지원된다. 또한 '06년부터 영농경험이 부족한 창업농의 영농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선발 후 교육방식에서 先교육 後선발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07년도 창업농을 선발하여 현재 1,034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05년도부터 농업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 세 가지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① 영농창업에 관심있는 젊은 인력의 현장교육 기회확대를 위하여 44세 미만 영농희망자를 대상으로 선도농가 영농실습교육을 지원하는 농업인턴제, ② 농과대 3~4학년 대상 영농이론·실습·체험등을 지원하는 대학생창업연수 프로그램, ③ 농업에 진입한 젊은 창업농과 선도농가, 전문가가 협약을 맺어 기술·경영자문과 정서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창업농후견인제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2006년부터는 신규인력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후계농 선정후 5년이상 경과자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추가자금을 지원하는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도 도입·시행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활성화

정부는 농업시스템을 선진화 시키기 위해 농업경영체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농업경영체는 크게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이루어지는데, 각 유형별 활성화 대책의 기본 골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업인은 전업농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장치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②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위주의 자본·기술적 협업조직으로서 현대적 경영에 적응하는 경영체로 육성하며, ③ 농업회사법인은 타산업분야의 자본·기술·인력을 참여시켜 기업적 경영을 함으로써 농업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2007년 현재 두 차례에 걸쳐 농업경영체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2004년에 발표된 1차 농업경영체 활성화 대책은 농업경영체를 각 유형별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외부자본이나 인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2006년에 발표한 2차 농업경영체 활성화 대책은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추진되었으며, 법인경영체 경영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정책의 주요내용

예비농업인력 확보

우선, 정부에서는 농업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계 학교의 인력양성 기능을 확충하고 있다. 농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고교생의 선도농가 영농실습을 지원하는 현장체험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2006년부터 매년 10개 농고에 대하여 영농교육비와 체험연수비를 지원(총 9억원)하고 있다. 농과대학에 대해서는 3-4학년 대상으로 1년간 이론, 실습 및 현장체험을 지원하는 대학생창업연수과정을 '05년부터 도입하여 시행중이다. 도입당시 11개대학, 참여 대학생 100명 수준에서, 금년도는 15개 대학, 200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운영중에 있다. 2006년부터는 대학생창업연수과정을 보다 발전시킨 영농창업교육과정(일명 'track제')을 3개 대학에 도입하였는데, 이는 대학생창업연수가 1년과정인데 비해, 영농창업교육과정은 2학년부터 3년간 영농창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영농창업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년도에는 7개 대학에서 530명이 참여하고 있다.

- * 대학생창업연수 : ('05) 104명, 11개 대학, 사업량 3억원 → ('07) 207명, 15개 대학, 6억원
- * 영농창업교육과정 : ('06년) 160명, 3개 대학 → ('07년) 530명, 7개 대학

한편, 창업농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농업전문학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 3월에 종전 ‘학교’에서 한국농업대학으로 명칭을 바꾸고, 학생정원 확대, 심화교육과정 신설 등을 추진중에 있다.

학교 교육과 함께, 영농정착 희망자의 참여 경로별로 다양한 맞춤형 영농 체험교육도 시행중에 있다. 2005년부터 44세 미만자 대상으로, 선도농가에서의 실무연수를 지원하는 농업인턴제를 도입해 매년 100명 수준의 사업량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영농희망 도시민을 위해서 3~6개월간 이론·실습·체험방식의 직업훈련교육과정도 3개 교육기관에서 품목별로 나누어 운영('06년 : 60명 → '07년 : 80)중에 있다.

- * 농업인턴제 사업량 : ('05년) 113명, 월 50만원 지원 → ('07)107명, 60만원 지원
- * 직업훈련교육과정 교육기관(품목과정) : 한국농업전문대학(버섯과정), 천안연암대학(채소과정), 여주농업전문학교(과수과정)

영농창업 지원

영농교육을 이수한 우수한 후계인력을 창업농으로 선발,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매년 1,000명 수준의 35세 미만 창업농을 선정, 3년내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최대 2억원까지 영농정착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하고 있다.

- * 창업농 선정 : ('05년) 1,050명 → ('06년) 1,044 → ('07년) 1,033
- * 지원조건 : 금리 3%, 5년거치 10년상환, 2천만원~2억원 차등지원

특히, 이들 창업농에 대해서는 先교육 後선정 방식을 도입하여 교육평가 결과를 대상자 선정 및 정착자금 지원량 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창업농 교육은 총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5일간 이뤄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기본교육, 전문교육 및 경영기술교육으로 구분되며, 각 교육과정별로 농업연수원, 외부전문기관 및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교육방식은 강의식뿐만 아니라 토론식 수업방식 도입 등을 통해 농업환경 및 농정이해, 경영·자금 운용기법, 재배기술 등의 교육내용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교육이수후 선발된 창업농이 미래농업인력으로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우선, 창업농후견인을 통해 연간 창업농 100명에 대해 경영·기술·정서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정착과정중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우대보증(1억원), 농업종합자금 심사시 가점 등을 통해 창업농의 투자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한편, 35세를 초과한 영농정착 희망자의 경우에도 45세 미만자는 평가를 거쳐 연간 500명의 우수한 자를 선정, 5천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미래농업인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성장단계 규모화·전문화 지원

우수농업인에 대해서는 규모화, 전문화 지원을 통해 전업농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우선 창업농에 대해 5ha까지 경영규모확대가 가능토록 규모화(임차)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후계인력으로 선정후 5년 이상 경과자 대상, 경영역량, 발전가능성, 교육이수실적 등을 평가하여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을 '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조건은 1인당 최고 8천만원까지 이며, 연 금리 3%,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06년에는 지원대상자 1,829명이 선정되어 금년 8월까지 자금대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07년 지원대상자는 현재 지자체에서 최종 결정 단계에 있다.

성장단계 지원사업의 특징은 평균적인 지원이 아니라 발전가능성 높은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규모화와 시설장비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품목별로는 쌀농가에 대해 농지은행, 영농규모화 사업 등을 통해 2~6ha미만 농가에 규모화 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 농지규모화 사업('07년) : 3,400억원, 8,392ha(매매 2,890ha, 임대차 5,452, 교환분합 50)

과수에 대해서는 1회지원으로 1.5ha 이상의 규모로 확대 가능한 농가위주로 규모화를 지원(420ha)하고 있으며,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 과원영농규모화 사업('07년) : 323억원,
*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07년) : 778억원

시설채소, 화훼, 축산 등 시설형 농업은 농업종합자금과 각 기금별 융자 사업을 통해 시설 및 장비 구입을 지원해 사용 연수가 오래된 시설의 보수 및 교체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 농업종합자금(시설, 개보수, 운영자금 등) : ('06년) 8,761억원 → ('07년) 10,261

농업법인 창업지원 및 경영개선

농업분야 기업을 창업하려고 할 때 창업자는 시설 및 장소 확보나 회계, 법률제도 파악 등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농업특화창업보육센터는 이러한 농업 관련기업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 및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지도, 경영·회계·법률자문 등 창업에 관한 각종 지원을 담당한다. 농림부는 기존에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중 농업분야로 특화 또는 병설하고자 하는 센터에 시설확장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창업활성화 및 성공률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보육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농업특화창업보육센터를 각 권역별로 배분하여 지정해 왔다.

농업경영체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법인 내 마케팅이나 회계

분야 등에 있어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농업법인의 경우 이러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면서도 기업의 영세성이나 지리적 접근성 등으로 인해 고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일정한 규모를 가진 농업법인에 전문인력 신규 고용비를 1년간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원 대상 업체는 농림부의 심사를 통해 정해지며, 업체당 1명씩 2년 이상의 의무고용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투자유치 및 자금여건 개선

농업법인은 담보설정이 쉽지 않고 회계투명성도 낮아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농업회계기준을 확립하고 농업법인에 대한 신용평가 모형 개발 등을 통해 농업법인에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청으로부터 농업분야 Inno-biz 기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농신보의 보증한도를 확대(15억→30억)하도록 하였다.

농업경영체에 투자를 확대하고 자금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농림부는 농업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농업전문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농업전문펀드는 기존에 주로 융자방식으로 이루어지던 농업지원을 투자방식으로 바꿈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기업의 체질 개선을 도모하고, 과거실적 위주가 아닌 미래 성장가능성을 중심으로 투자대상 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잠재력 있는 농업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농업경영체의 경우 타 분야에 비해 세부담의 체감정도가 크다는 점을 감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업소득에 한해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으며, 이외에도 농업법인은 부동산 취득세(창업후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2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에 한함)·법인등록세 등에서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등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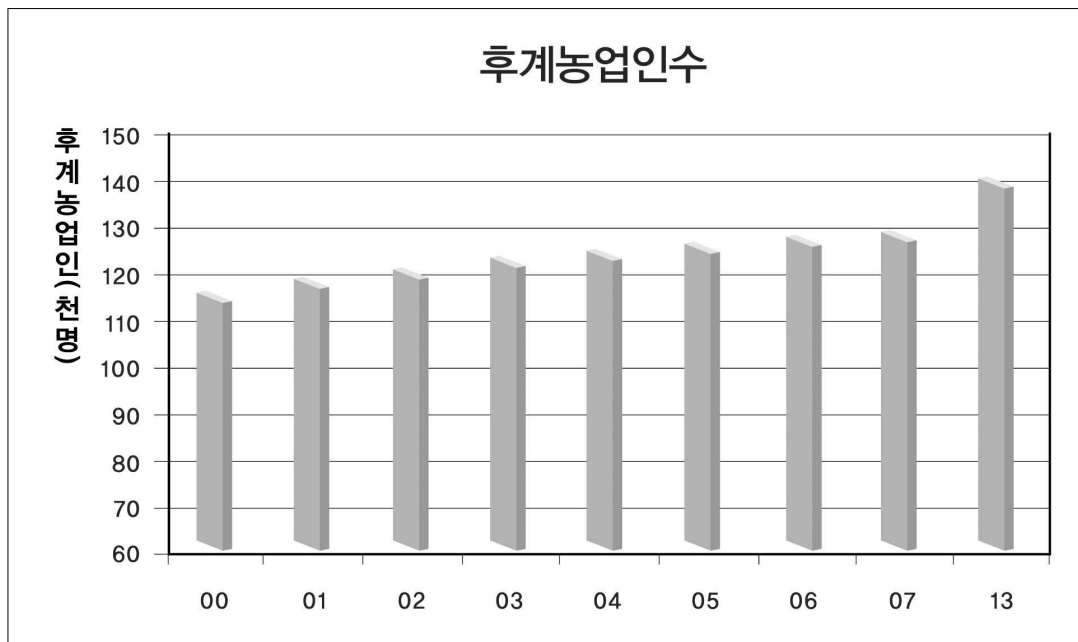
(4) 정책추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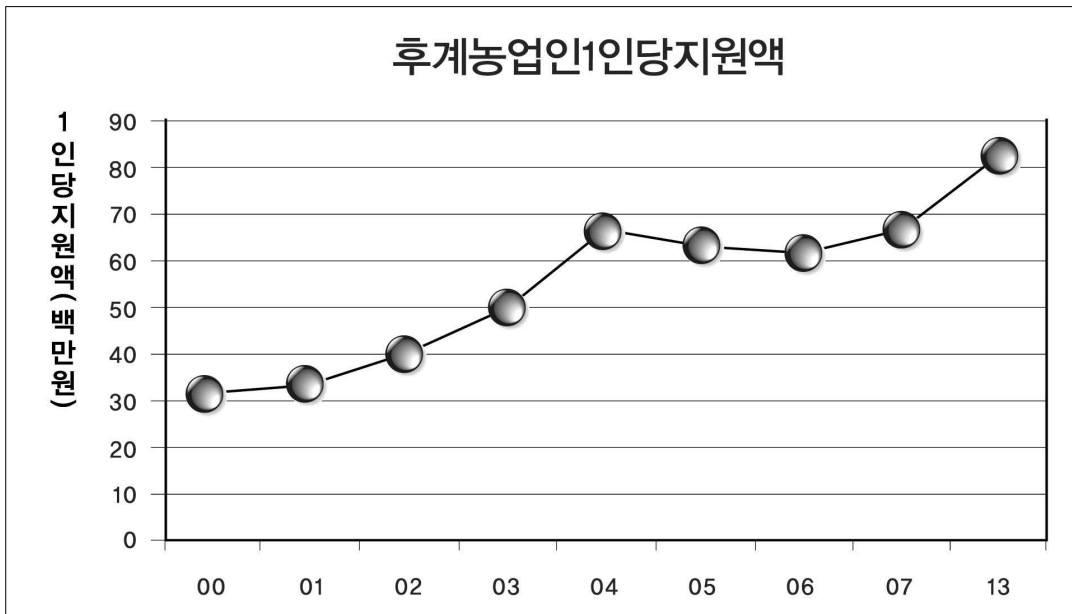
신규농업인력 확보

농고 및 농과대 재학생도 창업연수와 영농정착교육 등(농고생 10개교, 5,365명, 농대생 16개교 362명)을 통하여 다양한 농업경영 성공사례와 현장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도시 출신 영농희망자도 3~6개월간 경영기술교육(직업훈련과정)을 받거나 선도농가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농업경영 현장을 체험 할수 있게 되었다.

우수후계인력은 '06년부터 연 3%금리로 2억원까지 지원 받게 되었으며 '06년부터 창업후 5년이 지난 농업인중 영농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영농확대를 위한 자금을 1인당 8천만원을 추가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07년부터 창업농자금지원 기간이 선발 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어 3년이내 원하는 시기에 나누어 지원받게 되었다.





농업경영체 활성화

농업특화 창업보육센터는 '02년 수도권 (서울대, 한국농업대학, 한국농촌경제연구원), '06년 영·호남권(경상대, 전남대)에 문을 열었으며 평균 16개 보육실이 운영되고 있다. 농림부는 시설확장 지원 뿐만 아니라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함으로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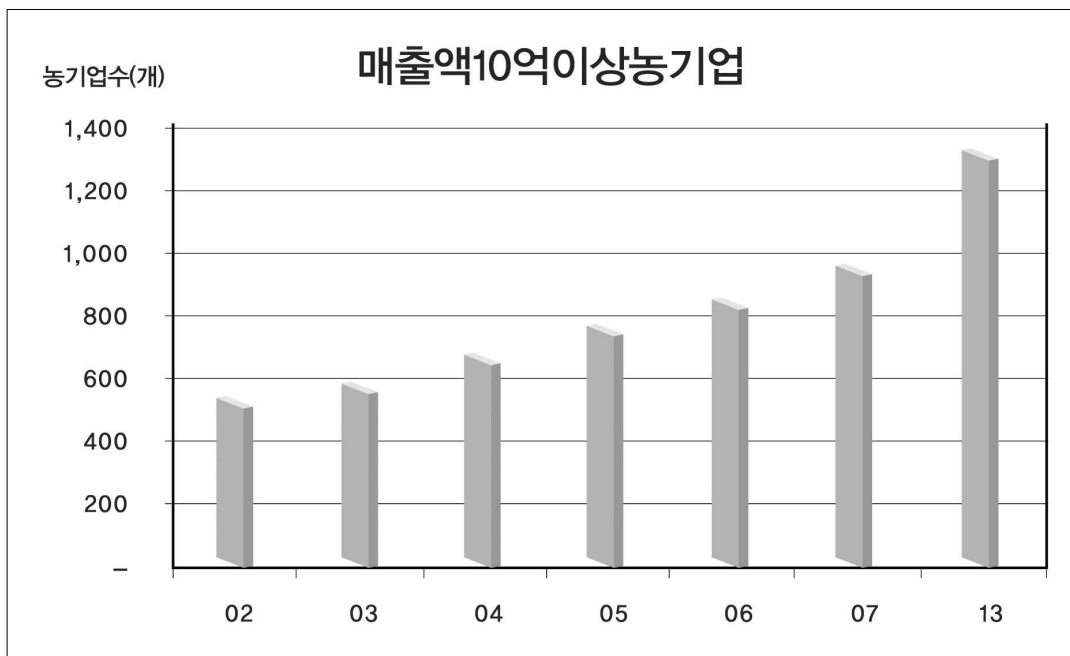
(2007.3월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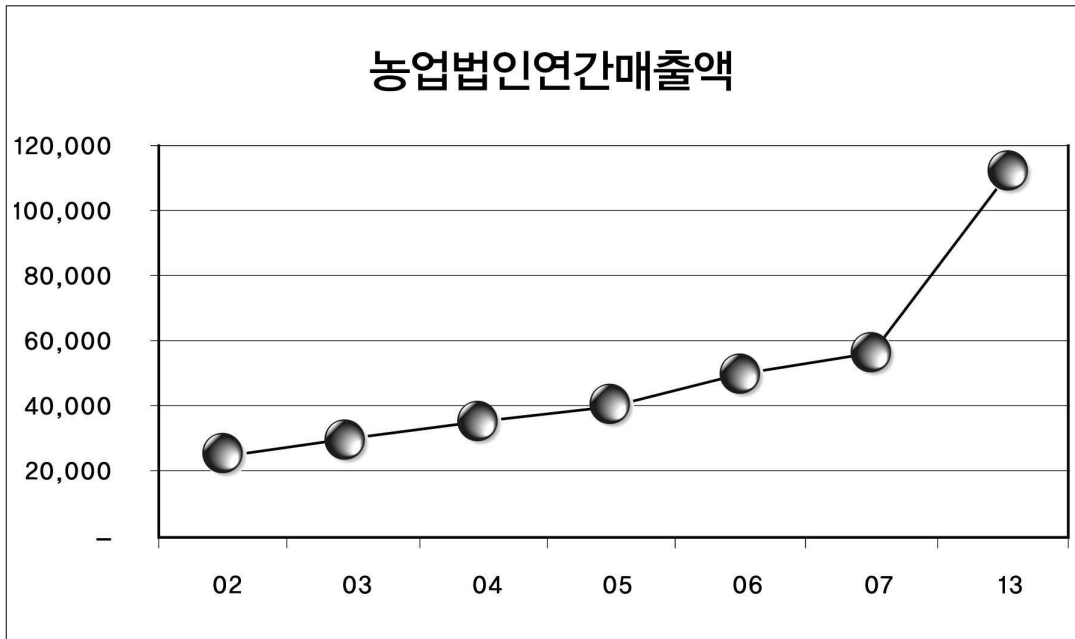
	서울대	한국농업대학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상대학교	전남대학교
개소일자	2001. 8	2002. 10	2002. 2	2006. 6	2007. 1
보육실수	41	15	10	15	16
입주업체	26업체	14업체 (원격보육: 6업체)	9업체	14업체	9업체
보육성과	·평균 보육업체 : 25~26개 ·평균매출액 : 720백만원 ·지적재산등록 : 30건	·평균 보육업체 : 19~22개 ·평균매출액 : 215백만원 ·지적재산등록 : 23건	·평균 보육업체 : 9개 ·평균매출액 : 688백만원 ·지적재산등록 : 18건	·평균 보육업체 : 14개 ·평균매출액 : 71백만원 ·지적재산등록 : 6건	·평균 보육업체 : 9개

농업기업 전문인력 고용지원 사업은 '07년 20개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고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까지 20개 업체의 고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용된 전문인력은 마케팅이나 재무·회계 업무 등에 종사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그동안 미흡했던 농업기업의 마케팅, 재무, 회계 분야 전문성을 보다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전문펀드는 1, 2호 펀드를 '05년, '06년도에 각각 청산하고 현재 3호 조합을 운영중이다. 제2호 농업전문펀드의 경우 3개 업체가 코스닥 등록을 시현했으며 평균 202%의 수익률을 달성한 바 있다. 농업전문펀드는 단순히 농업기업에 투자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가치 향상을 위해 각종 컨설팅 등 경영개선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농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이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이렇게 경쟁력을 확보한 농업경영체가 개방화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5) 향후계획

농업인의 경영상태와 여건에 맞는 농업정책 서비스 제공을 위해,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농가 및 농업법인의 경영품목·경영규모 등의 정보를 등록하여 농가유형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 및 소득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가유형에 따라 경영체를 지원하는 맞춤형 농정의 법적·제도적 틀 마련을 위해 (가칭) 「농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농업인력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인턴제, 영농정착교육과정 등의 예비 농업인력확보 사업을 확대하고, 창업단계 농업인의 투자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현행 3%의 정착자금 융자금리도 점차 낮춰나갈 계획이다.

성장가능성 있는 농가의 경영규모 확대 및 시설장비 현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토지 집약이용형 농업(쌀, 노지채소, 과수 등)은 농지은행 활용과, 영농규모화사업의 농지 임대차를 통한 규모 확대를 적극 추진하

고, 시설형 농업(시설채소, 화훼, 축산 등)은 시설 및 장비구입 자금 지원을 통해 시설의 보수 및 현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특화 창업보육센터를 '07년도 강원·충청·제주지역에 신규로 지정함으로써 권역별 설치를 마무리하고 운영지원에 내실을 기할 계획이며, 농업전문펀드를 '11년까지 1000억 규모로 확대 조성하여 농업기업의 자금 확보 및 체질개선을 도모할 것이다. 또한 전문인력 고용지원 사업도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 농업인 교육 및 컨설팅 확대

(1) 도입 배경 및 의의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고령화 등 인적·질적 저하가 심각하며, 시장 개방확대 등 농업환경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농업의 핵심역량이 노동, 토지, 자본 중심에서 지식, 정보, 창의성 및 문제해결 능력을 지닌 인적 자원 중심으로 변화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전문지식·기술 및 경영혁신 능력을 겸비한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농업교육 추진체계나 프로그램 등은 환경변화나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낙후되어 있으며, 과거 증산과 정부주도 위주의 틀 안에서 큰 변화없이 미세조정만하여 답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며 평균수준의 교육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농업인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였고, 체계적인 교육지원시스템 및 교육인프라 구축도 미흡하였다.

따라서, 농업 및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주도할 경쟁력 있는 농업인력을 양

성하기 위해, 현재 농업인에 대한 교육현상 및 농업인 교육기관에 대한 진단을 통해 교육훈련 체계 혁신을 위한 방안 마련과 체계적인 교육지원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가장핵심이 되는 농업인력의 경쟁력을 체계적인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통해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의 우리나라 농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있어서 가장핵심이기 때문이다.

(2)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참여정부의 혁신은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것을 두배로 늘리는 것으로 농업강국으로 가기 위하여 농업경쟁력이 핵심이 되는 지식과 정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중요하며, 기존의 농업교육에 대한 양적 팽창에서 질적 혁신으로 도약 할 때이다.

농업교육혁신은 농업의 체격과 체력을 키우고 체질을 개선하는 성장동력이며, 정직한 흙의 가치, 진정한 땀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배워서 돈이 되는 교육을 통하여 농업인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시발점이다.

지금까지 농업교육은 미래비전과 그 비전을 실현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고, 시대의 물음에 답하지 못하는 등 과거 답습과 정체를 되풀이 해왔다.

이에 따라 농업계와의 12차례 간담회와 농림부 내부 6차례 정책회의, 농림부·교육부·농고교사 등으로 구성된 농고현장체험교육T/F를 구성 8차례 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모으고, '05년 7월부터 12월 5개월동안 「수요자 맞춤형 농업교육프로그램 모델」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06년 1월에 농업교육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농업교육체계 개편 추진경과

일시	주요 추진내용
2005. 5.	○ 농협교육혁신단, 농촌진흥청과 역할분담 논의
2005. 5	○ 품목교육 강화방안에 대한 품목과장 회의
2005. 5	○ 실장주재 정책조정실무협의회 - 교육수요 파악을 통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유통·마케팅 부문 추가 교육내용 확대 등
2005. 5	○ 차관주재 정책조정심의회
2005. 6	○ 전국농학계대학장 간담회 개최
2005. 6	○ 29개 품목단체 교육담당자 및 품목과 간담회
2005. 7	○ 전국농업계고교장, 교육부, 시·도교육청 관계자회의
2005. 7	○ 8개 농업인단체 교육담당자 간담회
2005. 7	○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모델 및 평가지표 용역 추진
2005. 8	○ 농고 현장체험교육 지원방안 구체화를 위한 T/F구성
2005. 10	○ 29개 품목단체 교육담당자 워크샵
2005. 10	○ 8개 농업인단체 교육담당자 워크샵
2005. 10	○ 창업Track제 시범대학 워크샵
2005. 11	○ 지자체, 대학, 농진청 등 지역특성화교육 워크샵

농업교육체계 개편방안을 보면, 민간주도 맞춤형 전문교육방식으로 전환하고, 젊고 유능한 후계인력 발굴과 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배워서 돈되는 교육으로 농촌에 희망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교육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론과 현장 동시 접목, 신기술 도입 스피드화 등 글로벌 교육모델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품질혁신, 시장확대, 생산비절감, 안전성 확보 등에 교육 초점을 두어 배워서 돈되는 현장교육 기회 제공으로 신규인력 유입대책 유입을 촉진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정책의 주요 내용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신지식·기술·경영능력 중심의 전문교육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및 농업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젊고 유능한 농업경영인 육성 등을 위하여 농업교육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교육의 목표는 민간주도의 현장위주 맞춤형 전문교육 방식으로 전환하여 농업인이 고소득을 올리는 「배워서 돈되는 전문교육 기회 제공」으로 농업시장의 개방 확대와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욕구 등에 대응하여 농업인이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고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주고자 함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담당했던 각종 농업인 교육을 생산자단체 등 민간이 주도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교육내용도 일반적이며 평균적인 교육에서 중농 이상 규모화된 농가를 대상으로 한 현장위주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2006년부터 자조금이 조성된 품목(18개)과 자조금이 조성되지 않았으나 기 지원품목(6개)에 대해 품종선택에서 유통·마케팅, 이론/실습/해외연수까지 전 과정을 일괄 Package 형태로 수요자 중심의 품목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품목 단체가 아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한 8개 일반 농업인 단체에 대해서는 기존 회원관리 위주에서 마케팅이나 자금 활용 등 농업인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경영기법, 농업인 성공사례 등 경영·리더쉽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농협·대학·농업인단체·지역농업클러스터 등이 연계하여 지역농업교육협력체를 구성하고,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하여 지역 특화 품목에 대한 기술연구에서부터 교육·지도까지 농업인의 요구가 반영되고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인 조직화를 통한 계약재배 확대, 품종통일, 재배방법 통일

등으로 우수한 공동 브랜드나 통합 브랜드를 적극 확산시켜 나가도록 브랜드 조직화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농업의 활력을 높이고 우수한 젊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후계 농업경영인 선정방식을 선 선발 후교육에서 선교육 후선발 체계로 변경하였다.

셋째, 미래 농업에 대한 비전을 갖고, 농업환경에 부합하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잠재적인 신규 영농인력 양성을 위해 농과대에 영농정착교육과정을, 농고에 현장체험교육과정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지원하고 있다.

영농정착교육과정은 농학계대학의 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하여 농대 2학년 부터 3년간 창업희망학생에게 현장과 연계한 교육과정으로 강원대, 공주대, 제주대에서 시범 실시한 후 평가를 거쳐 2007년에는 전남대, 전북대, 진주 산업대, 경상대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농고의 현장체험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농업·농촌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농업응용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가와 학교간 협력을 통해 현장 견학·체험·실습, 농업인 성공사례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10개 농고에서 2006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넷째, 귀농자 등 비농업계 인력의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과정도 새로이 도입하였다. 만 45세 미만의 신규 영농정착 희망자를 대상으로 품목 특성에 따라 3~6개월의 단기 과정을 신설하여 농업이론과 실습, 영농설계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섯째, 이러한 교육체계 개편과 함께 교육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나가고 있다. 농업인, 대학교수, 현장전문가 등 전문가 및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시설과 교육기관 풀을 구성하여 농업인 전문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업교육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업교육과

컨설팅, 지도사업 등을 총괄·조정토록 해 나가고, 각 교육기관의 정보를 상호 연계해서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도록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도 구축하였다.

돈이 되는 농업교육을 실현하고 농업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2005년 35억원 수준이었던 농업인 교육 예산을 2006년 122억원, 2007년 130억으로 대폭 확대하여 농업교육체계 개편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양질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사업비 지원한도를 농업인 1천만원, 법인 2천만원에서 농업인 15백만원, 법인 30백만원으로 높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대상도 원예·특작, 축산분야 경영체, 국산농산물을 이용하는 농산물 가공업체에서 RPC(미곡종합처리장)·APC(산지유통센터)·쌀 전업농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농업인 자부담율을 50%에서 30%로 축소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였고, 컨설팅업체의 전문화·규모화를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다

(4) 정책 추진 성과

'06년 농업교육체계 개편방안에 따라서 배워서 돈되는 농업인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농업인단체 중심의 고품질 품목기술·경영·리더쉽교육이 확대되고 지역농업교육협력체를 구성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 체계가 확립되었으며, 농업교육정책 조정 및 농업교육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농업인단체 등의 교육 참여 확대로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교육 추진 여건 마련되었으며, 문제해결형 기술 습득, 농업금융 활용방법, 맞춤형 사업계획 수립교육 등 현장에서 필요한 고품질 교육내용 및 모델 시도되었고, 현장 교육수요가 교육과정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또한, 교육전문기관의 노하우와 교육기법을 접목하여 교육성과를 높였으

며, 관광 성격이 짙었던 해외연수를 전문연수기관이 계획 수립·사전교육·현지진행까지 일괄추진하는 체계로 개선하였다. 기업가 출신 컨설턴트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 대기업 연수기관과 제휴하여 기업 CEO 리더십 교육 등도 시도되었다.

그동안 정보교류가 거의 없었던 지역교육기관(농협·대학·농촌지도조직 등)간 지역농업교육협력체가 구성되고, 지역단위 교육 목표의 공동 설정 및 기획 기능 수행으로 중복교육이 감소하였다.

또한, 농고·농대 등 학교교육을 농업인력 육성방향에 맞추어 체계화하였으며 선도농가와 연계 등 현장 중심 실습교육 여건을 강화하여 창업농 선정시 우대가점 부여 등 정책과의 연계 강화하였다

농업인에서 소비자·귀농 희망자 등으로 농업교육정책의 대상을 확대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건전한 농식품 소비문화를 확산하고, 도시 출신 창업희망자 대상 체계적인 농업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또한,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AgriEdu.net)을 구축, 각 교육기관의 교육정보 통합 및 맞춤형 농업교육 운영 인프라를 구축하여 농업인단체 등 교육기관이 교육수요조사·기획부터 자체평가까지 동 시스템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5) 향후 추진계획

맞춤형 농정과 연계하여 농업인 수준별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품목별 신기술 보급, 농가 경영능력 제고, 농업인조직화·브랜드화 등 교육목표를 구체화하여 농업소득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육의 품질 향상 및 돈 되는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전 수요조사를 통해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반영할 예정이다.

수요자 중심 농업교육 추진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농업인단체·지자체

의 교육운영 역량 확충하고 지역농업교육협력체의 교육기관 및 생산자단체 참여확대 및 조정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전략과 연계된 학습목표 및 학습전략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학습실행 체계 프로그램 개발 등 학습체계(Learning System) 구축하고, Global Standard형 농업경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리미엄급 농업경영전문가 과정(MBA과정) 도입('08년)한다.

경영수준별 선택이 가능한 「교육과정등급분류제」를 실시('08년)하여 창업-성장-전업농-기업농단계별 「필수교육과정 Map」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이수실적과 연계한 농업경영기능사 → 농업경영사 2급 → 농업경영사 1급 → 농업경영기술사 등 농업인 자격제도를 도입('09년)하여, 교육과정등급분류제와 연계할 예정이다.

향후, 농업교육 우수기관 인증제도 도입('10년)하여 대학, 농업인·품목단체, 기술센터 등 농업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마크 부여할 계획이다.

다. 직접지불제 확충

(1) 도입배경 및 의의

IMF 이후 도시와 농촌가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늘어나는 농가부채로 인한 농업인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부채문제의 심화를 막고 농가소득 불안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전업화된 기업농이 증가하면서 빈발하는 기상재해 등으로 농가소득 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업농의 경영불안을 완화 내지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개방확대 등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접근이 고려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보조금 정책이 단편적이거나 생계 지원식의 소득안정 지원시책이나 WTO 체제 하에서 제한되는 가격지지 정책에 의존

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게 되었다.

자연재해나 가격불안 등 농업위험을 완화·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도입하고 기존 시책은 내실화 하는 다양한 소득 안정장치의 마련이 본격화 됨에 따라 명실공히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농정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 정책입안 과정 및 주요내용

시장개방 진전으로 농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직접지불제가 농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1970년대에 유럽에서 태동한 직접지불제는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었다. 직접지불제가 확대되는 배경에는 WTO 체제에서 농정의 국제적인 규율이나 국내 농업문제 등을 고려하는 경우 정부개입 방식이 가격지지에서 소득지지 등 직접지불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1997년부터 취약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농규모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령농의 조기은퇴를 유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지원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하였다.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경영은퇴를 조건으로 전업농에게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ha당 258만원을 지급하였다. 2004년에는 대상연령을 63세로 하향조정하고, 매도의 경우 종래 한번만 지급하던 금액(289만원)을 70세까지 최장 8년간 지급하도록 직불금을 대폭 인상하였다.

1999년에는 환경보전 및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 증대를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도입하였다. 친환경인증농산물(유기·전환기유기·무농약·저농약)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인증단계별로 추가발생하는 비용만큼 차등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급하고 있다. 2006년에는 2만 7천ha에 114억원을 지원하였다.

농가의 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논농업의 소득안정을 위해 두 가지 직불제를 도입하고 개편하여 왔다. 2001년 논농업 실경작자에게 논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여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전에 기여한 경우 직불금(진흥지역 532천원/ha, 비진흥지역 432)을 지급하는 ‘논농업직불제’를 도입하였다. 2002년에는 쌀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준가격대비 당해연도 쌀값하락의 80%를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였다. 2005년에는 DDA/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쌀생산농가의 경영안정을 강화하고자 양 제도를 고정직불(논농업직불제)와 변동직불로 개편하여 ‘쌀소득보전직불제’로 통합하고,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쌀값의 차액의 85%을 보전하여 지원 수준을 확충하였다.

2004년에는 영농조건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산간지역에 대해 불리한 생산조건지원 및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해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도입하였다. 경지 경사도 14% 이상 지역의 밭(40만원/ha)과 과수원·초지(20만원/ha)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며, 해당 마을은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직불금을 재원으로 한 마을공동기금 설치, 농지관리·농촌경관조성 등 일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3년간의 시범사업(‘04 ~ ’06년)을 거쳐 2006년부터 본사업에 들어가 전국 119천ha에 332억원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축산분뇨로 인한 토양·수질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2004년에 친환경축산직불제를 도입하였다. 가축의 사육밀도를 낮추거나 분뇨발생량을 줄이고 조사료포를 확보하여 분뇨를 사료포에 환원하는 경우 농가별로 1,300만원을 지급하고, 축사 주변에 조정수를 식재관리하는 경우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시범사업 중인 2006년에는 900농가에 58억원을 지원하였다.

2005년에는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여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경관보전직불제를 도입하였다. 지자체(시·군)

와 마을간 협약을 체결하고 경관작물(유채, 해바라기, 메밀 등)을 식재관리 하는 경우에 ha당 1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006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전국 470ha에 6억원을 지원하였다.

직접지불제 전개과정과 내용

구 분	도입	목 적	지급 요건
①경영이양	1997	○경영규모 확대 ○은퇴농업인 소득안정	농지매도, 또는 5년이상 임대
②친환경농업	1999	○환경보전	친환경농산물에 관한 인증기준 준수
③논농업	2001	○소득보전	논의 형상 유지
④쌀소득보전	2002	○경영안정	가입계약, 부담금 납부
⑤쌀생산조정	2003	○쌀수급균형 ○쌀재협상시 입지강화	약정체결시 3년간 벼, 상업적 작물 비재배
⑥친환경축산	2004	○지속가능 축산기반 구축 ○안전한 축산물 생산	프로그램 이행 발생분뇨 환원
⑦조건불리지역	2004	○다원적 기능유지 ○지역사회 유지	마을협약 체결 마을공동기금 조성
⑧경관보전	2005	○농촌경관 유지 ○농촌지역 활성화	경관보전계획 수립 협약체결 및 준수
⑨쌀소득보전 ③, ④ 통합	2005	○쌀농가 경영안정	논의 형상유지

자료: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과

(3) 정책추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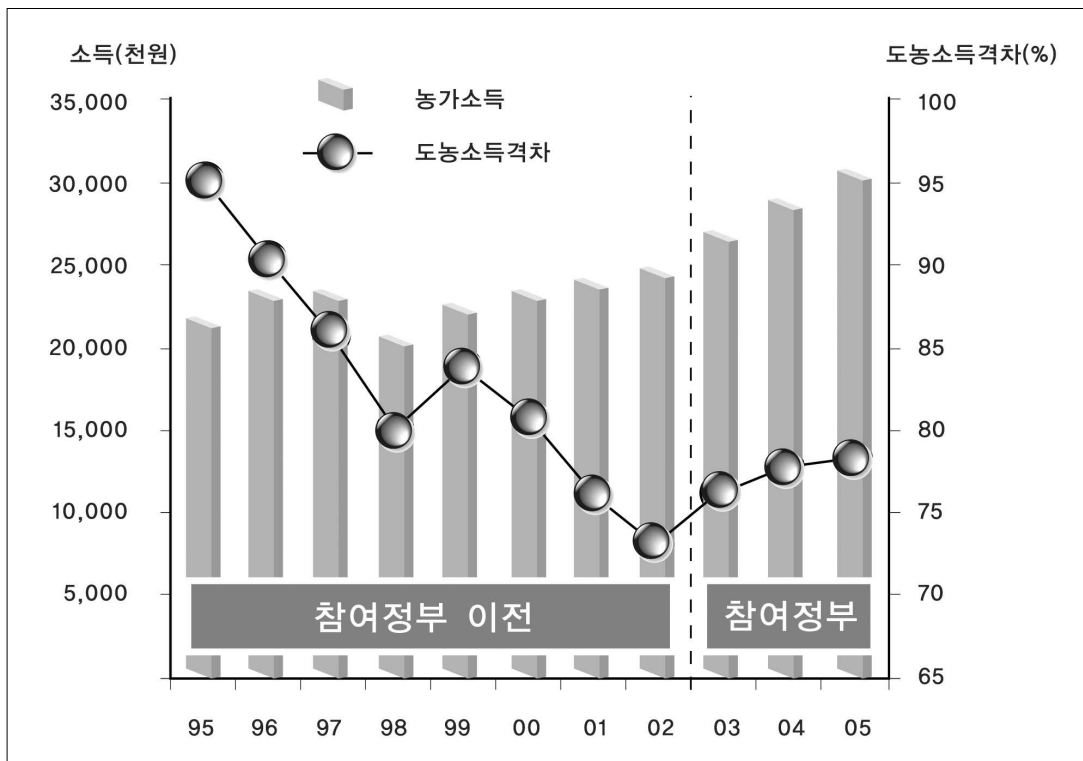
개방확대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는 가격지지 정책 대신 직불제, 재해보험, 경영회생지원 등 다양한 경영안정장치의 도입을 확대하였다. 그중에서도 쌀소득보전직불 등 직불제의 확충으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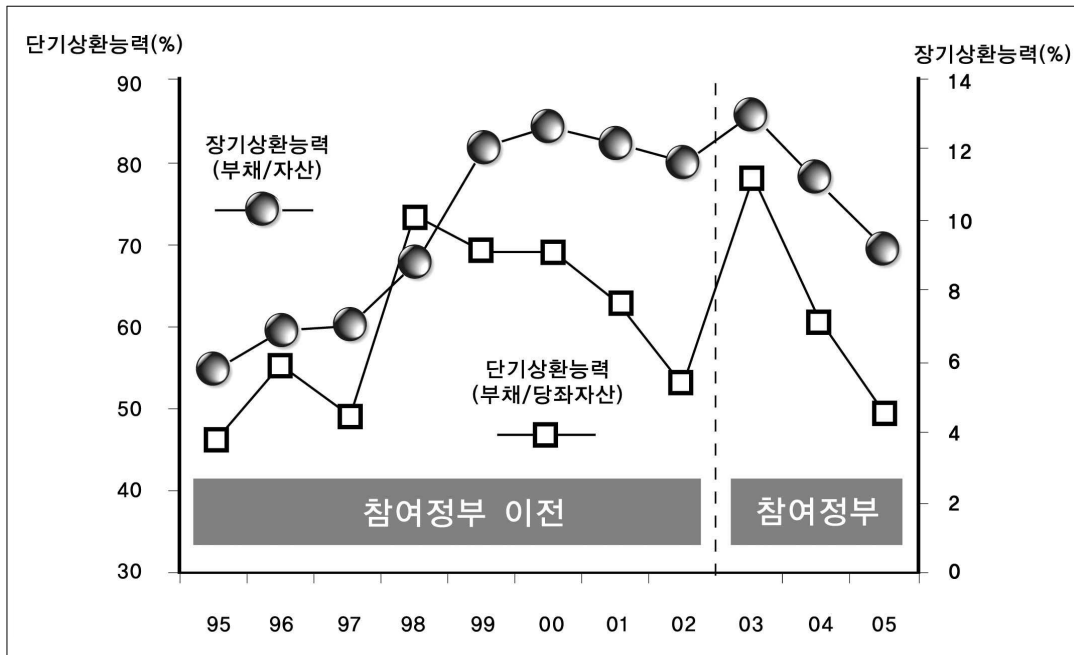
2002년에 73%였던 도농간 소득 격차가 2005년 78%로 회복하였는데, 이는 농업소득 정체에도 불구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도입 등 직불예산 확대로 농가소득은 2003년부터 연평균 6.5%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 * 농가소득 : ('02) 24,475천원 → ('03) 26,878 → ('05) 30,503
- * 농업예산 중 직불예산 비중 : ('02) 6.5% → ('03) 9.8 → ('05) 23.6

2003년 이후 부채/자산비율인 장기상환능력 및 부채/당좌 자산 비율인 단기상환능력이 모두 호전되었다.

- * 장기상환능력 : ('03) 13% → ('05) 9.1
- * 단기상환능력 : ('03) 78.4% → ('05) 50.1





(4) 향후 계획

앞으로 DDA/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가유형별 맞춤형농정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직불제를 농가유형별 경영여건과 목적에 따라 농가소득안정형, 구조조정형, 공익기능 제고형으로 체계화하여 단계적으로 지원규모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는 논농업·쌀중심의 쌀소득보전직불제에서 밭농업, 과수, 축산분야를 포괄하는 직불제로 확대 개편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강화할 것이다. 구조조정을 위한 직불제는 경영이양직불제를 대상연령, 대상농지 등을 확대하고 연금식 분할지급방식으로 지급단가도 인상하여 ‘경영이양직불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한 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관련 직불제를 ‘(가칭)지속가능농업환경직불제’로 통합하고 하위 메뉴로 제시하여 직불제간 연계성을 높이고, 새로운 하위메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프로그램을 풍부하게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6년에 중장기 직불제 확충계획을 마련하여 2007년에 농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후 세부추진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2008년 이후 단계적으로 개편에 착수하여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2015년까지 농가소득의 10%를 직불제를 통해 보전하고 투융자 비중을 농림재정의 24% 수준으로 유지해 나간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법령정비, 조직개편 등 관련제도도 충실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라. 농작물 재해보험 및 재해복구 지원

(1) 도입 배경 및 의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험원리를 이용 실손 보상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하였다.

그간 농작물재해보험은 제도 도입이후 거대태풍 ‘루사’·‘매미’ 등으로 32천여 농가에 1,446억원의 보험금을 지원하는 등 농가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최근 잦아지는 자연재해 피해와 WTO 등 농업개방화에 대비한 농가의 경영안정 수단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2011년까지 식량작물, 채소작물 등을 포함한 30여개 품목으로 확대 할 계획에 있다.

아울러, 농업재해지원제도는 농업재해의 예방과 사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67년부터 도입하였으며, 참여정부 출범시('03. 2월)에는 주로 소규모 농업시설, 영세농 위주로 지원하였고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별로 지원하였으나, 전업화·규모화된 농가에 대한 지원 등 지원대상의 확대와 재해복구비 일괄지원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을 위하여 1999년 9월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60%가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해보험 도입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2000년 3월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1년 3월 1일 농작물재해보험법을 제정·공포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사과·배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뽕은감 등 7개 과수로 대상품목을 확대하였으며, 농업인의 실질적인 보험혜택 증대를 위해 자연재해 범위에 호우를 추가하고(2002년), 보험료 할증·할인제도 도입, 보험료환급제도 도입, 과수보상특약 신설, 태풍기준을 기상청 발령 태풍주의보로 완화(이상 2003년)하였으며, 가을동상해 보험가입기간연장, 단감 낙엽피해 인정기간 연장(2005년) 등 많은 부분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특히, 2002년 태풍 ‘루사’ 피해로 큰 손실을 입은 민영보험사가 2003년부터 사업에 철수하고, 보험사업자인 농협 또한 2003년 발생한 태풍 ‘매미’ 피해로 큰 손실을 입게 되자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등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안정기반이 크게 약화되어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였다.

이에 2004년도에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보험개발원·민영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2005년부터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재보험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한 기금 신설 및 민영보험사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위한 보험요율 현실화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법(2005.1.27), 동법시행령(2005.5.13), 손해평가요령(2005.5.24) 및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운용규정

(2005.6.4)을 제·개정하였다. 그 결과 2003년 재보험사업에서 철수하였던 삼성·현대·동부 등 민영보험사가 2005년부터 재보험사업에 재참여하는 등 사업안정 기반을 크게 강화하였다.

<p>* 국가재보험제도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대재해(손해율180%초과손해) : 국가가 전액부담 - 통상재해(손해율180%이하손해) : 농협 등 민영보험사 부담
--

최근 기상이변 현상으로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시 위험 안정 장치로서의 농작물재해보험의 필요성 및 농업인 등의 보험품목확대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운영비 국고지원을 2001년 50%에서 지속 확대하여 2005년부터 100%로 전액지원하고, 보험료에 있어서도 50% 국고지원 외에 별도로 보험요율 현실화에 따라 인상된 보험료 중 농가부담보험료의 일부를 4년간 추가지원('05년-11.2%, '06년-8.4%)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보험확대를 위해 농림부, 농업인, 품목별전문가, 보험전문가, 보험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품목개발추진단'을 2006년4월부터 구성·운영하였다. 품목개발추진단에서는 2006년부터 '논벼(수도)'의 보험화를 위한 기초통계자료의 수집과 보험화 가능성 타진을 위해 철원, 평택 등 전국 주산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상연습을 시작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전 농작물을 대상으로 보험가능 여부 및 품목별 보험도입 우선순위를 선정 작업을 실시하여 2007년 밤·참다래·자두 등 3품목, 2008년부터는 식량작물, 채소작물, 특용작물 등 매년 5 품목씩 추가하여 2011년까지 30여개 작물로 보험확대 계획을 마련하고, 2007년부터는 선정한 대상품목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조사 및 상품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재해지원제도는 자연재해를 총괄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유재산 피해지원제도개선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06. 1. 1)함에 따라

우리부도 농업재해 피해조사보고 요령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개정('06. 7. 7)하여 농업재해 지원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피해농가의 원활한 복구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3) 정책의 주요내용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대상재해의 확대

2001년 사과·배 2개 품목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2년에는 복숭아·포도·단감·감귤 등 4개 품목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참여정부 시작년도인 2003년에는 사과·배에 대해 전국적인 본사업으로 확대하고, 2004년에는 복숭아·포도·단감·감귤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본사업을 시작하였다. 2006년에 대상품목 확대의 일환으로 뽕·감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농림부, 농업인, 보험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품목개발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본격적인 대상품목 확대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2007년도엔 밤·참다래·자두 3개 품목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2008년부터는 현재 과수 품목에 제한된 대상품목을 식량작물·채소작물·특용작물 등으로 매년 5개 품목씩 보험대상을 확대하여 2011년까지 30여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태풍·우박·동상해·호우에 제한된 대상재해에 대해서도 대상작물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재해 또는 모든 자연재해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실질적인 재해피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우리부는 이러한 일환으로 2007년 시범사업 도입 품목인 밤·참다래·자두에 대해 전위험보장상품으로 보험개발 중에 있으며, 논벼(수도작)에 대해서도 전위험 보장상품으로 도상연습 중에 있다.

국가재보험제도 운영 및 재보험기금 확충

2005년부터 보험사업자의 경영위험을 국가재보험제도를 통해 덜어줌으로써 2003년 재보험사업에서 철수하였던 민영보험사들의 재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기반 마련을 하였다.

국가재보험제도는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 180% 이상의 손해를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보험사업자의 경영위험을 줄여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지속운영을 가능케 하였으며, 대상품목 및 대상재해 확대에 보험사업자 등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하였다.

농림부는 국가재보험제도가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안정 기반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 대한 국가재보험 보장수준 확대 등 국가재보험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거대재해시 일시적인 국가재보험금 재정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자산운용의 다양화 등 국가재보험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재보험기금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2006년 12월 현재 국가재보험기금 적립액 : 435억원

농가부담완화를 위한 보험료 및 운영비 지원 지속

우리부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영업보험료(보험료 및 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지속 확대하였다. 참여정부 이전인 2002년 농가부담 영업보험료 부담률이 41%인 것을 2007년에는 34%로 크게 완화하였다.

또한, 시군별 보험요율 산정, 계약자별 할인·할증율 개선, 보험가입금액 감액 및 농가보험료 환급제도 등을 통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등을 줌으로써 피해가 없는 농가지역의 보험가입을 쉽게 하였다.

* 농가 보험료 부담율 : ('02) 41% → ('04) 38 → ('06) 31 → ('07) 34

보험상품 개선·지속적인 홍보 강화를 통한 보험가입률 제고

현행 보험상품은 태풍·우박 등으로 인한 낙과 및 착과불량 피해를 주로

보상함으로 사과배 등 낙과가 많은 품목에 유리하고, 태풍·우박·동상해 등이 자주 발생하는 남부지방 및 산간지방에 보험가입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전국적인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상품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사업초기인 관계로 보험제도를 재해지원과 같은 무상지원제도로 오해하거나,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보험의 효용성에 대해 낮게 인식하는 농업인이 일부 있어, 우리부는 매년 지속적인 보험상품개선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상품목 및 대상재해 확대와 더불어 품목별·지역별 실정에 맞는 보험상품 개발과 농가설명회 등 홍보 강화로 농업인의 보험가입률의 제고하여 자연재해시 경영안정 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해지원제도

재해지원제도의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농가별 총 피해사항을 통합·등급화하여 재난지원금으로 일괄 지원하고, 허위·과다신고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원수준의 상한선을 설정하였으며, 농경지와 농업시설물의 지원대상 기준을 대·소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토록 규정하여 재해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였으며 참여정부 출범이후('03~'07) 재해복구비 지원기준 단가 114개 종목을 인상하고 25개 종목을 신설하였다.

- * 가구당 재난지원금 상한선 : ('06) 3억원, ('07~'09) 2억원, ('10~) 5천만원
- * 농업시설복구비 : 축사 1,800㎡, 계사 2,700㎡, 농경지 3ha미만 → 규모제한 폐지
- * 생계지원, 영농자금 이자감면 등 간접지원 : 5ha미만 농가 → 규모제한 폐지

한편, 사유시설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복구와 조기 영농재개를 위하여 복구이전에 재난지원금을 100% 선지급 하도록 하였으며,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는 농업인의 농업시설 및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재해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복구지원융자금도 '02년 4%에서

'06년 1.5%로 인하하였다.

* 지원대상 재해범위 : ('02) 폭설·가뭄·지진 → ('06년 이후) 서리·우박·
강풍 추가

(4) 정책추진 성과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사업시작 이후 2006년까지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루사('02)' 및 '매미('03)'등으로 약 3만 2천여 농가에 1,446여 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농작물재해보험의 사업안정기반 확충을 위해 2004년 제도개선 T/F를 거쳐 2005년 국가재보험제도 및 재보험기금을 우리나라 최초로 설치·운영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속성장과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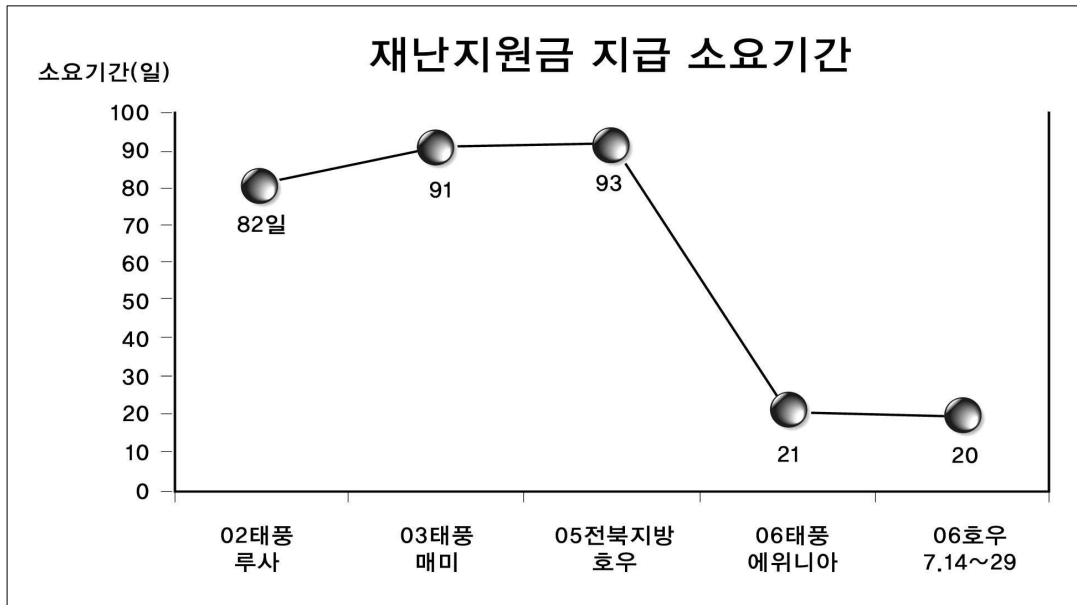
아울러, 농가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 지원을 지속 확대하였으며, 대상품목 및 대상재해의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상품개선으로 농업인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하도록 보험제도 개선하였다. 이러한 결과 참여정부가 전인 2002년도 18,549농가, 가입면적 10,994ha, 가입율 18.3%에 머물렀던 보험실적이 참여정부 이후인 2006년엔 27,419농가, 가입면적 21,466ha, 가입율 24.5%로 매년 1.6%의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재해지원제도는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그 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업화·규모화된 농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으로써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였으며, '02년에는 생계지원, 농작물, 가축, 축사 등의 복구비를 종류별로 지원하였으나, '06년부터 농가별 총 피해 상황을 합산·등급화하여 일괄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피해농가의 영농재개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였다.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대상품목		사과·배	사과·배 ·복숭아 ·포도· 단감·감 귤	좌동	좌동	좌동	사과·배· 복숭아·포 도·단감· 감·귤·뽕은 감
가입 실적	가입농가(호)	8,055	18,549	16,481	23,926	26,335	27,419
	가입면적(ha)	4,096	10,994	11,001	17,546	20,301	21,466
	가입률(%)	17.5	18.3	15.2	18.2	23.4	24.5
지원율 및 지원액	순보험료(%)	30	50	50	50	61.2	58.4
	운영비(%)	50	70	80	90	100	100
	국고지원액	2,183	8,590	16,224	37,803	49,371	50,131
지급 보험금	지급농가(호)	407	6,913	10,134	3,177	5,877	5,171
	보험금	1,379	34,709	50,018	13,599	23,871	21,112
	손해율(%)	45.7	433.4	290.8	42.3	43.5	36.6

* 재난지원금 지급소요기간 : ('02) 태풍 루사 91일 → ('06) '06태풍·호우 20~21일

또한 '02년에는 재해복구 정도에 따라 재해복구비를 지원하였으나, '06년부터 지자체가 확보하고 있는 예비비로 복구이전에 미리 지원하고 복구지원 용자금 금리도 '02년 4%에서 '06년 1.5%로 인하하였으며 '02년 이후 139개 종목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인상·신설하여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였다.



(5) 향후 계획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의 실질적인 보험혜택 증대를 위해 현행 과수 7개 품목에 제한되어 있는 대상품목을 '07년 3품목, '08년부터는 매년 5품목씩 추가하여 2011년까지 식량작물·채소작물·특용작물 등 30여개 작물로 대상을 확대 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태풍·우박 등 특정재해에 제한된 대상재해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가능한 모든 위험 또는 작물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보험상품으로 개발 할 계획이다. 이러한 일환으로 2007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예정인 '밤·참다래·자두'의 경우 가능한 모든 위험(All-Risks)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보험 개발 중이며, 2006년부터 시행중인 논벼의 도상연습에 대해서도 2007년부터는 All-Risks형태로 전환하여 연습중에 있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은 중장기적으로 가축, 농업시설 등으로 보험대상을 확대하여 농업전반의 자연재해 위험을 보상하는 종합적인 위험관리시스템으로 발전하여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재해피해지원은 실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재해구호 및 생

계안정을 위한 구호적 차원의 지원으로 농업인에게는 만족한 수준이 아니므로, 농업재해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지원체제에서 재해보험으로 전환하여 확대 추진하는 한편, 재해보험전환 이전 까지는 타 분야와 형평성을 유지하여 실질적인 경영안정도모를 위한 재해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마. 농업경영회생지원제도

(1) 도입 배경 및 의의

농업경영회생지원제도를 통해 부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농업경영은 종래 소규모영농에서 고가의 시설, 장비를 필요로 하는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변모한 반면, 경영상 위험요인은 자연조건의 제약, 가격변동 등으로 인해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일시적으로 경영상 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에 대해 농업특성에 맞는 지원장치가 미비하여 방치할 경우 연체로 인한 신용하락으로 추가차입이나 자금지원이 중단되어 회복불능의 상태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고 자력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가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회생자금을 지원하여 개별농가 차원에서는 건실한 농업경영체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농업전체 차원에서는 농가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수시 부채해결체제 구축을 통한 농가부채 조기해결 필요성에 따라 농업

인 부채대책위원회의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경영회생지원제도의 상설화가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03년 중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지원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지원제도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부채경감법 개정('04. 3. 5)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0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즉, '03년 중 실시된 시범사업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반영하여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 금리 및 상환기간 개선, 지원대상자금의 범위 확대 등을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졌다.

'06년도에 그 동안의 추진결과 나타난 미흡한 사항과 대출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대출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기관 직원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실무심의회를 구성 운영해 공정하고 개관적인 대출심사를 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지침을 개정('06.4.5)했다.

'07년도에는 점차 지원신청자 및 지원실적이 저조해 가고 있어 농업경영회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농림정책 리모델링 회의('07. 4.27)에서 문제점 및 개선안의 방향이 제시되었다.

농업인 부채현황 및 현지의견수렴, 리모델링 회의 시의 논의결과, 외부기관 지적사항, 기타 추진 상 미흡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행지침을 개정('07.6.18)했다.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대한 원인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회생가능성에도 바탕을 둔 지원방식으로 전환했다. 즉, 과거 특정 원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받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해 회생가능성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회생의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변환되었다.

(3) 정책의 주요내용

부채의 상환기일을 연장하여 정상 경영을 하면서 자력으로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농가 경영회생지원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 확대

경영회생지원을 통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높은 금리, 단기 상환조건의 농업용 상호금융 대출금을 낮은 금리(3%), 장기상환(3년거치 7년분할)의 자금으로 대환할 수 있게 되었다.

'03년부터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 2,500만원 이상 농업인은 회생가능성 평가 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06년부터는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농업인에 대해서도 준전업농 영농규모의 1/2이상, 농업용 부채는 1,200만원 이상으로 지원조건이 50% 수준으로 완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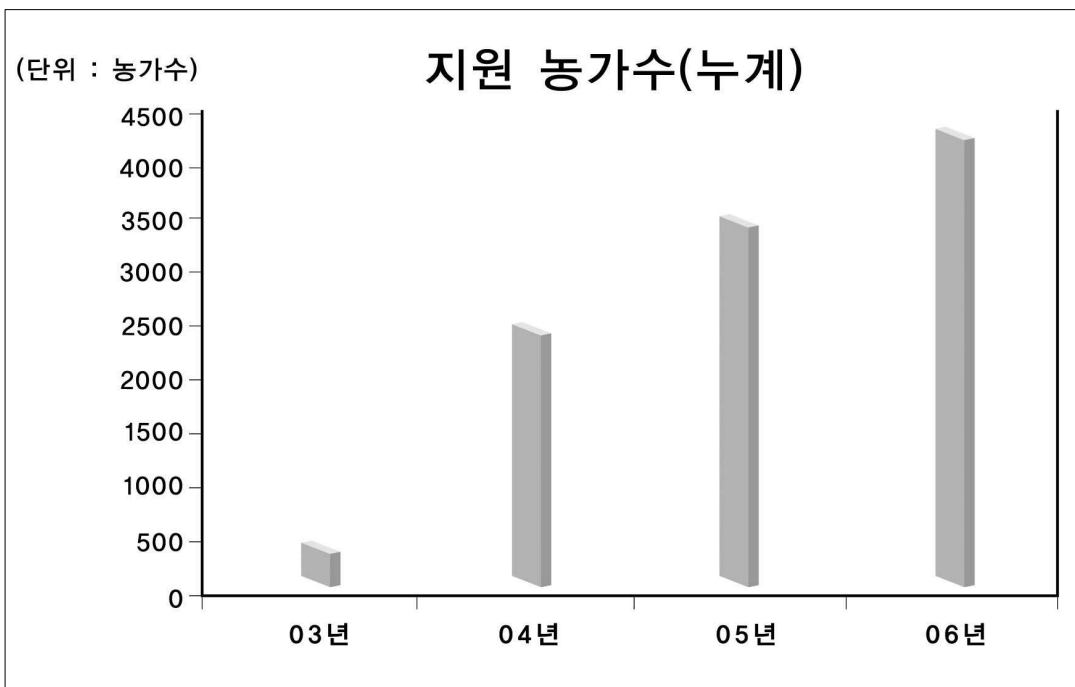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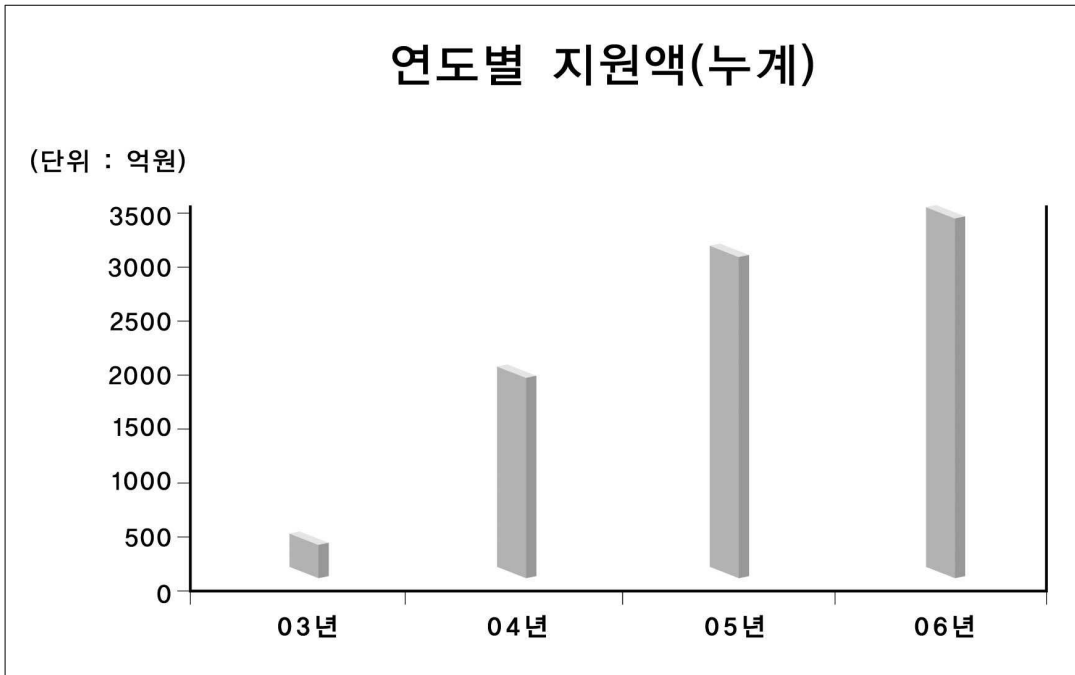
워크아웃 방식으로 경영회생자금 지원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신청한 농업경영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농업경영체 특성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즉, 회생가능성 여부를 평가해서 회생가능한 경우 신청자에게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고, 회생이 불가능 할 경우 기존시설 활용도 제고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인수희망자에게 인수자금을 지원하는 워크아웃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4) 정책추진 성과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대출금을 연체하게 되는 경우 모든 자금지원이 중단되어 회복불능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여 자력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금으로 '03년도에 171농가 241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06년까지 4,497농가 3,351억원을 지원했다.



(5) 향후 계획

'07년도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08년 상반기 중 지원성과를 평가하여 수요자인 농업인 관점에서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농업인 지원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부채로 인한 농가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바. 농지은행 도입

(1) 도입 배경 및 의의

쌀 소비감소, 수입개방 확대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농지시장 불안을 사전 대비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통해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은행 제도를 도입하였다.

농지은행의 주요기능으로는 농지유통화정보제공, 농지 임대·매도수탁관리,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농지시장안정 매입·비축사업이 있으며, 시행은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고령농가의 이농과 탈농이 늘어나면서 팔려고 하는 농지는 많아지고 있고, 농업 창업을 하거나 전원생활 또는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농지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어 농지은행이 이를 적절하게 연계해 주는 등 농지중개시장 역할을 할 수 있어 새로운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태풍이나 폭설 같은 자연재해나 농산물 가격 폭락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하는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빚을 갚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으로 농업인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단체 등으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 정책입안 과정

농림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촌공사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연구용역 실시, 프랑스·일본의 사례조사, 의견수렴(7회), 설명회(11회), 토론회(7회), 설문조사(5,000명)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2005년부터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5년에는 농지은행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농지법」은 2005. 7. 21일 개정하고,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은 같은 해 12. 29일 개정하여 농지유통화 정보를 제공하고,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2006년에는 「농지법」('06.1.20),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및 농지매도수탁사업을 '06.4.3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농지시장안정 매입·비축사업은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3) 정책의 주요내용

농지유통화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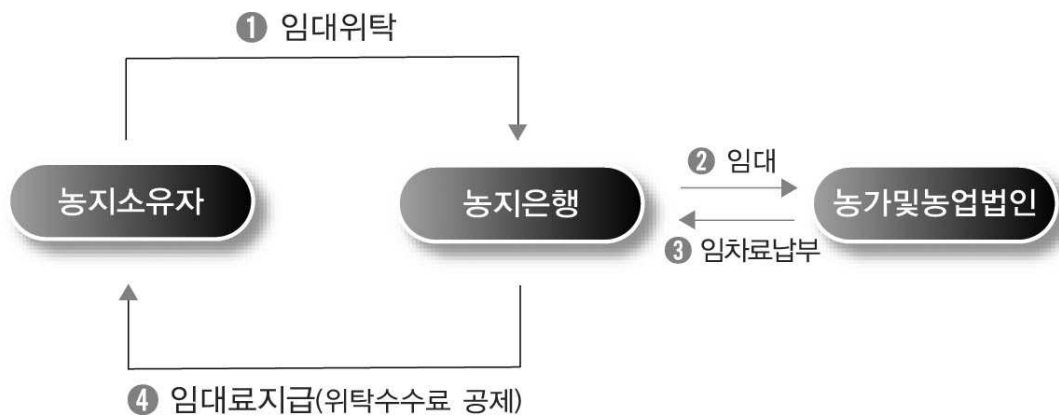
2005년 7월부터 농지은행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농지매물·거래동향·시세정보 등 농지유통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06년 1월부터는 농어촌 종합정보포털과 연계하여 농촌주택, 귀농, 농산어촌 문화체험 등 다양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주요 콘텐츠는 농지매매·임대차·농지가격·시세동향 등에 관한 정보는 물론 도시민의 귀농·이주·정착·나아가 농촌관광 및 투자 등 농촌에 관한 제반 정보를 연계해 제공하고 있다.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 소유자가 경작이 어려운 농지를 빌려주고자 할 때 농지은행이 이를 맡아서 전업농이나 새로 농업을 시작하려는 사람 등 실제 영농이 가능한 농

업인에게 장기로 빌려주어 규모화를 촉진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은 2005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하(농업진흥지역 안 1,000㎡, 밖 1,500㎡)의 농지나 도시지역 등 개발예정지에 속하는 농지 등은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여 투기목적 농지 취득을 차단하고, 임차인의 안정적 영농안정을 위해 5년 이상의 수탁기간 설정과 계약 기간내 해지시 계약 잔여기간 총 임차료의 20% 수준을 위약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농지매도수탁사업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농지은행이 수탁후 전업농 등에 매도하여 규모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2006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매입농지는 당해농가에 장기임대하고, 사후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농업재해(피해율 50%이상) 및 부채(50백만원 이상)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을 받아 경영위기 정도, 회생 가능성, 경영전

문성, 영농규모 등을 종합평가하고 대상자 선정 및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매입대상은 농지에 한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농가에 임대기간은 5년(기간 연장 가능)으로 하되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 수준이다.

농지매입·비축사업

쌀 소비량 감소 및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등 농지 수급불안에 대응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농지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입시기·규모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4) 정책추진 성과

2005년 10월 처음 도입한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사업은 임차농업인과 농지 소유자 모두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정책목표인 영농규모 확대에도 기여하는 등 1石3鳥의 효과를 내고 있다. '06년말 기준으로 6,906건(3,343ha) 계약을 완료하여 당초 목표('06:2,500ha)를 초과 달성하였다.

임차농가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영농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개인간 임대차 계약기간이 통상 2년에 불과하고 임대료에 대한 마찰도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5년간의 장기 임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연간 임대료 수준도 3,000평 기준으로 통상 250만원 수준에서 180~200만원대로 20~30% 정도 줄어들었다. 사업 참여 농가당 1,500평정도 영농규모가 커지면서 농업소득도 늘어나게 됐다.

농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농지은행을 이용함으로써 '96년 이후에 매입한 농지도 임대가 가능하고 경작을 못해도 처분이 면제되며, 임차인을 직접 물색해서 임대차 조건을 협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임대료도 안정적

으로 받을 수 있는 등 농지관리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농지은행이라는 공적기구를 통해 임대차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투기 목적의 농지소유는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수탁농지를 전업농 위주로 빌려 줌으로써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 이용률을 높일 수 있게 돼 농업구조개선에 큰 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농지임대차사업”에 연간 1,5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오고 있으나 이 사업 방식으로 바꾸면 재정지원 없이도 영농규모 확대라는 정책목표를 충분히 거둘 수 있게 됐다.

아울러, 2006년 5월부터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추진하여 불가피하게 파산해야만 했던 농가들이 재기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2006년 422억원을 지원한 결과, 부채상환 능력을 상실하여 고율의 연체이자(연 14~16%)에 시달리던 농가들이 낮은 수준의 임차료만 지급(매입가의 1%이내)하게 되므로 경영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었으며, 담보농지의 경매로 생산수단을 잃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 당해 농지를 계속 임차할 수 있어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를 정상가격에 매각함에 따라 경매처분(60~70%)에 따른 자산 감소 방지 및 부채상환 능력이 높아져 경영회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며, 경영여건이 호전될 경우 그 농지를 되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고 있어 기대이상으로 호응도가 높다.

(5) 향후 계획

농지은행의 사업과 예산이 투입되는 기존의 영농규모화 사업은 세부기능, 사업대상 등에 있어서 일부 중복기능도 있다. 따라서 두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발전적인 방향으로 통합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역모기지론’을 농지에도 도입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업인·도시민·관련기관단체·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과 국내외 자료 수집·분석 등을 통해 기능을 보강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이 제도가 농업경쟁력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방침이다.

사. 친환경농업 육성

(1) 도입 배경 및 의의

환경보전 및 농업생산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농산물 안전을 중시하는 소비자 경향과 DDA, FTA 등 개방확대의 국제무역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지원·육성하고 있다.

지구생태계의 훼손과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여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을 추구하는 국제적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후대에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농업생산기반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잔류농약, 환경호르몬, 중금속오염, AI(조류독감), BSE(우면해양뇌증-일명 광우병), 유전자변형식품(GMO)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반영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공급이 요청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DDA, FTA확대 등 농업개방 확대 속에서 취약한 국산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보완하여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Task Force)를 구성하여 중장기 목표와 정책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협의를 거쳐 5개년 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관계부처 및 농업전문가, 농업인

단체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친환경농업육성법 제8조에 의해 설치·운영)를 개최하여 제1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00~'05년)을 평가하고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안)('06~'10년)에 대한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였다.

또한, '06년에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07. 3월 시행)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개선(구체적인 개선내용은 인증단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 무항생제축산물인증 및 채포장인증제 도입, 5년단위로 인증기관에 대한 재심사제 도입, 인증취소시 1년간 신청제한 등임)하면서 농림부내 법령정비협의회, 자체규제개혁위원회 및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및 농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을 이루었다.

(3) 정책의 주요내용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 및 농업·농촌 종합대책 추진

제1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00~'05년)에 이어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06~'10년)과 농업·농촌 종합대책('04~'13년)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책목표는 '13년까지 친환경농산물을 10%(저농약인증 제외)로 확대하는 것이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

집단적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지구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읍면단위의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집단적으로 친환경농업이 가능한 10ha규모이상 지역에 대하여 친환경농업 생산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06년부터 시범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군 수계단위로 1,000ha 규모의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형 광역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토양의 지력 증진 및 화학비료·농약 절감 지원

토양개량제공급, 푸른들가꾸기사업, 유기질비료지원 및 천적방제비 지원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취약한 토양지력을 증진시키고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절감을 유도하고 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논의 부족한 유효규산과 밭의 산성도 악화 방지를 위해 규산 및 석회질 비료를 4년 1회주기로 공급하고 있다. 또한, 농가의 살포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분말형태에서 입상(알갱이) 형태로 전환을 확대하고 있다.

겨울철 유희농경지에 자운영·호밀·헤어리벳지 등 녹비작물 재배를 위한 종자대를 지원하는 「푸른들가꾸기사업」을 통해 농경지의 지력증진과 농촌 경관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05년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가격보조를 폐지하고 「유기질비료」에 대한 가격보조로 대체하고 유기질 비료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농약사용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05년부터 원예작물 시설재배 농가에 대하여 「천적방제비 지원사업」을 도입하였으며 대상작물과 지원면적을 늘리고 있다.

실천농가 소득보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관행농법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전환하는 농가에서 발생하는 초기 3년간의 소득격차(추가 비용발생)를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유기·무농약·저농약인증)와 논·밭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단가

(‘07.6월 기준)

유형 \ 단계	유기인증	무농약인증	저농약인증
논	392천원/ha	307천원/ha	217천원/ha
밭	794천원/ha	674천원/ha	524천원/ha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관리

화학비료·농약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를 실시하여 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생산 및 유통단계에 대한 조사·검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소비촉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대중매체홍보, 도시직판장 개설, 품질관리 등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생산자단체의 소비촉진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거래 매취자금」 및 「유통활성화자금」을 지원하여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 및 안정적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04년부터 「친환경농업대상」 시상을 통해 친환경농업 우수 지자체, 농업인 및 생산단체 등을 선발하여 친환경농업의 중요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다.

(4) 정책추진 성과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의 확대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이 '02년 1.1%(200천톤)에서 '06년 6.2%(1,128천톤)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02년 11천ha에서 '06년 75천ha로 6.8배 확대되었으며 이는 전체 농경지의 4.1%를 차지한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는 '02년 12천호에서 '06년 8만호로 늘어나 전체 농가의 6.3%가 친환경농업에 참여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지구」는 '02년 613개소에서 '06년 820개소로 확대되었으며,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06년 첫 시범사업연도에 완주, 순천, 울진을 선정하여 조성중이다.

토양의 지력 증진 및 화학비료·농약사용 절감

「토양개량제 공급」을 확대하여 논·밭의 유효규산함량이 증가하고 밭의 산성도 악화를 방지하고 있다. 4년마다 실시하는 논·밭의 유효규산 측정결과 '99년에 86ppm에서 '03년에 118ppm으로 상승하였으며 밭의 산성도는 '01년 5.9pH에서 '05년 5.9pH로 산성도를 유지하였다. 또한, 입상화 비율을 '02년 7%에서 '06년 47%로 늘려 농가에서 토양개량제 살포가 수월해지고 있다. 「푸른들가꾸기사업」은 '02년 전국 78천ha에 지원하였으나 '06년 136천ha로 늘려 전체 농경지의 7%수준에서 녹비작물재배를 통한 농경지 지력증진에도모하고 있다.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은 '02년 50만톤 지원에서 '06년 120만톤으로 확대하였으며, 농약사용절감을 위한 「원예작물 천적방제 지원」은 대상작물을 '05년에는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4품목에서 '06년에는 오이, 메론, 포도를 추가하여 7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지원면적도 '05년 637ha에서 '06년 1,093ha로 늘어났다.

실천농가 소득보전 확대

「친환경농업직불제」는 '06년에 논에 대한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저농약인증에 대하여 새로이 217천원/ha을 지원하고, 무농약인증은 15만원/ha에서 30만7천원, 유기인증은 27만원에서 39만2천원으로 각각 인상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였다. 지원 대상면적과 농가도 '02년 5천ha 7천농가에서 '06년에는 35천ha 46천농가로 증가되어 보다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07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친환경농업육성법을 통해 ①소비자 혼란방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종전의 4단계(유기·전환기유기·무농약·저농약인증)에서 전환기유기인증을 폐지하고 3단계로 간소화하였으며,

②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와 재포장 인증제를 도입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활성화를 촉진하였으며, ③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을 5년마다 재지정토록 하고, 인증농가가 인증취소를 받았을 경우 1년간 인증신청을 금지하고, 허위광고를 한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부과하는 등 인증제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1/3이하로 사용하여 재배



화학비료와 농약을 기준량의 1/2이하로 사용하여 재배 (제조제 사용금지)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소비촉진

친환경농산물 유통규모는 '02년 2,800억원 수준에서 '06년 1조 3천억원으로 4.6배 확대되어 시장규모가 크게 신장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이 '02년 604개소에서 '06년 1,556개소로 2.6배 늘어 친환경농산물 판로가 보다 다양화되었다.

생산증가에 따른 생산단체의 친환경농산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06년 도입된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제도는 '06년에 8억원을 조성하여 각종 친환경농산물 판촉행사 및 홍보, 품질관리 등의 활동을 시행하였다.

수확기 홍수 출하를 방지를 위해 생산자단체 및 지역농협에 지원하는 유통자금(직거래매취자금 및 유통활성화자금)은 '02년 84억원에서 '06년에는 285억원으로 확대하여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였다.

친환경농업관련 주요 지표 변화

주요지표		연 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생산 부문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생산량)	1.1% (200천톤)	2.1 (365)	2.5 (461)	4.4 (798)	6.2 (1,128)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11천ha	22	28	50	75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12천호	23	29	53	80
	친환경농업지구	613개소	645 (32신규)	679 (34)	742 (63)	820 (78)
	광역친환경농업단지	-	-	-	-	3개소
지력 증진	토양개량제 공급 (입상화율)	809천톤 (7%)	738 (12)	618 (19)	637 (38)	644 (47)
	푸른들가꾸기사업	78천ha	75	66	105	136
화학 비료 · 농약 절감	유기질비료 공급	500천톤	600	600	700	1,200
	천적방제 확대	-	-	-	637ha	1,093
소득 보전	친환경농업직불제	5천ha (7천농가)	10 (12)	13 (15)	22 (27)	35 (46)
소비 · 유통 부문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추정)	2,800억원	3,900	5,500	7,800	13,000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604개소	701	1,091	1,266	1,556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조성	-	-	-	-	8억원
	직거래매취자금 및 유통활성화자금	84억원	149	200	240	235

(5) 향후 계획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06~'10년)과 농업·농촌종합대책('04~'13년)의 차질없는 추진

'1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을 저농약인증을 포함하여 10%로 확대하고 '13년에는 저농약인증을 제외하고 10%로 확대하는 목표달성을 위해, 생산기반과 실천농가 소득보전을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개선과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추진하며,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 및 소비촉진 시책을 보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반 확충

'06~'07년 시범사업 중인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평가를 거쳐 적극적인 중장기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역단지 선정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생산·판매실적, 계약생산 등 친환경농업 실천 및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판매·유통대책 수립 의무화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지구」는 장기적으로('16년이후) 1읍면 1개소 설치를 목표로 지구조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토양의 지력증진 및 화학비료·농약 사용 절감

「토양개량제 공급」은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4년 1회 지급주기를 3년 1회로 단축하여 토양지력 증진을 제고하고, 농경지 산성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지급방식에서 농경지 산성도를 반영한 농가신청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급물량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13년 896천톤)하고 장기적('13년까지)으로 전량 입상(알갱이)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푸른들가꾸기사업」은 현행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녹비작물 종자를 연구개발 등을 통해 국산화할 계획이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공급방식을 전환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현행 예산내 지원방식에서 농가사용 실적에 연동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원량을 확대할 계획이며, 퇴비품질향상을 위해 고품질퇴비의 지원단가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예작물 천적방제」는 대상품목을 참외·수박(이르면 '08년부터 적용)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면적도 확대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단가인상 및 기간연장 추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현행 지급단가가 관행농법과의 소득격차의 50%이하 수준으로 부족하여 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추진할 계획이다. '10년에는 논밭의 단가동일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친환경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혼란 방지를 위해 '10년에는 저농약인증을 폐지하고 「유기인증」과 「무농약인증」의 2단계 인증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늘어나는 인증수요에 대응하여 민간인증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증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고, 인증수수료를 현실화하는 한편 인증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한편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생산 및 유통단계의 모니터링과 검사·감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유기인증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이력추적제 참여 확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소비촉진 강화

생산단체의 「친환경농산물 자조금」과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매취자금 및

유통활성화자금」은 지속적으로 확대('13년 : 자조금 60억원, 직거래 매취·유통활성화자금 500억원)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의 도매기능이 취약하여 시장에서 가격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과도한 물류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13년까지 수도권지역에 「친환경농산물 전용물류센터」 1개소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매분야에는 생산자단체의 친환경농산물의 소매유통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생산자·소비자연계조직의 소비지매장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르면 '08년에 시범설치를 지원하고 사업평가후 확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대량수요처로서 학교급식 기반 확대를 위해 학교장, 교사, 영양사 등 학교관계자와 학부모에 대한 현장체험교육실시, 초등학생용 부교재 제작·보급, 지역활동가 육성 및 지자체와 공동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교육계와 지자체, 특히 대도시 지자체의 학교급식 지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 자연순환농업 추진

(1) 도입 배경 및 의의

개발위주의 경제성장 및 지속적인 산업화 등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자연생태계의 자정 능력이 저하되어 지구전체 환경이 급속히 악화됨으로써 환경문제는 특정지역이나 한 국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전지구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세계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각 국가의 개별 대응노력과 함께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 참여하는 국제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지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시하는 1992년 리우선언 및 세부실천계획인 '의제21' 채택으로 각국이 지구차원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체계가 구축되었다. '의제

21'에서는 농업정책을 환경측면에서 재조명하고 있고, UN에 지속개발위원회(CSD)를 설치하여 '의제21'의 이행을 평가·감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농업과 환경을 연계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 해 오고 있다.

농업과 환경과의 관계는 농업생산활동의 환경부하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잠재적 환경오염원으로서의 부정적 역할과 환경보전을 담당하는 긍정적 역할을 공유하고 있다. 농업은 자연자원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산업으로서 어떠한 농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환경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한된 국토에서 많은 인구 부양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식량증산 정책을 핵심적인 농업정책으로 추진함에 따라 고투입·고산출의 집약적 농법이 확산되어 농업생산 활동에 따른 환경부하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 즉, 생산성 증대를 위한 화학비료 및 농약 등의 과다사용에 의존해온 결과 토양 및 수질오염 등 농업환경이 악화되었다. 또한 경종과 분리되어 대규모 수입사료에 의존하는 집약적 가축생산에 따른 가축분뇨 발생 증가와 부적절한 처리로 환경오염 부하를 증가시켰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해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 및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기 위한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을 1991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이에 힘입어 2005년도 기준 국내 가축분뇨 발생량의 82% 정도가 퇴비나 액비 등으로 자원화 되어 토양에 환원되고 있고, 나머지는 정화방류, 공공처리, 해양배출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는 수준이 되었다. 퇴비나 액비 등의 가축분뇨 자원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그 속도가 느리고, 해양배출 방법에 의한 처리량이 6%이상으로써 아직 환경부하가 높은 상황이다. 또한 가축분뇨의 발생량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퇴비나 액비 수급량의 지역적 편차가 심한 상태로서, 퇴비나 액비의 생산량이 적은 지역에서는 타 지역에서 퇴비나 액비를 공급 받거나 화학비료 위주의 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비나 액비의 생산·유통·이용 등에 있어서도 많

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부 불량한 품질의 가축분뇨 퇴비가 생산되어 판매되고 있고, 액비의 경우는 악취문제와 품질의 불균일성이 상존하고 있다. 퇴·액비의 부숙도 판정기준 등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양질의 퇴비 생산 유도 및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부산물비료 업체의 난립 및 과당 경쟁에 따라 시장기능에도 왜곡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여 시설이 가동되지 않는 사례가 있고, 경종농가의 퇴비나 액비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 미흡하여 퇴비나 액비 사용에 대한 경종농가의 관심이 낮은 수준이다.

가축분뇨 발생량 및 자원화 현황('05년)

연간발생량 (천톤)	자원화 물량		정화방류	공공처리	해양배출	기타
	퇴비	액비				
41,845 (100%)	33,196 (79.3%)	1,149 (2.8%)	1,407 (3.4%)	2,784 (6.7%)	2,745 (6.5%)	565 (1.3%)

이와 같이 1991년부터 추진해온 기존의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을 통한 가축분뇨의 자원화가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고,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중단되는 등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연순환농업추진대책을 수립·추진하게 되었다.

(2)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자연순환농업추진대책 마련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연순환농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생산한 퇴비와 액비의 실질적인 수요자인 경종부문의 역할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농림부 축산국 내의 기존 조직으로는 자연순환농업추진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책 수립을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하기로 하였고,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액비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업무를 식량국과 축산국이 분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05년 9월 7일 차관보 직속으로 '자연순환농업 T/F

팀'을 설치하였다. 이 팀은 농림부 내 식량국과 축산국의 비료 및 가축분뇨 담당사무관 각 1명씩과 농촌진흥청(2명), 농협중앙회(1명)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였고, 팀장은 농림부 내부 공모절차를 거쳐 선발하였다.

이 팀은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양질의 유기질 비료로 만들어 다시 농경지로 환원시켜 지력을 복돋우는 자연순환형 농업형태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하였고, 9개월여의 작업끝에 2006년 6월 14일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을 발표하였다. 자연순환농업추진대책은 대책이 마련되어 발표되기까지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수십차례 의견을 수렴하였고, 공청회, 관련기관 회의 등을 거쳤다.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 수립 일지

추진내용	일자
□□ 자연순환농업T/F팀 구성·운영	2005.9.7
□□ 가축분뇨 자원화 농가, 단체, 지자체 등 현지방문 및 의견 수렴	(18회)
□□ 퇴·액비 전문가, 관련기관, 학계 및 단체와의 의견 수렴 및 협의	(15회)
□□ 정책토론회(장관 주재)	2006.2.3
□□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시안) 보고(장관)	2006.2.28
□□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시·도, 농진청, 농업 및 축산관련기관·단체·협회 등	2006. 3.4 ~ 3.30
□□ 자연순환농업 협의회 개최(위원장 : 축산국장)	2006.3.27
□□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안)에 대한 공청회 실시 · 경중·축산농가 및 관련단체, 업계, 공무원 등 220명 참석	2006.3.29
□□ 축산·농산 관련 시·도과장 연석회의 개최(차관보 주재)	2006.3.30
□□ 자연순환농업 실천 우수농가 사례집 제작·보급	2006.3월
□□ PCRМ을 통한 정책고객 의견 수렴	2006.4.4

대책 마련에 앞서 현지방문 등을 통하여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농가, 단

체, 지자체 등에 대한 의견을 18차례에 걸쳐 수렴하였고, 퇴·액비 전문가, 관련기관, 학계 및 단체와도 15차례나 의견 수렴과 협의를 하였다.

대책 초안을 마련한 이후에는 농림부장관이 주재한 정책토론회를 비롯하여 시·도, 농촌진흥청, 농업 및 축산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경종·축산농가 및 관련 단체·업계 등으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자연순환농업추진대책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수립되었다.

아울러, 자연순환농업T/F팀은 자연순환농업추진대책 발표 이후에는 자연순환농업 실천 우수사례의 전파 등 자연순환농업 추진 확산에 주력하였고, 2007.2.9일 농림부 정식 직제인 축산자원순환과로 확대 개편되었다.

(3) 정책의 주요 내용

자연순환농업을 정의하면 “자연생태계의 영속적인 물질순환 기능을 활용하여 작물과 가축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농축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농업”이다. 좁은 의미로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액비 등의 유기질 자원을 토양에 환원시켜 토양을 건전하게 유지·보전하면서 농업생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농업을 일컫는다.

이와 같은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의 목표는 경종과 축산이 함께하여 생태를 보전하고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양질의 퇴·액비 생산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퇴·액비 유통·이용체계 개선으로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시키며, 경종농가의 참여 유도 및 퇴·액비의 수요를 확대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었고, 관련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가축 밀집사육 지역이나 중·대규모 양돈농가가 많은 지역에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하여 2007년

도에 5개소를 지원하였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추진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하여 2007년에 전국의 5개 시·군을 선정, 시·군당 5억원씩 인센티브를 지원하였다. 품질이 우수한 분뇨 자원화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수 자원화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2007년부터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대상자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시에는 자원화시설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둘째, 퇴·액비 유통 및 이용체계 개선을 통한 자연순환농업의 활성화 지원이다.

전문화된 퇴·액비 유통 우수조직을 중점 육성하고 퇴·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다.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는 농·축협 등에 대하여 퇴·액비 살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살포비 지원을 확대하여 2007년도에는 살포실적이 우수한 퇴·액비유통센터 6개소를 선정하여 개소당 1억원씩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여 자연순환농업추진 협약을 체결한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해서는 자연순환농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2007년에는 15개 조직체를 선정, 연리 2%의 융자금 160억원을 지원하였다. 지역간 퇴·액비 균형 공급을 위해 퇴·액비 유통 전문민간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내 자연순환농업 추진 조합이 없거나 광역화된 수거 및 살포를 추진하는 민간업체에도 액비 살포비를 지원하였다. 지역별로 특화된 자발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추진을 위해 자연순환농업추진협의체 구성을 적극 유도하고, 농가들의 퇴·액비 사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퇴·액비 처방서 활용체계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셋째, 퇴·액비 수요처 확대 및 경종농가와의 연계 강화 및 등 퇴·액비 이용 확대를 위한 대책이다.

퇴·액비 사용을 위한 새로운 대량 수요처 확보를 위해 일반 경종작물 이외에 사료용 총채보리 재배면적 확대를 추진하여, 2006년에 9천 7백ha이던

사료용 총체보리 재배면적을 2007년에는 1만5천ha로 확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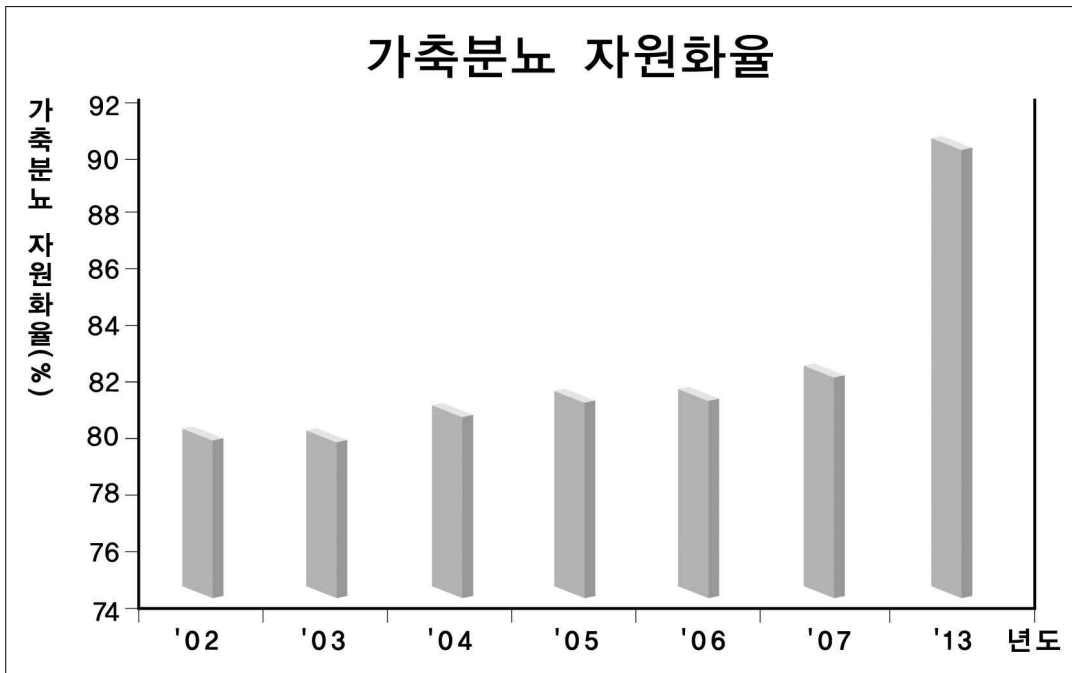
경종농가의 적극적인 퇴·액비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농업지도기관, 농·축협 등이 주관하여 지역별 주요작물에 대한 퇴·액비 시범포를 운영하고 이를 전파하기 위한 연찬회 등도 개최하였다. 우수 퇴비의 유통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가축분을 이용하여 생산한 퇴비품질평회를 개최하고, 우수 퇴비업체를 선정하여 포상도 실시하였다. 그 외에도 장터개설 등의 캠페인 전개, 지역순회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4) 정책 추진 성과

가축분뇨의 처리는 퇴비화·액비화 등의 자원화 방식과 정화처리 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다. 1991년부터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은 정책의 중심이 가축분뇨의 처리에 있었고, 자원화된 퇴·액비의 실질적인 농경지 환원을 위한 노력은 미약하였다. 자연순환농업추진대책이 2006년 6월에 마련되었기 때문에 아직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인식수준은 높지 않은 편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나타냈다.

가축의 사육과정에서 연간 발생하는 가축분뇨량 중 퇴비나 액비로 자원화되는 비율이 2002년에 80% 수준이었으나, 2006년에는 82%로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83%로 증가하게 되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 부담이 줄어들고, 경종농가는 경영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농·축협, 민간단체 등의 조직체들이 중심이 된 자연순환농업 추진 우수 선도조직들의 탄생은 짧은기간 동안의 자연순환농업 추진과정에 비추어 볼때 매우 고무적인 성과이며, 앞으로 자연순환농업의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



* 사례1(논산) : 논산계룡축협과 6개지역조합의 자연순환농업 추진
 · 경종농가는 토양개량을 통한 지력증진, 화학비료·농약사용 감축을 통한 경영비 절감은 물론 품질향상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
 · 액비사용면적 : '04년 400ha → '06년 1,100 → '07년 2,000

* 사례2(오창) : 다살림영농조합·도드람양돈조합이 오창·문백농협과 자연순환농업 추진
 · 다살림영농조합은 양질의 무항생제 퇴·액비 제공, 농협은 친환경농업에 활용, 도드람양돈조합은 필요한 기술지원 및 자문

* 사례3(김제) : 애버그린영농조합이 자연순환농업과 조사료 생산을 연계
 · 가축분뇨 수거 → 퇴·액비화 → 조사료포 시비(일반 경종작물도 연계) → 조사료 생산·판매 → 축산농가 사료이용

아울러,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축사의 악취를 없애고, 가축에 알맞은 사육환경을

만들고, 주변과 조화되는 경관을 조성하는 농장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의 도입과 우리 축산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친환경축산표준모델의 개발·보급 등으로 친환경축산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게 되었다.

(5) 향후 계획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중단으로 가축분뇨의 육상처리가 불가피함에 따라 2007.6월 해양배출 감축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였고 가축분뇨 자원화 등을 통해 해양배출물량을 연차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배출 감축 목표

□□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 '07년부터 연간 50만톤 이상 감축하여 전량 육상처리 추진

* ('06) 261만톤 → ('07)220 → ('08)170 → ('00) 70 → ('12) 0
⇒ 지자체의 해양배출 감축노력을 평가,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자금 차등 지원

가축 밀집사육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하여 2008년에는 10개소 이상이 설치되도록 할 계획이다. 2007년도 현재 59개소인 액비유통센터를 2013년에는 140개소까지 확대 지정하여 연간 10만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종·축산 간의 자연순환농업추진협약 체결 조직에 대한 자연순환농업활성화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2008년도에는 20개소, 3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화학비료, 가축분뇨 등의 비료의 공급량과 농경지의 비료 수요량을 분석하여 양분공급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양분이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의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를 실시하여, 지역별 양

분 감축노력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퇴·액비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료공정규격을 정비하여 액비의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하고, 퇴·액비에 대한 부속도 판정기준도 설정할 계획이다.

퇴·액비 사용 수요처 확대를 사료용 총체보리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에는 5만ha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유실수와 양묘장 등의 임업용 수요를 적극 개발하고 퇴·액비 사용의 효과를 규명하도록 하는 한편 살포 방법의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 종자산업 육성

(1) 도입 배경 및 의의

세계의 상업적 종자시장은 빠른 속도(연평균 5.2%)로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인도 등 아시아 종자시장 확대에 따라 성능이 우수한 교잡종(F1) 종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세계 종자시장 규모('05)

(단위: 억원)

곡물	화훼·목초	채소	과수	기타	계
100	62	42	22	74	300

자본력과 선진 경영기법으로 무장한 다국적 기업들은 M&A 등을 통하여 세계 종자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 가고 있으며, 몬산토·듀폰 등 10대 다국적 기업은 세계 종자시장의 약 37%를 장악하고 있다. 또한, 신제품의 Life-cycle이 10년에서 3~4년으로 짧아짐에 따라 업체들의 R&D 투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종자는 농업생산의 기본 요소로 일단 시장이 잠식되면 해당 작물은 지속

적으로 종자회사에 종속되는 특성이 있어, 우수 품종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미 일부 채소 및 과수·화훼는 우리품종 보급률이 현저히 낮으며 일부 화훼류는 로열티가 농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국내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농림부에서는 「종자산업발전 중장기 대책」 수립·추진하여 농업인에게는 고품질의 종자를 공급함으로써 대외 로열티 지분을 절감하고, 종자업체에게는 수출전용 품종 개발·지원하여 종자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종자산업은 자본과 기술 집약 산업으로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농업 실정에 적합한 산업이며 또한, 우리나라는 채소 분야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육종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인도시장에서의 이미지가 좋아 수출농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

(2)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05.7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농작물 대외 로열티 대응방안' 보고 후 종자산업육성 필요성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05.11월에는 '종자산업발전 중장기 대책'을 농림부 지속 관리과제로 선정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농림부, 농진청, 종자관리소, 종자협회, 종자연구회 등으로 「종자산업육성 TF팀」을 구성하였다.

'06.3월에 농진청에 「장마·딸기 사업단」을 출범시키고, 로열티대책 후속 조치로 '06 ~ '10까지 5년간 100억원의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종자산업발전 중장기대책」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 및 세부대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06.4월과 '06.9월 2회에 걸쳐 장관주재 「종자·생명산업육성 간담회」를 개최하여 육종기술지원센터 설치, 분자유종 집중투자 등 업계의 건의 사항 수렴한 후 마침내 '06.9.19일. 「종자산업발전 중장기 대책」 최종(안)을 확정·발표하였다.

'06.10월에는 「종자산업발전 중장기 대책」의 후속조치로 종자업체에 대

한 종자생산 및 시설지원을 위하여 「종자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확정하였으며,

'07.2월에는 '07년부터 '11년까지 5년간 50억원을 지원하는 「고추 분자육종사업단」을 출범하였다.

(3) 정책의 주요내용

민간육종 연구·개발 지원 강화

세계 최고 수준의 고추·배추 품종 육종을 위해 MAS(Marker Assisted Selection) 기술을 이용한 분자 육종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추·배추 분자육종 연구사업단」을 발족하여 '07년부터 '11년까지 5년간 100억원을 지원하고,

* MAS : 품종의 특성을 조기에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공학 기술

2010년까지 세계 5대 품종보호출원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개인육종가 발굴·육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육종가에 대한 신품종 등록 장려금을 품종당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하고, 해외 품종보호출원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제3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을 개최하여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2점, 농림부장관상 5점을 시상하고 최고 3천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신품종 육성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원예분야 개인육종가에 대한 국내 교육 및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등 개인육종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대외 로열티 대응 신품종 개발

현재 국산품종 재배비율이 낮은 장미·딸기의 우수한 국산품종 개발을 위해 산·학·연 공동으로 구성된 「장미딸기 사업단」을 운영하여 장미는 '10년까지 96품종, 딸기는 13품종을 개발하고, 국산품종이 조기에 현장에

확대할 수 있는 보급체계를 구축하여 국산품종 점유율을 '10년까지 장미 15%, 딸기 50%까지 높이고, 「장미·딸기사업단」은 운영 종료 이후에도 품종개발, 보급이 활발히 지속되도록 육종기술, 유전자원 수집 등 육종 기반 기술 개발을 병행하도록 하였다.

우수품종 보급 판매 지원

'07년 신규사업으로 '종자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추진하여 우수 품종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증식·채종·수매·가공 등에 필요한 자금을 5년 거치 용자 3%로 연 60억원을 지원하며, 과수 무독묘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05~'10년간 '과수 우량 묘목생산지원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과·배·감귤·포도·단감·복숭아를 중심으로 145ha의 무독묘 모포장을 설치함으로써 연간 7천ha의 60%인 4천ha의 갱신 수요를 충당토록 하였다. 또한,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벼 보급종 갱신율을 '08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우량 공정육묘 공급을 위해 육묘자조회를 구축하여 '07년 1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자조금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 벼 보급종 갱신율 : ('06)36 % → ('07) 42 → ('08) 50

품종보호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종자산업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민간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종자산업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국·공립학교의 품종보호권 소유와 그 활용에 따른 수익금 창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교직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에 대하여는 국·공립학교가 품종보호권을 승계하도록 하고,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 작물(벼·보리·콩·옥수수·감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다양한 사료용 품종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도록 하며, 자체보증능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농업협동조합 등이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자체보증을 할 수 있게 하는 한

편, 종자 유통조사시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민원발생 소지 및 행정 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종자위원회에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기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종자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06. 10. 23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4) 정책추진 성과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 확대

정부가 공급하는 고품질 벼 보급종 갱신율이 '02년 약 20%수준에서 '06년 35.5%로 확대되었고 '07년에는 42%로 확대 공급된다.

* 벼 보급종 갱신율 : ('02) 20.8% → ('04) 28.5 → ('06) 35.5 → ('07) 42.0
* 벼 보급종 공급량 : ('02) 10,782톤 → ('04) 14,028 → ('06)16,799 → ('07) 19,400

민간육종가에 대한 신품종 개발자금 지원 확대

육종가가 신품종 개발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02년 24억원에서 '06년에는 50억원으로 증가되었으며, '06년부터 원예분야 개인육종가에 대한 국내교육 및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등 개인육종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 품종개발 지원규모 : ('02) 24억원 → ('04) 26 → ('06) 50 → ('07P) 70
--

종자산업 육성 지원으로 종자수출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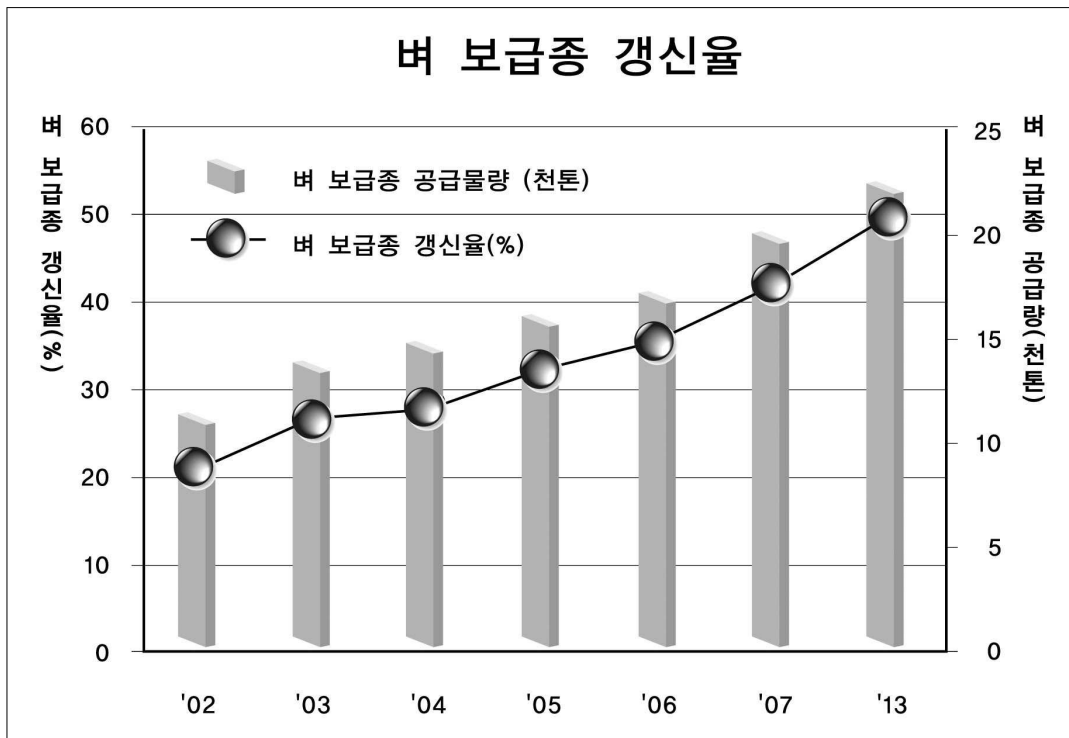
종자산업 육성지원으로 종자수출이 '02년 17백만불에서 '06년 20백만불로 증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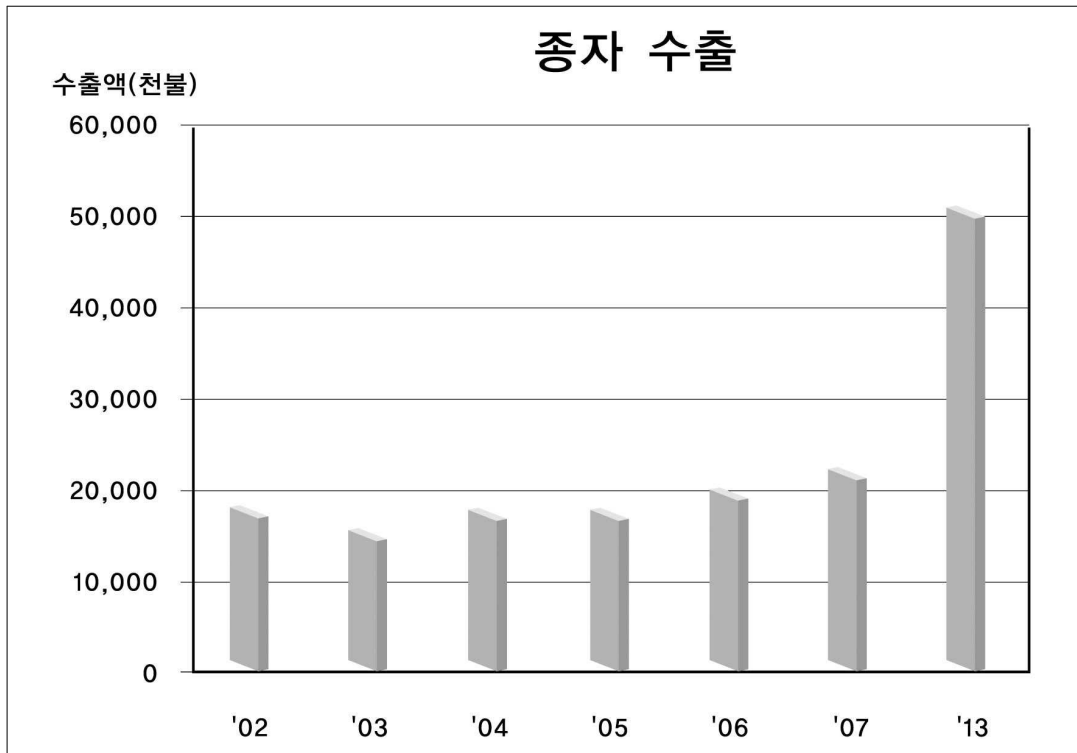
* 종자수출 : ('02) 17,449천불 → ('04) 16,861 → ('06) 20,010 → ('07P) 22,000

국산 우수 품종의 개발·보급 확대로 화훼류, 딸기 농가의 로열티 부담이 완화

'06년부터 '10년까지 딸기·장미사업단에 매년 20억원을 투입하여 국산 품종 재배가 크게 증가되었다.

* 딸기 : ('05) 9% → ('06) 18% → ('07P) 22%
* 장미 : ('05) 1% → ('06) 2% → ('07P) 4%





(5) 향후 계획

신품종 육종관련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

육종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분자육종 연구를 집중지원할 계획이다. '08부터는 토마토 등 시장규모가 커지는 주요작물에 대하여 분자육종 기획과제 추진하고, 장미·딸기·국화 사업단의 품종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강화하는 민간육종이 어려운 중요작물에 대한 품종개발 투자를 강화하여 농업인의 로열티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우수 품종 보급·판매 지원

‘종자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수출실적이 우수한 종자생산업체에 대해 최고 30억원까지 지원토록하는 등 우수 품종을 국내에서 증식·채종·수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10년까지 총 197억원을 투입

하여 사과·배·감·포도·단감·복숭아를 중심으로 ‘과수 우량 묘목생산지원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우량육묘 생산 및 출하조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07년부터 채소 공정 육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육묘자조회에 대한 자조금을 지원하고, 로열티 지불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화훼·딸기에 대하여 국산우수품종 보급체계 구축을 위한 「국산 우수품종 증식·보급 촉진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종자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

농림기술개발 과제 중 수출용 고추·무·당근 등 수출 전용 품종개발과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개인 육종가, 중소기업 종자업체를 대상으로 동남아·유럽·남미 등 해외시장 정보수집 지원 등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다.

종자관련 제도의 보완·정비

종자산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07년)에 대비하여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품종육성자의 품종보호권 강화를 위하여 종자유통조사 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농업인의 자가채종 대상작물과 자가채종 허용면적을 구체화하여 육종가의 품종보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과 제도를 개정·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본의 품종보호 「G-men」, 네덜란드의 「Naktuinbouw의 Variety tracer」 등과 같이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발생시 조사·상담 및 침해사실보고서 작성 등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며, 품종보호권 침해농산물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수입제재가 가능하도록 관세법 개정 등을 관련부처와 협의·추진할 계획이다.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 확립

종자 유통조사 체계를 개편하여 종자관리소가 적극적인 품종보호권 침해조사를 수행하고 침해분쟁 발생 시 조사·상담 및 침해사실보고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1품종多名칭, 多품종 1명칭 근절을 위한 유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자 유통시기(2~4월, 7~8월)에 맞춰 무보증 씨감자 유통을 집중 단속하는 등 우량 보증종자 유통 정착을 위한 유통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종자 관련 조직 및 기능 정비

벼 및 총채보리 보급종 확대를 위해 '08년까지 강원도 홍천에 지소를 신설하고, 총채보리 보급종 공급 확대를 위해 전북지역에 전담지소를 신설하는 등 종자산업발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자관리소의 기능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원예육종기술지원센터'가 종자업체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분자 육종에 대한 인력·예산을 확대하고, 내병성 검정 등 육종과 관련된 각종 기술적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해결하는 One-Stop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차. 농식품 수출 확대

(1) 도입배경 및 의의

우리 농업은 대내외적으로 전환기에 처해 있다. 대내적으로는 농가인구 및 농촌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05년 기준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9.1%로 농촌사회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농업 GDP 역시 '85년 이후 10년간은 연평균 8.6% 상승하였으나 '95년 이후 10년간은 0.6%증가에 그치고 있다. 대외적 측면에서 보면 FTA확산과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진행 등으로 앞으로도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02년 한-칠레 FTA가 협상 완료되어 우리나라도 분

격적인 통상형 개방국가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저가의 외국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여 농가소득의 불안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농산물시장개방은 우리 농산물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되는 의미가 있다.

세계화와 개방이 가속화 되는 환경에서 수입급증에 따른 수세적 대책에서 벗어나 적극적 수출촉진으로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 농식품 시장규모는 연평균 3.9%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세계시장 규모가 '03년 33,960억불에서 '20년에는 63,530억불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최근 한류확산으로 인해 우리 식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우리 농식품에 대해 세계인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수출가능성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주 수출국인 미국 수입시장 규모가 연 9.43%, 일본은 12.10%, 중국 8.59%, 러시아 16.26%, 동남아시아 8.93% 등으로 성장하고 있다.

수출농업은 그 자체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지만 농가소득 증대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수출농업 육성을 통해 우리 농업의 활로개척 및 농가소득 증대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정책의 입안과정

FTA 확대 및 DDA 농업협상 등 새로운 국제농업 질서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한 향후 10년간의 농정 비전을 제시한 '농업농촌종합대책('04.2)'에 수출산업 육성을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과제로 채택하였다.

농식품 수출은 생산에서부터 유통, 물류, 해외마케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자치단체, 생산자 조직, 수출업체 등이 동일한 정책방향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농림부는 농식품 수출확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초 농림부,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수출업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농식품 수출종합대책에 대해 토론했다.

연초에 수립한 농식품 수출종합대책에 대해 7-8월경에 상반기 수출실적을 점검·평가하고 하반기 중점추진대책에 대한 토론을 거치고 연말에는 종합평가회도 가졌다.

각계의 반응과 평가

농식품 수출종합대책 토론과정에서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저가의 중국산 농산물과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항상 강조되곤 한다. 그러나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가 영세하고 수출업체-수출농가간 계열화한 ‘전문 수출조직’이 없어 품질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농가-수출업체가 계열화하여 수출 농산물 생산이력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수출 공동 대표 브랜드 ‘휘모리’를 ’04년에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휘모리’ 태동초기에는 각 수출업체 마다 자사 브랜드를 포기하고 수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휘모리’ 마케팅 결과 일본 등 외국에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바이어 호응도가 높아 짐에 따라 수출업체들이 수출 공동 대표 브랜드를 선호하게 되었다.

또한 수출전문원예생산단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수출기여 효과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수출 농산물의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91-’99년 정부보조로 건축되어 현재는 노후화된 유리온실 등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 재개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 아울러 최근 한류바람을 농식품 수출로 연계시키기 위하여 식문

화 홍보행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특히 식문화 홍보는 현재의 교포시장 중심의 시장에서 현지 주류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3) 정책의 주요 내용

고품질·안전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조성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 농산물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고품질·안전 농산물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국제농산물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여러 나라에 수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고품질·안전 수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출전문 원예전문생산단지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04년에는 기존 원예전문생산단지(일명 수출단지)가 수출단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일부 지적 등이 있어 단지를 활성화 시키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원예전문생산단지관리지침(훈령)」을 제정하였다. 원예전문단지 선정 기준 및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해 우수단지에는 수출물류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러한 결과로 '원예전문생산단지가 '04년 104개 단지에서 '06년은 149개 단지로 확대되었다.

우리 농산물 주 수입국의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시키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안전성 프로그램을 중점 보급하여 수출농산물에 대한 농약검출에 대비하였다. 이를 위해 수출컨설팅 매년 170회에 걸쳐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특히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대일 신선채소류 수출농가·영농조합·수출업체를 대상으로 ISO 국제품질인증 획득을 지원하였다. 또한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오이 등 121개 수출업체, 1,568 수출농가에 대한 채소류 수출업체 사전등록제 및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채소류 안전성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개방화 시대 수출농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수출 유망상품 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부터 수출까지 개발수출을 지원하였다.

한류를 활용한 공격적 마케팅 전개

동아시아에서 한류 드라마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대장금’의 양미경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해외 박람회, 판촉전 등에 참여시켜 한국 농식품 및 식문화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 농산물 이미지를 제고하여 수출확대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일본 아이치 엑스포 기간동안 한국의 날 행사, 우수 바이어 초청 간담회, 한국음식요리 시연 등을 통해 우리 식문화를 세계에 전파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와 식문화가 다른 미국과 유럽시장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요리학교인 ‘르 꼬르동 블루’와 공동으로 김치요리를 개발하여 시연·시식 행사, 요리책자 배포, 출판기념회 개최 등을 통해 김치를 세계에 알렸다.

또한 해외 유명 한식당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식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두보를 구축하고 대학축제 연계 식품점, 뉴욕 메츠 구장 ‘Korea Night’행사도 개최하였다.

특히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최근의 소비 트렌드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농산물 공동브랜드 ‘휘모리’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 나라 최대 농식품 수출시장인 일본에서 ‘Whimori Week’를 지정하여 캠페인 요리교실, 판촉전 등 종합마케팅을 실시하였다.

선별적 해외박람회 참가를 통한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서 수출업체 수출 실적, 시장성 등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박람회와 업체를 선정하였다. 바이어 박람회에 대해서는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시음·시식, 개별 수출업체 홍보 등을 통해 업체간 상담·계약을 지원하고, 소비자 박람회는 요리 시연, 문화공연과 연계하여 한국산 농식품 알리기에 주력하였다.

아울러 해외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한국 농식품 판촉전을 실시 하였다.

수출물류비 보조지원 및 수출업체 운영·수매 자금 용자 지원

개방화 시대 수출업체 및 수출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였다. 수출업체 및 수출단지 규모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업체를 연간 10만불이상 수출업체에서 연간 15만불이상 수출업체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수출업체에 대해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운영자금의 금리인하 인센티브(최우수 1%, 우수 0.5%)를 부여하였다.

아울러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에 대한 정보지원 강화를 위해 농수산무역정보망(www.kati.net)을 활용 수출가격, 해외 바이어 정보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FTA에 대비하여 주요 품목별 수출경쟁력 조사, FTA 체결대상국에 대한 시장조사 등 심층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4) 정책추진 성과

농식품 수출이 참여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늘어 농식품 수출 집계액이 02년 1,640백만불이었으나 '06년에는 2,304백만불로 집계되었다.

특히 '04년에는 농식품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20억불을 초과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농식품 수출구조도 과거에는 밤, 송이버섯 등 자연의존형 품목 중심이었으나 참여정부 들어 파프리카, 화훼 등 기술·자본 집약적인 시설원에 품목의 수출 중심으로 선진화 되고 있다.

파프리카 수출이 '02년 32백만불에서 '06년 46백만불로 44%증가하였고, 장미, 백합 등 화훼류 수출은 '02년 32백만불에서 '06년 40백만불로 25%증가하였다.

'06년에는 우리 농식품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인 일본시장에서 파프리카, 장미, 백합, 배, 고추피망, 오이, 가지, 수박 등 8개 품목은 네덜란드, 미국, 중국, 동남아 등 세계 농업강국들을 당당히 물리치고 일본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수출 1등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외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판촉행사를 펼친 결과 우리 농식품이 판매되는 매장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해외 대형매장에 입점한 한국 농식품 매장 수가 '02년 2개 매장에서 '06년 201개 매장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매향딸기, 포도, 유자차 등 새로운 수출 유망 품목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유자차 수출확대를 통해 농가소득도 증가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05년 과실 1,200억원 수출에 따른 가격지지효과로 농가소득이 3,500억원 증대된 걸로 나타났다. 실증적으로도 유자차 수출확대에 따른 원료 유자 가격상승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된 걸로 나타났다.

유자차 수출이 '02년 2백만불에서 '06년도는 30백만불로 15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Kg당 원료 유자가격이 '02년 1,100원이었으나 '06년에는 2,200원으로 뛰었다. '06년 원료유자 생산량이 11,357톤임을 감안할 때 유자차 수출로 인한 유자농가 소득 증대는 136억원으로 추정된다.

(5) 향후 계획

농식품 수출은 단기간의 노력으로 성과를 거양하기는 매우 어려운 분야이다. 수출주체들의 자생력 강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방향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농림부는 2013년까지 농식품 수출을 40억불로 늘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쟁력 있는 전문 수출경영체가 육성되어야 한다. 생산농가와 수출업체가 공동 운명체가 되어 종자선택에서부터 해외 판매까지 일관된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농가와 수출업체간 계열화를 촉진하는데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들을 키워서 장차 미국의 '썬키스트'나 뉴질랜드의 '제스프리'와 같은 글로벌 경영체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식문화 세계화와 관련이 높은 수출 유망상품을 선정하여 이를 김치, 인삼과 같은 세계 일류상품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 농업경쟁력이 낮아 수출농업에 회의를 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와 비슷한 농지면적을 가진 네덜란드는 화훼, 파프리카, 육류, 낙농품 등 연간 약 600억불의 농식품을 수출하는 수출 강국이다.

우리나라도 기술·자본집약적인 시설원예품목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정부는 시설원예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유리온실 시설현대화 등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참살이 바람과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우리 수출농업에 긍정적 요인 중의 하나이다. 우리 음식은 藥食同原으로 알려진 곡물, 채소, 육류가 적절히 조화된 자연친화적이고 건강에 좋은 발효식품이 대부분이다. 패스트 푸드 중심의 서구식 식문화는 비만, 당뇨 등 성인병을 초래하는 반면에 우리 농식품은 대표적인 슬로우 푸드로서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음식 소비추세에 부합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음식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08년도부터 한식세계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카.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1) 도입 배경 및 의의

여성농업인은 농가인구의 51.2%를 구성하고 있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농업인의 영농기여도에 관한 설문에서도 농작업의 절반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는 의견이 75.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들의 원예·축산·친환경농업 등의 작목분야에서 점점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의 역할이 증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현실과는 반대로 여성농업경영주는 17.1%에 불과하다. 그 이유

는 여성농업인의 대부분은 농지소유라든지 생산판매통장 등과 같은 자신만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농업 종사 사실에 대한 확인 절차 또한 마련되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업인의 기준⁵⁾에 부합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농업인은 실질적 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농업인으로서의 지위가 불명확한 실정이다.

(2)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여성농업인들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삶의 질 제고 그리고 전문인력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구현과 농업발전 및 농촌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성농업인육성법(2001.12.31.)」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기본계획(2001~2005)에서의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정책의 성과는 여성농업인의 농정참여를 이전보다 확대시켰고 여성농업인 스스로 전문직업인이라는 의식을 확산시켰다.

점차 확산되는 여성농업인의 지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은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2006~2010)의 가장 우선되는 정책과제가 되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으며, 최근 급증하는 농촌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고, 기존의 정책 과제였던 여성농업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본질적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담고 있다.

5)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 : (농업인의 기준)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정책의 주요내용

농업경영의 파트너로서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인정하고가족구성원들의 공동으로 합의하여 경영하는 것을 관행으로 정착하기 위해 여성농업인단체를 통한 '농가경영협약' 교육 지원을 하고 있다. 협약의 내용은 농업경영 참여에 있어서 여성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사항, 경영참여자의 이익의 분배 및 근로조건 등의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농업인도 공동경영주라는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농림부와 지자체의 각종 농정위원회 등에서 정책결정시 여성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조합활동의 활성화 도모하기위해 여성농업인의 협동조합 참여를 확대하고, 작목반운영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에게 전문 농업경영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참여를 높이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함께 더불어 살수 있도록 방문교육도우미를 지원하여 한국어교육과 생활상담을 하고 있다.(30개 시·군, 300명 도우미, 1,800농가)

양성평등교육 및 캠페인 그리고 농촌지역의 여성이장 확대를 독려하여 남녀 농업인이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농촌을 만들어서 남녀 파트너십을 정착시키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하고 있다.

(4) 정책추진 성과

농가경영협약의 성과는 여성농업인단체를 통해 농가경영협약의 교육 및 보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협약체결농가는 '04년 22농가로 시작하여 '06년 114농가가 협약을 맺었고, '07년에는 214농가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농림부소관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촉비율은 '05년에 30.5%에서 '06년 33.1%로 증가하였고, '07년에는 4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자체의 농정관련 위원회의 여성위촉비율은 '06년 22%로 '07년에는 32%를 목표로 하고 있다.

농협의 전체조합원 대비 여성조합원의 비율은 '05년에 25.3% '06년에 26.4%가 되었고 '07년은 28%를 계획하고 있다. 여성대의원은 '05년에 8,341명이고 '06년에 8,530명이며 '07년은 8,700명을 계획하고 있다. 여성임원은 '05년에 304명이고 '06년에 348명이며, '07년은 360명을 계획하고 있다.

'07년 신규사업으로 전국 30개 시·군에서 300명의 방문 교육도우미가 1,800명의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교육과 가족에 대한 생활상담 지원을 하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 향후 계획

농업·농촌기본법개정시 농업인의 정의에 농사 종사 사실을 확인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포함시켜, 여성농업인을 법적인 '농업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관련 부서들과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타. AgriX, PCRМ

(1) AgriX

도입 배경 및 의의

그동안 농림사업관리는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신청·대상자선정·자금 집행·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없어, 사업대상자가 중복선정 및 지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사후관리 또한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었다.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은 2013년까지 투자되는 119조원의 농림투융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든 업무처리방식을 On-line화하여 시·군·시도·농림부에서 사업진행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하는 동시에 업무간소화와 사업집행의 투명화를 통해 농림행정을 혁신코자 구축된 시스템이다.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04년도에 농업·농촌종합대책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AgriX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05)하고, 사전에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결과 일선 시도·시군담당자의 업무를 간소화하고, 업무처리방식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책의 주요내용

'06년도에는 직접지불제사업 등에 대하여 신청서식 표준화 및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 등 업무재설계(BPR)를 추진하였다. 이중 3개 업무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신청서식 표준화 및 농가기본DB를 구축하고 정책기초자료 제공, 사업대상자 관리 등에 필요한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06년 하반기에는 축산분야 정보표준화와 정보화 효과가 큰 축산사업 위주로 온라인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농림사업 추진방식을 기존 off-line에서 on-line(사업신청-대상자선정-사업이행-자금집행)방식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별도보고 없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사업시행지침도 이에 따르도록 개정하였다.

정책추진 성과

AgriX는 공무원의 신청서 입력시 주민등록정보 및 토지대장, 농지원부 등 G4C를 통해 신청자격 유무를 사전에 검증하여 중복신청 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업무효율화를 증대시키고, 농업인에게는 직불제 사업에 대하여 온라인신청이 가능하고, 토지대장 등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자격검증, 보고서 작성생략 등으로 업무처리 시간이 82% 단축되었으며, AgriX에 대한 만족도는 77.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계획

AgriX 3차사업은 농촌 및 원예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08년 본격 시행되는 농가유형별 맞춤형농정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제시스템을 동시에 구축중에 있다.

또한 단계적으로 AgriX 적용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신청단계부터 집행·사후관리까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AgriX의 구축이 완료되면 반복·중복처리에 따른 비효율제거 등을 통해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약 28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농가기본 DB를 활용하여 과거 자금집행실적 파악등으로 농정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PCRM

도입 배경 및 의의

참여정부 이후 언론 홍보환경의 변화와 정보지식사회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정책정보 습득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수준은 더욱 높아졌다. 이에 정책고객 특성에 맞는 정책정보 전달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고객 관리서비스(PCRM 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이하 PCRM) 개념이 참여정부에 도입되었다.

특히 농림부는 농업의 경제비중이 낮아지면서 언론을 통한 정책정보 전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사업을 정책고객에게 직접 전달할 필요성이 높아 PCRM을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적용한 정부기관 중 하나이다.

PCRM은 이메일에 기반하는 정책고객서비스로 민간마케팅영역의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기법을 도입한 것이다. 농업인·국화소

비자 등 주요 정책고객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긍정적 관계를 형성, 유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정책고객간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정책입안과정에는 설문조사를 통해 고객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집행과정에서 수시로 고객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정책형성과정 상에서 정부와 고객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PCRM의 필요성은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된다. 2003년 7월 2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정책별 고객관리개념을 도입하여 관리할 것’을 주문이 있었다. 이에 농림부에서는 같은해 12월 정책고객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농림부차관에게 1차 보고하였다.

이후 농림부는 PCRM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2003년 12월에는 각 사업국별로 정책고객의 DB를 수집하고, 고객별 통계를 분석하여 실효성있는 DB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또한 DB 구축과 고객 관리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도 마련하였다.

2004년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였다. DB 시스템을 시범가동하기 전 서울시·SK 등 민간 및 공공부문의 CRM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구축과정 상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정책고객 발굴과정을 거쳐 1차적으로 4만명의 정책고객 DB를 마련하였고, 각 사업국 정책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고객 DB관리와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동 교육에서는 정책담당자(사무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정책고객서비스의 기본개념에서부터 PCRM을 활용한 업무추진까지 총괄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2005년 들어 농림부 PCRM은 심층적 완성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농업인 DB를 대대적으로 보완하여 농림부 정책고객은 11만명에 이르게 되고, DB

분류체계도 사업국별-정책담당자별-정책별-이해관계자별 4단계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고객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PCRM을 통한 정책 뉴스레터 제공 서비스도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주 1회 주간 발표되는 농업정책을 전달하는 ‘클릭농정뉴스’, 주요 현안 발생시 신속히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속보’, 정책입안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 정책자료를 인터넷 책자로 제공하는 ‘전자책’. 이와 같은 4가지 정책 뉴스레터는 농림부 정책고객서비스의 기본이 되고 있다.

2006~2007년은 정책 정보를 보다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도입하였다. 고령의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정보를 음성파일로 제공하는 ‘읽어주는 보도자료’, 주요 정책을 만화로 쉽게 전달하는 ‘만화로 보는 농업정책, 햇살이네집’, 주간 농정뉴스를 방송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농정인사이드’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하여 보다 쉽게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IT기술에 발맞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SMS(문자메시지 전송)·알리미 서비스 등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림부는 정부부처 중 선도적으로 PCRM을 도입·구축한 기관 중에 하나이며, 농림부의 PCRM은 혁신적인 기술도입과 지속적인 개선 노력으로 내외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05년 11월, 정책고객관리 우수부처로 선정되어 대통령께 추진과정과 운영현황을 보고하였고, 국정홍보처에서 제작한 ‘정책 e 홍보다’ 책자를 공동 발행하며 농림부 PCRM의 우수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청와대·교육부·산자부·해수부·통계청 등 여러 중앙행정기관에서 농림부의 정책고객서비스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견학을 하였고, 농진청·수과원·식검·종자관리소 등은 농림부의 정책고객관리시스템을 그대로 준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책의 주요내용

농림부 소식을 매주 한눈에 - 클릭농정뉴스



클릭농정뉴스
Click Online Agriculture News

기온	20℃	강수량	0mm
광주	☀️ 14시 발표		

[제62호] 2006년 04월 06일 (금)
>A 농업협상 610 각료회의 참석 결과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단 207
[지난신문]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 이렇게 예방합니다

농림부는 최근 이상기상으로 태풍,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사전예방대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해 농업수리시설물의 안전관리 연합회를 4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개최한다고

맛 좋고 품질 좋은 과일 모목을 농가에 공급

농림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161억원의 국고(FTA기금)를 투자해 생산자단체에 중앙모목관리센터 1개소를 설치하고 145ha(연간 갱신수요의 60%공급가능)의 모포장을 조성하여 고품질 과일생산에 필요한 우량



“농작물재해보험가입 크게 늘어나”

돼지고기는 소비 늘고, 쇠고기 닭고기는 줄어



작년 도에 우리나라 한사람이 소비한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량은 31.3kg으로, 2003년도의 33.3kg에 비해 6.4% 감소하였다.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2003년도 8.1kg에서 16.4% 감소한 6.8kg으로 나타났으며, 이

농림부장관, 산불현장에서 진화 및 복구대책 지휘
피해농가 긴급지원 대책



농림부는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양양, 고성군의 산불이 진화단계에 접어들자 막바지 철저한 진화에 총력을 쏟는 한편, 피해복구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북, 조류인플루엔자 국내유입방지에 총력을



농림부는 4월 6일 북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T/F팀(팀장: 농림부 축산국장) 첫 번째 회의를 개최, 국내 유입방지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외신에 보도된 정보사항을 분석하였다

지리산을 넘나드는 ‘시인 집배원’의 삶<칼럼>
이웃사랑의 전도사



지리산을 넘나드는 ‘시인 집배원 최장식씨, 8년 전 <섬이길은 물> 취재차 그이를 찾아간 적이 있었다. 그런 그이가 두 권의 동인지와 함께 지리산에서 채취한 고로쇠 그리고 토종밭골을 보내 왔다. 인정 많은 산촌 시인 집배

떠나자. 낙농체험 가족 여행단!

우유 소비의 확대와 가족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여행 경비 30% 지원

낙농체험 여행단 모집

제4회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입상농가 소개



대한민국대표 농가 정보서비스
from nca.com

농산물 직거래 후원선전문
SimSunMail.com

함께 지낸 도시인들의 쉼터

은성주말관광농원



www.eunjae.com

수도권 근거리에 위치한 은성농원은 농장주인 이은재씨의 훈훈한 정과 함께 주말 가족나들이 겸 시골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배, 포도, 참다래 등을 키르기도 하고 수확도 하면서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편안한 휴식 공간이다

[제62호] 2006년 04월 06일 (금)
[지난신문] [홈페이지]

발행처 : 농림부 발행인 : 농림부장관 박홍수 편집인 : 홍보관리관 경승
구독해지문의, 기사제보문의

클릭농정뉴스는 지난 2004년 창간호를 발간한 이후 현재까지 총 180호가 발간되었다. 클릭농정뉴스는 주요 정책자료는 물론 각종 홍보자료 등을 상시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최신농업정책과 가축질병소식, 농업통계, 농촌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매주 화요일 주 1회 이메일로 직접 받아 볼 수 있게 만든 서비스이다.

이젠 나도 정책에 관여한다 - 정책속보

속보 의견글 출력

2004-05-06 윤오창 wjpyw@hanmail.net 미입력
 [소속분야] 식량정책국 > 친환경농업정책국 > 친환경농산물 홍보 > 농업인 및 단체

유기농인증관련하여...

수고하십니다. 여기에도 모든 것을 적을수는 없지만 활약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인증신청을 하면서 관계자분들을 만나다가 유기농 인증 요건이 내년부터 강화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양한 일이 있고 앞으로는 더욱 그래야겠지요...관망합니다.

다만, 축분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기축산을 통한 축분만이 허용된다고요? 그러면 그동안 지천하나 변변히 받지 못하고 땅을 살리고 먹거리를 살리고자 했는데 농사를 지어 온 유기농가들은 내년부터 무농약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저나 저의 동네 유기농가들은 땅장 비싼 소를 마련할 생각으로 걱정입니다. 물론 내년에도 지금 까지처럼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무농약인증을 받아야겠지요...그렇습니다. 그리고 유기축산의 고민도 실천으로 풀기라 노력할 것입니다.

유기축산을 통한 순환형 농업이야말로 진정한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농가들이 유기축산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나 대역은 전무한채 무조건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농업이 흉내에서 순가라하고 여태까지만 하더라도 면이나 농약 작업들이 농약사라고 떠들어댔었는데 갑자기 유기축산이라... 적어도 정부의 장기적인 시책이려면 현재의 유기농가 현황과 유기축산의 시행가능성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04-05-06 이강우 kangwoo5709@yahoo.co.kr 농업 경기 031-889-9324
 [소속분야] 투자평가문제관실 > 정보외담관실 > 농업농촌정보화 > 농업인홈페이지구축과

과수에서의 친환경 농업

안녕하세요 사과,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입니다. 현재 저농약농업인증 받고 최자의 농약을 사용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농약을 줄이려 노력은 하고 있으나, 과수에서의 무농약, o연꽃기, 기타 유기농은 너무 힘들어서 잘 안됩니다. 농약을 안쓰고 실험을 해보았으나 나무를 팔아야 할 정도로 나무가 상합니다. 과수에서는 최소한의 농약을 사용하는 초저농약을 인정하고 그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2004-05-07 민병훈 hort@mail.pcu.ac.kr 연구개발 미입력
 [소속분야] 공보관실 > 공보실 > 홍보관 > 전국농업관련교수

제언

안녕하십니까? 농림부의 계획은 좋으나 그 스케일이 너무 작고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막대한 투자를 하여 예상되는 소득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선진국 뒤를 쫓아다닐 것입니까? 선진국보다 앞설 수 있는 계획을 입안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을 보내는 대신에 한 마디만 하였습니다. 농림부에서 유기농을 권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농업이란 의미가 무엇입니까? 비료가 생산되기 전에 농업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농림부에서 의미하는 유기농업으로 생산하면 우리가 아닌 국가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3개의 대학교의 농대와 위대, 3개의 국가기관과 5개의 회사와 연계하여 농림부의 생각과 유사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든 아래와 같은 기본 틀을 가지고 계획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과 지도, 관리 및 유통시스템 구축 (농업과 식품을 통합한 범세계적인 인증체계 구축)

연구자는 식품생산 안전성 방법을 개발함과 동시에 그 기준을 국내외에 제시하여 국제기구로부터 승인을 받고, 농민에게 이 기준에 의거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게 지도하고, 국내외의 소비자는 이와 같이 생산된 농산물이 세계 최고의 식품이라는 것을 100%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판매한다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은 국내 농업은 획기적인 발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수적으로 내국인 대두의 원력에 의거 국내와 동등한 수준의 수입기준을 설정할 수 있어 수입농산물을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부가가치의 농산물을 수출하는 국가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 농가 수익 증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농산물의 식품안전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하고
 -이를 소비자가 100% 신뢰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하면
 -판매할 금액과 아울러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 국내외 소비자가 한국 농산물이 세계 최고의 안전성 식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줌.
 -세계가 인정할 수 있는 식품안전성 기준을 제시(대기, 수질, 농약, 비료, 생매, 경관, 수확 후 관리, 유통과정, 판매단계, 알성제, 호르몬제, 병충해 방제제 등)에 대한 기준 공개)하고
 -이 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것을 소비자가 24시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농가에서부터 소비자까지 직전까지의 생산 및 가공과정에 대한 정보를 24시간 소비자에게 실시간 제공(농산물의 Tag와, RFID system)하고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특성 검사와 전일상 및 일상시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게 될 것임.

농림부

2004-05-06

농림부 속보 농정방향,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기로

우리 農의 가치 = 농산물 + α

농정방향,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기로

농림부는 친환경농업정책을 인증농산물 의무에게 농업연만으로 확대하고자 하오니 귀여의 증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정책을 인증농산물 의무에서 농업연만으로 확대
- 4대강 유역, 새만금 상류 등에 대규모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단지당 1,000ha 이상, '13년까지 총 50개소 조성
- 친환경인증농산물 소비 확대
 ○ 2013년까지 화학비료 합성농약 40% 절감으로 농산물의 친환경인 품질 제고
 - 화학비료 보조금('05.7), 내년부터 천적방제로 전환지원
-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GAP 실시 : '05년까지 96개 품목지침 및 법적근거 마련
 - '06년부터 생산이력제 본격 실시(금년 약 350농가 시범실시 중)
- 유기 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조기에 선진국 수준인 10%이상으로 확대
 - 인증제도는 더욱 엄격히 적용, 소비자 신뢰 확보
- 최고의 생산이력제, 음식물의 식육원산지표시제 등 안전축산을 관리 강화
- 친환경 농업의 조기확산을 위한 각종지원 확대
 ○ 유기농비료 보조 확대 및 녹비작물 재배 확대
 ○ 친환경농업기술개발을 저부인 농가까지 대폭 확대
 ○ 연구 지도도 생산성 향상 중심에서 친환경으로 전환
 ○ 친환경농업대상을 제정, 우수 시군, 생산자, 유통인 시상
- 농가의 인식전환과 자발적 참여를 위한 홍보 교육 강화

문 : 친환경농업정책국 최병국 사무관 02150-1806, cbk@maf.go.kr

첨두파일 : 1083836192.hwp

의견입력

정책속보는 각 실국에서 정책수립·홍보·평가시 정책고객들에게 미리 발송하여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는 쌍방향커뮤니케이션 창구이다.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메일을 통해서 정책을 전달하면, 고객은 그 정책에 대한 의견을 다시 전달하고, 해당과의 정책담당자는 그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농가부채 상환기간 연장 성공정책으로 이끌어 - 설문조사



농림부
농업농촌정책고객 관리시스템

귀하의 정책참여가 우리 농업농촌을 살립니다.

농가부채경감대책 시행에 관한 설문조사

- ☞ 사용자참여 주소 : http://enews.maf.go.kr/main/php/1018_vote.php?id=8
- ☞ 메일발송주소 : http://enews.maf.go.kr/main/php/1018_mailvote.php?id=8
- ☞ 설문조사 배경

○ 정부는 2004.3.5 개정·공포된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태풍 등 잦은 재해와 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부채상환 부담경감을 위해 다음의 「2004 농가부채경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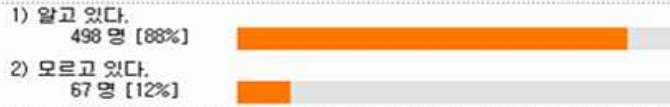
「 농가부채경감대책」 내용

- ① 중장기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연장(4%수준 → 1.5%, 5년거치 15년상환)
- ② 1년 지원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금리인하(6.5% → 3%)
- ③ 1년 지원된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인하(6.5% → 3%)
- ④ 1년 지원된 연대보증피해자금의 상환연기(3년거치 7년상환 → 3년거치 17년상환)
- ⑤ 농업용 상호금융자금의 저리대체자금 추가지원(5.0% 5년상환)
- ⑥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3.0% 3년거치 7년상환)
- ⑦ 정상상환 및 조기상환 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제 등

이 설문조사는 「2004 농가부채경감대책」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들어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조사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설문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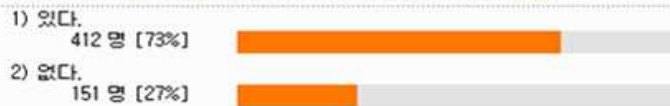
▶ 1번 문항 귀하께서는 '2004 농가부채경감대책'(이하 '부채대책' 이라 한다)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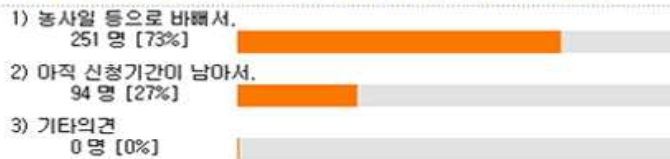
▶ 2번 문항 귀하께서는 부채대책의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하였습니까?



▶ 3번 문항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신청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4번 문항 신청할 의향이 있다면,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2004년도 농가부채 상환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대상 농가에 부채 연장을 신청하도록 독려했으나, 실적이 매우 부진하여 당시 농가의 부채상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임에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으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2회에 걸친 설문조사 결과 잘 몰랐더라는 의견이 많아 실질적인 수혜가 가능하도록 상환기간을 연장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2004년 수립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점검 조정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6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농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일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민단체 모든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005년 04월 19일 (화) >> 추천하기 >> 회원정보변경

알림마당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중간평가 결과 발표

농림부에서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2001-2005년)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으로 제1차 계획이 마무리 되고 내년부터는 제2차 계획(2006-2010년)이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성별 영향평가란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로써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농가소득 안정지원 전담조직 설치된다.

쌀협상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쌀농가 소득보전대책을 전담하게 될 "농가 소득안정추진단"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FTA협상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

쌀협상 결과 및 향후계획(동영상자료)

정부는 지난해 쌀 관세화 관련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12월 30일 WTO 사무국에 통보한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수정안이 WTO검증 절차

매력있는 여성농업인



술잎된장 만드는 박미애씨

"최고의 발효식품인 우리 전통장과 성인병에 약효를 가지고 있는 술잎을 한데 모아 술잎된장을 만들었습니다. 전통방식 그대로 장을 담그자니 힘에 부칠 때도 많지만 제가 만든 된장과 청국장을 먹고 건강이

한일부부 토마토로 핀 인생!!

[報恩]토마토 재배에 인생을 걸고 10년 동안 방울토마토 농사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부부가 있어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탄부면 벽지리 와타나베 미유키(41), 심문섭(41)씨 부부로 와



여성 CEO



서일농원 서분례씨

정책제안/체험사례 공모

정책제안, 체험사례 공모

농림부 여성정책과에서는 전국 130만 여성농업인들의 정책제안이나 농업농촌과 관련한 체험사례 등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채택된 분에게는 푸짐한 상품을 드릴 계획이오니 여성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도움이 되는 사이트

:: 도움이 되는 사이트 ::

▶ 여성농업인단체

:: 여성농업인단체 ::

▶ 여성농업인센터

:: 여성농업인센터 ::

▶ 소비자단체

:: 소비자단체 ::



농/업/환/경 소식지

본 소식지는 농림부 국제협력과에서 매주 2회 발간됩니다.

2005년 4월 31일 (월)
>> 추천하기
>> 회원정보변경

■

알림마당



농업환경 논의 개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이 확산됨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농업 등 지속가능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를 반영하여 OECD, WTO, U N 등의 국제기구에서 농업환경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부 국제협력과에서는 매월 1회 또는 2회에 걸쳐서 해외농업환경에 대하여 OECD, WTO,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등 관련 논의 동향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농업환경 논의동향

① OECD

농업 활동은 수질 오염, 토양 침식 등을 유발하므로 환경에 유해하며 생산과 연계된 농업지정정책은 환경에 부정적이라는 것이 OECD의 기본 입장이다. OECD 농업환경합동작업반에서는 농업의 환경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33개의 농업환경지표를 확정하였고 지표를 통하여 회원국의 농업정책을 평가할 계획이다. 지표 개발과 더불어 회원국간 비교 가능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 방식과 분석 도구 탐색 및 농업환경 정책 목록 작성 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② WTO

WTO에서는 '95년부터 무역환경위원회(CTE)를 설치하여 환경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 등 무역과 환경 관련 주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DDA의 원만한 타결을 위하여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 논의를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였으며 각 회원국이 제시하는 환경상품 목록을 기준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입니다.

③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

지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었고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발효될 예정이다.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국가 배출량의 3% 정도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정도를 흡수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온실가스 저감 노력과 더불어 토양,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기능 증대 노력이 필요하다.

④ 생물다양성협약

생물종의 다양성 보전,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보,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파생되는 혜택을 유전자원 제공국가와 사용국가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물다양성협약이 체결되었다. 유전자원 풍부하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생물다양성 협약을 통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하고 기술이전 및 협력을 통한 국가 능력 배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맞춤형 정책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여성, 국제, 혁신, 환경 4개 분야로만 고객을 재구성 하여 , 고객맞춤형 정책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젠 전자책으로 보자 - 전자책

The screenshot shows a web-based electronic book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title bar with the logo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농림부) and the slogan '활력있는 복지농촌'. The main content is divided into two columns. The left column, titled '원산지 : 국산' (Origin: Domestic), features three images of irregularly shaped pork belly slices. Below the images, a green-bordered box contains the following text:

- <원판>
 - 모양이 불규칙하다.
 - 갈비뼈 부위에 칼자국이 있다.
 - 폭에 비하여 길이가 짧다.
- <슬라이스>
 - 면이 고르지 않다.
 - 지방층이 두껍고 등심이 붙어 있다.
 - 고기색이 선명한 붉은 색이다.
 - 구우면 지방이 액체상태로 분리된다.

The right column, titled '원산지 : 덴마크' (Origin: Denmark), features three images of more uniform, rectangular pork belly slices. Below the images, a yellow-bordered box contains the following text:

- <원판>
 - 모양이 일정하다.
 - 갈비뼈 부위에 칼자국이 없다.
 - 폭에 비하여 길이가 길다.
- <슬라이스>
 - 면이 고르다.
 - 지방층이 얇고 등심이 붙어 있지 않다.
 - 고기색이 검붉은 색이다.
 - 구우면 지방이 흰색으로 응고된다.

On the right side of the interface, there is a 'NAVIGATOR' panel with a 'RETURN' button and a small thumbnail of the book cover.

생생하게 전자책으로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5년 초 홍보용책자를 전자책으로 변환하여 서비스 하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약 2,200여권의 홍보용책자, 통계용책자, 업무용메뉴얼, 연구논문 등을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지 않고 바로 볼 수 있도록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농업정책 이제는 정말 쉬워요! - 만화로 보는 농업정책

만화로 보는 농업정책 햇살이네 집
자연으로 떠나는 맛있는 휴가
 - 농신어촌 휴가보내기 캠페인



만화로 보는 농업정책, 햇살이네집 ①



만화로 보는 농업정책, 햇살이네집 ③



만화로 보는 농업정책, 햇살이네집 ⑤



만화로 보는 농업정책, 햇살이네집 ⑥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농촌의 현실에 맞추어 좀더 쉽게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화로 제작하여 농업인 여러분들에게 배달합니다.

정책추진 성과

농림부의 정책고객서비스가 거둔 대표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였다. 지금까지의 정책홍보활동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일방향 커뮤니케이션활동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PCRM을 통해, 정책입안단계부터 고객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정책추진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다른 의견수렴수단보다 높은 비용대비 효과를 지닌다.

둘째, 농업정책을 전달하는 매체로 정착하였다. PCRM 뉴스레터의 발송 성공률 98.7%에 이르며 이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가장 높은 성공률이다. 또한 자체 설문결과, PCRM은 농업인이 신문과 방송 다음으로 정부정책을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로 평가되었다.

셋째, 다양한 매체(이미지+ 동영상 등)개발로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읽어주는 보도자료”, “만화로보는 농업정책”등 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달하여 정책홍보에 대한 고객만족도 향상하였고, 농정신뢰회복에 기여하였다.

넷째, 농림부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바가 크다. 2005~2007년까지 홍보평가시 농림부의 정책고객관리서비스 A등급 획득하였다. 이에 청와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국방부, 관세청, 농진청, 산림청, 통계청, 문화재청, 해양경찰청, 경기도청 등 다수의 부처에 정책고객관리 우수사례를 전파하였고 구축을 지원하였다.

향후 계획

양보다 질을 추구한다.

많은 정책고객을 확보하고, 넘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알기 쉽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정책고객이 농림부의 정책형성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책고객과의 상호작용성을 높여 고객과의 동질감 형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객마일리지제도, 고객 DB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며 PCRM이 진정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발전하도록 할 것이다.

파. 현장농정 구현

(1) 지자체 농정포럼

도입 배경 및 의의

농업·농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정부·지자체·농업계간 현장중심의 농정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계 대화합” 추진한다.

지자체 농정포럼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간 농정 파트너십을 구현하고, 정부와 농업계의 대화합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한다.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농정경험이 있고 농업비중이 높은 지자체장(20~30명)을 중심으로 농정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자체 농정 포럼 설립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준비작업을 실시한다.

성공한 농업인과 연계하여 특색있는 지방 농정시책을 발굴·확산하고, 정책개발을 건의 유도할 수 있는 통로로써 지자체 농정포럼을 설립을 추진한다.

정책의 주요내용

중앙과 지자체간의 농정격차 해소 및 지방 농정의 발전을 위해 지자체장 중심의 「농정 포럼」을 설립하여 지자체장들의 농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

고, 지방 농정 및 농업인 성공사례 확산 및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정시책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농업인단체 등 모든 농업계가 미래 농업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농업계 대화합」의 토대를 구축하고 농업인단체의 농정참여 확산을 위해 정책 간담회 정례화, 정책 심사평가단 구성 등 다양한 참여방안을 마련한다.

정책추진 성과

지자체 농정포럼을 통해 농업계 전체가 농정의 수립과 집행에 참여하여 함께 고민하고 책임지는 새로운 풍토 조성하여 현장이 중심이 된 농정시스템을 구축한다.

향후 계획

농업인 단체별 정책 관심사항을 조사, 정책간담회 정례화를 위해 농업계 대표(매월) 및 지방 농업계 대표(분기별)와 간담회 개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농림정책 리모델링

도입 배경 및 의의

정부는 농업계 대화합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농업 및 농업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견인하기 위해 2005년 2월 농림정책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기구로 농업계 및 외부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농림정책 리모델링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맞춤형농정팀을 농림정책리모델링 T/F로 개편하여 리모델링 대상 과제의 발굴, 현행 사업의 문제 조사 및 평가, 개선안 마련 등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위원회는 월 2회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되었으며, 위원회 결과는 장관에게 보고된 후 소관부서에 전달되었다.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의 의견, 언론보도 내용, 국회 및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검토하여 사전에 발굴된 과제와 사업국에서 사후에 발굴한 과제들로 이뤄진다.

정책의 주요내용 및 성과

상반기까지 7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과제 26건에 대해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예컨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 기준을 450평에서 300평으로 완화했다. 면적기준 충족여부도 동일 작업권내는 합산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농신보의 경우 보증 신청인이 보증채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의 채무 미 이행액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농규모화 사업은 농업인의 자부담10%를 폐지하는 등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향후 계획

한·미 FTA협상 타결, DDA협상 급진전 등 계속되는 시장개방과 대내외 환경변화 등에 따라 농업현장 여건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맞게 정부정책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3) 농업계 대화합 정책간담회 정례화

도입 배경 및 의의

세계화·개방화의 파고(波高)을 극복하고 희망농업 구축의 일환으로 농

업계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지는 새로운 풍토 조성이 필요한 시기에 있으며, 농민계의 대화합 실현, 농정방향과 정책입안 결정시 현장의 의견수렴 및 참여농정 실현으로 사전 갈등요인 해소 등 농정신뢰 구축 기반을 확립하는데 의의가 있다.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농업계(농업인·농민단체)는 매우 긍정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고 있으며, 더 많은 참여와 과제 발굴을 희망하고 있다.

정책의 주요내용

정책입안과 농정방향 결정시 정책 수요자인 농업인·농민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시스템 등 정책간담회 정례화 구축을 위하여 중앙단위 단체장은 장·차관 중심으로 월 1회이상 간담회를 추진하고 지역단위 단체에 대해서는 분기 1회이상 지역현장 농정담당관(국·과장)을 적극 활용하여 간담회를 추진하였다(2007년을 「농업계 대화합 원년의 해」로 선포)

또한 「농정협력네트워크」 운영으로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 및 문제 확산이 우려되는 현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참여 계통기관(지자체, 유관기관, 농협)의 책임담당자 지정운영 및 상시 연락망 구축

정책추진 성과

정책 리모델링 등 농민단체 참여와 간담·토론회를 통해 농정현안에 대해서 농업계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지는 풍토를 조성하였으며,

현장농정·신뢰농정을 원칙으로 쌀 재협상, 한미 FTA 등 단체의 큰 동요 없이 타결을 이끌어 내는 등 수요자와의 이해갈등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농업계 대화합 추진의 발판을 구축하였다.

향후 계획

정부와 단체간, 단체 상호간의 대화합의 장(場)을 정례적으로 마련하고 품목별 점검회의 등 농업·농촌 현장과 농민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지속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농민단체와의 지속적인 유대강화 및 협력 관계 유지를 더욱더 발전시켜 사회적 불안요인 해소 및 갈등요인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4) 현장체험학습·과의 날 행사·농정상담역

도입배경

시장개방 확대와 고품질 안전농산물 수요증대 등 농업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할 조직역량 강화 정책 중 현장지향·고객지향 정책수립을 위한 토대로 다양한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하고 있다.

정책입안 과정

농업인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 토론하고 배우며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04.8월에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래 '05.2월에 「농정상담역 제도」, '05.4월에 「과의 날 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객지향·현장지향 농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의 주요내용

‘현장체험학습’은 신지식농업인 등 선도농가 위주로 10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농림부 직원 20~40명 단위로 현장실습, 간담회 등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며, 그 동안 현장체험학습('04~'06)에 참가한 직원 812명이 농촌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영농체험, 실습, 간담회 등을

통해 농촌현장을 배워왔다.

‘과의 날 행사’는 과팀장 주도로 과팀 전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농업 인과의 정책토론, 체험학습, 간담회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동안과의 날 행사(’05 ~ ’06)를 통해 92개 시·군 223개 현장을 방문하였다.

‘농정상담역’은 현장경험이 부족하고 현장의 요구에 둔감해 질 수 있는 농림공직자별로 2~3명의 선도농업인을 농정상담역으로 지정하여 전화·메일 등으로 현지 상황 등을 파악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현재 1,253명의 농정상담역이 지정되어 있다.

정책추진 성과

고객인 농업인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였고, 고객의 니즈를 농정에 반영하는 등 현장농정 채널로 정착되고 있다. 또한 농업인과의 거리감 해소, 농정전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향후 계획

현장체험 프로그램별로 비교 분석 및 평가 등을 통해 보다 나은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5) 현장농업인 대상 정책공모제 내실화

도입 배경 및 의의

2005년 1월 20일 농림부장관 취임이후 첫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농민들이 직접 제안할 기회를 주고,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인센티브와 포상을 주어 농촌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현장농정을 실현하고 농업인이 농정을 신뢰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정책공모대상, 제안자격, 공모기간, 심사방법, 포상, 인센티브 부여, 예산반영 등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부내 의견 수렴을 거쳐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농업 희망찾기 정책공모는 농업인과 정부의 벽을 허물고 농업인이 우리농업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능동적으로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농업인이 직접 농업정책 형성에 참여하므로써 정부의 농업정책 수립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책의 주요내용

2005년도 정책공모는 분야별로 농정신뢰회복, 농산물소비촉진 및 수출확대,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복합생활공간조성 3개분야를 대상으로 정책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부터는 여론조사 및 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분야외에 리모델링 아이디어 분야를 신설하여 생산성 향상·수출확대, 유통·소비 활성화, 농식품산업 육성, 농촌지역환경 개선 등 농업인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안 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책추진 성과

우리농업 희망찾기 정책공모 첫해인 2005년에는 농업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238건을 신청받아 37건을 선정하였으며, 2006년도는 농림공직자와 마을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86건을 신청받아 11건을 선정하여 표창 및 상금을 지급하였다.

우리농업 희망찾기 정책공모의 성과는 농업인이 참여하는 농정실현, 농림부와 농업인단체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과 정책사업 발굴

로 농업의 희망을 본 점 등은 커다란 수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정책공모의 내용 수준의 참신성 저하 및 참여건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정책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계획

금년에는 응모대상을 일부에 국한하지 않고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공모 과제 제안도 농림정책분야외에 리모델링아이디어분야를 신설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제안서 심사절차시 공모제안자에게 설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정책공모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심사절차를 개선하였다. 또한 정책공모 질적 향상을 위해 우리농업희망찾기 인터넷 메인홍보물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홍보전문업체, 관련기관·단체, 농업인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 대학생들 비롯한 젊은층에게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농업희망찾기 정책공모가 농업정책 수립의 중요한 수단으로 정착되어 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 새만금 사업 추진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축조하여 내부간척지 28,300ha와 담수호 11,800ha등 총 40,100ha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1986년~1991년 기간중 경제성분석(한국산업경제연구원), 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주민동의 등을 거쳐 1991년 방조제를 착공하였으며, 시화호 수질오염('96년)을 계기로, 1999년 5월부터 2년여동안 물막이공사를 중단하고 민관공동조사 및 공청회 등 다각적인 연구와 논의과정 등을 거쳐, 정부합동으로 친환경개발방침을 발표('01.5월)하였다.

이에 환경단체는 사업재개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01.8월) 하는 등 정부와 환경단체는 5여년의 기나긴 법적공방을 벌이게 되고, 2006년 3월 정

부(농림부)측 승소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길었던 법적논쟁을 끝내게 되었으며, 이어 2006년 4월에 방조제 최종 연결공사를 완료하게 되었다.

새만금지역 토지를 장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07년 4월 정부합동으로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을 발표하여, 농업용지 조성 위주의 큰 틀을 유지하며 충분한 친환경용지를 확보하고 20~30년후의 토지수요 등을 감안한 관광·산업용지 등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중장기 기본구상을 밝히게 되었다.

또한, 국회에서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 추진하여 새만금을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중에 있으며, 정부는 2001년 새만금 친환경개발방침에 따라 2011년까지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수질개선 등 환경대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등 참여정부 기간 동안 새만금지역을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나가기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오고 있다.

(1) 새만금 소송 승소

새만금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 정부와 환경단체 사이에 빚어졌던 갈등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대논쟁으로 불려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환경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수차례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일부 소송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많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2001년 8월 22일 환경운동연합의 조경훈외 3,538명은 새만금사업 매립면허 무효 및 정부조치계획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2003년 1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은 헌법소원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하였다.

2003년 6월 12일 환경운동연합의 최열 등 3인이 재판부에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2003년 7월 15일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임으로서 방조제 공사가 전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판결이 있는 날 정부는 서울고법에 「즉시항고」 하고, 재판부에 공사 중지에 대한 범위해석을 질의하여 3일 뒤인 7월 18일 전진공사를 제외한 모든 보강공사를 허용한다는 답변을 얻어 공사가 재개되었다.

2004년 1월 29일 서울고법 재판부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환경단체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다가 2005년 1월 12일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였다.

한편, 원심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현장검증, 원·피고 국내의 증언을 들은 후 2005년 1월 17일 ‘대통령 또는 국회 산하에 새만금사업을 논의할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고, 그동안 방조제를 막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 하였지만 정부에서는 또다시 찬반논쟁이 재연될 것을 우려 수용치 않자 2005년 2월 4일 정부조치계획 취소신청을 ‘각하’하고, 매립면허 무효확인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사업목적은 취소 또는 변경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패소부분에 대해 서울고법에 항소하였고 2005년 12월 21일 서울고법 재판부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원심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환경단체에서도 불복하고 2006년 1월 3일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 사상 3번째로 공개변론을 열고 2006년 3월 16일 최종적으로 정부측 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오랜 법정다툼이 종결되고 새만금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공사를 시작한 지 15년, 환경논란 10년, 법정공방 4년 7개월 만의 일이었다.

이와 같이 15년 넘게 지속된 사회적 논란과 갈등, 그리고 법정다툼 속에 중단과 재개를 거듭해온 새만금 간척사업은 참여정부의 끈질긴 대화와 설득, 법적 대응을 통해 논쟁을 끝낼 수 있었으며, 새만금을 국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되었다.

(2) 방조제 끝막이 공사 완료

2006년 3월 16일 대법원의 최종 승소판결 이후, 정부에서는 그동안 개방 구간 2개소 2.7km에 대한 최종 끝막이 공사를 2006년 3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끝내는 계획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였다.

새만금 끝막이 공사는 1일 조석량 72억 톤과 초당 7m의 빠른 유속 등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가 없는 심해 난공사로서 만약 실패할 경우 새만금사업 전체가 실패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국책사업에 대한 불신, 국가 신뢰도 추락과 새만금사업의 완공을 고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좌절감 등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었다.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에서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 끝막이 공사를 성공하기 위해 1995년부터 장기간에 걸친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하였고, 국내외 간척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자문회의와 기술 검토회를 40여 차례에 걸쳐 개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또한, 끝막이 공사 시행에 이르기까지 공정 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끝막이 공사 시행과정에서는 간척전문가로 구성된 끝막이 대책팀을 현장배치하고, GPS 등의 첨단장비를 이용한 정밀한 현장조사 분석, 신기술·신공법 활용 및 대형화된 신형장비 투입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공사 현장과 한국농촌공사 본사 상황실, 농림부 간에 실시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24시간 운영하면서 각종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였다.

끝막이 공사에 투입된 물량은 규격석 90만 m^3 로 덤프트럭 14만대분이며, 돌망태는 45만 m^3 로 덤프트럭 7만대분이며, 투입된 장비는 덤프트럭, 불도저, 저개식 바지선 등 연 8천여 대를 동원한 대역사로서 공정계획보다 3일 앞당긴 2006년 4월 21일 낮 12시 46분에 최종 끝막이 공사를 성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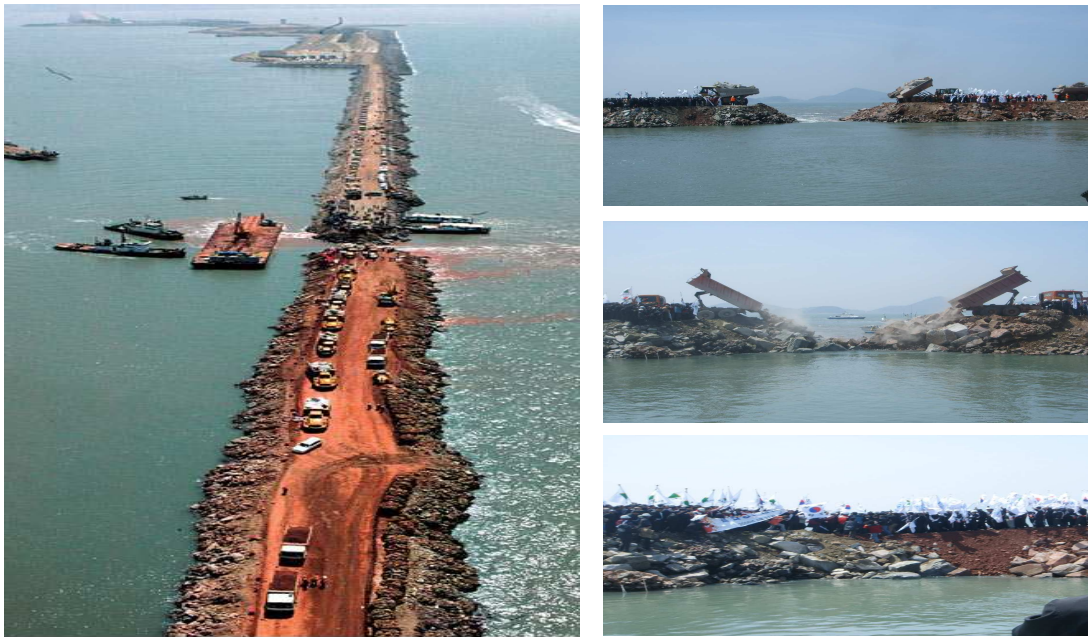
이는 1991년 11월 방조제 공사가 착수된 지 장장 14년 5개월 만에 얻어낸 성과로서 그동안 끝막이공사가 성공될 때까지 투자된 총사업비는 2조 6

백억원, 인원동원 총 190만명, 장비는 80여만 대가 동원되었다.

끝막이공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를 비롯 유관기관들의 체계적인 공조 및 추진체계 구축에 따른 치밀한 사전 준비, 공정계획수립 및 공사관리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철저한 안전수칙 이행 및 신기술·신공법 도입 등으로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방조제 연결공사를 끝낼수 있었다.

끝막이 공사이후, 현재는 '09년 완공목표로 흙쌓기·돌붙임 등 방조제 단면보강 및 도로포장·조경 등 마무리 보강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최종 끝막이 전경



(3)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발표

새만금지역 내부에 새롭게 조성될 토지의 활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장래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로 다양한 토지수요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2003년 11월 27일 국무조정실·농림부·해양수산부가 공동 발주

하여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농어촌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북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다.

5개 연구기관은 2006년 12월에 20~30년후 토지수요와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새만금 토지이용 장기구상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다.

만경수역 담수화 여부 및 산업용지 배치방식 등에 따라 6개의 대안을 검토한 결과 환경관리 및 산업단지 집적관리 등이 용이한 「순차개발 및 산업용지의 군장산업단지 인접 집중배치안」을 새만금 개발의 최적안으로 정부에 최종 제안하였다.

정부는 2007년 4월 3일 국토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제시한 토지 이용방안을 기본구상으로 수용하여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을 발표하였다.

토지개발의 기본원칙은 동진수역부터 먼저 시행하고, 만경수역은 수질 목표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후 추진하는 순차개발 원칙, 여건상 적합한 농업용지 위주로 조성하되, 산업·관광·도시용지 등은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용도별 개발원칙, 충분한 환경용지를 확보하고, 새로운 토지개발 구상에 맞는 수질대책을 보완·추진하는 친환경 개발원칙 등을 정하였으며, 앞으로 2008년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2030년 기준 토지활용방안

구분	계	농업 용지	산업 용지	관광 용지	농촌 도시	에너지 단지	환경 용지	기타 (방수제등)
면적(ha)	28,300	20,250	1,870	990	660	430	3,000	1,100
비율(%)	100	71.6	6.6	3.5	2.3	1.5	10.6	3.9

2030년 이후 장기계획 평면도



(4)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전라북도는 새만금지역의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해 2007년 3월 13일 김원기의원 등 국회의원 173명의 서명을 받아 새만금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새만금특별법안은 4월 19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되어, 4월 26일 공청회 등을 거치고, 4~5월 기간동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간 적극적인 이견 조정으로 5월 30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정부차원의 수정법안을 최종 마련하게 되었다. 수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내부토지 기본구상('07.4월)에 따라 토지용도별로 관계부처장관이 계획 수립·승인토록 사업시행체계를 정립하고, 공유수면매립법 특례 신설 및 32개 법령의 인허가 의제처리 등을 통해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며, 새만금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재원마련 근거, 경제자유구역 지정, 새만금위원회 및 사업관리단을 설치근

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6월 25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새만금특별법안은 연내 법 제정을 목표로 국회 심의중에 있다.

(5) 새만금 환경대책 추진

2001년 새만금 친환경순차개발을 위한 정부방침 결정이후 정부관계기관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여 후속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농림부·환경부·해양수산부·전북도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수질대책 비용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상류 오염원 저감대책은 전라북도·환경부가, 새만금 호수내 대책은 농림부가, 해양오염대책은 해양수산부가 업무를 분장하여 환경대책을 추진중에 있다.

2001년 국무조정실에 민관공동으로 구성된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는 연 2회씩 정부 관계기관의 환경보전대책 추진상황을 연 2회씩 점검·평가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연속으로 「정상추진」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대책의 추진으로 새만금호 예정수역 상류하천 수질을 보면, 만경강의 수질이 대폭 개선되고 있으며, 동진강의 수질도 개선된 상태에서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2011년에는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방조제 내측의 급격한 환경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생태변화 모니터링 및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2011년까지 1조 4,568억원을 투자하여 만경강·동진강유역에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완비하고, 침전지·습지 등 새만금 담수호내 수질개선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태숲, 철새도래지 등 다양한 친환경생태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 점검·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환경대책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등 환경대책을 새만금 개발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의지를 갖고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품목별 경쟁력 제고

가. 양정제도 개편(공공비축 및 쌀소득보전직불제)

(1) 양정제도 개편 배경

'04년 쌀협상 결과에 따라 의무수입물량(TRQ)은 '05년 225천톤에서 '14년 408천톤까지 증량되고, 그 중 일정물량이 밥쌀용으로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수입쌀의 시장공급에 따라 국내산쌀과 수입쌀과의 품질차별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국내산 쌀 품질이 소비자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05년 양곡연도말 재고량은 578만석으로 정부비축 적정재고량 600만석과 일치하는 수준이나 쌀소비량의 감소와 대북지원, 가공용·주정용 공급 등 재고특별처분 등을 감안할 경우 여전히 공급과잉기조 상황이다. 공급과잉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부족시대 수확기 물량 흡수와 가격지지를 통해 농가소득을 지지하고 증산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한 추곡수매제 개편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아울러 WTO보조금 범위내에서 운용되던 추곡수매제도는 '95년 WTO체제 출범이후 지속적인 보조금 감축으로 국내생산량의 30% 수준에 달했던 정부수매량이 '04년도에는 생산량의 15%수준까지 줄어들게 되어 추곡수매제 본래의 소득지지기능과 물량흡수기능이 약화되었으며, 향후 DDA협상이후 추가적인 보조금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수확기 물량 흡수는 물론 식량안보를 위한 물량확보도 어려울 것이며, 쌀값하락으로 인해 쌀농가 소득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되었다.

(2)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제도개편을 위해 조직·제도·예산 측면의 정책수단을 충실히 마련하여

추진하는 한편, 제도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청회, 토론회, 연찬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조직측면으로는 종전 장관의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를 양곡의 수급·유통 등 양곡정책 전반에 대해 심의하는 양곡정책심의회로 전환하는 한편 공공비축제 세부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업체 등 이해관계자, 학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치단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공공비축제 실무자회의 및 전문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였다. 또한 수입쌀 시장유통 시 발생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공사, 학계, 농경연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입쌀 관리방안 전문가팀을 구성·운영하였다.

이와 함께 쌀소득보전방안 및 공공비축제 도입 등 양정제도 개편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여론수렴을 위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중앙·지역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방송·언론매체 광고, 신문기고, 마을방송, 리후렛 배포, 연찬회 개최 등을 통해 홍보하고, 관련부처, 기관, 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였다.

제도측면으로는 추곡수매제 폐지 및 공공비축제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공비축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수입개방에 따른 쌀가격 하락으로 예상되는 농가소득 감소분을 탄력적으로 보전해주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함으로써 쌀값하락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 양곡관리법 및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05.3.31), 하위법령 개정 완료 ('05.7.1 시행)

예산측면으로는 공공비축미곡 매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으며,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에 따른 '05년도 증액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농업인의 연말 자금수요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당초 지급예정(12월) 보다 1개월 앞당긴 11월에 지급하였다.

양곡관리법령 개정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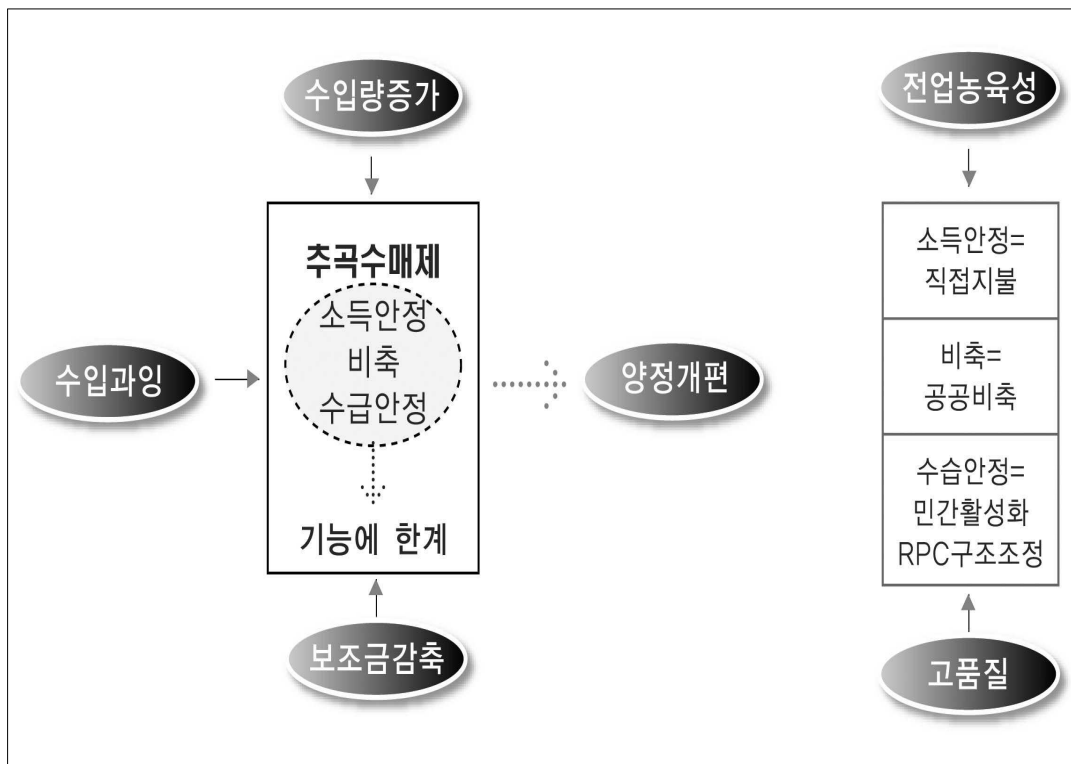
- 정부양곡 수급계획 수립 및 양곡매입가격·매입량 결정의 국회 동의제를 폐지
 - 정부양곡 수급계획(공공비축미곡 포함)과 양곡매입가격·매입량 결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으로 결정
-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 수입쌀 등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용도의 사용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매입 자격기준을 제한
- 미곡의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고 WTO 국내보조 감축약속면제기준을 충족하도록 매입·판매가격은 시장가격으로 함
 - 공공비축미곡 물량, 시장가격의 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양곡의 표시기준 강화 및 허위표시 등의 금지조항 신설 등
 - 양곡의 생산년도, 생산지, 품질표시 의무를 가공업자, 판매업자에게 부여
 - 명예감시원제 및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제 규정 신설
- 양곡의 부정유통 등 위반업체에 대한 벌칙 강화
 - 정부관리양곡 용도의 사용·처분
 -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이하 징역 또는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 양곡의 거짓·과대의 표시·광고(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양곡에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위반(200만원 이하 과태료)

쌀소득보전기금법령 개정 주요내용

- 목표가격 : 쌀의 산지 평균 수확기(10월 ~ 다음해 1월) 가격 등을 감안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 단위로 변경('05-'07년 170,070원/80kg)
 - 목표가격을 변경할 경우 국회동의를 얻어야 하며,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 감안
 - * 최초의 목표가격은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심의와 국회동의 없이 설정하며, 목표가격 산정방법 및 변경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고정직불금 : WTO 허용보조 요건에 맞도록 타작물 재배 및 휴경하는 경우에도 고정금액(진흥·비진흥 평균 60만원/ha) 지급
 - * 다만, 농업인에게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 부과
 - * '03년 쌀값 대비 5% 하락시 목표가격 대비 보전율 : 98.6%(167,736원/80kg)
- 변동직불금 : 쌀을 생산한 농업인들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과의 차이의 100분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9,836원/80kg)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
 - *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의 산정기준등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대상농지 : '98.1.1 ~ '00.12.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현행 농업인 납부금 제도와 대상농지의 4ha 면적 상한은 폐지
-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농림부장관에게 등록토록 함
 - 논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법 시행후 6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서 제출
-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관한 주요사항인 목표가격 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부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함

정책의 주요내용

추곡수매제의 기능 약화와 시장개방 폭 확대에 따른 쌀값 하락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오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는 양정제도를 개편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추곡수매제도의 가격지지 중심으로 통합 운영되어오던 양곡유통정책이 식량안보용 비축은 공공비축제가, 쌀값하락에 따른 소득보전은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수급조절은 민간유통활성화가 담당하게 되었다



공공비축제 도입

공공비축제는 WTO허용보조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보조금감축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고 급변하는 국내외적 시장상황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한 제도이다. 공공비축제가 WTO 협정상 허용보조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식량안보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재정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시가로 매입하고 시가로 방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비축제는 재해,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일정수준의 재고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식량안보를 위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제도로서 종전의 추곡수매제도와 같이 정부가 가격을 정하여 수확기에 일정한 물량은 흡수함으로써 가격을 지지하는 수급조절용 제도는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양곡연도말 재고를 600만석 수준으로 연중 300만석을 매입·방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다만 제도변경에 따른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시행 첫해인 '05년도에는 400만석, '06년도에는 350만석, '07년도는 300만석을 매입하고 '08년이후는 쌀소비량 변화 등을 감안하여 재 설정기로 했다. 아울러 '05년도의 경우 공공비축미곡과는 별도로 수확기 가격 안정을 위해 100만석을 추가로 매입하였다

*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에서는 국내 식용소비량의 17~18%수준을 적정재고량으로 권장

공공비축제 도입과 함께 수확기 홍수출하물량 흡수를 위해 산물벼 처리능력 재고를 위한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는 등 산지 RPC를 중심으로 민간유통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고품질 쌀에 대한 소비자욕구가 늘고 있는 점을 반영, 품질 좋은 쌀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생산·유통측면에서도 시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품질고급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공공비축제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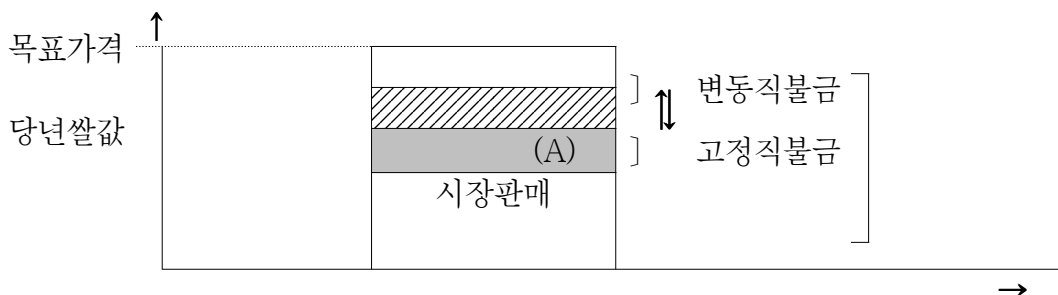
- 공공비축의 규모
 - FAO권고 수준과 국내 연구결과를 고려, 비축규모는 600만석
 - 공공비축 규모는 쌀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3년 뒤('08년) 재검토
 - 기준물량 600만석은 국내산으로 충당한다는 원칙, 수입쌀 재고를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운용
- 매입·판매물량 규모 : 300만석 수준 매입 원칙
 - '05년도는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수확기 농가의 판로확대를 위해 400만석을 매입
 - 국내산 재고를 늘리기 위해 '06년이후에는 관수용·공공용 등을 포함하여 300만석만 판매
- 매입 대상
 - 농가의 희망에 따라 포대벼 또는 산물벼로 매입가능
- 매입가격 산정·정산
 - 건조 벼 매입 : 농가에게 일정금액을 우선지급, 시장가격(산지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
 - 검사규격에 따라 등급별로 가격을 차등 지급
 - 산물(물벼) 매입 : RPC매입시 쌀값의 100%를 지급
 - 일정기간 보관 후 정부로부터 인수하여 판매하되 인수가격은 쌀값(전국 평균)의 변동율을 적용 결정
 - * 농업인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06년도부터 산물벼도 우선지급금 지급
- 매입기간 : 10.1 ~ 12.31까지
 - RPC를 통한 산물매입은 10월 1일부터, 농가로부터 직접 포대매입은 10월 20일부터 시작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정부가 목표가격을 정하고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떨어질 금액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목표가격은 쌀의 산지 수확기(10월~익년1월)평균가격을 감안해 정하며, 3년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변경한다. 2005년산부터 2007년산까지 적용할 목표가격은 '01~'03년도 평균 수확기 산지 쌀값과 추곡수매제 직접소득효과, '03년도 논농업직불제 소득효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쌀 80kg 한 가마당 17만원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직불금은 그 지급방법에 따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누어지며, 고정직불금은 쌀값 등락과 관계없이 ha당 평균 60만원('05년 기준)을 배 배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며,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산지가격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뺀 금액을 쌀을 생산한 농업인들에 지급한다. 2005년도의 경우 수확기 산지 쌀값이 '04년도 가격(161,630원/80kg) 대비 13.4% 하락한 140,028원으로 결정되어 25,546원의 직불금이 지급되었다. 따라서 농업인은 쌀 판매가격과 직불금을 합쳐 80kg 가마당 165,574원을 수취하였으며, 이는 목표가격(170,083원)의 97.3% 수준이다. 2006년도의 경우에는 수확기 산지 쌀값이 '05년도 가격(140,028/80kg)대비 5.5% 상승한 147,715원으로 결정되어 19,012원의 직불금이 지급되었다. 따라서 농업인은 쌀 판매 가격과 직불금을 합쳐 80kg 가마당 166,727원을 수취하였으며 이는 목표가격(170,083원)의 98.0%수준이다.

$$< \text{직접지불 금액(A)} = (\text{목표가격} - \text{당년쌀값}) \times \text{보전수준}(85\%) >$$



※ 목표가격 : 170,083원/80kg, 3년단위 변경

※ 대상농지 :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

쌀소득보전직불제 주요내용

- 목표가격 : 쌀의 수확기(10월~다음해 1월) 산지 평균가격 등을 감안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 단위로 변경
 - 목표가격을 변경할 경우 국회동의를 얻어야 하며, 변경시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을 감안
- 고정직불금 : WTO 허용보조 요건에 맞도록 타작물 재배 및 휴경하는 경우에도 고정금액 지급
 - 농업진흥지역안 농지를 농업진흥지역밖 농지보다 높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진흥지역안 : 640천원/ha, 농업진흥지역밖 : 512천원/ha
- 변동직불금 : 쌀을 생산한 농업인등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과의 차이의 100분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9,836원/80kg)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
 -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은 쌀 80킬로그램당 금액에 1헥타르당 쌀 생산량과 벼재배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되, 1헥타르당 쌀 생산량은 쌀 61가마로 정함
- 대상농지 :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
 - 현행 농업인 납부금 제도와 대상농지의 4ha 면적 상한은 폐지
-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등록토록 함
-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주요사항인 목표가격 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부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

정책추진 성과

DDA/쌀협상으로 시장개방 확대가 예상되는 등 양곡정책의 여건 변화에 따라 양곡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추곡수매제(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 **공공비축제란** 쌀 수급 상황에 따라 정부가 쌀을 시가로 사들였다가 시가로 방출하는 제도로 쌀값도 다른 농산물처럼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며, 정부의 수급조절기능을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제도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에 대비하여 양곡표시제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소비자시판 물량에 대한 수입이익금(Mark-Up)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통질서 혼란이 예방되었다.

☞ **수입이익금이란** 국영무역기관의 독점수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수입쌀에 수입이익금 부과로 국내외 가격차이를 축소하여 유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양정제도를 개편하고 소득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쌀농가소득보전방안은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년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보전해 줌으로써 쌀농가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예컨대 제도시행 첫해인 '05년도 수확기 쌀값이 '04년(161,630원/80kg) 대비 13.4% 하락(140,028원/80kg)하였으나 직불금 지급으로 쌀농가 소득은 소폭 감소에 그쳤다.

* '05년도 직불금으로 ha당 1,558천원 지급 ('01~'03년 400천원, '04년 500천원)

- 고정직불금 평균 600천원/ha, 변동직불금 958천 원/ha

향후 계획

최근의 쌀 소비량감소 쌀 재고증가 등의 국내 수급여건 변화와 대외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한편, 당면한 미곡유통의 안정화를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강구·추진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05년도 도입한 공공비축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시장지향적 범주내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농협·농업인의 역할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변화된 쌀산업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농협은 경영개선 및 통합을 통한 규모화를 추진 등 적극적인 경영체제를 개편하여야 하며, 농협중앙회는 원활한 소비자 유통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판로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농업인은 고품질 원료벼 생산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구적 노력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쌀 소비촉진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RPC는 수확기 매입체계 개선(수탁포함)을 촉진하여 수확기 RPC 처리능력 확대를 통한 수급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중장기과제로는 현재 4~5배에 달하는 국내외 가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모화·생산비 절감 노력이 필요하며, 가격경쟁에서의 불리한 점을 국내소비자를 만족시킬 정도의 품질경쟁력 확보로 극복하여야 한다.

시중유통 브랜드 수는 약 1,900개 정도에 달하고 있지만 가격에 따른 품질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브랜드의 수를 축소하고, 파워브랜드 발굴·육성 및 브랜드별 일관성 있는 특색을 구축하여 국내산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가 절실히 요구 된다. 이에 따라 시군단위 대표브랜드 육성, 부족한 건조·저장시설 확충 등 지속적인 품질고급화 대책 추진과 철저한 시장관리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비축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관세화를 유예받은 10년동안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나. 민간유통기능 강화 및 쌀 브랜드 사업

(1) RPC 민간유통기능 강화

도입배경 및 의의

정부는 1991년부터 쌀 주산지에서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포장 판매 과정을 일괄처리 함으로써 관리비용 절감과 쌀 품위향상 및 산지유통 기반 구축을 통해 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 Complex)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91년부터 RPC를 설치하기 시작으로 '01년까지 전국에 328개소(농협200, 민간128)가 설치되었으며, '95년부터는 RPC의 부족한 건조·저장시설(Dry & Storage Center) 위주로 지원하게 되었다.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04년 2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농림부 소관 보조사업 총 51개사업중 12개사업은 지방이양사업, 23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사업으로 분류되어 검토되었으며, 이중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지원 사업도 균특사업으로 분류되어 '05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되게 되었다.

그러나 '04년도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 결과 '쌀 협상 등에 따른 환경 변화로 고품질쌀 생산·유통 등 쌀의 민간유통역량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RPC의 건조·저장시설 확충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05년 양정제도 개편(정부수매제도 폐지 및 공공비축제 도입)에 따라 수확기 RPC의 농가벼

매입능력 확대가 중요시되게 되었고, 수입쌀중 시판쌀을 시장에 판매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 우리쌀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RPC 건조·저장시설 확충이 시급한 문제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RPC 건조·저장시설 사업의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는 균특회계에서 농특회계로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정책의 주요내용

이에 따라 '05년도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RPC의 부족한 건조·저장시설을 조기확충하기 위해 '06년 사업예산을 균특회계에서 농특회계로 환원하고, 사업물량을 대폭 확대함과 아울러 지원조건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 * 사업량 ('05) 50개소, 93억원 → ('06) 110개소, 249억원(증 156)
- * 지원단가 : 통합 7→9억원, 증설 4.5→5.5억원, 저온창고 2.5억원→3억원
- * 보조율 : 생산자 40%, 민간 30 → 생산자·민간 40(민간 10%P ↑)

연도별 건조·저장시설 설치 및 지원내역

(단위 : 개소, 억원)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계
·사업량	22	25	64	81	90	85	76	81	44	71	50	110	799
·사업비	99	87	358	298	409	502	394	473	265	331	235	601	4,052
(국고보조)	38	36	87	118	164	190	145	157	79	126	93	249	1,482
(지방비)	-	-	-	-	-	-	36	39	20	33	23	60	213
(용자)	23	29	92	118	158	141	140	198	113	-	-	-	1,012
(자부담)	38	22	179	62	87	171	73	79	53	172	117	292	1,345

또한 벼 건조·저장 시설을 조기에 보급하기 위하여 '06년부터 RPC는 물론 농협의 RPC가 없는 지역농협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산물벼 수매를 원하는 농가의 편익을 도모하게 되었다.

수확기 RPC의 농가벼 매입을 유도하기 위해 벼 매입자금 지원액의 1.5배

이상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토록하여 수확기 벼 가격안정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당초) 벼 매입지원액의 1.5배 이상 연간매입 → (변경) 벼 매입지원액의 1.5배이상 수확기 의무매입

아울러 '06년에는 RPC 건조·저장·가공 등 주요 공정별 운영기술을 체계화하여 RPC 종사자가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RPC 시설 및 운영기술 매뉴얼'이라는 표준지침서를 마련하여 RPC 및 관련단체, 지자체 등에 배부(500부)하고 농협 및 민간 RPC 종사자를 대상(600여명)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다.

이전까지는 RPC 주요 공정별로 운영기술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쌀 품질 관리에 애로가 있었으며, 대부분 RPC 종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품질관리가 되고 있었다.

매뉴얼은 원료벼의 반입·건조·저장·가공·포장 등 주요 공정별로 나누어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RPC 공정개선을 통한 쌀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매뉴얼 주요내용 ■

- 건조 부분 : 과건 및 동할발생 최소화 기술 등, 정선지수 측정, 건조시설별 설치·운영요령
- 저장 부분 : 저장기술 개선, 저장중 품질관리 기술(결로방지, 곡온유지, 지방산가 최소화 등)정립 등
- 가공 부분 : 공정개선, 정미시스템별 도정배분, 도정도관련 품질기준, 단위기계별 품질관리 목표 제시

정책추진 성과

위에서 상세하게 기술한 바와 같이 건조·저장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참여정부 들어 RPC의 벼 저장시설 능력이 대폭 확대되었고, 수확기 농가의 벼 매입량이 증가하여 수확후 관리비용 절감 및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

는 등 산지유통구조가 크게 개선되었다.

RPC 저장능력

(단위 : 조곡, 천톤)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저장능력	1,020	1,105	1,190	1,287	1,380	1,444	1,554

RPC 수확기 벼 매입실적

(단위 : 천톤)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RPC 벼 매입물량	928	797	897	1,019	1,182	1,219	1,318

향후계획

그러나, 아직도 벼 건조·저장 능력은 수확량의 25% 수준으로 낮은 편이며, 농업인들의 건조·저장 시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쌀 소비자 시판 등 쌀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고품질 쌀 생산·유통을 위한 건조·저장시설 지원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저온 저장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환경변화 및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내실있는 시설투자가 이루어 지도록하여 국내 쌀 품질 향상에 더욱 심혈을 기울려 나갈 계획이다.

(2) 시중유통 브랜드쌀 사업

도입 배경 및 의의

정부는 양곡표시제도의 확립과 브랜드 쌀의 엄격한 품질관리체제 구축을 통해 쌀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건전한 쌀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시중유통 브랜드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시중유통 브랜드 쌀 평가는 소비자들에게 시중에 판매되는 쌀의 품질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2003년부터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속 8개 단체가 주관이 되어 평가를 실시하며, 농촌진흥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한국식품연구원이 평가기관으로 참여하여 쌀의 품위, 품종순도, 식미등을 검정하고 있다.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2002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쌀 소비촉진 홍보캠페인의 일환으로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는 고품질 쌀을 육성하기 위해 브랜드 쌀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여 매년 12개 우수 브랜드쌀을 선정하여 발표하여 왔다. 또한 3회 연속으로 우수 브랜드로 선정된 경우 ‘Love米’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다.

정책의 주요내용(평가요령)

브랜드 추천 기준

시중유통 브랜드 쌀 평가는 먼저 8개도와 농협, 곡협, 양협, RPC협의회로부터 51개의 브랜드를 추천받아 이중 평가를 시작하게 되는데, 추천시 추천 대상 브랜드 쌀이 유해중금속(납, 카드뮴) 오염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서류와 함께 전년도 매출실적(또는 당해연도 판매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도·관련단체 추천 업체수

도	경기5, 강원2, 충북3, 충남8, 전북7, 전남9, 경북6, 경남4 * 인근광역시 포함 : 경기(인천), 충남(대전),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관련단체	농협(광역시소재 농협RPC) 1, 곡물협회 3, RPC협의회 2, 양곡가공협회 1

현재 난립해 있는 브랜드를 경쟁력을 있는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시·군에 1개 브랜드를 선발 육성하고 평가대상 브랜드의 매출액은 기준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년도별 추천 브랜드 매출액 기준

년도별	'06	'07	'08	'09
매출실적	15억이상	20억	30억	50억

평가기관 및 평가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쌀의 외관상 품위평가와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며 자세한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계측항목(11개) : 수분, 열손립, 분상질립, 피해립, 완전립, 싸라기, 뉘, 기타 이물, 돌, 해충, 찹쌀혼입율
- 관능감정항목(4개) : 도정도, 투명도, 변색, 이취
- 잔류농약검사(186성분) : 1회 실시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전문패널에 의한 밥의 관능적 품질평가를 실시하며 자세한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 관능적 품질 : 전반적인 품질 및 향, 외관, 맛, 조직감
- 특성 강도 : 윤기, 색, 밥 특유의 향, 낱알 표면의 거칠음성, 경도, 탄력성, 응집성, 부착성
- 단백질 함량 검사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에서는 DNA 분석에 의한 품종혼합 비율판별하여 평가한다. 아울러 품종순도 하한선을 점차 상향조정하여 평가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 품종순도 만점기준 [(‘06)90%→(‘07)95%]

■ 품종혼입률 채점 방법 ■

- 포장재에 표시된 품종과의 일치여부를 판별하고 품종혼합 비율에 따라 감점
 - * 비의도적 혼합비율 인정기준 : (단일품종)5%, (혼합미)2.5%
 - * 품종순도 평가 하한선 : 80%(미만 탈락) → 90%(5년후)
- 채점은 품종순도 만점기준에서 2%마다 1점씩 감점하여 채점
 - * 점수=100-[(혼합률-비의도적 혼입치)/2]

연도별 품종순도 하한선 조정 계획

연도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품종순도(%)	82%	84	86	88	90

소비자단체에서는 일반소비자 패널(90명내외)에 선발하여 밥의 맛, 냄새, 겉모양 및 조직감을 종합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한다.

정책추진 성과

2003년부터 계속하여 시중유통 브랜드쌀 평가 실시 결과 업체간 우수브랜드 선정을 위해 치열한 경쟁으로 쌀의 전반적인 품질이 상향되었다. 상위 12개 브랜드의 평가 점수를 활용한 쌀 “품질지수”를 살펴보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75.0점('03년) → 77.8점('04년) → 77.5점('05년) → 79.7점('06년)

※ 품질지수=(쌀의 품위+ 식미+ 품종순도+ 소비자만족도)/4

연도별 우수브랜드 선정 현황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최우수 (1)	안성마춤쌀 (경기, 충청) (안성 농협연합)	황금빛노을쌀 (충남, 고시히까리) (태안 원북농협)	아산맑은쌀 (충남, 새추청) (아산 영인농협)	한눈에반한쌀 (전남, 히토메보레) (해남 옥천농협)
우 수 (5)	5°C이온쌀 (경남, 일미·남평) (김해 피엔라이스)	달마지쌀 (전남, 일미) (영암 군서농협)	청원생명골드 (충북, 추청) (청원 오창농협)	상주풍년일품쌀 골드 (경북, 일품) (상주 풍년RPC)
	왕건이탐넨쌀 (전남, 청무) (나주 남평농협)	함초로미 (전북, 일미) (김제 새만금농산)	사계절이사는집 (전남, 일미) (영광 백수농협)	김포금쌀 (경기, 추청) (김포 신김포농협)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김포금쌀 (경기, 충청) (김포 신김포농협)	한눈에반한쌀 (전남, 히도메보레) (해남 옥천농협)	황금벼리 (전북, 일미) (김제 금만농협)	어메니티서천쌀 미감괘청 (충남, 일품) (서천 대원RPC)
	둔포갯벌 (충남, 충청) (아산 둔포농협)	김포금쌀 (경기, 충청) (김포 신김포농협)	철새도래지쌀 (전북, 일미) (군산 제희RPC)	왕건이탐낸쌀 골드 (전남, 일미) (나주 남평농협)
	달마지쌀 (전남, 일미) (영암 군서농협)	5°C이온쌀 (경남, 일미) (김해 피엔라이스)	안성마춤쌀 (경기, 충청) (안성농협 연합)	드림생미 (전남, 일미) (나주 동강농협)
장 려 (6)	동강드림생미 (전남, 일미) (나주 동강농협)	임금님표이천쌀 골드 (경기, 충청) (이천, 대월, 모가, 부발, 장호원)	상상예찬 (전북, 신동진) (김제 공덕)	의성황토쌀 (경북, 일품) (의성 한가위RPC)
	한눈에반한쌀 (전남, 동안·일미) (해남 옥천농협)	아산맑은쌀 (충남, 일미) (아산 영인농협)	쌀의보약 (전남, 일반계) (무안 수영산업)	안성마춤쌀 헤드라이스 (경기, 충청) (안성마춤조합법인)
	게르마늄울진쌀 (경북, 동진) (울진 온정농협)	동강드림생미 (전남, 일미) (나주 동강농협)	한눈에반한쌀 (전남, 히도메보레) (해남 옥천농협)	사계절이사는집 (전남, 일미) (영광 백수농협)
	햇살드리 (경기, 충청) (화성 팔탄농협)	새만금쌀 (전북, 일미) (김제 새만금농산)	햇살드리 (경기, 충청) (화성 팔탄, 조암, 수라청)	프리미엄호평 (전남, 호평) (강진 강진농협)
	생거진천쌀 (충북, 충청) (진천 진천농협)	참진쌀 (경북, 일품) (의성 삼안RPC)	왕건이탐낸쌀골드 (전남, 일반계) (나주 남평농협)	생거진천쌀 (충북, 충청) (진천농협쌀조합 법인)
	청원생명쌀 (충북, 충청) (청원 내수농협)	참숯과키토산재배쌀 (전북, 고시히까리) (김제 진봉농협)	생거진천쌀 (충북, 충청) (진천농협쌀조합 법인)	청원생명쌀 (충북, 충청) (청원 내수, 오창, 청남)

향후 계획

'07년 평가에서는 12개 우수 브랜드 선정외에도 고품질쌀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에서 인정서를 부여할 방침이다. 인정서 부여조건으로는 쌀규격 등급 '특'급이상, 완전립율 95%이상, 품종순도 하한선 이상, 최근 3년간 양곡관리법·농산물품질관리법 등의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

다. 축산물 브랜드화 추진

(1) 도입 배경 및 의의

1980년대말 선도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시작한 축산물 브랜드사업이 '03년에는 700여개에 이를 정도로 왕성하게 전개되었고, 사업주체또한 다양화 됨에 따라 이에 발맞춘 정부의 축산물 브랜드 육성 대책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03년 축산물 브랜드 현황

구 분	계	한우	돼지	닭	계란	기타
계	700(100%)	177(25.3)	242(34.6)	52(7.4)	181(25.9)	48(6.8)
등록	428(61.1%)	138	151	37	80	22
미등록	272(38.9%)	39	91	15	101	26

※ 기타는 양봉(17), 오리(15), 사슴(6), 산양유(4), 흑염소(2) 등

또한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보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거세어짐에 따라 축산물 브랜드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03년 당시에는 축산물 브랜드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는 등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었다.

먼저 생산부문에 있어서는 생산자단체에서 브랜드에 대한 개념이 미정립

되었으며, 브랜드 사육을 위한 사양지침 등이 체계화 되어 있지 못한 상황 이었고 축산농가들 조차 브랜드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또한 브랜드 경영주체가 생산에만 치중하던 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 재무 관리·마케팅 등 경영관리부분에의 능력이 부족하였으며, 브랜드 관리 전담인력 부족으로 농가 사양·출하지도 등이 미흡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브랜드 경영체가 생산규모가 영세하여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대형유통업체 등으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판매망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다음으로 가공 및 유통부문에 있어서는 다수의 브랜드 경영체들이 위생 관리가 잘 되어있는 LPC, HACCP적용 도축·가공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생산자 소재지 인근 일반 도축장을 이용함에 따라 위생관리가 미흡하였으며, 아직 일반 축산물과의 품질차별성이 미약하여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축산물 브랜드의 가치에 대해 의문시하고, 유통업체의 자체 PB상품으로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되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관리·홍보부문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브랜드가 자금 능력 부족 등으로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로부터 브랜드 축산물이 일반 축산물과 차별화 된 것이 없고 가격만 비싸다는 불만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03년 이전까지는 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시설 및 운전자금, 가맹점 설치자금을 지원하고, 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브랜드 경영체 육성 및 홍보를 추진하였으나, 상기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04년 2월 축산물 브랜드 육성대책을 수립·추진하게 되었다.

(2)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축산물 브랜드 육성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성공적인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는 DDA 협상 등 수입개방 압력에 대응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품질고급화, 안정적 물량 확보, 소비자 요구에 맞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03년 농림부 축산국 내에 브랜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계를 신설하고, '03.2월 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등급판정소, 농협, 종축개량협회, 시·도, 브랜드경영체, 유통업체, 학계 등 12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브랜드 육성대책 수립에 착수하였다.

브랜드 육성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접 브랜드 경영체에 현지출장과 함께 유통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의견을 수렴하였고, 대책 초안을 마련한 이후에는 전문가 협의체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약 1년여 동안 수차례의 의견수렴 및 토론과정을 통해 '04.2월 축산물 브랜드 육성대책이 수립되었다.

축산물 브랜드 육성대책의 수립으로 그동안 뚜렷한 방향없이 난립되었던 축산물 브랜드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정립함과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브랜드 경영체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 브랜드 경영체들은 정부의 육성대책에 맞추어 사양관리 통일, 품질고급화, 위생·안전성 확보 등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브랜드를 키워 나가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맞춘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본격적인 축산물 브랜드화가 불붙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축산업 전반에 대해 브랜드를 중심으로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3) 정책의 주요 내용

우수한 브랜드를 중점육성 함으로써 국내산 축산물의 시장차별화 및 경

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축산물 브랜드 육성대책은 ‘축산구조를 우수브랜드 경영체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비전을 갖고 ‘13년까지 브랜드 경영체의 사육 비중을 한우는 50%, 돼지는 7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

첫째, 우수 축산물 브랜드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우수한 브랜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는 혈통관리, 동일사료 급여, 통일된 사양관리 시스템을 통한 품질의 균일성 확보와, 사육 및 도축·가공단계에서의 HACCP적용 등 위생관리, 일정규모 이상 농가를 조직화하여 안정적인 물량공급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우수 브랜드 육성 방향과 경영관리방법 등을 총망라한 ‘브랜드 경영지침서’를 ’05.6월 제작, 브랜드 경영체에 배포함으로써 경영체가 뚜렷한 방향을 갖고 브랜드를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 우수 축산물브랜드의 요건 ■

- 품질의 균일성 : 종축사료·사양관리 통일
- 위생·안전성 제고 : 친환경적 사양관리, 도축·가공시 HACCP 준수 등
- 규모화 : 안정적 물량 공급 능력 확보

둘째, 우수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집중지원을 통해 브랜드 육성기반 구축을 추진하였다.

브랜드의 난립을 방지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현장실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추진심의회’를 통해 우수 브랜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경영체를 선정하여 출하선급금, 농가 경영비, 사료통일비, 브랜드 마케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운영자금(용자)을 지원하고 있다. ’04 ~ ’06년까지 3년간 73개 경영체(한우 44, 돼지 29)에 2,489억원을 지원하였고, ’07년에는 우수 경영체 집중 육성을 위해 지원된 경영체를 중심으로 94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브랜드 경영체의 사업추진실적과 브랜드의 향상정도를 평가하여 우수한 경영체는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04 ~ '06년 605억 원)하고, 부실한 경영체는 지원중단 및 자금회수 등을 실시함으로써 우수 브랜드 경영체 육성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전문화된 브랜드 컨설팅을 지원하여 브랜드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양, 경영, 브랜드 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한 브랜드 전문 컨설팅 업체를 지정하고, 이러한 컨설팅 업체를 통해 '05 ~ '07년 3년간 30개 브랜드 경영체들이 경영관리, 재무, 경영평가 등 전반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받도록 하여 브랜드 경영체의 인식 전환 및 경영마인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브랜드 자가진단 프로그램(www.hqbrand.net)을 개발·보급하여 브랜드 경영체 스스로 브랜드 경영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기존 브랜드간 통합 유도 등 브랜드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군 단위 소규모로 형성된 브랜드 경영체를 통합하여 광역브랜드를 추진할 경우 회계와 조직이 구분된 별도법인 설치를 유도하고, 정책자금을 우선지원함으로써 브랜드 경영체의 규모화를 유도를 추진하고 있다. '도'를 중심으로 지역대학, 연구기관, 브랜드 경영체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브랜드 사업단을 설치하여 광역화를 추진함으로써 '04년 1개소 뿐이었던 '도' 단위의 광역브랜드가 '06년에는 11개소로 확대되었다.

넷째,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단체인 '소비자 시민모임' 주관으로 '04년부터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사업을 추진하였다.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연구기관등 전문가로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위원회'를 구성하고 품질균일성, 고품질, 물량공급, 위생·안전성 등 여러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일정 기준이상 도달한 브랜드는 우수 축산물 브랜드로 인증을 함으로써 소비자의 브랜드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04년에는 18개 브랜드가 인증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05년 25개 브랜드가 인증을 받았으며, '06년에는 인증대상을 육우, 육계까지 확대하여 36개 브랜드가 인증을 받았다. 또한 인증받은 브랜드는 책자를 발간하여 유통업체·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하고, 전광판·지하철·신문 광고 등을 통해 우수 축산물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다.

다섯째, 브랜드 축산물의 위생수준 제고 및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사업의 신청자격을 HACCP 인증을 받은 도축·가공장을 이용하는 브랜드 경영체로 제한함으로써, 브랜드 축산물의 위생수준 제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유통업체 바이어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여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우수 브랜드 경영체와 판매계약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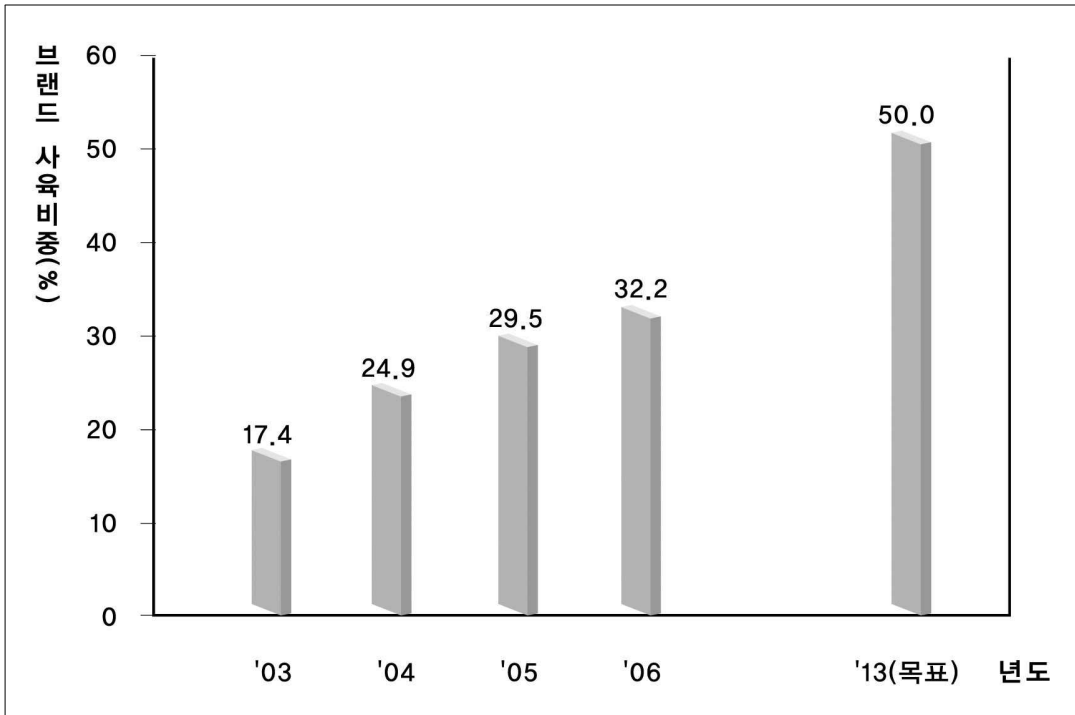
여섯째, 브랜드 전시회 등 우수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매년 9~10월경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및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축산물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통해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관람객이 점차 증가하고 축산업의 가장 큰 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아울러 축산물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매년 조사함으로써 브랜드의 현재 위치를 점검하고 브랜드 경영체들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4) 정책 추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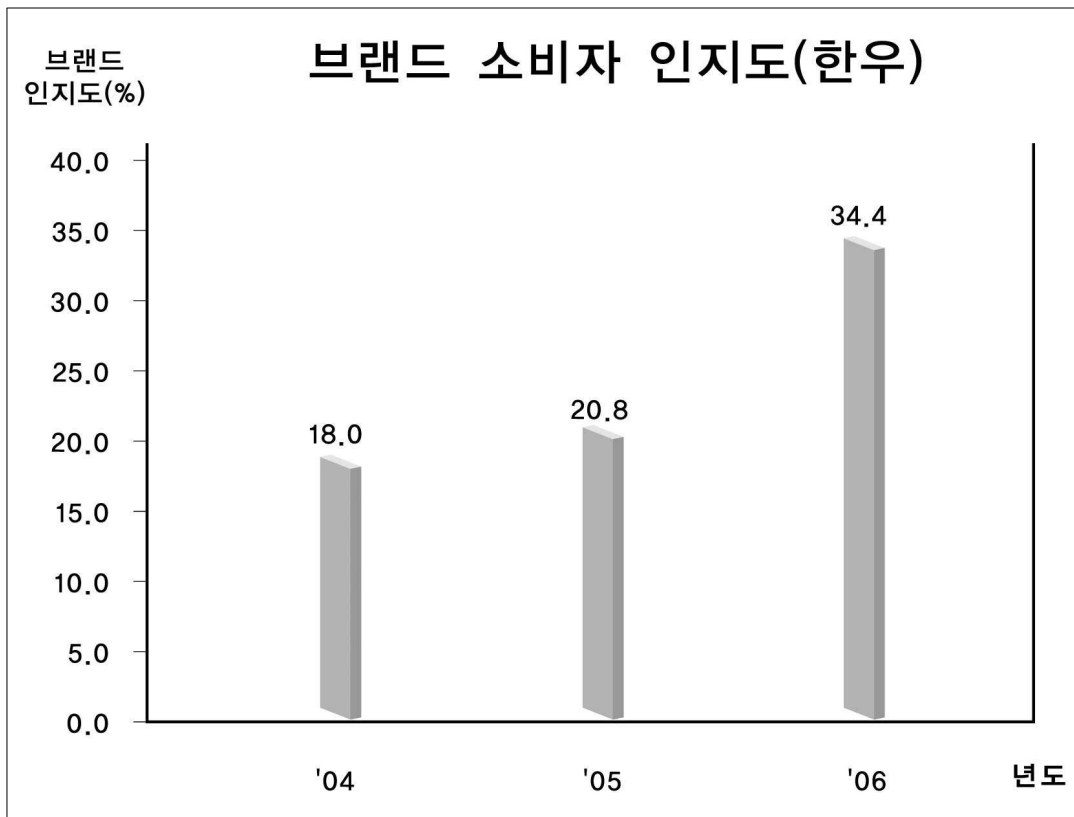
'04년부터 본격적으로 '축산물 브랜드 육성대책'을 추진한 결과 브랜드의 사육비중이 늘어나고 브랜드 경영체의 규모가 확대되는 등 축산물 브랜드의 내실화가 진전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브랜드 육성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축산물 브랜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를 확보해 나가기 시작했다.

한우 브랜드 사육비중



먼저 축산물 브랜드에 대해 농가 및 생산자단체가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과를 나타내었다. 사육규모가 작아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던 브랜드 경영체들이 적극적으로 농가를 규합하여 사육규모를 늘리고 조직을 활성화함으로써 브랜드 사육비중이 한우는 '03년 17.4%에서 '06년 32.2%로, 돼지는 '03년 41.4%에서 '06년 50.9%로 확대되었다.

또한 브랜드 경영체들이 품질차별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농가에게 고품질 제품생산을 독려하면서 '00년 24.8%에 불과하였던 한우 1등급이상 출현율이 '06년에는 44.5%로 확대되는 등 브랜드를 중심으로 품질고급화가 촉진되었으며, 품질 균일성 확보를 위해 개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혈통등록 두수가 한우의 경우 '03년 142천두에서 '06년 236천두로, 돼지의 경우 '03년 77천두에서 '06년 213천두로 확대되는 등 축산업 전반적으로 품질이 향상되는 성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소비자들도 축산물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되었다. 전문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을 통해 '04년부터 매년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04년 18%에 그쳤던 브랜드 인지도가 '06년에는 34.4%로 향상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소비자가 브랜드육과 일반육의 차별성을 인식하여 브랜드육 가격이 일반육에 비해 평균 5.5%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성과를 나타내었다.

브랜드 경영체간 통합 및 광역브랜드 결성 등 브랜드의 규모화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축협조합들을 중심으로 조합간 사업연합 등을 통해 '04년 1개소에 불과하였던 광역브랜드가 '07년에는 11개소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에서도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면서 우수 브랜드 경영체와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 * 광역브랜드 사례(지리산 순한한우) : 전남 동부권 연합사업단 구성, 브랜드 통합
 - 7개 시·군(고흥,곡성,광양,구례,보성,순천,여수)축협 통합
 - '03년 '순한한우' 광역브랜드를 출범하고('05년 '지리산 순한한우'로 변경) 420농가 25천두를 사육, 연간 4천여두를 단일 브랜드로 출하·판매
 - '05.12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 롯데쇼핑(64개소)에 판매
 - 광역브랜드 출하두수 : ('04) 1,083두 → ('05) 3,050 → ('06) 3,709

- * 광역브랜드 현황('07.6월)
 - 한우(9개소) : 순한한우(전남 동부 7개 축협), 한우람(수원등 3개 축협), 한우풍경(양주 등 7개축협), 하이록(인제 등 2개축협), 한우령(강릉 등 4개축협), 청풍명월(청주 등 5개축협), 토바우(당진 등 13개 축협), 참예우(전주 등 7개 축협), 한결한우(고성 등 3개 축협)
 - 돼지(2개소) : 돈모닝포크(파주 등 5개 축협), 해두루(나주 등 10개 축협)

- * 대형 유통업체와 브랜드 경영체간 판매계약 사례
 - 순한한우가 롯데마트·슈퍼·백화점 전점 거래 개시('05.8)
 - 돈모닝포크가 롯데쇼핑 115개점 공급('06.12)
 - 개군한우(삼성플라자), 안성마춤한우(신세계, GS유통), 횡성한우(E마트), 대관령한우(E마트, 삼성홈플러스), 장수한우(홈에버, E마트), 한예들(현대, 신세계, 삼성홈플러스) 등

(5) 향후 계획

그간 추진되었던 축산물 브랜드 육성대책을 더욱 강화하여 축산물 브랜드 비중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7년까지 브랜드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고, 비전과 목표가 분명한 80개 내외의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집중 육성하여 브랜드 사육비중을 한우는 60%까지, 돼지는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년 사업추진실적 평가에 따라 지원되는 우수 경영체 무이자

인센티브 지원은 확대하고 부진 경영체는 자금 회수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브랜드간 통합·흡수를 유도할 계획이며, 브랜드간 통합을 통해 광역브랜드 사업을 추진하는 경영체에는 집중 컨설팅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내실화를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수 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사육규모, 출하물량, 1등급 출현율, 농가별 현황 등 기초자료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브랜드 경영체별 현재상태를 실시간 확인함으로써 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맞춤형 정책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각종 정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시 브랜드 사업 참여 경영체(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브랜드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브랜드 경영체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매망의 확대를 위해 대도시 근교에 산지와 연계한 브랜드육 타운을 조성하고, 브랜드 경영체의 직매장 또는 가맹점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하여 브랜드 판매여건을 확대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브랜드 축산물 판매기반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보다 쉽게 브랜드 축산물을 접하고 이를 통해 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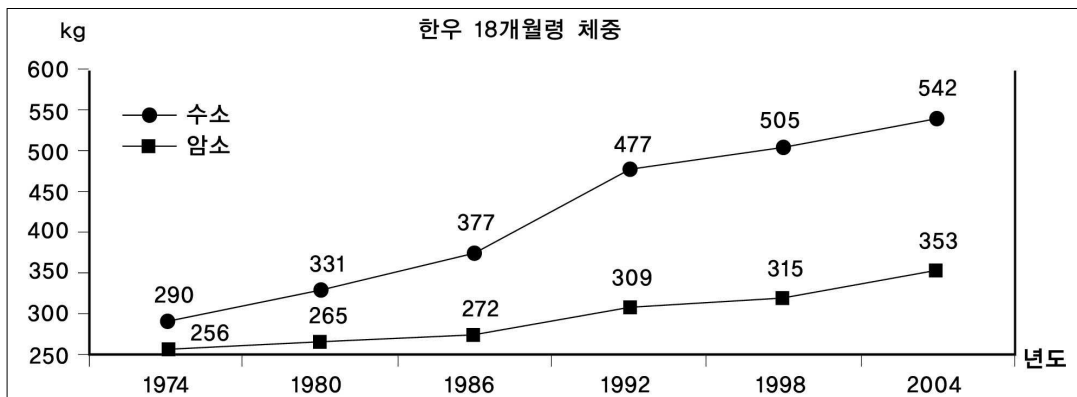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사업은 품질균일성 등 생산분야에서 위생·안전성 및 소비분야 위주로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브랜드를 육성할 계획이다. 도축·가공장 HACCP 운용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대도시 판매비율’ 신설 등을 통해 단순히 지역에서만 판매하는 브랜드가 아닌 전국 규모의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브랜드 전시회 및 경진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소비자의 축산물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라. 가축개량

(1) 도입 배경 및 의의

가축개량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개체를 찾아서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활용함으로써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가축개량의 방법은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 반복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그동안 가축개량 시책은 주요 가축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한우개량은 개량농가를 대상으로 혈통과 능력이 우수한 암소집단을 집중 육성하고 관리하여 검정용 후보 송아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능력검정을 거쳐 보증씨수소를 선발해 왔다. 이렇게 선발된 한우 보증씨수소를 이용하여 우량 정액을 생산, 번식농가에 공급하여 한우개량에 기여해 왔다. 한우 개량농가의 혈통 등록된 우량 암소와 보증씨수소와의 계획교배 등을 통해 꾸준히 개량을 추진한 결과, 2003년도에 실시한 한우개량 추세조사에서 수소 18개월령의 체중이 542.2kg로 늘어났으며, 2001년 이후 연평균 10.1kg씩 체중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개량 추세도

그러나 소규모 한우 개량농가의 경우 관리대상 등록우의 이동이 잦고, 유

전능력 조사와 기록에 관한 기초자료 관리가 부실하거나 오류가 많은 점이 지적되었다. 이를 개선하여 한우 유전능력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아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젓소개량은 유우군 능력검정을 확대하여 검정 참여율이 매년 증가하였고, 그 결과 검정농가의 평균 산유량이 일반농가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났다. 후대검정을 통해 선발한 국내산과 북미에서 도입한 보증씨수소를 이용, 우량 젓소 정액을 생산하여 낙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젓소개량을 더욱 활성화 해왔다.

돼지 개량은 종돈 검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원종돈농장(GGP)과 종돈농장(GP)을 분리하거나 상호 연계하여 종돈수요의 40% 수준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전문종돈업체를 육성하였으며, 자돈·육성돈·성돈의 분리 사육(2-3site)을 위한 돈사 건축비를 용자지원 하였다. 종돈의 경제능력검정 확대와 더불어 정액처리업체가 검정 받은 우수한 씨수태지를 구입하여 인공수정에 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닭 개량은 산란계와 육용계를 구분하여 경제능력검정을 실시하고 종계검정소에 검정용 사료비를 지원을 통해 우수한 종계를 선발하여 양계농가에 공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내 축산업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축산물 수입은 매년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WTO 가입 후에 국내 시장을 넘보고 있었으며, 도하개발 아젠다(DDA)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내 축산업을 둘러싼 이러한 대내·외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으며, 시장개방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건강과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

으며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 또한 커지고 있었다. 따라서, 국내 축산업은 생산성 향상과 함께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한편으로는 축산업을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여러 과제 중에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축개량을 통해 생산 능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가축개량을 저비용·고효율 체계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가축개량 목표를 보완하고 혈통등록과 능력검정을 확대하며 가축의 유전 평가의 신뢰도를 높여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이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또한 한우젓소는 국가단위 개량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돼지·닭은 민간업체, 기타가축은 농가 자율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우 이외의 종축을 대부분 외래품종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각국이 미래식량 자원의 확보를 위해 유전자원의 선점 경쟁과 소유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가축개량·육종을 통해 국내 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종축산업발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였다.

(2)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가축개량은 그동안 중장기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개량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품질 좋은 축산식품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소 개량에 이용할 정액 생산용 보증씨수소를 부계의 유전능력 위주로 선발하고 모계의 유전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개량 효율이 반쪽밖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개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암소의 유전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개량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우는 육질 보다는 체중 증가에 역점을 두어 보증씨수소를 선발해 왔으나 고급육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육질 중심의 개량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우개량 육성사업은 혈통등록 암소를 사육하는 개량농가에 조사사례비

를, 지역축협에는 그 암소의 관리비를 각각 지원해 왔다. 소규모 한우 개량 농가의 경우 사업관리에 인력·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사후관리가 부실하고, 관리조합인 지역축협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암소의 적정 마리수(60천두)보다 크게 늘려(2003년 127천두) 관리하여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업비가 낭비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축산발전기금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의 소장·부장, 직원들 임명이 농협중앙회 전체 인사와 맞물려 전문성·독립성이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농협의 높은 인건비와 과잉 인력으로 기금 부담이 매년 늘어 연간 축산발전기금 결손액이 50~60억원에 달하였고, 농가부담을 고려하여 소 정액을 생산비 이하로 공급하여 수지가 결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여 경영 악순환이 계속돼 왔었다.

이에 따라 한우 개량농가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와 관리조합 전체를 대상으로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자체 특별감사와 시·군의 일제조사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국내 및 캐나다 등 외국 육종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2004년 5월 20일부터 2005년 3월말까지 생산자단체, 대학 및 가축개량기관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T/F 팀) 운영을 통해 검토·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한우개량사업 전반을 재검토하였다.

또한 가축개량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축개량사업소는 시중은행과 비슷한 임금 수준으로 다른 가축개량기관에 비해 고비용 구조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현 조직·경영을 진단하여 제도와 사업 지원체계 개선에 착수하여 2005년 5월 「한우개량사업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대책 수립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와 지역축협의 조직·인력 감축과 사업물량의 축소에 따른 반발과 그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슬기롭게 대처하였으며, 농협중앙회와의 3개월 동안 7차에 걸친 어려운 협의 조정을 통하여 이 대책을 확정하였다.

이 대책 수립에 이어 2005년 10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종축산업발전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생산자단체, 대학 및 가축개량기관의 전문가 등으로 실무작업반(T/F팀)을 구성·운영하였다. 실무작업반은 가금·종돈·유전자원 3개 분야로 나누어 전체회의 2회, 분과회의 5회에 걸쳐 의견조정을 통해 종축생산, 유전자원 보존·이용과 동물유전자원센터(Gene Bank) 설립방안 등에 관한 종축산업발전대책 초안을 마련하였다. 2006년 7월 21일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에서 개최된 가축개량 목표설정 및 종축산업발전대책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움에서 이 초안을 발표하였고, 추가적으로 의견수렴을 하여 2006년 12월 「종축산업발전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2007년 1월 시행하게 되었다.

(3) 정책의 주요내용

한우개량사업의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가축개량사업소 만성 적자를 흑자 운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한우개량사업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한우의 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한 검정방식을 부계혈통 중심에서 모계 혈통의 유전능력을 반영토록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개량의효율을 종전보다 2배 수준 향상시켰다. 이를 위해 2005년 하반기부터 고능력 암소를 사육하면서 한우개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육종농가 육성사업을 새로이 도입·시행하였다.

한우 육종농가는 혈통등록(혈통·고등등록우)이 된 암소 100두 내외를 사육하는 번식농가 중에서 2008년까지 매년 10호 내외 총 40호를 선발하게 되며, 이들 농가에서 비육 성적과 육질 등 유전 능력이 뛰어난 암소 4,000두를 선정, 보증씨수소와 교배시켜 생산된 송아지의 능력을 평가하여 유전능력이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매년 20두씩 선발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선발된 보증씨수소를 이용하여 인공수정용 우량 정액을 연간 약 2백만두분을 생산하여 번식농가에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한우고기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우 육종농가 육성사

업에 참여한 암소와 생산 송아지의 전염병 검사, 발육조사, 혈통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마리당 연간 150천원을 지급하고, 참여 농가에 체중 측정 장비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별도로 육종농가들의 계절번식을 유도하고 등록 암소 관리와 송아지 생산에 투입되는 노력을 보상하는 한편, 육종농가 간에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 보증씨수소를 생산한 농가에 그 씨수소에서 생산된 정액판매액의 10%를 개량장려금(royalty)으로 지급하는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둘째, 한우 개량농가가 관리하고 있는 혈통 등록우는 적정 두수를 유지하면서 육종농가의 근친도를 낮추기 위한 혈통 갱신용 교체축과 일반 한우농가에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번식기반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였다. 소규모 한우 개량농가의 소득 보전효과 등을 고려하여 농가당 최소 보유두수를 등록우 기준으로 3두를 유지하되 등록우 이동 등 사후관리를 내실화하고 사업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방법을 개선하였다.

셋째, 정부로부터 수탁받아 한우 및 낙농가에 우량 정액을 생산, 공급 기능을 맡고 있는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에 대하여 강도 높은 조직 및 경영 혁신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수지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한우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칩소, 흑소 등의 보존, 육종연구 및 기술교육을 강화하였다.

가축개량사업소의 자체 계획을 토대로 조직·인력의 슬림화(Slim)와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감축(33%, △3팀 15명)하였다.

정밀 직무분석을 통해 조직 및 기금부담 일반 사무직 인력 축소

: (종전) 7팀 1원, 129명 → (조정) 4팀 1원, 114명(33%, △3팀, 15명)

* 직급별 축소인원 : 3급(팀장) 4명, 4급(과장) 3명, 5급등 8명

또한 농협중앙회 축산경제에서는 처음으로 가축개량사업소 소장직의 내부 직위공모제 도입을 통해 2년 단위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책임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으며, 이를 외부 직위공모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박사급의 육종전문가 2명을 새로이 채용하여 직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한우·젓소의 정액가격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개체별 유전능력에 따른 차등 가격제를 확대하였다. 또한 가축개량사업소에서 한우 송아지 판매시 경매제 실시와 더불어 북미 지역에서 시험 도입하는 젓소 보증수수소는 모두 국제입찰 방법에 의하여 구매하도록 제도를 바꾸어 수입 증대와 경비절감을 함께 꾀하였다. 그밖에 종축 선발에 있어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정확한 유전정보에 의한 우수 종축을 선발이 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축종별 증장기 개량목표와 세부계획을 담은 「**종축산업발전대책**」은 DDA 협상재개와 미국 등 여러 나라와의 FTA 체결에 따라 축산부문의 개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축산업의 기본이 되는 종축의 생산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한우의 출하체중을 보다 높이기 위해 비육 기준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고 수소의 평균체중도 지금보다 25% 정도 증체된 711kg까지 늘려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등심면적, 등지방두께와 근내지방도 등 육질 점수가 높은 종축을 선발, 활용하여 품질도 고급화하는 방향으로 개량속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2010년 가축개량 목표를 수정 보완하였고 2015년은 새로이 설정하여 고시하였다.

중장기 주요 가축개량 목표

지 표		2005	2006	2007	2010	2015
한우 체중 (비거세, ♂)	18개월령	564.5kg	566.8	580.0	(590.0)	(615.0)
	24개월령			665.0	684.0	711.0
젖소 산유량(305일, 초산우)		8,142kg	8,362	8,400	8,510	8,740
돼지 일당증체량(요크셔)		1,056g	1,027	1,030	1,039	1,054
산란계 연간 평균산란수		320개	312	324	329	337

한우는 2005년도부터 시행한 육종농가의 체계를 견지하면서 젖소에도 한우와 마찬가지로 육종농가제도를 도입하여 모계의 혈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암수를 함께 평가하여 개량성과를 지금보다 2배이상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였다.



젖소개량 체계도



돼지개량 체계도

2007년도는 고능력 보증씨수소를 이용, 44만두분의 우량 젖소 정액을 생산 공급하여 국내산 정액 공급율을 현행 55%에서 64%로 높이고 전체 인공수정 비율도 98%로 향상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하여 두당 산유량을 높이는 대신 사육규모를 줄여 환경오염 부하량을 경감시키고 우유 품질은 유지방 위주에서 유단백 비중을 높여 고급화하는 방향으로 젖소개량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돼지는 원종돈을 보유하고 있는 규모화 된 업체 10개 내외를 검정 종돈장으로 선정, 「돼지개량 Network」를 구축하여 유전정보를 수집·평가해 8~10년 후부터 국내 자체적으로 우량 원종돈을 선발 이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종돈업은 등록기준을 종돈 1두 이상에서 품종별 100두 이상으로 점차 강화하며, 만성소모성 질병 퇴치를 위해 「모든그룹관리시스템」의 도입하여 분만돈사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융자 지원키로 하였다.

닭·오리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성 질병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된 육성 종계용 축사시설 개선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2009년부터 중요리업을 신설하는 한편, 오리 개량에 본격적으로 나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지 수요가 많은 체리베리종과 그리므드종에 대한 원종오리 전문생산농장을 2개소 육성하여 새끼 오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제적으로 유전자원의 선점 경쟁과 소유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동물유전자원 은행(Gene Bank)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멸종위기에 있거나 희소 품종 등의 동물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미래 식량자원 확보 차원에서 동물유전자원의 다양성을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FAO의 동물유전자원관리를 위한 세계전략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는 제1차 세계동물유전자원 현황보고서(SoW-AnGR) 작성과 관련, 우리나라의 재래가축 사육실태조사 실시 결과를 토대로 수립한 동물유전자원 보존 및 이용대책에 따라 동물유전자원관리에 관한 우리나라 국가보고서(Country Report)를 2004년 3월 FAO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FAO 권고에 따라 국내 동물유전자원 관리를 위한 축산법을 개정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FAO 등 국제동향을 파악하여 동물유전자원 국제조약 추진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물유전자원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들 대책 외에 종축개량 촉진과 질병관리 강화를 위해 2003년 12월 26일부터 종축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종돈업체가 종돈과 번식용 씨돼지를 판매할 때에는 종축등록기관으로부터 종돈혈통증명서나 번식용 씨돼지혈통확인서를 발급받아 거래시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토록 의무화 하여 개체 추적·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하였다. 돼지의 육질 개량을 위하여 종돈업체·종돈검정소와 정액처리업체가 보유한 종돈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증후군 유전자(PSS)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 물돼지 발생 유전자를 지닌 종돈의 조기 도태를 유도하고, 종돈의 육량형질 이외에 육질평가를 위한 검정기준을 보완하였다. 또한 재래식 구조로 노후화된 종돈검정소 시설을 검정장비와 방역 소독시설을 갖춘 첨단 현대시설로 신축하여 종돈 검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방역·위생여건을 획기적으로 개

선하는 한편 종돈의 육질검정·평가 체계를 보완하였다.

정책추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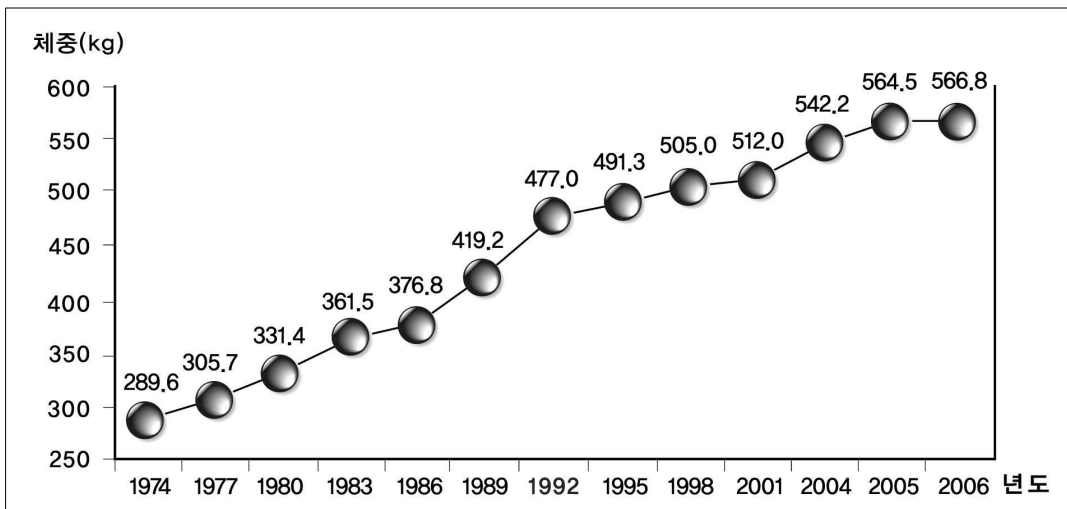
그동안 중장기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유전능력이 뛰어난 종축을 선발, 정액을 생산하여 농가 공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개량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우개량 추세를 보면 체중 증가와 육질 고급화가 뚜렷해졌다. 한우 18개월령 수소 평균체중이 2002년에 522kg에서 2006년에는 567kg(8.6%)으로 크게 향상되었고, 같은 기간중 육질 1등급 출현율은 35.2%에서 44.5%로 9.3%가 높아져 사육농가의 마리당 수취액이 높아졌다. 또한 인공수정에 의하여 생산된 송아지는 자연교배로 생산된 송아지보다 10~20%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주요가축의 개량 추세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잠정)
◦ 한우										
-18개월체중(kg, ♂)	500.5	505.0	507.3	509.6	512.0	522.1	532.2	542.2	564.5	566.8
-1등급 출현율(%)	18.4	15.3	18.8	24.8	29.8	35.2	33.3	35.9	47.9	44.5
◦젖소(연간산유량, kg)										
일반농가	5,882	5,972	6,135	6,539	6,749	7,017	7,102	7,286	7,417	7,584
검정농가(초산우)	7,171 (6,752)	7,252 (6,694)	7,629 (7,032)	8,086 (7,445)	8,364 (7,688)	8,761 (7,962)	8,899 (8,032)	8,935 (8,019)	9,014 (8,142)	9,271 (8,362)
◦돼지(요크셔, ♂)										
-일당중체량(g)	913	929	997	938	962	1,013	1,036	1,030	995	961
◦닭										
-산란계산란지수(개/년)	284	281	299	279	285	297	307	320	320	312
-육용계체중(6주, g)	2,416	1,948	2,195	2,300	2,127	2,285	2,431	2,544	2,615	2,4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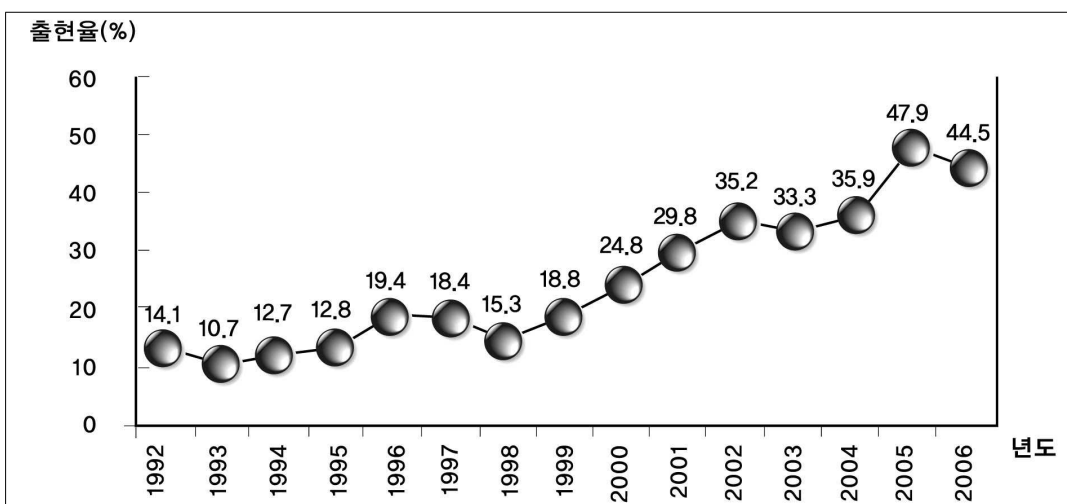
2005년부터 도입한 한우 육종농가 제도가 정착될 경우 앞으로 암소의 유전능력도 평가를 받게 되어 현재의 한우 검정체계의 단점인 당대 검정용 수송아지에 대한 선발강도가 향상되어 발육 및 육질 측면에서 현재보다 획기

적인 개선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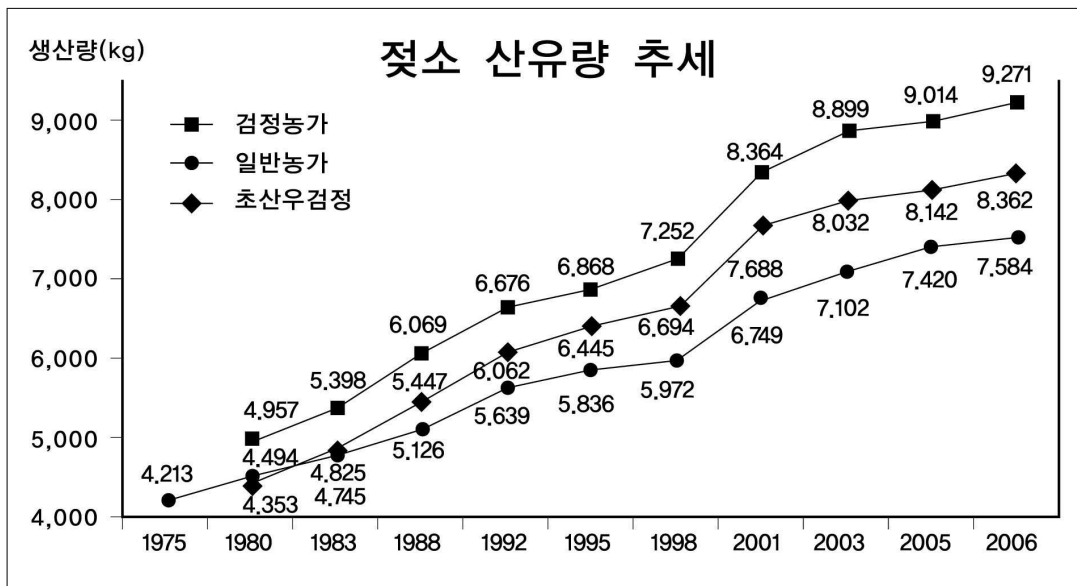
한우 체중(18개월령, ♂) 변화 추세

현재의 한우 연간 유전적 개량량은 12개월 체중의 경우 약 4kg정도이나 한우 육종농가 제도가 정착되면 약 두 배 정도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고로 한우개량의 핵심은 보증씨수소를 선발하여 우수한 정액을 공급하는 것인데, 1970년대 이후부터 가축개량 시책에 힘입어 지난 1974년 대비 2006년도에 마리당 평균 체중이 약 두 배나 늘어났고, 한우 전체 육질 1등급의 출현율이 44.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 1등급 출현율 변화 추세

젖소의 경우도 한우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개량시책 추진에 힘입어 젖소 마리당 산유량이 크게 늘어났다. 2002년에 두당 평균 산유량이 7,962kg 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8,362kg 늘어났다. 2003년도 기준으로 마리당 평균 산유량을 비교해 보면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개량에 참여하는 검정농가의 경우 일반농가 보다 생산성이 25% 가량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젖소 산유량(305일 기준) 변화 추세

가축개량사업소 운영이 매년 50~60억원 수준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으나 조직·경영 혁신으로 경비 절감과 수입 증대를 통해 정액 생산·공급 부문의 수지균형 개선계획을 세워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06년도 가축개량사업소의 축산발전기금 당기순이익 17억원을 실현하여 2002년 60억원 적자 대비 77억원의 수지개선 효과를 거두어 흑자기조의 수지균형을 조기에 달성하게 되었다.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사업수익	9,408	10,356	13,165	15,066	15,744
·운영경비	15,383	15,367	15,824	15,649	14,492
·사업손익	△5,975	△5,011	△2,659	△583	1,252
·특별손익	3	439	722	413	466
·당기순손익 (축발기금)	△5,972	△4,572	△1,937	△124	1,718

기획예산처에서 가축개량사업소의 조직·경영 혁신과 한우개량사업 지원 제도개선에 대한 성과를 심사한 결과, 농림부내에서는 유일하게 2005년도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수지개선 사례로, 2005년도 가축개량사업소의 경상적 경비를 집행함에 있어 원가계산을 통해 각종 수수료 지출을 절약하고 재료 등 구입단가 인하와 불요불급한 운용비 지출을 억제하고 젖소 보증씨수소 도입시 구매방법을 종전 수의계약을 경쟁입찰제로 바꾸어 운영비를 14% 절감하였다. 또한 수입증대를 위해서는 생산비 이하의 정액 판매가격을 보증씨수소의 유전능력과 등급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액 생산·공급체계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관측 경쟁과 적극적인 인공수정 홍보를 통해 정액 판매량을 계획대비 14% 늘려 수입을 증대하였다.

향후 계획

중장기(2010년·2015년) 가축 개량목표에 따라 「한우개량사업 종합개선대책」을 비롯한 가축개량 시책을 보완하고 종축산업발전대책의 세부계획과 일정을 세워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2008년도 가축개량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2007년도 251억원 보다 크게 증액한 425억원을 요구하여 확보할 계획이다.

가축개량 예산지원 규모: (2002) 294억원 → (2004) 223억원 → (2006) 238억원 → (2007) 251억원 → (2008) 425억원 → (2013) 515억원

한미 FTA 대응대책으로 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최고의 한우고기 만들기 15년 프로젝트 구상에 따라 개량부문의 세부 실천계획을 세워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여 관세율 감축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가격 하락을 만큼 한우 가격 하락분을 개량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를 추진하고 경영개선을 이루어 관세철폐 영향을 극복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개량 시책을 통해 2007년에는 한우의 18개월령 수소 체중을 580kg, 1등급 출현율을 48%로 각각 높이고 2013년까지 비육기간을 6개월 더 늘려 24개월령 수소 체중을 700kg로, 1등급 출현율 66% 달성을 통해 한우농가의 소득안정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젖소의 경우도 한우와 마찬가지로 개량을 활성화하여 2007년에는 두당 평균 산유량의 목표 8,510kg를 달성하고, 2013년에는 8,650kg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젖소개량은 산유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유우균 능력 검정 참여율을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60%로 높이는 한편, 검정과 유전평가 시스템을 보완하여 보증씨수소 선발의 신뢰도를 국제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내 종축업 및 정액처리업이 매우 영세하므로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종축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오리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유전형질이 우수한 종오리를 체계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등록대상 종축업에 종오리업을 새로이 신설하기 위해 2008년도에 축산법 정비를 통해 종축업 등록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돼지개량 Network를 조기에 구축하여 검정에 참여하는 종돈장간에

유전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우량 종돈을 선발·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계는 대부분 외국의 대규모 종계회사로부터 수입하여 생산하는 실정인 반면 국산 종계 개발과 능력검정에 대한 투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종계개량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우선 노후된 종계검정소 시설을 연차적으로 신축하여 현대화하고 닭의 경제능력 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양계농가에서 우량 종계 구입시에 활용할 수 있게 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동물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농촌진흥청에 동물유전자원은행(Gene Bank)을 설립, 운영할 계획이다.

가축개량사업 투자 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04실적		'05실적		'06실적(잠정)		'07계획		'07/'06 대비(%)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① 한우개량		15,758		15,268		15,108		16,586	9.8
○한우개량 육종농가 육성	천두	5,473	천두	4,622	천두	4,833	천두	5,242	8.5
- 농가지원비	54	2,691	45	2,431	49	2,506	45	2,542	1.4
- 조합관리비	82 (126)	2,753	75 (165)	2,153	66 (217)	2,272	75 (210)	2,700	18.8
- 검정우(♂)	6	29	5.5	38	5	55			
○한우정액생산 공급	1개소	10,285	1개소	10,646	1개소	10,275	1개소	11,344	10.4
- 한우정액생산		9,909		10,134		9,502		10,596	11.5
- 정액생산시 설장비		376		512		773		748	△3.2
② 젖소개량	천두	5,650	천두	6,713	천두	6,080	천두	7,153	17.6
○유우균능력 검정	113 (177)	2,127	111 (194)	2,119	112 (194)	2,149	160 (195)	2,708	26.0
○젖소정액생산 공급	1개소	3,523	1개소	4,594	1개소	3,931	1개소	4,445	13.1
- 젖소정액생산		3,029		2,973		2,746		3,297	20.1

사 업 명	'04실적		'05실적		'06실적(잠정)		'07계획		'07/'06 대비(%)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 정액생산시설장비		494		1,621		1,185		1,148	△3.1
③ 돼지개량		361		369		2,129		770	△36.2
○돼지검정 등	39천두	157	54천두	174	46천두	129	60천두	170	31.8
○검정시설장비	1개소	204	1개소	195	1개소	2,000 (600)	1개소	600 (300)	△30.0
④ 닭개량		267		230		210		181	△13.8
○닭검정	40천수	140	43천수	210	43천수	210	43천수	181	△13.8
○검정시설장비	1개소	127	1개소	20	-	-	-	-	-
⑤ 종축등록		216		335		104		295	2.8배
○종축등록등	1개소	186	1개소	51	-	16	-	-	-
○품평화박람회	2건	30	4건	284	8건	88	2건	595	3.4배
⑥ 신기술보급 등		47		25		132		70	47.0
○소수정란이식·인공수정	-	15	-	10	-	-	-	-	-
○중돈검정기술교육	-	7	-	15	-	-	-	-	-
○중돈혈통서·연구용역	-	25	-	-	-	100	-	30	△70.0
○축산기술교육	-	-	-	-	-	32	-	40	25.0
합 계		22,299		22,940		23,763		25,055	5.4

※ ① 한우의 ()는 전체 관리대상두수 이며, 유우군능력검정은 자체 사업분이 포함됨

② 돼지검정 시설장비의 ()내는 용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억원은 전용 조치

③ 재원은 축발기금임. 단, 축산기술(농업인)교육은 농특회계임

마. 가축공제

(1) 도입 배경 및 의의

각종 사고 및 자연재해(풍·수·설해) 등으로부터 가축의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재할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정적인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가축공제사업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가축공제 가입대상 축종이 확대되고, 가입률이 상승하는 등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축산농가에서 현 제도로는 경영상 위험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는 불만 등을 제기함에 따라 문제점을 발굴·개선하는 등 가축공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개선대책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축산농가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공제상품의 개발과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가축공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연구용역계획을 수립(2005.4월)하였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2005.5월부터 2006.3월까지 ‘가축공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006년 4월 6일에는 축종별 생산자단체, 농협중앙회, LIG·현대쌍용화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농협 등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축산업계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연구용역 결과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제시된 방안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가축공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축공제 개선대책’을 2006년 6월 15일 마련하였다.

(3) 정책의 주요내용

가축공제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그동안 가축공제 시장에서 농

협중앙회가 독점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오던 것을 민간보험사를 참여시켜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이다.

2006.11월 정부는 민간보험사(LIG 컨소시엄)의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준비기간 등을 거쳐 2007년 6월 1일부터 상품을 시판하고 있다.

* LIG 컨소시엄 : LIG 화재, 현대화재, 삼성화재, 동부화재

둘째, 닭·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피해보장 범위를 설해까지 확대하였다. 가금류의 경우 설해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규모가 커 그동안 공제사업자가 취급을 꺼려왔으나, 개선대책을 통해 가금류의 설해피해까지 보장토록 함에 따라 가금류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공제 보장비율을 다양화하여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공제료의 선택 폭을 확대하였다. 그동안 보장비율이 80~95%로 일률적이던 것을 50%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2006.8월부터 시행하였다.

넷째, 가축공제 가입자의 공제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공제료 분납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동안에는 농가가 가축공제를 가입할 경우 공제료를 일시불로 납입하도록 하였으나, 일정금액(2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연간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축사에 대한 공제료 지원을 신설하였다. 가축공제 가입시 농가가 축사피해를 보장받고자 할 경우 공제료를 본인이 100% 부담하던 것을 2007년 1월부터는 농가가 7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여섯째, 축산농가에 대한 경영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해 가축공제 가입대상

축종을 매년 확대하는 것이다. 2002년도에는 가축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축종이 4개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에는 9개 축종으로 늘어났으며, 2007년에는 타조·거위 등 2개 축종이 추가하는 등 매년 가입축종을 확대하여 2013년까지 15개 축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대상축종 : ('02) 소, 돼지, 닭, 말 → ('06) 오리, 사슴, 꿩, 메추리, 칠면조 추가 → ('07) 거위·타조 추가

(4) 정책추진 성과

가축공제 가입축종 및 피해 보장범위 확대 등으로 매년 가입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민간 보험사가 참여함으로써 가축공제가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갖추게 됨에 따라 농가는 공제사업자의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의 정도에 따라 공제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업체별 경쟁으로 농가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차츰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축사에 대한 공제로 지원과 가금류에 대한 보상범위가 설해 피해까지 확대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부담이 줄어들고, 농가를 위한 실질적인 혜택이 많아져 가축공제 가입률이 더욱 상승될 것으로 기대된다.

		'01	'02	'03	'04	'05	'06
가 축 공 제1)	대상축종수	2	4	4	5	7	94)
	가입마리수(만마리)	231	1,190	2,138	2,840	4,585	5,330
	가입률(%3)	21.7	10.6	19.4	24.1	33.3	40.7
	가입금액(억원)	4,075	7,713	9,767	10,215	12,421	23,401

(5) 향후 계획

2009년까지 농작물·가축·농업시설에 대한 보험제도를 농업재해보험으로 통합·개편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종합적인 재해위험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바. 가축방역종합대책 추진(AI, 소부루세라 등 포함)

(1) 도입 배경 및 의의

지난 2000년 이후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업 등 피해가 막대해지고 있으며,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미국·일본 등으로 광우병 확산 등에 따라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악성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업과 인명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가 회의와 농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된 ‘가축방역대책 실무추진단’ 등의 논의를 거쳐, '04.8.25일 ‘가축방역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동 방역대책은 근본적인 가축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방역관계 전문가단체 등과 협의하고, 관련부처 합동으로 테스크포스(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마련한 종합대책이라 할 것이다.

(2)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국무조정실 주관 정책조정실무 회의시('04.2.10) 현행 방역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의됨에 따라 ‘가축방역체계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04.2.14)하였다.

중점 검토과제는 1)질병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육환경 개선, 2)평시 예방 조치, 초동방역 등 단계별 조지사항 재검토, 3)방역기관별 업무분담 체계화, 4)방역조직 및 인력 확충방안 강구 등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 검역원,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 안성시, 농협 및 방역지원본부 등의 관계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실무작업반이 마련한 개선방안은 ‘전문가 협의회와 농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된 ‘가축방역대책 실무추진단’ 등의 논의를 거쳐 확정 후, 발표한 것이다.

(3) 정책의 주요내용

가축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시설 및 제도 개선

축산농가의 축산업 등록 의무화로 축사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두수를 유도하고, 축사부지 신규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 시범사업 실시후 농업진흥 지역에도 친환경 축사 신축시 지자체장이 농지전용 허가를 쉽게 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축산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축산업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사양방역 및 안전관리 등 농가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한다.

국경검역 강화로 악성 가축질병 유입방지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집중 검역·검색을 위해 검역 탐지견의 검색장소 확대를 추진하며, 인천공항 동물검역 검사대 추가 확보 및 밀수·밀입국자 단속과 피항(避港) 선박 소독 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육류 휴대 및 농장방문 자제 등 홍보를 출국전 집중 실시하는 등 국경검역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해외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는 한편, 몽골, 베트남 등 주변 방역 취약국가에 현지 백신제조 등의 기술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유입기회를 차단한다.

국내 차단방역 철저로 주요질병 예방 및 사전대비 강화

중앙 및 지역별 ‘가축전염병예찰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지역 담당관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체계를 보완하며, 소독설비 대상 확대에 따른 설치기준을 세분화하는 한편, 정기적 소독점검 실시 및 법규 위반 농가는 불이익 조치하고, 농업연수생 등 농장 고용 외국인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책임과 능동적인 역할 강화

‘가축방역특별포상제’를 도입하여 지자체에 대한 평가 및 포상을 실시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등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도화하며, ‘전국 일제 소독의 날’ 및 마을 ‘공동방제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민간방역 확대를 도모한다.

방역예산 중 지방비 부담비율을 확대하여 지자체 방역인식을 제고하고, 방역 우수종돈장 인센티브 부여, 종계장위생관리요령 및 추백리방역실시요령에 의한 종계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남은 음식물 급여 관련 업체·농가 등을 조사하여 급여농장 예찰·혈청 검사 및 병성감정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농가에서 직접 남은 음식물 수거를 금지하여 가축 급여를 금지하도록 유도한다.

광우병 예방대책 및 발생시 대비 사전대책 수립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제도 도입으로 교차 오염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광우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축군에 대한 검사를 유도하기 위해 광우병 위험소별 점수제를 적용시켜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도축소 검사강화에 대비, 충분한 신속진단키트, 충분한 검사시설 및 인력을 확보하고, 변형프리온 단백질이 특정위험물질(SRM)에 함유되어 있어 도축장에 SRM 제거 시설설치 및 인력을 확보한다.

한우 부루세라병 검진체계 확립으로 확산 방지

과거 다발지역, 한우 발생지역에서 30두 이상 농가의 한우 50% 이상 검사 및 발생 농장에 대한 재검진을 강화하고, 사전 검진을 받아 비발생 농장으로 확인시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

농가에서 신규로 입식하는 소는 입식후 일정기간 격리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의양성 축의 색출을 강화하고, 1세 이상 한우에 대한 정기적 검진체계를 마련한다. 질병관리본부와 협조하여 가축과 사람 감염 예방수칙 등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 방역실시요령’을 개정한다.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방지

전국 종오리 농장 및 도축장 출하 오리에 대한 모니터링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분변검사를 강화하며, 사전예방 및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 개정 및 긴급행동지침(SOP)를 제정한다.

애완동물 및 유기동물 관리 강화

일정규모 이상의 지자체에 유기동물보호소를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고,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알정한 시설을 갖추고 등록하도록 제도화하여 적정 처리를 유도한다.

인수공통전염병의 인체감염 차단을 위한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

질병관리본부에 검역원·식약청·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인수공통전염병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예방 및 관리,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질병관리 표준메뉴얼’을 작성하여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시 관계부처 역할을 분담한다.

(4) 정책추진 성과

제도개선

가축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시설 및 제도개선

적정규모의 가축사육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자체 지원 및 상수원 수질보존, 친환경 축산농장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또한, 종축업, 부화업, 계란집하업 및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 농가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는 축산업등록제 및 친환경 축산으로 농촌경관 향상, 환경부담 경감 등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친환경축산직불제 등도 시행하였다.

공·항만 해외여행객 휴대품 검색 및 홍보 강화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농가 및 현지 축산경영자 등에 대한 교육, 공항만 여행자 발판소독조 관리 강화 및 검역탐지견을 위험노선에 집중투입하여 검역을 강화하고, 국제선 항공기 및 선박에서 반출되는 선기 내식 남은 음식물처리 관리, 수입조사료 수출국 소독 등 위생조건 이행확인 및 현물검사 강화, 해외 정보의 신속한 수집을 위한 팀을 구성·운영하여 해외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국내 차단방역 철저로 주요질병 예방 및 사전대비 강화

전염병 의심축 조기신고 및 색출 체계 구축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찰실시 요령’을 제정하였으며, 중앙 및 지역 가축질병예찰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 회 개최, 지역담당관을 지정·운영하여 소독의 날 점검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소독설비의 운영요령 및 소독요령’을 제정하여 소독설비 대상 확대에 따라 설치기준을 세분화하여 적절한 소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취약 시·군 중심의 방역실태 점검 등의 정기적 소독점검을 실시하여 법규 위반농가 등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농축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명단을 파악하여 검역원 및 지자체에서 분기별 1회 이상 방역관리 실태점검 및 방역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책임과 능동적인 역할 강화

지방자치단체별 가축방역시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특별 포상을 실시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였으며,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소규모 농가에 대해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지원 소독을 실시하여 소독효과를 거양하는 등 민간 자율방역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민간방역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민·관 공동 방역체계를 확립하여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 추진으로 선진국형 가축방역 체계로 전환하였다.

폐사가축 방역관리 강화

기존 육골분·유지 제조업체의 랜더링처리시설 일부를 보강하여 살처분 가축을 처리할 수 있는 랜더링처리시설 5개소(경기 1, 충북 2, 전북 2)를 지원하였으며, 살처분 가축의 수거·운반·처리 및 사후관리 방안 등 세부실시요령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농장주·관리인·공무원 등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점검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가를 현지방문하여 외국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농장주 등에게도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대책 등을 교육(195개 시·군)하였으며, 가축방역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수공통전염병과 주요 질병의 특성을 소개한 책자 및 방역수칙을 제작(각 20천부)·배부하였으며, 가축방역관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축질병 발생을 가정한 조치계획 수립·운영

가축질병 발생시 발생농장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동통제 및 소독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CPX 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농가전담 통제초소 및 역학관련 농장·도축장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각종 축산대회·세미나 등 축산관계자의 집회를 금지하였으며, 발생지역 인접지역 등으로의 확산방지를 위해 상황실 및 통제초소 운영을 강화하였으며, 발생시 역학조사 등 초동대응 체계를 보완하여 추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수공통전염병 방역대책

광우병 예방대책 및 발생시 대비 사전대책 수립

동물성 원료의 반추가축 사료 사용금지 규정 이행 실태 점검을 90개 사료 공장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제도를 도입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하고, 사료업체를 대상으로 광우병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광우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축군에 대한 검사를 유도하기 위해 광우병 위험소별 점수제를 적용하였으며, 광우병 정밀검사 전문요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광우병에 감염된 소는 변형프리온 단백질이 특정위험물질(SRM)에 함유되어 있으므로 SRM의 점진적 소비감소를 유도하는 한편, 도축장에 SRM 제거시설을 설치하여 발생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한우 부루세라병 검진체계 확립으로 확산방지

2013년 소 부루세라병 근절을 목표로 감염농장 색출과 농가 예방노력 확립 등 다각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03년부터 소 부루세라병에 대한 감염농장 색출을 본격 추진하여, 발생지역 및 30두 이상 한우 사육농장 채혈검사('03.5), 가축시장 거래 한육우 암소 검사를 의무화('04.6) 하였다. 그리고, 부루세라병 다발 시·군 21개소에 대한 일체검사('04.11~12), 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육우 암소 검사 의무화 및 수집상·중개상 정기검사('05.6)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06.6월에는 「부루세라병 방역 보완대책」을 수립, 강도 높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동 방역대책에는 거래 암소, 10두 이상 한육우 사육농장, 수집상·중개상의 소를 의무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감염소 색출검사를 강화하였으며, 농가의 예방노력 확립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 상한기준을 조정(가축시세의 80%-'06.11, 60%-'07.4)하고 사람 감염 실태조사('06년 6천명) 및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나가고 있다.

* 발생 및 검사 : ('06) 4,498건 25,454두 발생, 감염률 2.2%, 1,258천두 검사
('07.5.) 1,076건 6,371두 발생, 감염률 0.89%, 562천두 검사

이러한 방역대책의 꾸준한 추진 결과, 금년 5월 기준 한육우 농장 감염율은 0.89%로 지난해 감염율 2.20%에 비해 60% 정도 감소한 바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대책 추진

2003년 11월부터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2007년 6월까지 총 50개국에서 발생 보고가 있었고, 이 중 19개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을 충족하여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였으며, 동남아에서 주로 발생하던 AI는 2005년부터 유럽·아프리카·인도 등지로 확산되었으며, 현재는 동남아·아프리카에 상재화 되어 있다.

* 철새 및 가금류 밀수로 인해 유럽·아프리카·인도 등지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

사람 감염은 WHO 집계 기준으로 2007년 6월 현재까지 12개국(중국·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에서 317명 감염, 191명 사망이 보고되었다.

국내에서는 2003년 12월부터 2004년 3월까지 19건, 2006년 1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7건 등 2차례의 소규모 유행이 있었다.

농림부는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가금류 전체를 살처분하는 등 과감한 방역조치를 통해 확산을 방지하였고, 감염이 우려되는 인접농장 돼지들까지 확대 살처분하여 바이러스 변형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2003년 392농가 5,285천마리, 2006년 460농가 2,800천마리를 살처분하였으며, 살처분보상금 등 방역비용이 2003년 1,531억원, 2006년 721억원이 소요되었다.

발생원인 역학조사 결과 철새를 통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따라 국내 종식상황을 각각 동기구에 통보(2004.9.21. 및 2007.6.18)하였다.

인수공통전염병의 인체감염 차단을 위한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

질병관리본부에 검역원·식약청·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인수공통전염병 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에볼라 등 해외 인수공통전염병의 유입 방지를 위해 공항만의 입국장에서 동물검역과 인체검역을 공조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질병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을 작성하여 발생 시 관계부처 역할분담 명확히 하였으며, 실무메뉴얼의 세부 실시요령을 작성하여 인선 시·군 등에 보급하였다.

기타 주요질병 방역대책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

매년 구제역 유입위험이 높은 3~5월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강도 높은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국경·국내방역을 실시하였다.

구제역 유입위험 요인인 수입견초, 여행객 휴대육류 및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집중관리 및 여행객에 대한 사전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남은 음식물 쓰레기 관리, 해외정보 수집 등과 같은 업무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국내방역을 위하여는 매주 수요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방제단(3,885대반)을 동원하여 소독을 지원하고 농가에 찰·혈청검사, 외국 고용자 관리, CPX 훈련, 방역교육 등을 강화하였으며, 특별대책기간 이후에는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방역대책을 강화하였다.

돼지콜레라 방역대책

돼지콜레라 청정화('01년) 이후, '02년, '03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조기차단을 위해 예방접종 정책으로 전환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

국의 사육돼지(모돈·종돈 포함)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예방약을 100% 공급하고 있으며, 모든 농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면역형성을 80% 미만 농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95% 수준의 높은 면역형성율을 유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돼지콜레라 청정화 지역으로 일본에 돼지고기를 수출하였으나, '04년 돼지콜레라 백신항체(LOM주)가 발생함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발생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06년부터 돼지콜레라 백신항체 근절 및 대일 돼지고기 수출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돼지소모성질환 방역대책

최근 돼지소모성질환이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돼지 폐사율이 증가하는 등 양돈농가의 피해가 확산되어 '05년부터 돼지소모성질환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동 질환은 동물, 병원체 및 사육환경간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자문단 운영, 종돈장 및 돼지인공수정센터 위생관리 강화, 양돈농가 순회교육 및 홍보, 돼지 사육환경 개선방안 연구용역, 양돈장 사육환경 시설개선 지원, 친환경 축사표준설계도 개발·보급, 표준진단기준 확립 및 신속진단법 개발 등의 과제를 시행하였다.

방역조직 및 인력확충

중앙 가축방역조직 증원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및 부루세라병 등에 대한 사전예방 및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동물복지 및 공익수의사 운영 등의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직 3개과 86명을 증원하였다.

당초 가축방역과를 2개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방역청 신설 전단계인 동물위생방역본부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었으나, 추진되지 못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 방역조직 및 인력확충

일선 시군의 가축방역 업무 증가 및 가축위생시험소의 부루세라·광우병 혈청검사 등 신규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 보강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조하여 지침을 시달·추진한 결과, 전국 총 234명을 확충하였다.

공익수의사제 운영

가축 방역 및 축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대책 추진과 수의사의 지방공직 기피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의사가 지자체에서 가축 방역업무에 3년간 종사할 경우 병역의무를 대체해 주는 ‘공익수의사제’를 '07년부터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공익수의사에관한법률(안)’을 마련하여 농해위('05.6.23), 법사위('06.2.15), 본회의 의결('06.3.2)을 거쳐 법령을 제정('06.3.24)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07.8.29)한 바 있다.

매년 150명의 공익수의사를 선발하여 군사교육(4주간) 및 직무교육(1주간)을 거쳐 일선 시·군·구,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및 검역원에 배치하여 가축방역, 축산물위생 및 동·축산물 검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익수의사 자격요건은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이며, 농림부 소속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중위 1~3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는다. 일선 가축방역 현장에 배치된 공익수의사는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추진 및 발생시 긴급방역조치, 질병예찰, 원유·도축검사, 가공장 위생관리,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검사,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 질병검사·위생검사 등의 업무 추진을 통해 해외 악성 가축질병의 유입 방지 등의 방역대책 추진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가축방역 업무의 적 정 추진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현행 제1종·2종 가축전염병을 제1·2·3종으로 분류, 인수

공통전염병이 아니면서 사람의 질병과 비슷한 명칭 변경, 면역요법의 제도화,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권한 부여 및 제2종 가축전염병 관리 강화 등이다.

(5) 향후 계획

그 동안 국내방역 뿐만 아니라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축방역 종합대책 추진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질병별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방역조직 및 인력확충을 위해 노력하여 가축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범정부 대처 능력도 더욱 향상 시켜나갈 것이다

특히, 가축방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조직 및 인력에 대한 확대와 증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현재까지 발생한 질병뿐만 아니라 신종 질병에 대한 연구 및 대책 등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사.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1) 추진 배경

'03.12.24일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 감염소 1마리가 확인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국산 소 및 쇠고기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였다. 수입금지 조치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미국의 3대 쇠고기 수출 대상국이었으며, 미국은 우리나라가 전체 쇠고기 수입량의 67%를 차지하는 20만톤 정도의 쇠고기를 수입한 최대의 수입 대상국이었다.

미국은 '04.10월 일본과 향후 일본 국내 승인절차를 전제로 20개월 이하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수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이후 우리나라에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요청하였다. 이 무렵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주변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검토·진행하고 있었다.

미국 농업부(USDA) 펜(J.B. Penn) 차관은 '04.10월 한국 방문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요청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한미 양국 농업부 장관의 면담시 한미 양국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키로 하고 우리정부는 구체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위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05. 2월 개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관련 한미 전문가 협의회를 시작으로 국내 전문가들은 국제기준과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등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1년여 동안의 현지조사와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결정하였다.

(2) 주요 조치사항

'05.2.28일 경기 안양 소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제1차 한미 BSE전문가 협의회 개최를 시작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된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진행되었다.

우리 정부는 '05.4월에 가축위생설문서(2단계)를 미국측에 송부하였으며, 미국측이 회신한 답변서에 대한 검토·분석(3단계) 등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면서 '05.4.19일 ~ 4.22일까지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제2차 한미 BSE 전문가 협의회가 개최하였다. 우리정부는 그간의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내 광우병 위험도 및 방역조치와 쇠고기 안전성 확보 등 주제별로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양국이 쟁점사항들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 교환을 하였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확인을 위해서 '05.5.8일 ~ 5.15일 기간동안에 소비자 단체와 대학교수로 구성된 NGO 관계자가

미국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NGO 관계자들은 미국의 도축장, 사료공장, 비육농장·번식농장, 대학 농업연구소와 미국 농업부를 방문하여 그간의 광우병 관련 조치사항, 미국측의 사료규제 조치나 광우병 예찰 실적, SRM 제거 등 미국측의 광우병 관련 안전조치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수출 쇠고기의 이력추적 가능여부와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 특히 광우병 방역조치 상황뿐만 아니라 HACCP 적용현황, 세균검사 등 일반적인 위생관리 조치 등을 확인하였다. NGO 관계자들은 미국 소비자들이 광우병 발생 이후에도 쇠고기 소비를 특별히 줄이지 않는 등 쇠고기 안전성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한국의 소비자들은 쇠고기에 대해서 특별히 정서적으로 민감하므로 개체식별시스템, 라벨링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미국 정부가 광우병 예방 및 쇠고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양국 정부는 수입위험분석 절차 중 3단계인 미국 답변서에 대한 우리측의 검토·분석이 마무리됨에 따라 '05.6.5일~6.12일 기간에 4단계 절차인 현지조사와 제3차 한미 BSE 전문가 협의회를 미국에서 개최 하였다.

미국 현지조사(4단계)에는 수의과학검역원, 수의과대학교수 등 10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제2차 전문가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이행여부에 중점을 두고 점검하였으며, BSE 실험실, 농장, 사료공장, 렌더링 시설, 도축가공장을 방문하여 사료의 안전관리, 개체식별 프로그램, 폐사축 신고 방법 및 처리사항, SRM 제거의 적정성, 도축장에서의 연령감별 방법 등 미국 현장에서의 광우병 위험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3차 전문가협의회에서는 그간 논의된 내용과 현지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이 광우병 위험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는지를 중점 확인하였으며, 그간 수차례의 전문가 협의 및 현지 조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 이해의 폭이 넓어졌지만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미국 현지조사 기간 중 미국 텍사스에서 광우병 감염소가 추가 확인

(’05.6.24일 최종 확인)됨에 따라 현지 조사단은 미측에 상세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였으며, 미국측이 제시한 정보를 검토한 결과 해당 소는 12세 가량의 늙은 소로 미국의 사료금지조치를 시행한 ‘97.8월 이전에 태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간의 3차례의 한미 전문가기술협의회와 현지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미국의 광우병 안전관리 실태와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결과에 대한 국내 광우병 전문가들의 검토를 위하여 ’05.10.19일 교수, 보건계 및 검역원 등 미국산 쇠고기 관련 국내 광우병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었다.

국내 전문가들은 미국이 영국 등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과거에 생우 및 육골분을 수입한 실적이 있으므로 젖소, 종축 등 늙은 소에서 광우병이 몇 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미국의 광우병 위험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등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관한 제도는 현행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결정할 때에는 국제기준에 비하여 좀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국내 전문가들은 쇠고기의 수입재개와 관계없이 미측에 대한 4가지의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권고사항은 첫째, 모든 동물사료 원료로 SRM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둘째, 미국내 광우병 방역조치의 실효성 검증과 광우병 양성축의 적극 색출을 위해 지속적인 예찰강화 조치, 셋째 미국내 추가 광우병 발생 이후 최근의 자료를 반영하여 광우병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넷째로 소 개체식별시스템의 조기 정착이었다.

이후 11월 29일과 12월 14일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생산자·소비자 단체 및 전문가들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미국 광우병 방역조치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켰으며, 생산자, 소비자 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축방역협의회에서 국내 전문가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2차례 충분히 검토하는 등 정책입안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무렵에 '05.12.12일 일본은 20개월 이하의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합의하였으며, 홍콩도 같은 해 12.29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였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06.1.9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합의하였다.

30개월 미만의 뼈를 제거한 살코기만을 수입허용하는 조건으로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내용의 수입위생조건(안)을 합의하였으며, 입안예고 등을 거쳐 '06.3.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제정되었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주요 내용법 ■

- ◆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뼈를 제거한 골격근육(살코기)만 수입허용
- ◆ 모든 연령의 소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인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를 제거
- ◆ 미국 수출작업장(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은 한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함
- ◆ 미국의 사료규제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98.4월)된 이후 출생한 소에서 BSE가 발생하는 등 미국의 BSE 상황 악화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가능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이후 '06.3.13일 미국 알라바마주에서 3번째 BSE 감염 소가 발견되었으며, 새로 제정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98.4월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3번째 광우병 감염 소의 연령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3번째 광우병 감염소의 나이 확인을 위해서 2차례의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제주도에서 방목중인 육우의 치아상태 비교

와 4.19일부터 23일까지 치아 관련 전문가들의 미국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국내 전문가들과의 검토를 통해서 해당 감염소는 최소 8세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지난 '03.12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시 대한국 수출작업장(도축장,가공장,보관장)이 모두 지정 취소된 바 있는데, 미국측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더불어 한국 수출을 희망하는 미국의 37개 작업장에 대한 수출작업장 승인을 요청하였다. 우리측은 '06.5.6일~5.21일 동안에 검역원 전문가로 구성된 4개팀(8명) 점검단이 37개 해당 작업장 모두에 대하여 광우병 관련 작업장 위생관리실태를 50여개에 이르는 점검항목에 따라 현지점검을 실시하였다. 1차 점검결과에서 37개 작업장 중 7개 작업장에서는 캐나다산 쇠고기 혼합 보관 등 심각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그 후 양국은 여러 차례 보완대책에 대한 논의를 거쳐 미국측이 7개 작업장에 대한 보완조치를 제시함에 따라 8.24일부터 9.4일 기간에 문제가 있었던 7개소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에 대한 국내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9.1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부합되는 36개 작업장에 대해서 한국 수출작업장으로 승인을 하였다.(1개 작업장은 미국측에서 자진 취소)

이로써 미국산 쇠고기는 '03.12.24일 수입이 금지된 이후 2년 9개월 만에 수입이 재개되었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되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다각도의 국내 검역 강화방안이 마련되었으며, 미국산 쇠고기의 뼈 조각 검사를 위하여 X-ray 이물검출기를 이용한 전수검사를 실시키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측에서는 과도한 검역조치라고 강력히 항의하며 X-ray 이물검출기를 이용한 전수검사 중단을 요구하였다.

'06.10.30일 수입재개 이후 최초로 미국산 쇠고기 8.9톤(727상자)이 항공기를 이용하여 인천공항에 도착되었으나 X-선 이물검출기를 이용한 검사에서 1상자에서 뼈 조각 1개가 발견되어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위배로 불합격·반송 조치되었다.

그 후 2차레(13.4톤) 더 쇠고기가 수입되었으나 모두 X-선 이물검출기를 이용한 검사에서 작은 뼈 조각이 검출되어 불합격됨으로써 최초로 수입된 3건 22.3톤의 미국산 쇠고기는 전량 불합격·반송 조치되었으며, 해당 수출작업장에 대한 수출선적 잠정중단조치가 이루어 졌다. 더욱이 3차로 수입된 쇠고기의 정밀검사 결과 다이옥신이 국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으로써 해당 도축장에 대한 수출중단조치가 추가로 이루어졌다.

뼈 조각 문제는 양국의 수입위생조건 해석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서 '07.2월, 3월에 한-미 기술협약과 고위급 협의 등을 개최하여 논의하였으나 양국의 입장을 좁히지는 못하였다. 3차레 수입된 쇠고기가 전수검사서 뼈 조각 검출로 전량 불합격·반송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미국의 수출업자와 국내 수입업자는 미국산 쇠고기의 실질적인 거래를 하지 않게 되어 다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중단되는 상황이 되었다.

미국 상원의원 등은 뼈 조각 발견을 이유로 전체 선적분에 대한 불합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나친 조치라고 항의와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한미 FTA협상과 연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강한 압박을 하였으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뼈 조각 발견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가 있으므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한미 양국의 가장 중요한 현안 사항으로 부각되었다.

이후 미국측은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20조에 규정된 '당해 수출쇠고기'의 해석과 관련하여 전량 반송 또는 폐기 규정은 국제 거래상 통상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샘플검사를 전제로 제정된 것이므로 불합격 여부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전수검사시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한국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07. 3. 8일 미국산 쇠고기의 실질적 교역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검역방법 보완조치를 취하여 향후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

해 X-ray 이물검사기를 이용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뼈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 또는 폐기하고 해당 고기를 가공한 작업장에 대해서도 뼈조각 발견을 이유로 잠정 선적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러한 우리측의 검역보완 조치 이후에 금년 4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어 일부 뼈 조각이 검출된 상자만 반송되는 등 정상적인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던 중 3건 66.5톤이 한국 수출증명프로그램(EV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되지 않은 미국 내수용 쇠고기로 확인되어 해당물량 전량이 불합격 조치되고, 동 제품을 생산한 수출작업장 6개소에 대해서 수출선적 잠정 중단 조치가 취해졌다.

미국측의 내수용 쇠고기의 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내수용 쇠고기 수출과정에서 미국 농업부 식품안전검사청 검사원이 한국 수출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미국 정부는 해당 수출업체에 대해서 수출을 중단토록하고 관련 검사원에 대해서는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권한을 철회하였음을 알려왔다.

또한 미국측은 우리측의 재발방지대책 요구에 대해 36개 수출작업장에 부속된 보관장 42개소에서만 한국 수출을 허용하고 그 외 보관장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정부는 미국측의 조사결과와 우리측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수출선적 중단 조치된 수출작업장 6개소에 대한 조치를 해제하였다.

한편, 5.20일 ~ 25일 기간동안에 프랑스 파리에서 제75차 국제수역사무국(OIE)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OIE 총회에서 미국·캐나다 등 관련 국가에 대한 광우병 위험등급이 평가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OIE 총회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실제로 일부 국회의원과 일부 시민단체 등은 현지까지 원정 출장하여 반대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미국은 캐나다 등과 함께 5.25일 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Controlled BSE risk country)'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미국은 우리측에 현행 OIE 기준에서 정하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뼈 있는 쇠고기를 포함한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 등 모든 품목의 수입허용을 요구하였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청에 대하여 OIE 평가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 중이며, 향후 점검결과와 과학적인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3) 그간 추진 경과 평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검토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으며, 우리 전문가들이 1년여의 기간동안 전문적인 검토를 거친 후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결정하였다.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국제적으로 공인하지 않는 실험연구 결과 등을 인용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반대하였다. 일부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연구 결과 등은 학술적 논쟁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 공인된 것이 아니며, 국제수역사무국에서도 실험동물을 이용한 제한적인 연구결과를 소와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검증받지 못하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었다. 금년 3월 OIE 위생규약위원회에서는 ‘일부 회원국의 주장은 대부분 실험동물을 이용한 연구결과나 기존의 실험동물보다 천배~만배 광우병에 민감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동물을 이용한 결과에 근거한 것이며, 이러한 결과가 소와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과 필연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한 바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가 한미 FTA협상과 같은 기간 동안에 진행되면서 한미 FTA협상과 연계되었다는 논란을 가져왔으며, 특히 한미 FTA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한미 FTA협상의 대표적인 문제인 것처럼 전면에 부각시킴으로써 반 FTA협상 분위기 조성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데 이용하였다.

그 동안 한미 양국은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위생 문제는 한미 FTA 협상과 관계없이 전문가들에 의해 추진된 사안이라고 수차례 밝혔음에도 반대측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FTA협상 반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반복적인 반대 주장이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는 측면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일부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지나친 주장을 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에게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불안감이 안겨지고, 필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을 가져오지 않았나 싶다.

(4) 향후 조치계획

현재는 미국측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청에 우리측은 미국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청에 대하여 OIE 평가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쳐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미국과 구체적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현재는 6.30일~7.8일까지 4단계 절차인 현지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이 사료공장, 도축장·가공장·보관장, 농장, 렌더링 시설 및 농업부 등 관련 시설·기관을 방문하여 미국의 광우병 위험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현지조사가 완료되면 다음 단계인 국내 전문가 검토와 가축방역협의회를 거쳐서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최종 정리할 예정으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에 임할 계획이다.

4 | 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

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1) 도입 배경 및 의의

WTO 및 DDA협상 진전, FTA확대 등 농산물시장 개방 가속화와 대내적으로 국가 전체 경제와 농림어업 부문간 성장격차 확대 등으로 농가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농산어촌 인구는 90년 25.6%에서 '05년에 18.5%로 감소하였고, 농어가 28.6%('04년)가 만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로 전환되어 급격한 고령화로 농산어촌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90%이상이 도시에 집중되는 등 의료·복지·기초 인프라 부족과 소규모 학교 증가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로 열악한 농촌생활여건이 인구감소를 유발하고, 인구감소는 교육·의료등 생활여건을 더욱 악화 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급격히 고령화되는 추세에서 농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도농간 격차 해소를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건설을 위하여 농산어촌의 주민의 삶의 질을 중소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농촌사회 발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범정부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2002년 이후 제정을 추진하여 왔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04.2)하여 제정·공포('04.3.15, 법률 제7179)되었으며, 동 시행령도 제정·공포되어 2004.6월부터 시행되었다.

법 제정은 농산어촌의 복지증진,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교육부·행자부등 관계부처와 한국농촌공사·농협·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하고 15개부처에서 부처별로 작성한 세부추진계획 검토를 통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복지·교육·지역개발분야 전문가, 농어업인단체 대표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5개년 기본계획」(안)을 마련('05.1.21)하였다.

상기 기본계획(안)의 심의·확정을 위하여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05.2)를 개최하고, 기본계획(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 하였으나, 세부추진계획 일부에 대한 보완 검토가 제기됨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협의회('05.2)를 개최하여 전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보완하였으며, 보완된 기본계획(안)을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05.4)에서 상정·논의하여 검토·보완한 후,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05.4) 서면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이를 발표('05.4)하였다.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은 2004년 2월 발표한 농업·농촌 종합계획중 농외소득 분야와 농촌정책 분야를 보다 구체화한 계획으로서, 그동안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 해오던 농산어촌에 대한 각 부처의 정책을 처음으로 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체계화한 중장기 계획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동 기본계획을 토대로 2005년부터 시행대상 과제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마련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매년 6월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또한,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05~'09)」에 따라 각 시도, 시군에서도 지역여건 및 실정 맞춰 「농림

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환류체계 구축을 위해 농어업인단체, 연구기관, 대학교 교수등 전문가로 구성된 「삶의질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단」(’05.12)운영하여 매년 삶의질 기본계획하에 시행하는 부처별 세부사업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삶의질 5개년 기본계획의 추진에 따라 매년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질 만족도 변화를 조사하여 농림어업인이 요구하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삶의질 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있다.

(3) 정책의 주요내용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05~’09)」은 농산어촌을 국민의 20%이상이 거주하는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정주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 활성화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농산어촌의 복지기반 확충을 위해 국민건강·연금 보험료 지원확대 등 도시근로자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보건소 시설·장비보강 등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서비스 기반을 강화하며,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확대,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등 여성과 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우수고교를 집중 육성하고, 농어촌 지역 고등학생의 대입특별전형비율을 확대(3%→4%)하며, 중심학교 위주로 시설을 현대화하고 초·중·고를 통합 운영하는 등 교육단계별 공교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감은 물론, 농림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대상 확대,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등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우수교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농산어촌의 주택 신·개축 자금 융자조건개선, 초고속 통신망 구축, 상하수도 시설 확충 등 농산어촌에 중소도시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한편,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주요 소도읍 및 면소재지를 지역 사회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배후마을은 생활권역 단위로 종합 개발할 계획이다.

농산어촌의 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향토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지역공동브랜드 개발지원 및 농공단지를 향토자원과 연계한 지역특화단지 육성하는 등 향토산업 진흥을 통한 농가소득 증진을 도모하며, 체험관광마을 확충, 1사1촌 운동 확대 등 도·농 교류를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삶의질 5개년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복지·교육·지역개발·복합산업의 분야별 추진과제는 다음<표1>과 같다.

< 표 1 > 삶의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05~'09) 분야별 과제현황



상기 4대중점 추진과제는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통해 5년간 20.3조원을 집중 투융자 함으로써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기본계획상의 투융자계획 재원을 살펴보면 총 투자규모는 20조 2,731억원으로 국비가 11조 5,527억원(57%), 지방비가 8조 1,659억원(40.3%)이고, 민자등 기타는 5,545억원(2.7%)이다. 이중 국비 11조 5,527억원은 119조 투융자계획상의 재원 7조 6,862억원(67%)과 각 부처 중기재정계획 재원 3조 8,665억원(33%)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문별로는 복지 부문에 3조 4,226억원(16.9%), 교육 부문에 3조 1,473억원(15.5%), 지역개발 부문에 11조 2,480억원(55.5%), 복합산업 부문에 2조 4,552억원(12.1%)을 투융자 할 계획이다. 부문별 연차별 투융자계획은 아래 <표2>와 같다.

< 표 2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투융자계획('05~'09)
(단위 : 억원, %)

구 분	2004	제1차 삶의질 향상 5개년 투융자 계획					'05-'09년 합계	'05-'09 증가율
		2005	2006	2007	2008	2009		
총투자소요	24,860	28,140	35,854	41,960	46,101	50,676	202,731	15.8
복지증진	3,098	4,151	6,535	7,123	7,664	8,753	34,226	20.5
교육여건개선	2,149	3,380	6,362	7,071	7,288	7,362	31,473	21.5
지역개발	16,697	16,884	18,895	22,579	25,452	28,670	112,480	14.2
복합산업	2,916	3,725	4,062	5,187	5,687	5,891	24,552	12.1

(4) 정책의 추진성과

첫째,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수립으로 그동안 농어업위주의 정책에서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확대되었으며, 기본계획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시스템을 구체화하였다.

둘째, 범정부적인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구성하여 15개부처(청)에서 시행하는 농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 등을 총괄·조정하여 농촌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농촌지역개발·복지관련 유사·중복사업 중 관계부처 협의 및 장관회의 합의를 거쳐 신활력사업 등 4개 사업이 부처간 업무조정('06.8) 되었다.

셋째, 삶의질 5개년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사)21세기 경제사회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국 2,000가구(농어촌 1,400, 도시 600)를 대상으로 「2006년의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농어촌 주민들은 농어촌 지역에서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하여 44%가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2005년 37.4%에서 6.6% 향상된 결과이다.

넷째,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 활성화 등 4대 분야를 중점추진으로 농림어업인에게 지속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관련 사업시행으로 농림어업인의 건강보험료 부담률은 2002년 78%에서 2007년 50%로 경감되었고, 국민연금보험료는 2002년 1등급 보험료의 33%(62천원) 지원받았으나, 2007년에는 14등급 보험료의 50%(281천원)를 지원받는다.

교육여건 개선관련 사업시행으로 농산어촌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2002년 13개에서 2007년 37개로 늘어났으며, 농산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2002년 150만원에서 2007년 287만원으로 늘리고 2009년에는 326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편리한 농산어촌 생활을 위해 지역개발 추진으로 상/하수도 보급률이 2002년에는 각각 31%/25% 그쳤으나, 2006년에는 42%/40%로 늘어났으며,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률은 (이용가능 가구수) 2002년에는 82% (308만호)에서 2006년 99%(373만호)로 확대되었다.

<표 3>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과제(4대분야) 성과현황

구 분	참여정부 이전 (~'02년말)	참여정부 중간과정 ('04년말)	참여정부 4년후 ('06년말)
1. 의료·복지 확충			
○ 건강보험료 경감율 - 가구당 지원액	22% 94천원	30% 210천원	50% 420천원
○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 1인당 지원액(최대)	최저등급(1등급) 보험료의1/3 62천원	최저등급(12등급) 보험료의1/2 152천원	최저등급(13등급) 보험료의1/2 259천원
○ 건강관리실(누계)	604개소	884개소	1,150개소
2. 교육여건 개선			
○ 영유아 양육비지원	-	973천원	1,333천원
○ 고교생 학자금 지원	632천원	743천원	866천원
○ 대학생 학자금 융자	150만원	223만원	271만원
○ 대학특별전형 모집대 학/인원	181개/10,149명	190개/10,910	192개/13,460명
3. 농촌생활환경 개선			
○ 상수도 보급률	31%	34%	42%
○ 하수도 보급률	24.5%	31.9%	40%
○ 초고속 인터넷망구축률	82%	88%	99%
○ 농촌주택개량자금 금리	5.5%	3~4%	3~4%
4. 복합산업 활성화			
○ 1사 1촌 자매결연 - 교류금액	-	2,404건 36억	14,498건 1,400억원
○ 농촌체험마을 개수	31개	125개	291개

복합산업 활성화 추진으로 1사1촌 자매결연실적은 2004년 2,404건에서 2006년 14,498건으로 확대되어 도농상생의 기반이 조성되고 있으며, 2004년 36억원에 불과했던 교류금액이 2006년에는 1,400억원으로 39배나 증가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향후 계획

앞으로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정책 수요자인 농어촌 주민과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 관계관 및 연구기관·대학교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시로 농어촌주민·전문가·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매년 「농어촌 주민의 삶의질 만족도 조사」, 「농촌생활지표 조사」 실시 및 5년마다 「농림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둘째,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10~’14)」은 제1차 기본계획 보다 종합화·체계화할 계획이다. 우선, 15개부처(청)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지역 사업 중 유사·중복사업에 대하여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 심의·조정으로 부처간 업무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구축 및 농림어업인 삶의질 사무국 강화를 토대로 내실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보다 종합화·체계화된 제2차 삶의질 기본계획은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통해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고, 농산어촌을 국민의 20%이상이 거주하는 산업·생활·휴식공간 구성에 이바지 할 것이다.

나.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경감

(1)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

도입 배경 및 의의

정부는 의료시설의 도시편중,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 경제적 능력의 취약성 및 노인인구의 분포 등을 감안하여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1998년부터 농어촌 주민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DDA 협상, FTA체결 및 쌀 시장 개방 압력, 인구이탈 및 고령화 등 농어촌의 의료·복지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2004년부터 농림부에서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경감하게 되었다.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도입 초기에 조합방식으로 시행되던 의료보험은 1988년부터 농어촌지역에 적용되었으며, 2000년 7월에는 전국민을 하나로 묶는 국민건강보험이 출범하게 되었다. 농어촌 지역가입자들에게는 통합 이전(1998년)부터 열악한 의료인프라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지원해 오고 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개방화와 인구유출 및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어촌의 복지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농특법“이라 함)”을 제정(2004.1.29) 하여 종합적인 농어촌 복지 증진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 법에 따라 농림부는 기존에 보건복지부가 경감지원(22%)하는 것에 더하여 2004년에는 8%, 2005년에는 18%, 2006년 이후에는 28%를 추가적으로 경감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06년에는 총 521천세대의 농어업인 세대가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 받았다.

정책의 주요내용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에 대해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해 주는 제도이다. 이때 농어촌이라 함은 군의 읍·면 전지역과 시의 동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특·광역시내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및 취약지구로 지정된 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준농어촌이라 하여 경감지원의 대상지역이 된다.

경감 대상이 되는 농어민의 범위는 농업·농촌기본법 상의 농업인과 수산업법 및 광업법에서 정하는 어업인 및 광업인이다. 경감 대상이 되는 농어업인은 이·통장의 1차 확인과 읍·면·동장의 2차 확인을 거친 농어업인 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경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책추진 성과

농림부의 농어민 건강보험료 추가 경감지원이 도입된 2004년 606천세대·2005년 603천세대·2006년 521천세대가 경감 혜택을 받았으며, 경감지원율은 2004년 8%·2005년 18%·2006년 이후 28%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 표 4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내용

	'03	'04	'05	'06	'07(계획)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율(%)	22	30	40	50	50
(농림부 추가 지원율)	-	8	18	28	28
연간 1인당 평균 지원액(천원)	102	210	293	420	426
경감 세대수(천세대)	-	606	603	521	532

향후 계획

2006년 5월 고소득자 및 재산보유자에 대해 농어민 건강보험료를 경감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합리적인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개선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정책연구(2006년 6월부터 9월까지), 농업인 단체·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협의 등을 거쳐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를 기준으로 경감 지원을 배제하거나 차등하는 방안을 마련 하였으며, 농특법령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2007.3.2) 하였다. 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경감을 차등하거나 배제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농어민연금보험료 경감

도입 배경 및 의의

정부는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고령 농어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업무는 199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에 편성·지원하여 왔으나 국가재원배분회의에서 주관부처를 농림부로 이관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는 관련 예산을 농림부로 이관하여 지원하고 있다.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국민연금은 1988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군(郡)지역 자영업자 및 농어업인에 대해 확대 실시하였다. 이 중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1995년 1월 5일 개정된 국민연금법 부칙 제5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지원) 등을 근거로 하여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에서 연금보험료 일부를 보조 지원하고 있다.

< 표 5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내용(단위 : 원)

연 도 별	지 원 금 액	최저등급 연금보험료
2000. 6월까지	2,200	6,600
2000. 7월 ~ 2001. 6월	2,940	8,800
2001. 7월 ~ 2002. 6월	3,670	11,000
2002. 7월 ~ 2003. 6월	4,400	13,200
2003. 7월 ~ 2004. 6월	6,600	13,200
2004. 7월 ~ 2005. 6월	7,700	15,400
2005. 7월 ~ 2005. 12월	9,350	18,700
2006. 1월 ~ 2006. 12월	9,900	19,800

2007년도는 표준소득월액 14등급(52만원/월)을 기준으로 동 등급이하(1등급 ~ 14등급)인 농어업인에게는 연금 보험료의 50%를 정률 지원하고, 14등급을 초과(15등급 ~ 45등급)한 농어업인에게는 기준등급인 14등급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정액 지원해 오고 있다. '07년 현재 1인당 연간 보험료의 연간 지원액은 최소 119천원에서 최대 281천원까지이다.

정책의 주요내용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인으로서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에서 지역 임의 계속가입자로 된 자 및 특례적용가입자이다. 지원방법은 당해연도 표준소득 월액 해당 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등급 이하는 해당 보험료의 50%를 정률로 지원하며, 기준등급초과는 기준등급 보험료의 50%를 정액으로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한다.

정책추진 성과

1995년부터 2006년까지 3,694억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2000년

부터 2006년까지 연금 지급이 결정된 478천명이 월 평균 132천원의 연금을 수급하였다. 따라서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은 물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

< 표 6 > 노령연금 지급결정 현황

지급결정년도	농어민이력존재자	
	수급자수(명)	평균지급월액(원)
계	478,048	131,546
2000	248,541	109,894
2001	59,087	123,531
2002	50,060	140,179
2003	35,818	151,724
2004	31,573	165,938
2005	27,221	186,578
2006	25,748	213,731

* 농어민이력존재자 : 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입기간중 농어민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향후 계획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현행 표준소득월액 14등급 기준을 2009년 18등급 수준으로 지원기준을 인상할 계획이다. 그 결과 1인당 연간 보험료 지원액이 2007년 현재 119천원 ~ 281천원인 것에 비해 2009년에는 119천원 ~ 394천원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

(1) 도입 배경 및 의의

농촌의 보육여건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하다.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읍·면지역은 476개로 전체 1420개 읍·면의 33.6%(2006

년)로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또한, 농촌지역의 가구 소득수준은 도시 가계 평균소득수준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FTA, DDA 농업협상 등의 농산물 개방화로 인해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농업인들의 육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타부처(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에게 보육 및 교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을 일정소득 이하(저소득층)에 한정할 뿐 농촌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여 농업인 자녀에 대한 보육수요 충족에는 미흡하였다.

이에, 농림부에서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육여건이 열악하고 육아 부담이 큰 농촌 현실을 고려하여 농업인의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를 일부 지원하는 정책을 2004년부터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2)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시장개방화와 농촌지역의 인구 과소화 및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육아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젊은 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를 목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을 2004년에 도입하였다.

또한, 농촌지역의 열악한 보육여건으로 인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국회 및 농업인단체에서 제기하여 이들에 대한 육아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2006년부터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들의 근거 법령은 「여성농업인육성법(’04.3.5)」에서의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제11조)과 「농림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04.3.5)」에서의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제12조)과 농산어촌농림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제17조) 및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 교육·보호(제22조)에 관한 법이다.

(3) 정책의 주요내용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농지소유규모 5ha미만인 농어가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의 영유아(0~5세, 취학유예 6세)중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이며 타부처(여가부, 교육부)에서 이미 시행중인 저소득층 보육료·교육비를 지원 받는 아동은 제외 된다.

월 지원단가는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70%(만 5세 및 취학유예아는 100%) 수준이며, 해당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자격(조건) 확인후 농업인 계좌에 직접 지급하는 일종의 직불형태의 지원사업이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이며 다른 조건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와 동일하다. 월 지원단가는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35%(만 5세 및 취학유예아는 50%) 수준이다.

(4) 정책추진 성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도입된 '04년에는 월 27천명이 지원을 받았고, '05년에는 월 30천명, '06년에는 월 33천명이 지원받았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도입 첫 해인 '06년에 월 23천명 수준으로 지원 실적을 보였다.

연도별 영유아 양육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천명/월)

구분	2004		2005		2006		2007(예산)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27	14,602	30	19,154	33	21,999	32	26,782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	-	-	-	23	9,613	46	23,961

양육비 지원사업의 성과지표는 농가 총영유아수 대비 지원아동비율로 나타내는데 타부처의 지원을 받는 아동수를 고려하여 약 60%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06년에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도입되어 농가 총영유아수의 57%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연도별 영유아 양육비 지원율

구분	'05	'06	'07 (목표)	비고
·영유아 양육비지원 비율(%)	29	57	60	·농가 총영유아수 대비 지원아 동비율(%) ·지원대상인원에서 타부처 지원 (저소득층)을 고려

(5) 향후 계획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을 보육시설 이용의 유무로 구분할 뿐 두 사업은 사업목적과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 또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두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두 사업의 통합과 관련하여 시설미이용 아동에게 지원하는 지원액을 점차적으로 인상하여 실효성이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라. 대학생 학자금 지원

(1) 도입 배경 및 의의

UR타결 이후 어려움을 겪게 된 농어촌 지원을 위해 농림수산업의 국제경

쟁력 강화 및 농어민 후생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1994년 2학기부터 농어촌 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용자지원을 시작하였다.

경제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게 학자금을 무이자 용자지원함으로써, 농어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등록금 마련 기회를 제공하여 대학진학의 기회를 확대하고, 농어민 교육비 부담경감으로 가계안정 도모를 기대 할 수 있다.

(2)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용자 지원 사업은 1994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을 시작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농림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 학술진흥재단에 위탁하여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학기당 용자한도 100만원(연 200만원)으로 시작한 학자금 용자사업은 2002년 5월 20일 「중산층·서민 생활향상 관계장관회의」에서 학자금 용자규모를 학기당 200만원(연 400만원)씩, 15,000명(연 30,000명)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2004년부터는 학기당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학자금 지원의 근거법령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3호나목(농림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산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지원)이다.

(3) 정책의 주요내용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지원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대학 및 전문대 등에 입학한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등록금을 무이자로 용자해 주는 제도이다. 당해 학교의 매학기별 등록금 한도 내에서 신청한 금액 전액을 지원하며, 신청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는 우선 순위에 의거(1순위 농어업종사자, 2순위 농어촌거주자)하여 지원한다.

정부보증학자금대출 등의 수혜자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고 국가, 보호

자의 직장, 학교 등으로부터 학자금의 보조, 용자 등 이미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다.(단,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차액만 신청 가능)

용자금의 상환은 졸업 또는 수료 1년 후부터 1학기 분의 용자금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상환하여야 한다. 상환방법의 종류에는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 일시 상환 등이 있다.

용자신청은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지원 통합사이트 (<http://scholar.krf.or.kr>) 에 게시된 학자금 신청서에 해당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장학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4) 정책추진 성과

지금까지 용자지원 실적은 2003년 2만명 367억원, 2004년 2만6천명 590억원, 2005년 2만5천명 637억원, 2006년 2만5천명 677억을 지원했다. 2003년까지는 1학기당 100, 150, 200만원 등으로 용자신청에 한도가 있었으나, 2004년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용자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4년 이후 2006년까지 총 25만1천명에게 3,956억원이 지원되어 농어민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지원현황								
구 분	'94~ '00	'01~ '02	'03	'04	'05	'06	'07	합 계
지원인원(천명)	120	34	20	26	25	25	26	276
용자규모(억원)	1,198	478	367	590	637	677	747	4,694
용자한도액 (만원/학기당)	100	150	200	233 (전액)	253 (전액)	271 (전액)	287	170 (평균)

(5) 향후 계획

농림부는 향후 2010년까지 지원 인원을 농어촌 대학생 수의 10% 수준인 3만2천명으로 늘려 농촌출신 대학생에게 무이자 융자의 혜택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2010년 추정 농어촌 대학생 수 : 315천명).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계획

구 분	'08	'09	'10	'11
지원인원(천명)	26	30	32	32
융자규모(억원)	816	979	1,087	1,130
평균지원금액 (만원/학기)	314	326	340	353

마. 농촌지역개발사업 체계화

(1) 도입 배경 및 의의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사업 등은 농림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에서 다양하게 추진하여 왔으나 국가 전체적이고, 유기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성고가 미흡하였다.

즉,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업이 상호연계성이 결여한 채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어 비효율과 중복투자에 따른 낭비 등의 문제가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었다.

농어촌공간조성사업 추진 체계화 방안 보고(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05.7. 21), 유사·중복 균형발전사업 통폐합, 체계화 방안(국가균형발전위원회 '05.7.21) 보

고 등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지역개발정책의 추진체계 일원화 문제가 제기 되어 왔으나, 부처간 이해가 엇갈려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지 못하였다.

또한, 농림어업인 삶의질 점검·평가단에 의한 '05년 삶의질 시행계획 평가에서도 지역개발 분야에서의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지적하고, 사업 통합 등 추진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 바 있었다.

(2)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개발·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체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공동으로 농어촌정책공동 T/F을 구성·추진('06.3 ~ 7, 5개월)하였다.

농어촌정책 공동 T/F는 농림부, 기획예산처의 관계 국장 및 담당 과장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참여하여 다양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농림부는 기획예산처와 공동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동필 박사를 책임연구원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추진('06.4. ~ 11)하고, 실무협의회와 전문가 협의회 등을 개최하였다.

전문가 협의회에서 윤원근 교수(협성대) 등은 사업간 유사·중복 문제를 지적하고 마을단위 사업, 오지·도서면-정주면 기반확충 등의 농림부로의 통합을 주장하였으며, 송미령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의 유사·중복은 별 문제가 없으며, 지방에서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조정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유사중복사업의 체계화 필요성 인식 등을 위해 충북 단양군 한드리 마을 등 현지조사도 실시('06.4.10 ~ 11, 2일간)하였다.

아울러, 재원배분회의('06.4.22) 행자부 업무보고(6.1). 균형발전정책성과점검 보고회의(6.13)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부처간 업무조정 회의를 개최하였다(6.30, 7.7)

관계부처 합동으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처간 사업을 연계·조정하는 과정에서 부처의 사업을 이해하고 범부처적으로 협력함으로써 향후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정책의 주요내용

부처간 업무조정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장관회의('06.8.29)에서 행정자치부의 오지종합개발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신활력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의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농림부로 마을하수도사업은 환경부로 이관하는 등 부처간 업무조정을 실시기로 합의를 하였다.

<표 1> 농촌지역개발·복지 관련 농림부 사업조정·이관현황

- ◇ 오지종합개발사업 : 행정자치부 → 농림부
-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 행정자치부 → 농림부
- ◇ 신활력지원사업 : 행정자치부 → 농림부
-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보건복지부 → 농림부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국가재원배분회의('06.4.22)에서 이관 결정

이러한 부처간 이관 사업에 대해 농림부는 기존사업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의 사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촌지역 개발사업 체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4) 정책추진 성과

이관된 사업은 농림부에서 추진중인 유사사업과의 조정과 통합을 전제로 한 농촌지역개발 체계화 방안은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원칙하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첫째, 기존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통합 지침 제정·운영 및 지역개발사업은 생활여건 개선, 산업진흥 사업은 소득개선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유사사업간 국고보조율, 사업비 등 지원기준을 단일화할 계획이다.

둘째, 기본수요(National minimum) 충족 지원을 위해 모든 농촌을 대상으

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본 수요를 연차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촌지역의 기본수요 수준을 조사, D/B로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농촌정주체계에 따른 선도거점(Leading force) 형성 지원을 위해 농촌정주체계는 균형발전 및 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 시책에서 제시된 국토공간체계의 틀내에서 「소도읍·중심면 소재지-소권역-마을」로 구분할 계획이다.

농촌정주체계에 따라 선도거점 지역을 지정하고, 선도거점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고품질 교육·의료·복지·문화서비스 이외의 기본수요 및 핵심서비스를 자족토록 할 것이다.

넷째, 새로운 콘텐츠 발굴·추진을 위해 농촌지역개발 분야는 농촌 주거향상을 위한 대책 추진 및 새로운 공동체 활성화, 농촌경관 보전·관리와 농촌 산업진흥 분야에 향토 자원 발굴·권리화 및 D/B 구축할 계획이다.

다섯째, 농촌 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시·군 기본수요 수준 조사, 지역개발 사업평가 및 사업 대상지 선정 등 농촌 지역개발 및 산업진흥 관련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며, 시·군의 지역개발·산업진흥에 관한 중장기 농촌종합개발계획을 삶의 질 및 지역개발특별법에 의한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5) 향후 계획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관받은 사업은 지자체의 행정혼란 등을 고려하여 '07년도에는 기존방식으로 추진하고 '08년부터 농림부의 기존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즉, 신활력사업, 향토산업육성, 지역특화사업은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오지개발촉진사업과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은 농촌정주여건개선사업으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촌주택정비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종합마을개발사업, 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산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통합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등 법령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위원회 사무국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여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연계·조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림부의 계획을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중기 재정운용 방안 마련을 위해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연구중이다.

행자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한 사업들과 기존 농림부사업의 연계방안 모색 및 향후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과제 발굴이 그 골자이다.

'07.2.2일 관계부처(기획예산처, 재정부, 농림부), KDI, KREI 관계자 등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였으며, 지역개발, 산업활성화, 주거환경개선, 지역개발계획 등에 대한 분야별 발표 및 토론회를 5회 개최하였다.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08년도 국가재정배분회의에 보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바.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1) 도입 배경 및 의의

우리나라 농촌지역개발은 1970년 새마을운동을 계기로 주택개량, 취락구조개선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정주기반확충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농림부, 행자부 등 부처별로 추진하여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하였다.

그러나, 생활환경이 개선된 반면에 미흡한 점도 있었다. 첫째 나눠먹기식 분산투자로 인하여 효율적인 정비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웠으며, 둘째 중앙 정부 차원의 농촌공간에 대한 장기개발계획의 부재, 타 사업과 연계성 부족 등 지역특성에 따라 수립되어야 할 계획적 개발체제 확립이 미흡하였고, 셋째 농촌의 농촌다운 특성과 식량생산을 위한 공간 이외의 복합산업공간, 쾌적한 전원주거공간 및 친환경적 국토공간 등 농촌의 다원적인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되지 못했다는 점, 넷째 변화하는 정주체계 및 도시민의 필요 등 농촌수요에 대응할 만한 정책계획이 되지 못하였고, 다섯째 대상지 선정,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등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지역 주민의 참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농업소득의 하락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경제활동의 축소는 지역 경제에 전반적인 쇠락과 함께 인구의 감소를 초래하는 등의 악순환을 지속시켰다. 실제 전국 면단위 인구는 1980년 30.1%에서 2000년 12.1%로 대폭 감소되었고, 또한 1990년 농가소득은 도시가구의 97%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는 81%, 2005년도에는 78%로 도농간의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즉 우리농촌이 당면해 있는 위기적 문제 상황은 농촌지역사회가 점차 노령화, 과소화되는 인구변화와 함께 농업소득만으로는 생활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기초생활시설의 부족과 낮은 수준의 의료, 교육, 문화, 복지 등 전부문에 걸쳐 도시와 심각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 농촌 지역은 삶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촌지역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상향식 사업계획,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의 잠재력 있는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 계획,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종합적 계획 등 새로운 농촌개발방식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2)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본 사업은 농림어업인들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산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림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4년 4월 제정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따라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사업대상지 선정은 지역의 주민이 지역의 잠재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예비계획서(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신청하며, 예비계획서를 근거로 예비타당성조사와 외부전문가의 현장평가를 거쳐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며,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예비계획서를 근거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전문가를 투입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각 분야별 외부전문가의 자문회의를 거쳐 계획을 구체화하고 지역주민 공청회를 통하여 계획을 확정하는 등 예비계획수립, 기본계획수립, 세부설계, 사업시행, 시설관리·운영 등 전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개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사업시행초기 처음 시도하는 권역단위 상향식 사업으로써 지역주민의 사업에 대한 인식부족과 지도자의 부족, 지자체와 주민의 역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민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등 권역발전 방안에 대하여 합의 도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장기 농촌지역개발인력육성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향후 시설물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지자체공무원 등 사업 참여 주체의 지역개발역량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 등을 통해 기존의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고 지역역량을 개선하고 있으며 현재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선진지 견학과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체 활동에 대한 욕이 조성되는 등 긍정적인 사업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005. 12. 21. 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방안 국정과제보고회의시 소도읍·중심면의 농어촌 중심지 역할 강화에 대한 보고를 통해 도시, 소도읍의 서비스 권역외의 지역으로 중심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면소재지(중심마을)를 군당 2~3개소 육성하는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포함시켜 200개소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후 확대·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따라서 2006년 준비과정을 거쳐 2007년 각 도별로 1개 권역씩 8개 권역을 선정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에 참여한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및 토론회를 거쳐 사업대상지 선정, 기본계획수립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마련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정책의 주요내용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동일한 생활권, 영농권, 수리권 등으로 같은 특성을 가지며, 주민간 유대감을 갖는 1개 법정리 이상의 수개마을로 구성되는 소규모 권역을 설정하여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은 동일한 생활권·영농권 등으로 동질성을 가지며,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권역 단위로 개발하며, 지역주민과 지자체, 지역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으로 추진,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는 친환경적인 개발, 지역의 잠재자원을 특성화하여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하는 것이며, 사업 초기에는 시범

사업을 통해 추진체계를 정착시킨 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기초생활환경 정비, 소득기반확충, 지역사회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및 지역혁신을 위한 소프트웨어 관련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사업의 특징은 첫째, 계획수립에서부터 사업시행 등 전과정에 지역 주민, 행정기관, 전문기관,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향식개발사업을 채택하고 있고, 둘째, 지자체와 지역의 유관단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로의 역할분담과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고, 셋째, 지역의 잠재자원을 발굴하여 주민소득기반과 연계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넷째, 권역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생활환경, 문화복지, 도농교류기반, 경관개선, 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S/W)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다섯째 권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마을리더 및 주민교육, 마을기획 및 컨설팅, 시설물운영·관리프로그램개발, 홍보·마케팅, 정보화기반구축 등 지역역량강화사업(S/W)을 병행추진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사업추진을 1단계(1~3년차)와 2단계(4~5년차)로 구분하여 추진하며 1단계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등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사업비 지원은 마을수, 가구수 등 권역의 규모에 따라 지원한도를 40~7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하게 되며, 기초생활시설, 문화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은 전액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며, 마을주민 공동(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 운영되는 소득기반시설은 보조 80%, 주민 자부담 20%로 구성된다.

(4) 정책추진 성과

2004년 처음 사업이 시작된 이후 2006년 말까지 96권역은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었고, 56권역은 사업이 착수되었으며 이중 2004년 선정된 36권역

은 2005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07년에 1단계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이다. 따라서 아직 사업추진 성과를 거론하기는 어려우나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발전문제 논의에 적극 나서는 등 주민참여의식이 높아졌다.

자발적인 교육 참여, 선진지 견학 실시 등 학습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새마을 운동 이후 쇠퇴하였던 주민 공동체 의식이 부활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을 통한 마을간 대화가 활발해지고, 권역 간에 자발적인 자매결연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 미흡했던 주민 참여형 상향식 사업개념에 대해 전문가, 지역주민 및 지자체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지역개발 전문가 Pool 구축과 계획수립 기법이 향상 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삶의질향상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의하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사업 대상지 선정, 계획수립, 사업시행 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관련 행정기관과의 파트너십이 폭넓게 작동되는 장점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그 예가 많지 않은 사례이다. 사업주체 및 참여자의 파트너십을 통해 적절한 사업선정, 주민의 추진 역량강화, 사업의 홍보 등 정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사업내용을 미리 특정하지 않고 지역에서 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 추진 체계를 유지하며,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 농촌경관 보전 등 지역자원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다양한 사업과, 주민의 개발역량을 높일 수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권역 사무장 제도는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다만 일부지역은 주민의 추진역량이 미흡하거나, 지역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도 선정되었으며, 일부에서 타당성이 높지 않는 공동사업의 반영, 마을공동수익사업의 운영방안의 불명확 등은 앞으로 보완되어야할 과제로 평가되어 이들 문제점을 평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상당한 개선효과를 거두고 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추진상의 문제점, 대책 및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5) 향후 계획

주민참여 상향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기술 지원을 강화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사업 성공의 핵심인 지자체 및 주민 즉 지역의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사업활성화를 위한 단기추진계획으로써 지자체, 농촌공사 및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역량강화와 사업추진 프로세스별 구체적인 기간을 설정하여 철저한 공정관리, 우수사례집을 발간 등 홍보 강화와 시범 모델권역을 집중 육성하고, 사업추진 동기부여를 위해 우수권역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1단계(1~3년차)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사업추진동기를 부여하고 평가결과를 Feed back하여 지속적으로 발전방향을 도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외부전문가와 권역 사업주체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의 발전방향, 현안 사항등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이 되도록 할 것이다.

사. 도농교류 활성화

선진국에서는 농산어촌 체험관광이 도시민의 여가 수요를 충족시키고 농산어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사회를 유지·보전하는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발달되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국민소득의 증가와 교통의 발달, 주5일 근무제 및 수업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국내관광과 농산어촌 체험관광 수요 증가, 1

1사1촌 자매결연 등을 통해 농촌 인구감소·고령화, 도·농간 소득격차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농촌의 기능과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기존의 농업정책 이외에 농촌을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도농교류정책이 필요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2년에 ‘도시자본의 농촌투자유치대책’ 수립 및 농촌투자유치센터 설치, 2004년에 ‘농업·농촌종합대책’ 수립,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가꾸기 종합대책’ 수립과 한국농촌공사내 도·농교류센터 설치, 1사1촌 운동 시작 등 정부차원의 본격적인 도농교류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2005년에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에 근거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대책의 핵심 중의 하나가 농촌지역 개발 및 복지 정책의 강화 등을 통해서 농촌을 농촌다움과 쾌적함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온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삶의 공간, 휴양공간, 친환경·신산업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도시민의 농산어촌 체험관광 수요 창출, 농촌주민 인적역량강화, 농산어촌 체험·휴양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 균형발전하고 상생하는 장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정부는 초기단계에 있는 도농교류를 더욱 촉진하고 농촌마을 소득증대와 활력증진, 도시민의 여가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 등 도·농 상생을 구현하기 위한 도농교류활성화 시책 추진하고 있다.

도농교류 수요촉진은 농촌체험관광 수요창출과 국민적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공모전 형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산어촌고향에서 휴가보내기 캠페인, 도농교류페스티벌, 그린포럼 개최, 농촌관광포털사이트 운영을 통해 도시민의 여가·휴가를 농촌으로 유도하여 농촌지역사회 활성화 및 도농교류 사회적 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포상을 통해 마을주민, 기업체, 도시민, 청소년 등에게 농촌가치홍보 및 대국민 동참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도농교류 유공자 정부포상,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나의 농촌문화체험기, 내고향 잠재자원개발 콘테스트, 농촌어메니티 환경설계 공모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사업 지원 사업으로는 체험객의 안전사고 대비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 및 마을사무장 채용지원과 전문가 그룹의 컨설팅 연계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육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같은 주민참여형 농산어촌지역 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력이 중요하므로 정부에서는 지역 리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농촌 지역개발 중장기 인력육성 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다양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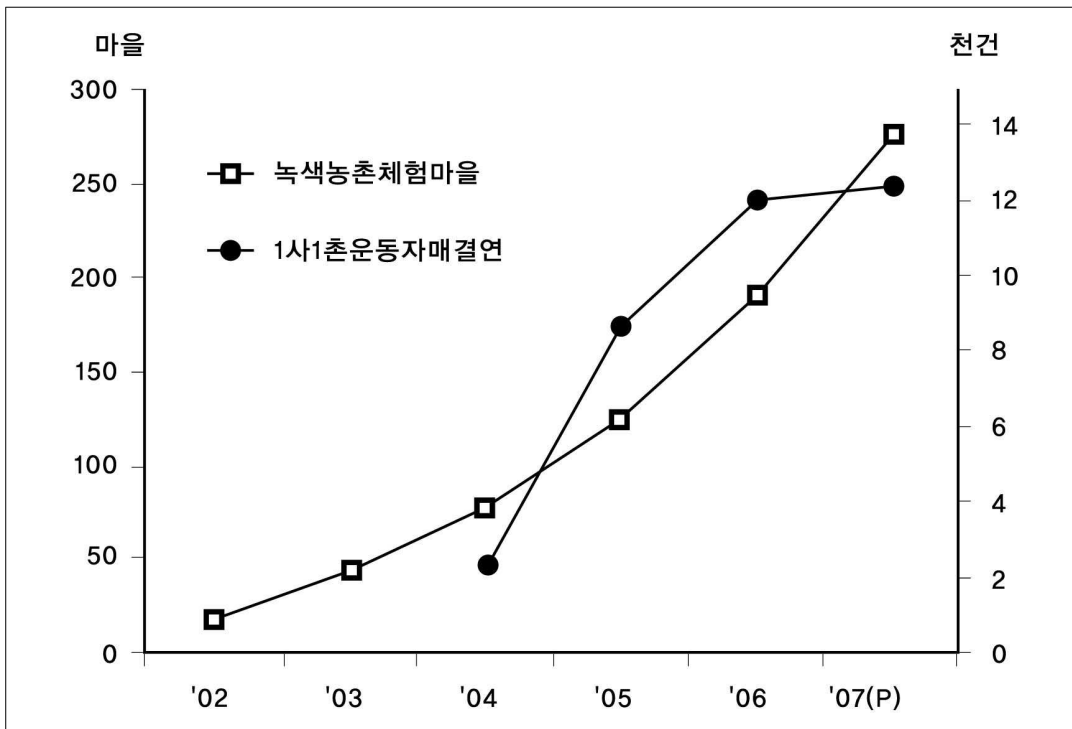
한국농촌공사 도농교류센터는 농촌체험관광 홍보·마케팅,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 교류프로그램 개발, 농촌지역개발 인력교육 사업 등을 전담하고 있다.

1사1촌 운동은 한·칠레 FTA 체결에 따라 어려워진 농업·농촌을 위해 농협·전경련 등 기업체·단체와 농촌마을간 교류를 통한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04년 하반기부터 민간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1사1촌 운동을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을지도자 등 교육·홍보지원, 제도적인 기반마련을 마련하고 있다.

'04년에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기업·단체의 마을방문실적이 평균 1회 미만이었으나, '06년에는 3~4회로 확대되었다. 교류금액도 '04년 36억원에 불과했으나 '06년에는 1,400억원으로 39배나 증가하였다.

1사1촌운동은 대내적으로 14천 여개의 도시소재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농업·농촌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일본, 중국, 베트남 등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등 국위선양에 기여하고 있다.

	단위	'02	'03	'04	'05	'06	'07(p)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1)	마을 (누계)	18	44	76	123	190	274
◦ 체험마을 방문객수	만명	-	-	93	99	134	154
◦ 체험마을 관광매출액	억원	-	-	74	111	183	210
□ 1사1촌운동 자매결연2)	건 (누계)	-	-	2,404	8,677	12,100	12,500
◦ 교류금액	억원 (누계)			36	418	1,400	1,610



도농교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농교류촉진법 제정하고 있다. 체험·휴양마을의 음식제공, 공동숙박 등 특례마련과 도시민 현장체험, 학생들의 농촌체험교육 근거, 농촌체험지도사 등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등 근거가 마련된다.

아. 농촌체험관광(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1) 도입 배경 및 의의

DDA 출범 등 개방확대로 농업부문의 경쟁은 한층 심화될 것을 전망하였으며, 농가소득도 농가교역조건 악화 등에 따라 근본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도농간 소득격차는 지속적으로 차이가 났으며, 고령화와 가구원 수 감소로 농외취업을 통한 소득증대로 제약이 있었다.

한편, 국민소득증가와 주40시간 근무제 실시 등으로 국민의 여가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관광형태도 유명관광지 위주의 대중관광에서 가족중심의 체험관광·휴양 등 대안관광 형태로 변화되는 추세이며, 농촌의 생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 증가, 웰빙(well-being)생활 중시, 고품질의 안전농산물과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따라 농촌체험관광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따라서 늘어난 관광수요를 농촌관광으로 흡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여건 준비를 통해 침체된 농촌의 기능과 활력회복의 전기로 활용할만한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인구감소, 고령화, 도·농간 소득격차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농촌의 기능과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02년부터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과 소득 증대,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등을 위해 마을단위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1999년에 제정 발표된 「농업·농촌기본법」은 농업·농업인·농촌의바람직한 미래상 정립을 목표로 이 3가지 요소의 유기적인 관계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농업은 농산물 생산을 통한 생산과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경영주체와 함께 소득균형 실현을 하는 것이고, 농촌은 도시의 배후지원기능을 가지며 고유한 전통과 문화

를 보존하는 산업·생활공간으로 각각의 위치를 부여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법에서는 농업·농촌의 다면적인 환경 기능의 중시와 농촌의 개발·복지에 있어서 농촌관광을 중요한 추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2001년 우리부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 대책’을 발표(8.30)하여 농어를 고소득,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BT·IT를 활용한 성장잠재력 확충, 선도농업 인력 및 수출 전략 품목 육성 등 경쟁력 있는 품목에 정책지원을 집중시켜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며, 농촌관광을 도입한 농의 소득 대책과 함께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자본의 농촌유입방안(2002.2)을 통하여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도농교류를 확대시키는 방법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였다. 또한 농촌관광의 수요를 예측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진행되었다.

농촌관광 수요 예측

(단위 : 천명)

구 분	2002	2005	2008	2011
국내관광 총량 ¹⁾	404,648	507,436	536,876	605,968
농촌관광 총량 ²⁾	36,126	67,507	100,123	145,955
농촌관광 구성비(%)	8.9	13.3	18.6	24.1

1) 문화관광부,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2000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아울러 2003년 우리부 농어촌투융자평가대책 보고서(10.16) 농촌을 농민들이 잘 가꾸어서 도시민들에게 휴양지를 제공하고 도시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보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다. 이에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한 작업단이 구성(10.24)이 구성되었고, 현장 위주의

대책수립을 위해 국내외의 다양한 현장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농촌관광과 도시민·도시자본 유치의 주요내용으로 한 「도시민과 함께하는 농촌가꾸기 종합대책」이 마련('04.1)되었다.

2004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지역개발에관한촉진법'에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3) 정책의 주요내용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마을주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방문객들이 농촌체험관광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마을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마을경관 및 컨설팅 등 S/W 관련분야 등 조성을 지원(마을당 2억원)하고 있다. 2006년까지 190억원(국고)을 지원하여 전국에 190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였으며, 2017년까지 850개소를 조성할계획이다. 또한,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간 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에관한통합지침'을 마련('04.11월)하여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농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후지원을 하고 있다. 도시민의 방문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발생에 대비한 2006년부터 보험상품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마을대표의 업무부담 경감과 체험프로그램개발 등을 전담하는 마을사무장 채용비용을 2006년부터 일부 지원하고 있다.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해 나갈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05년도에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대책'을 수립하여, 마을리더·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에서 전문가로부터 수시로 자문을 받

을 수 있는 '1인1촌 전문가 자문지원 시스템'을 '05년부터 구축·운영하고 있다.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 및 수요 창출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TV, 신문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농촌관광포털사이트(www.greentour.or.kr) 운영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농산어촌체험박람회, 2007 도농교류페스티벌, 여름휴가 농산어촌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농촌문화체험기 공모전, 올해의 도농교류상 시상, 농촌체험행사,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 등 다양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등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4) 정책추진 성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에 190개의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휴양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 형성을 복원하고,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마을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등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이해와 향후 농촌으로 이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녹색농촌체험마을 : ('02) 18개소 → ('05) 123 → ('06) 190

또한,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육성의 중요성 및 관련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 되었으며, 마을주민 및 지자체 공무원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와 의욕적인 마을리더에 의한 주민 단합과 행정의 적극적인 뒷받침으로 마을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노령층의 체험활동 참여 및 주민 고용 창출로 마을의 활력 증가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결연행사 등으로 주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농촌의 변화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도농상생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일부 성공마을을 중심으로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가소득증대 및 농촌활력 회복의 전기가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실천, 1사1촌 자매결연 등 도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를 지속시켜 안정적 농산물 판로 개척 및 직거래를 통한 유통비 절감으로 농촌체험마을의 방문객 수와 관광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농가소득 향상이 나타나고 있다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등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촌소득 증대 등 농촌지역 활력 회복의 전기가 되고, 아울러, 농촌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 도농상생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관광매출액 : ('02) 26억 → ('04) 74 → ('05) 111 → ('06) 183

방문객 수 : ('02) 157천명 → ('04) 928 → ('05) 994 → ('06) 1,343

아울러, 방문객 유치를 위한 마을경관, 상·하수도, 주차장, 민박 등 마을 환경 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

(5) 향후 계획

녹색농촌체험마을은 향후 '17년까지 850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한 농촌체험·휴양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등 농촌체험관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가칭)도농교류촉진법□□을 제정중('07. 7월 법제처 제출예정)에 있으며 이를 연도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기 조성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체험마을을 정비하여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

아울러, 농촌체험마을에 대하여 마을사무장채용지원, 마을 보험가입비 지원, 1인1촌 전문가 자문(컨설팅) 지원, 다양한 홍보 지원 등 지속적인 사후 지원으로 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1) 도입 배경 및 의의

도시화·산업화·개방화가 진전되고 도시와 농어촌간 불균형 성장정책의 결과로 농어촌의 정주여건은 상대적 악화되고 있다. 의료인프라는 90% 이상(종합병원 93%, 의료인력 88%)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농어촌학교 통폐합, 교원의 농어촌근무 기피 등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농어촌의 외형적인 주택보급률은 100%를 훨씬 상회하나, 30년 이상 노후 주택 비율은 20.4%로 도시지역 4.6%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주거 환경 여건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화됨에 따라 지역사회 유지 및 국토공간의 체계적 관리·정비가 곤란해지고 있다. 농어촌 인구는 '80년 43%에서 '00년 20%로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은 '04년에 농어촌이 15.6%로 도시 지역 6.7%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또한, 35개 군지역, 771개 읍·면지역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를 상회하는 초고령사회 진입하였고, 30%를 상회하는 읍·면도 123개나 이르고 있다.

한편, 도시지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GDP비중 47.9%)과 과밀문제 심화로 교통혼잡, 환경오염, 고물가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GDP대비 수도권 총생산의 비중은 '85년 42.0%, '90년 46.2%, '02년에는 47.9%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 교통혼잡비용은 연간 9.6조원이고 대기오염비용은 연간 10조원에 이른다.

지역별 경제적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역경제고통지수(Local Economic Misery Index, LG연구원 발표)도 대도시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04년 서울 1.5, 부산 1.8인 반면에 경기 -1.6, 충남 -3.2였다. (*지역경제고통지수 : 소비자물가상승률 + 실업률 + 어음부도율 - 산업생산증가율, 높을수록 고통이 심함)

한편, 국민소득 향상 및 가치관 전환 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도시민의 농어촌과 도농교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농어촌의 생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웰빙(Well-Being)을 중시함에 따라 전원생활, 농어촌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05.10월에 설문조사한 결과, 도시민 중 70.9%가 농어촌체험관광 경험 및 의향이 있고, 70.9%가 체재형 주말농원 이용의향이 있으며, 56.1%가 농어촌에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나타났다. 농어촌체험관광, 1사1촌 운동 등 도농교류의 활성화로 농어촌 활력 증진에 유리한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정책적 상황속에서 국민의 높아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어촌 구현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며, 기초생활환경시설과 교육·복지·문화 서비스가 충실하며 전통과 숲이 있는 마을로서 이주도시민과 지역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가 형성된 공간으로서의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2)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의 개념 및 정책방향 정립은 '05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이하 농특위) 주관으로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2차례 보고회('05.7.14, '05.12.21)를 통해서 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였다.

정책방향 정립과 시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특위내에 특별위원회 및 범정부 T/F를 '05.8월에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4회, 분과별 회의 15회를 개최하였다. 민간전문가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조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민 수요분석, 정주지원프로그램, 정주지원기구, 사업메뉴 등 총 4개 분과(18명)로 나누어 수요분석과 정책개발을 담당토록 하였다.

13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T/F(팀장:농림부 차관)는 T/F회의를 5회 개최하여 부처별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방향을 수립하게 되었다.

(3) 정책의 주요 내용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은 농·도 상생의 살고 싶은 농어촌 구현을 비전으로 농어촌 거주인구를 전 국민의 20%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주공간 조성, 이주지원, 추진체계 정비 등 3대 분야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민을 위한 정주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마을단위 주거공간 조성을 확대하고 추진방식도 도시민의 기호에 맞게 다양화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민의 65%가 숲 등 자연경관이 좋은 곳으로 이주를 선호함에 따라 농어촌마을의 핵심경관으로서 숲가꾸기, 산림의 휴양·휴식 공간기능 확충 및 ‘국민의 숲’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05년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 경관보전직불제를 '07년까지 시범 실시 후 결과를 평가하여 직불 대상작물의 범위 및 기준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며 농촌경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선진국 수준의 농촌 경관지표 및 농촌경관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관계부처의 협조를 통해 농어촌 정주체계에 맞게 소도읍·중심면을 중심으로 교육·복지·문화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며 기존 읍·면에서 제공이 어려운 고품질 서비스는 거점도시의 농어촌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도시민의 이주지원을 위해 농어촌 이주를 희망·준비하고 있는 도시민들이 불편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단계별로 구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준비단계에서는 농어촌종합정보센터를 확대하여 이주의향이 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전화·방문 상담, 현장안내 등 오프라인 서비스 및 전원생활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민간기구, 지자체 등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도시민 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할 것이며, 기 운용중인 농어촌종합정보포털(www.nongchon.or.kr)을 이용자 요구에 맞게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실행단계에서는 이주도시민을 위한 주택개량융자금, 영농정착

자금 지원조건을 개선하여 활성화하고 특히 농어촌종합정보센터에 인력알선기능을 추가하여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 이주의향 도시민간 연결을 지원하여 농어촌의 부족한 인적자원을 보완하고 도시민의 경험·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 정착단계에서는 이주 도시민을 농어촌 혁신동반자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참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 개발리더교육 등에 참여시키고 이주도시민과 농어촌 주민간의 융화를 위해 사전, 사후 접촉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계·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는 재원 확보, 정책 조정 등을 책임지고 지자체와 주민대표는 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책임지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일자리 확산 등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4) 정책 추진 성과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림부에는 도농 교류 촉진을 담당하는 농촌지역개발과와 도시민 정주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정주지원과를 '07.2월에 설치하였다. 이들 조직을 중심으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의 핵심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강할 과제에 대한 추진 주체로써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한국농촌공사 내에 귀촌 희망 도시민에 대한 상담·안내를 담당할 조직을 보강하여 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농어촌복합생활공간 조성 관련 업무와 이에 따른 조직은 더욱 확대될 계획이다.

도시민의 수요에 맞는 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핵심 사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사업 추진 계획에 거점면소재지를 대상으로 포함시켜 면 중심

마을을 집중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추기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07년까지 70지구가 착수.조성 중에 있으며, 입주자 분석 결과 도시민 비율이 '04 ~ '05 착수지구는 81%, '06년 착수지구는 90%에 이르고 있어 정책의 긍정적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농촌경관은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핵심자원으로 인식되면서 농촌경관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농림부는 '06.12월 「농촌경관개선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만들기 위한 각종 정책사업과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농촌경관개선종합대책은 크게 ① 농촌경관의 가치평가 및 관리체계 마련, ② 親경관적인 농촌개발기준 정립, ③ 농촌경관개선 정책사업 확대, ④ 농촌경관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지에 일반 소득작물 대신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ha당 170만원을 소득손실보전 차원에서 농가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경관보전직불제 효과를 모니터링한 결과, 사업시행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하여 자체적인 꽃 축제를 개최하는 마을이 늘어나는 등 도시민 방문이 증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창 공음면 메밀축제('05), 부안면 국화축제('05), 정읍 해마라기축제('06), 남원 혼불문학축제와 유채축제 연계 등)

농어촌 이주 희망 도시민에게 필요한 온라인 정보, 교육, 농지·주택 정보를 제공하는 농어촌종합정보포털을 '06.7월에 서비스 범위를 7개분야 40개 콘텐츠로 확대하였고 '07년에는 콘텐츠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에 있으며, '07.3월 현재 회원수는 10만명이고 1일 방문자수가 3천명에 이른다. 농어촌 정보상담실(1577-1417)에 의한 전화상담은 2006년 5월부터 운영되었는데,

금년 3월까지 2천여명이 상담하였다.

인구감소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 도시민 유치활동을 돕기 위해 금년에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지원 시범사업'을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시민의 농촌유치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을 중점지원하게 되는데, 도시민 유치를 위한 홍보, 컨설팅, 교육, 행사, 일자리 알선, 출향인사 파악·관리, 빈집 등 주거정보 제공, 이주예정 도시민과의 교류·초청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활용할 수 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시범사업은 10개 시·군에 각각 3년간('07~'09) 10억원(국고 5억원, 지방비 5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추후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정부 분위기 확산을 위한 '06.10월에는 전원마을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22개 은퇴자를 위한 전원마을 사업지구를 출품하여 10개 지구에 대해 시상하였다. 페스티벌에는 43,870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이중 9,411명이 입주 신청하여 목표 대비 110%를 달성하였다. 이 행사를 통해 도시민 유치의 붐이 조성되고, 전원마을 사업 등 도시민 농어촌 이주 지원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5) 향후 계획

도시민을 위한 정주공간 조성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강화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및 민간참여 확대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민이 귀농·귀촌시 농촌에 정착할 때까지 체류할 주거지를 지원하는 농촌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도입 방안 및 사업운영체계 연구를 '07년 중에 마무리하고 '08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아름다운 농촌경관의 형성, 유지를 위해 농촌경관정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농촌경관 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05~'07) 시행 결과를 분석하여 '0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제 등 도농교류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인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농어촌종합정보 포털의 콘텐츠 보강하여 사용자 유형별로 원하는 최신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GIS를 통해 병원·학교·관공서 등 주요시설의 위치 및 거리 정보 종합검색 서비스 기능 등을 도입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더욱 제고할 계획이다. 오프라인을 통해서는 전원마을 체험단, 전원주택 전시관(안산)을 이용한 전원생활 체험교육 등 귀촌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 정주 분위기 확산을 위해 '06년 전원마을 페스티벌에 이어 2007년 전원생활 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매년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차.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및 향토산업육성

(1)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도입 배경 및 의의

1970년대 압축적인 경제성장 과정속에서 채택한 수도권 중심의 성장거점 개발정책은 고도의 경제성장이라는 성과와 함께 지역간 불균형 발전에 따른 각종 폐해를 양산함으로써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이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각종 낙후지역 개발사업 등이 생활환경의 개선, 문화복지시설의 증대 등 적지않은 정책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낙후지역의 장기적 자립발전기반 마련이라는 근본적인 정책목표 달성에는 미흡하였다는 자성에서 신활력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신활력사업은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30여년동안 근대화·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을 생동감 넘치는 활력지역으로 변모시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2005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처음 시작 하였다.

2006년 8월 29일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업무조정 관련 관계부처회의에서 신활력 사업의 농림부 이관이 결정됨에 따라, 농림부와 행정자치부는 사업 이관과 관련하여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2006년 9월 22일 강원도 정선에서 신활력 시·군 단체장 및 신활력사업 관계자를 모시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농림부 장관, 행정자치부장 관 주재로 신활력사업 성과에 대한 현장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신활력사업 추진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신활력사업 추진지침 교육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7년 1월부터는 농림부에서 신활력사업을 이관받아 추진하고 있다.

정책의 주요내용

신활력사업은 낙후지역의 내생적 자립발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선진방식의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 관 주도 인프라구축 위주의 기존 낙후사업과는 추진방식 등에서 차별화되는 새로운 사업이다.

동 사업은 신활력 지자체가 사업추진에 대한 포괄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민·관이 공동 협력하여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인재양성, 소득 및 고용창출, 향토자원 개발 등 소프트웨어 위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시·군에서는 사업발굴시 단편적인 사업추진이 아닌 지역발전에 대한 중

합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아래 부가가치와 소득 창출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선택·집중하여 선도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중앙정부에서는 신활력사업 성격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점검하고 사업실적을 평가한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주체(Actor)들의 상호작용과 신뢰·협력의 네트워크(System)를 통해 지역발전의 선도사업(Program)을 수행하는 ASP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지역의 기획역량과 인적자원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자체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6년 9월부터 기존 ‘신활력시·군 전담자문가(Family Doctor)제도’의 1시군 1인 FD역할의 한계 및 FD의 전문성 결여 및 관심부족 등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혁신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자문·컨설팅·교육’등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해 ‘지역협력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FD 제도는 지역협력단에 흡수하여 개편·운영하도록 하였다.

정책추진 성과

신활력사업이 지역의 혁신이라는 무형의 정책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눈에 확 띄는 성과는 없으나, 하동 녹차, 청도 반시, 청양 고추, 임실 치즈 등 일부 지역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사업시행 3년차('07년)부터는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계획

2006년도는 신활력사업은 새로운 선진방식의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 왔으며, 농림부로의 업무이관을 준비하여 2007년 1월부터 농림부에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시기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1기 신활력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지역발전의

토대 구축을 통해 제2기 신활력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보완 조치하고 우수사례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신활력 시·군간 상호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보완하고 차별적 인센티브 제공 등 보상과 연계하여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유도하고, 우수지역은 인센티브 적용 등을 통해 선도지역으로 적극 육성하고 문제지역은 예산배정 유보·삭감 등의 특별관리 조치를 취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 보완 및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자문위원회와 협력하여 신활력 시·군의 사업추진을 수시로 지원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사업추진 현황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신활력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당초 목적인대로 낙후지역의 자립발전기틀을 다지는데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침체지역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활력지역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 향토산업육성

도입 배경 및 의의

WTO/DDA협상, FTA 체결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 추진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농림사업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농촌산업 정책 도입 필요성이 대두 되었으며, 농촌지역에 부존(賦存)되어 있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이용한 향토산업육성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정책적인 지원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업자원 외에 타지역과 차별성을 가지며, 지역의 생활과정

을 통해 토착·계승 되어온 생활양식, 이를 구성하는 자연자원·재화·기술·문화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향토자원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종전의 정책이 생산·공급체계 구축 위주의 정책으로 시장개척과 마케팅 등 수요측면 지원정책에 취약한 한계가 있으며, 개별 사업 중심의 하드웨어 지원에 치우쳐 지역사회내의 추진체계 구축 등 소프트적 지원에 소홀 하였던 것에 비해,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며, 제품개발·생산·가공·마케팅 등을 일관 지원, 다양한 1차, 2차, 3차의 사업활동을 진작함으로써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2004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법률」 제 31조에 향토산업 진흥시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계기로 2004년 7월부터 2005년 5월까지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2005년 6월부터 7월까지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2005년 우리부의 주요 업무추진 과제로 향토자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발굴, DB구축 및 향토 상품개발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지역농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향토산업 육성 종합대책 수립’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2005년 9월에는 앞서의 연구용역, 관련기관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2013년까지 200개(매년 30개 수준) 향토자원을 발굴, 산업화하기 위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토산업육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5년 9월부터 10월까지 시·도, 시·군 등 지자체를 통해 향토 자원 실태조사를 시행, 100개 향토자원을 발굴하였다.

발굴된 향토자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정책(40%), 기술(30%), 브랜드(30%) 등 3개 지표에 따라 사업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농업·문화·관광 등 향토자원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향토자원 평가 및 전문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6년 1월 광주 전통민속 떡, 양평 유기농 장류, 청양 구기자, 당진 초락도리 약초 등 19개 사업대상을 선정, 향토자원 개발에 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식 전환과 사업추진 역량 제고를 위해 2006년 1월 중앙·지자체간 공개협의회, 전문가 특강 등 「향토산업육성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주도 면밀한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2006년 4월 기획예산처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신설키로 하고 기존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자체 자율편성사업인 지역특화사업내에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침을 마련 하였으며, 지원대상 향토자원에 대한 시군별 「향토자원개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07년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예산 43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책입안 과정을 마무리 하였다.

향토산업육성사업 신설은 개발주체간의 연계 미흡, 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 취약, 지역사회, 지자체의 역할 불명확 등 그간 시행되어온 농촌지역 경제활성화, 농촌산업 관련 다양한 정책들이 보여주고 있는 한계에 대해, 농촌산업 전반에 관한 지역사회의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과 이를 통해 향토산업을 지역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주체가 되는 지자체는 물론,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전문가, 관련 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 의견교환을 통해 참여정부 국정목표인 ‘국가균형발전’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사업을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입안의 모범사례로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의 주요내용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농촌지역에 부존(賦存)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1·2·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재배·가공·관광 및 서비스산업을 융·복합화하여 지역핵심 산업으로 육성된 보성 녹차, 함평 나비 등을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향토산업육성은 지역성과 전통성이 강하고 사업성이 있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하고 시·군별 「향토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포괄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이며,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예산지원 등 측면지원에 역점을 두는 상향식 사업체계를 띤다.

농업인,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연구단체 등 향토자원을 보유한 개인·단체에 대해 기존 특산제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 전통농업자원, 토종 동·식물 등을 활용한 상품개발, 전통전래양식의 상품화, 농수축산물의 효능·약효를 이용한 신소재 상품개발, 문화상품 등 향토자원 개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시설·장비 설치 등 H/W분야 뿐만 아니라, 제품개발, 위탁연구, 지적재산의 권리화·디자인·브랜드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S/W분야에 이르기까지 포괄지원 할 수 있다.

사업주관 기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며, 1~3년 기간동안 총사업비 10억원 범위내에서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기준 보조율은 국고보조 50%, 지방비 50%이다. 신활력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60%까지 상향조정이 가능하며, 지방비 부담의 경우 지자체 자율로 부담액 중 일부를 사업수혜자가 부담토록 할 수 있다.

지원대상 향토자원의 선정은 우선적으로 지자체를 통한 향토자원 발굴조

사와 조사된 향토자원에 대한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향토산업육성 전문가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일선 시군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토록 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이 가능토록 하였다.

선정된 향토자원에 대해 사업초기 시행상 착오를 최소화하고 향토자원 개발 마인드 제고 및 전문지식 함양 등을 목적으로 매년초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사업 세부계획(향토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시군단위로 수립하고 소요 사업비를 예산안에 반영한다.

또한 매년도 사업이 종료되면 지자체별로 사업추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추진결과가 사업시행에 반영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정책추진 성과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시범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 법적근거 마련, 이후 연구용역과 지자체 등 관련기관,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05년 9월 향토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면밀한 사전계획 하에 향토자원발굴조사, 전문기관 사업타당성 평가, 전문가위원회 심의, 지자체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예산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신규사업을 신설하였다.

향토자원 개발에 대한 종전의 여러 부처 사업에 대한 평가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는 상향식 사업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사업대상과 내용에 있어 특별한 제약이 없는 포괄보조 형태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탄력적 추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유연한 사업체계를 바탕으로 2007년도 시범사업 지원대상인 19개 향토자원에 대해 제1차 연도사업비 국고 43억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제고와 농촌지역 산업진흥,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계획

2007년도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분석하여 도출되는 문제점과 미흡한 점, 사업추진 주체인 지자체 의견 등을 수렴, 종합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추진 결과에 대해 매년 지자체별로 자체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모니터링하여 익년도 사업 계획에 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별로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보완하도록하여 중장기적으로 향토산업육성 사업이 지역핵심 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노력하며, 농촌지역 산업 활력 증진 및 경제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5 | 농식품 안전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

가. GAP 도입

(1) 도입 배경 및 의의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대와 함께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양, 용수, 종자, 농약, 비료 등 생산요소 뿐만 아니라 재배, 수확, 수확 후 처리과정에서의 안전관리 및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작업자의 복지·건강관리 등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체계적 관리는 농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오염을 경감시킨다. 안전한 농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이러한 종합적·체계적 관리과정이 바로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이다.

우리나라에서는 GAP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2002년 9월 본 제도의 도입을 결정하고, 선진국 제도 연구 및 법령초안을 작성하는 등 기반작업을 하였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6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였다.

GAP제도의 국제 동향

국제적으로는 이미 GAP가 보편적인 농산물안전관리의 가이드라인으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1997년 ‘식품위생에 대한 일반 원칙’에 근거, 신선 상태로 소비하는 과일·채소류의 안전생산체계에 대해 회원국간 협의를 시작해 2003년 7월 1일 본회의에서 ‘과일, 채소류에 대한 생산·취급기준’을 비준했다.

UN산하 FAO(세계식량농업기구)는 ‘생산과 소비를 배제한 중간단계에 초점을 맞춘 기존 제도는 오염된 사료에 의한 광우병 등 식품관련 질병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화학물질, 미생물 등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식품체인접근법(Food Chain Approach)」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GAP 원칙을 바탕으로 작성된 식품체인 접근법은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식품안전 예방조치의 일환이다. 이는 특히 토양·수질관리, 농·축산물 생산, 저장, 가공, 폐기물처리 등 농축산업에서 GAP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동유럽의 EU가입을 위한 농업실행조건으로 GAP를 제시하고, 일반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 제정을 통해 향후 GAP 수준 이상의 영농에 대해서만 보조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1997년 유럽소매상연합회(EUREP : Euro-Retailer Produce Working Group)에서 개발한 EUREPGAP은 유럽의 농산물 유통단계에서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유럽 이외에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중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각국도 수출상대국의 식품안전성요구에 맞추기 위한 제도로서 GAP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후진적 농산물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농업부와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이 기준을 설정하고, ‘농산품질안량안전중심’이 무공해농산품(GAP)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 칠레 등은 농산물수출에 있어 수출국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로 GAP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GAP 실행규범을 마련하는 한편, 농무성(USDA)은 규범을 실행하고 있다. 또 각 주정부에 소속된 FSIS(Federal-State Inspection Service)에서 GAP/GHP농산물 표시·관리 등 제도를 관리하고 있다. 주별 농업프로그램과 연계돼 GAP실행은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한 수출확대 및 농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2년 9월 GAP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WHO FHH(한약재규격화포럼)의 GAP 논의동향과 연계하여 약용작물에 대해 우선 GAP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2003년 4월 UN FAO의 농식품 안전성확보를 위한 GAP논의 및 2003년 6월 Codex의 GAP기준마련에 부응하여 GAP제도를 재배가 가능한 전 품목에 대해 확대하기로 결정('03.6)하였다.

GAP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농림부, 농촌진흥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기반공사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T/F팀을 2003년 2월부터 구성·운영하였다. 이후 수확 후 위생관리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식품연구원이 T/F팀에 추가로 참여하였다. 2006년 본사업 시행에 앞서 시행된 시범사업 기간동안 T/F팀에서는 자료 수집·분석, 법령 정비, 각종 기준 제·개정, 시행체계 마련 등 관련 제도 정비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시범사업 추진

2002년 9월 약용작물에 GAP를 우선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후, 2003년부터 황기, 당귀, 구기자, 맥문동, 작약 등 약용작물 5품목 9농가를 대상으로 GAP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시범인증기관으로는 한국생약협회에서 참여하였다. 2004년에는 시범사업 대상품목을 채소, 과일 등 67품목으로 확대하고, 357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한국생약협회 이외에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시범인증기관으로 추가로 참여하였다. 2004년부터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예산확보가 이루어졌다(3.5억원). 시범사업 마지막해인 2005년에는 한국인삼공사, 장원산업, 풀무원 등이 추가로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6개 기관 965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대상품목은 82품목으로, 사업예산은 26억원으로 증가하였다. 3년간의 시범사업은 본사업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

에 찾아내어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인증기관들의 인증역량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농산물품질관리법령 개정 및 인증제도 통합방안 마련

GAP 시범사업과 병행하여 T/F팀을 중심으로 GAP 도입을 위한 근거법령 및 관련 기준 마련을 추진하였다. 우선 유럽, 미국 등 선진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각종 설명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 유통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법령 개정작업에 반영하였다. 유럽·미국 현지조사('04.11~12), Traceability 유럽 현지조사('04.8~9)를 통해 선진국의 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시·도 공무원 설명회('03.10), 농식품안전전문단회의('03.12.17, '04.5.27), 농·소·정 협의회('03.10.15, '04.4.22, '04.10.27), 유통업체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GAP 설명회('04.6.22, '7.27)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04.6월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04.7월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 법령 개정절차를 진행하여 '05.8.4일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였다. 이후 하위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06.1월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우수농산물관리기준 등 관련 고시들을 제정·고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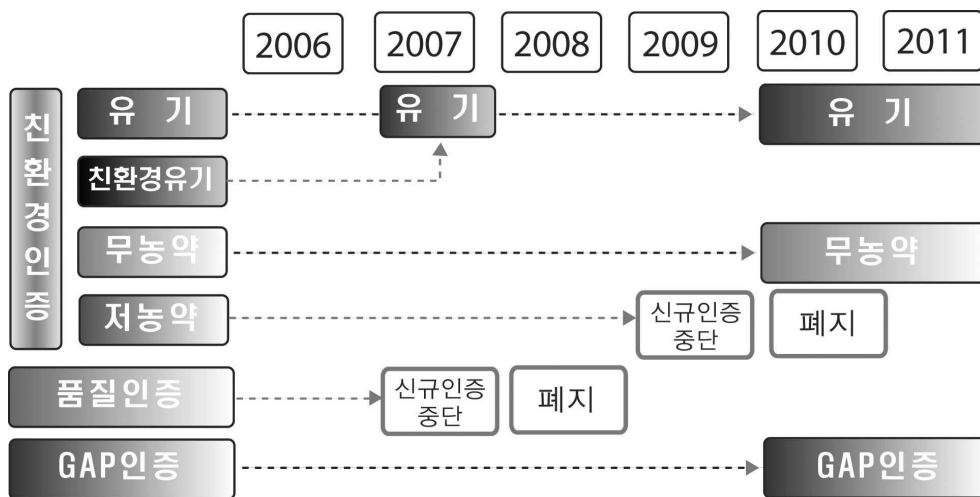
GAP제도 도입과정에서 다양한 인증제도 운영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방지를 위해 기존의 인증제도에 대한 통합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04.7월 인증제도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였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04.11월 농산물 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3회에 걸쳐 인증제도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농수산물 유통규제 개선방안 장관회의('05.9.27)에서 인증제도 통합을

결정하였다. 인증제도 통합 결정 이후 정책조정실무회의('05.10.12), 인증제도 개선 토론회('05.10.20)를 개최하여 최종 의견 수렴을 하고, '05.11.2일 인증제도 통합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인증제도 통합안

- 현행 인증제도를 Codex 등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
 - 농산물품질인증 → 폐지
 - 친환경인증의 유기·전환기·무농약·저농약 → 유기·무농약
 - * 무농약은 국제기준에 없으나, 유기농의 활성화를 위하여 존치
- 인증제도 통합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한 단계별 방안
 - 품질인증 : '07년부터 신규인증 중단, '08년 폐지
 - 저농약인증 : '09년부터 신규인증 중단, '10년 폐지
 - GAP 활성화 대책 추진(농약토양수질검사비용 지원 등)
-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지리적표시제도는 현행과 같이 존치하고, 자치단체의 인증제도의 내실화 유도

연차별 인증제도 통합계획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체제 정립

GAP제도는 기존의 국가중심의 인증체제에서 벗어나 민간중심 인증체제로 도입을 추진하였다. 또한 관련 기관별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기관별로 명확한 업무분담을 추진하였다. 농림부에서는 제도를 총괄하고, 농촌진흥청은 각종 기준설정 및 교육을,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증기관·우수농산물관리시설지정, 인증 사후관리 등 행정집행업무를, 민간인증기관에서 농업인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농림부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령 개정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GAP농산물의 수확후 위생관리기반 강화를 위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GAP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하여 2007년까지 APC 21개소에 GAP위생시설을 지원하였다. 또한, GAP제도의 안정적인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민간인증기관과 농업인에게 인증기관 운영경비 및 안전성검사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우수농산물관리기준(GAP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Codex 신선과일·채소 위생관리규범 등을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당초 GAP기준은 생산자 및 관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사항(97개)과,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권장사항(73개) 등 17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4년, 2005년 시범사업을 통해 제기된 문제항목들과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하거나 지키기 어려운 사항들을 조정하여 2006년도에는 필수사항 74개, 권장사항 36개 등 110개 항목으로 조정하여 운영중이다. GAP기준은 농업기술의 발달과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규항목을 추가하는 등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에서는 농업인이 영농에 참고할 수 있도록 농산물·임산물에 대한 표준재배지침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2003년 만들어진 67개 품목에 매년 재배지침을 추가해 2007년

에는 100개 품목에 대한 표준재배지침이 만들어져 있다.

GAP 전문교육체계 구축을 위하여 2004년 11월 미국 FDA GAP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농업대학(구 한국농업전문학교)을 GAP인증심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양성하기 위해 2005년에 한국농업대학 내에 GAP실습시설을 건축하고, GAP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을 신규로 개설하였다. GAP인증심사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국농업대학의 GAP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한다. 농업인에 대한 교육은 GAP제도를 매년 초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새기술실용화교육의 기본과목으로 편성함으로써 모든 농업인이 GAP교육을 쉽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도에는 약 35만명의 농업인이 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GAP인증기관 및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2007년 6월 현재 26개의 인증기관, 222개의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을 지정하였다. 인증기관의 관리·감독 및 인증품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GAP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정책의 주요내용

GAP는 생산단계부터 수확후 포장단계까지 농약·중금속·병원성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집중 관리하여 농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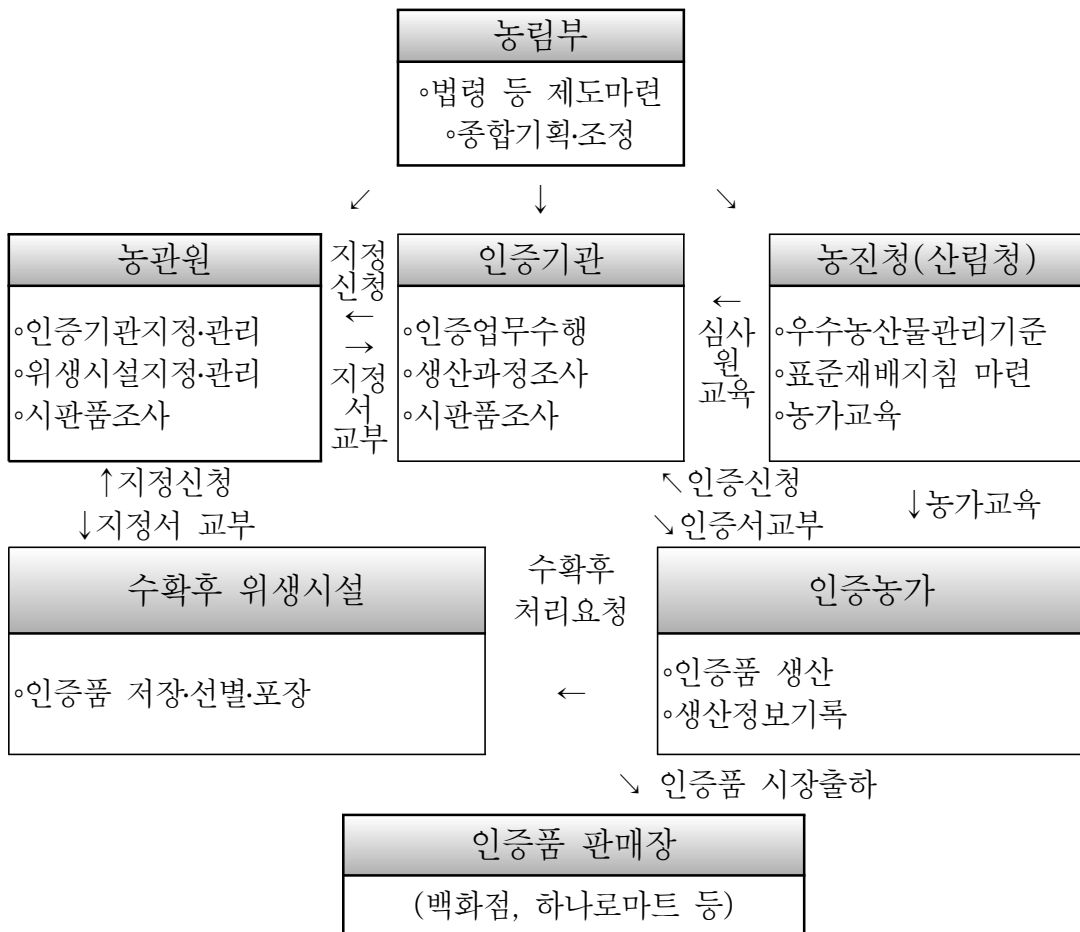
농약비료는 농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허용수준 이하로 사용해야 하고, 사용·보관·관리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토양수질은 현시점에서의 오염여부 뿐만 아니라 과거의 오염이력, 주변의 오염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특히 수확후 세척에 사용되는 물은 먹는 물을 기준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농산물이 특히 취약한 수확 후 포장단계에서의 시설·장비·작업자에 대한 위생관리가 이루어져야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부터 수확 후 처리까지 일관적인 위생관리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다.

또한, GAP에서는 이력추적관리가 필수적이다. GAP에서의 이력추적관리는 단순한 이력추적뿐만 아니라 농작업, 특히 안전성과 관련되는 작업사항에 대해서도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GAP 농산물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리콜과 원인규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GAP기준은 농약비료관리 뿐만 아니라 위생, 보건, 환경관리, 이력추적까지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없이 GAP기준을 이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GAP 참여농가는 사전에 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반드시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GAP제도는 민간인증기관에 의한 인증제도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GAP사업 시행체계는 다음과 같다.

< GAP사업 시행체계 >



(4) 정책추진 성과

GAP제도는 '03년부터 '05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06년부터 민간 인증제도로 본격 시행하였다. 매년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에 대한 농가인식이 점차 증대되었고, 소비자 인식도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규정 및 제기준의 정비, 인증기준의 설정과 인증기관 지정으로 '06년 본사업 참여 농가가 크게 증가하였다.

GAP 인증기관은 2006년에 21개 기관이 지정되었고, 2007년 6월 현재 26개 기관이 지정되어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6년 GAP인증농가는 3,659명으로 시범사업 마지막 해인 2005년 965농가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고, GAP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도 12.2%(2004.9)에서 42.0%(2007.3)로 증가하는 등 농업인과 소비자의 GAP에 대한 인식이 많이 향상되고 있다.

GAP제도 도입으로 농산물의 관리범위가 생산단계에서 수확후 포장단계까지 확대되는 등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안전농산물 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국내 농산물의 전반적인 안전성 수준이 향상되어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농업인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향후 계획

정부에서는 앞으로 선진수준의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2013년까지 GAP 인증농산물 생산량 비율을 10%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시설보완, 민간인증기관육성,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등 GAP시행 기반조성을 위한 인프라구축과 더불어 농업인에 대한 교육과 소비자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나. 이력추적제도 도입

(1) 농산물이력추적제

도입 배경 및 의의

이력추적관리(Traceability)에 대한 개념 및 구체적인 적용상황은 각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나 광우병 파동 이후 식품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축산물을 중심으로 이력추적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차 농산물로 확대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력추적관리제도의 해외 도입 실태를 살펴 보면

1996년 유럽대륙에서 발생한 인간광우병은 소비자가 식품의 생산 이력정보와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결국 유럽연합(EU)은 1997년 3월 「소의 개체식별 및 쇠고기 산지 등의 표시에 관한 규칙」(Regulation(EC)820/97)을 제정하여 쇠고기에 대한 이력추적제(Traceability)를 시작했다. 그 후 EU는 2001년부터 모든 회원국에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2005년에는 전체 농·식품과 사료 등으로 확대했다.

일본의 경우에도 2001년 광우병의 발생후 모델 실증실험,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하여 2003년 12월부터 쇠고기에 의무 적용하고 있다. 그 외 농산물에 대해서는 각 지역과 품목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및 캐나다 등 북미에서는 농축산물 이력추적제의 일부를 포함한 식품회수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있다

특히, 이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수입농축산물에 대해서도 이를 점차 요구하고 있으며, 이력추적관리의 도입은 국내 소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장벽의 해소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식품안전분야의 대국민서비스 혁신 및 행정효율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를 전자정부 31대 로드맵과제로 선정('03.8)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농식품과 관련하여 안전성 문제가 사회문제로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가 농산물의 품질이나 가격보다 안전성에 비중을 두는 추세가 됨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 농산물 구입시 가장 중요한 요인 : 안전 31.3%, 가격 24.4%, 맛 17.3% <GAP/Traceability에 대한 인지도 및 인식조사결과('05.12 현대리서치연구소)>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우리나라도 이런 우리 실정에 맞는 이력추적제를 도입하기 위해 GAP시범농가를 중심으로 '03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04년 3월 이력추적관리제도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04년 9월 「이력추적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04년 9월 한우이력추적관리시스템사업을 실시하였고 '05년 8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고 2006년 1월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인 시행근거를 마련해 '06년 1월부터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100개 품목에 대하여 GAP 등 인증농산물을 중심으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는 우선 자율적으로 등록한 생산자, 가공·유통,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하여(제공정보에 대한 책임은 등록자가 가짐) 진행 되어 지고 있다.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농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신뢰성 향상으로 우리농산물의 국제경쟁력 강화할 수 있으며, 유통 중인 농산물에 문제 발생시 추적을 통한 신속한 원인의 규명 및 해당 농산물의 회수가 가능해지고, 농산물에 대한 생산·유통·판매 단계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추진조직 및 역할

기 관	역 할
농림부	· 기본계획수립 및 정보시스템 운영 지도 감독 · 사업추진계획 심의, 조정 및 예산확보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 재배관리 지침 마련 · 이력정보입력관리 농가교육
농산물품질관리원	· 이력정보입력관리 등록지도 · 이력추적관리등록 세부실시요령(고시)
한국농림수산 정보센터 (운영기관)	·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세부계획 수립 및 완료보고 · 운영사업관리 및 이력추적 T/F 운영 지원 · 시스템, DB, 어플리케이션, 콘텐츠, 연계시스템 관리 · 시스템 이용자 교육·홍보활동 · 모니터링 및 콜센터 운영 · 예산집행 및 정산
이력추적 T/F	· 구성 : 농림부 소비안전과, 유통정책과, 과수화훼과, 소득관리과, 농진청, 농관원, 유관기관 담당자 · 구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 추진사항 점검, 이슈 검토·조정, 검수 등 시스템 구축 자문 수행

정책의 주요내용

농산물의 유통경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런 복잡한 농산물 유통 과정에 대해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이력을 추적하느냐는 각 나라의 우선 해결사항이었다.

이력추적관리의 개념은 국가별·기관별로 약간씩 다르다. EU식품법의 일반원칙(CES2001)/코덱스위원회(CEC2001)에서는 ‘식품, 사료, 동물 및 동동물관련 물질을 가공한 식품이 생산, 가공,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이것들을 추적하고, 또한 조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농산물을 추적하여 원

인 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농산물품질 관리법)하고 있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산물 생산·유통·판매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한 생산자는 이력추적 농산물의 생산과 출하에 관련된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다른 농산물과 구분하는 등 이력추적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통자 및 판매자는 입고 및 출고와 관련된 이력정보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농산물은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정보가 꼼꼼하게 기록·관리된다. 또 로고와 이력추적관리번호를 표시한 라벨을 부착해 유통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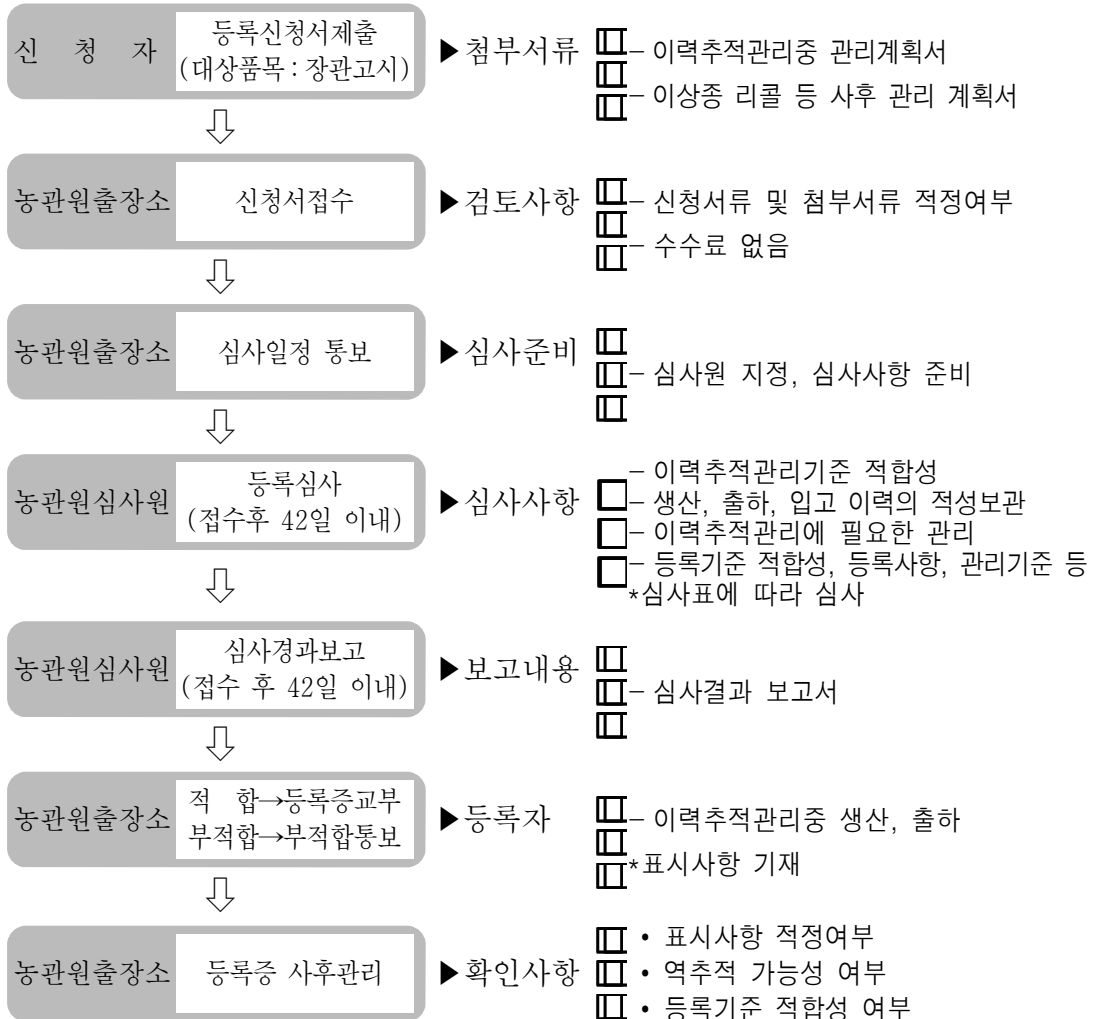
정책추진 성과

복잡하고 다양한 농산물의 유통경로에 대해 빈틈없이 이력추적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규모의 정보가 수집·저장 및 검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IT기술을 접목한 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는 매우 필요하다. 이력과 관련된 데이터가 정보기술 시스템 내에 미리 갖추어진 상태가 아니라면, 돌발적인 식품안전 경보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응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농림부는 소비자에게 GAP·이력추적관리 등 식품안전관련 정보 제공을 위하여 '06년 11월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www.agros.go.kr)'을 구축하였고, '07년 5월 이력추적정보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팜투테이블(www.farm2table.kr) 로 새롭게 개편하였다.

등록 및 절차



팜투테이블을 통해 생산자는 이력추적 농산물의 생산과 출하에 관련된 이력정보를 입력하고, 유통자 및 판매자는 입고 및 출고와 관련된 이력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상품에 표시된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입력하면 그 상품에 대한 농약이나 비료 등 영농자재 사용내역 등 농산물의 생산에 관한 이력정보를 바로 볼 수 있게 됐다. 또 생산자의 연락처와 홈페이지 등 상세정보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이 시스템에 12,448 농가가 등록돼 있다.

또한, 농산물의 종류가 다양하여 생산자들의 입력하기 어려운 점에 착안

하여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이력추적관리 표준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으로 '06년 인삼에 대해 표준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였다.

생산자 입장에서 볼 때 농산물 이력추적제도가 매우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식품을 원하고 있다. 2005년 조사결과에서 보더라도 소비자들은 농산물 구입시 가격(24.4%)이나 맛(17.3%)보다는 안전(31.3%)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꼽을 만큼 소비자들의 선택기준은 변하였다. 이는 이력추적관리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추가지불 의사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90%에 가까운 소비자들이 추가지불하겠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31%는 이력추적제를 하지 않은 것보다 6~10%를 더 내겠다고 밝히는 등 추가지불 금액도 상당폭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실제로 농가들의 판매 증대로 이어져 제도에 참여한 농가의 77.7%가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으며, 참여농가의 16%는 판매가격을 11% 이상 더 받는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윈-윈 전략이 될 것이다.

향후 계획

농림부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분야 경쟁력제고를 위해 농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GAP·HACCP제도 등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체계를 확대 시행하고, 오는 2013년까지 과실, 채소 등 유통물량 중 이력추적 등록 비중을 10%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금년에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력추적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등에 1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06년 인삼에 이어 '07년 쌀과 과수품목에 대한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APC와 RPC를 대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07년도 이력추적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의 핵심은 기존 시스템의 생산·

유통·판매 등 각 단계의 업무프로세스를 통합하고, 이력추적정보와 연계한 상품속성 정보를 표준화하여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농산물 거래를 위한 차별화된 이용가치를 제공하며, 모바일 기반의 유비쿼터스 이용환경을 구축하여 휴대폰으로 2차원바코드를 이용 상품의 이력추적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배경 및 기대효과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와 쇠고기의 생산·도축·가공·판매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써, 소 개체별로 유일한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소에 부착하여 출생·이동·도축단계까지 이력을 DB화하여 관리하며, 도축단계 이후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유통함으로써 소비자는 구입한 쇠고기의 원산지 등 이력을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 시스템의 적정 작동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해 도축장에서 전 두수 대상 DNA검사용 샘플을 채취·보관하고 유통되는 쇠고기와 대조 확인하는 DNA 동일성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유럽에 이어 일본과 미국 등지의 광우병 발생 등으로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 확보, DDA·FTA 등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한우산업 보호 등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축산단체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국제적으로도 광우병 파동이후 축산물을 중심으로 Traceability를 우선 도입 및 점차 농산물로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하였다. 과거 소 전산화 실패, 사육농가 영세성, 기록문화 미정착, 추가 인건비 등 관리비 증가, 재고관리 어려움, 세월노출

등 수 많은 장애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우산업 보호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기대효과로 첫째, 광우병 등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환축의 이력을 추적하여 조치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둘째,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로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등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 및 신뢰도 제고로 국내 소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소의 혈통, 산유능력, 사양관리 정보 등을 개체식별번호를 중심으로 통합 관리·활용함으로써 가축개량, 경영개선 등 국내 소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유럽에 이은 일본과 미국의 광우병 발생 등으로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소비자단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국무회의('04.1.12) 비용이 들더라도 국민 건강이 가장 중요하므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04.1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 활동에 들어갔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위원회에는 농림부(위원장 차관보) 외에 수의과학검역원, 경기도, 축산물등급판정소, 농경연, 한경대, 농협중앙회, 한우협회, 축산기업중앙회, LG유통, 소시모 등 정부, 학계, 관련단체, 생산자·소비자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였으며, 이에 대한 실무작업반으로 축산국장을 반장으로 축산국, 축산연구소, 농경연, 농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소 실무진이 중심이 되어 정책필요성, 추진일정, 시범사업 대상선정, 시행기관 선정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04.5.27일에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달하였다.

동 추진계획 상의 시범사업 추진체계로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사업총괄 및 도축·가공·판매 등 유통단계를 담당하고 농협중앙회가 귀표배부, 장착, 농가지도 등 사육단계를 담당하는 이원화된 운영체계를 통해 각 기관별 장점을 최대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였다. 이력정보 관리 및 제공방법으로 사육·도축·가공·판매단계까지의 이동사항을 전산시스템에 기록·관리하고, 사양관리 등 기타 사항은 브랜드경영체 등이 선택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함으로써 참여 업체들의 부담 최소화를 도모하였다.

시범사업 참여대상으로 우선 우수 브랜드경영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단계적으로 후발브랜드 및 지역단위로 확대키로 방침을 정하고 전국 시·도로부터 23개 브랜드경영체를 추천받아 9개 우수브랜드경영체를 최종 사업 참여대상으로 선정('04.7)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브랜드경영체를 대상으로 '04.10월부터 사육단계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곧이어 '04.11월에 도축·가공·판매장 등 연계사업장 30개소를 지정하고, '05.2월부터 유통단계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05.3월에 시스템 적정 작동여부를 검증하는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전 단계에 걸친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05.8월에 자체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긍정적인 면으로, 사육단계부터 도축·가공·판매단계까지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소 및 쇠고기 관련 위생·안전상 문제발생시 추적 및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고, 소비자와 유통업체의 제도도입 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지정판매장 및 판매량 증가와 판매가격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이 높아진 점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미흡한 면으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브랜드경영체가 제한적이어서 미 참여업체를 중심으로 불만 표출이 적지 않았으며, 우수 브랜드경영체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면 실시시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에 한계가 있고, 개체식별번호(귀표)에 의한 각종 정책사업이 연계되지 않아 자료의 중복 입력으로 인한 일선의 업무부담이 적지 않으며, 국내 사육하고 있는 소의 유전자(DNA) 정보에 대한

DB가 구축되지 않고 검사방법이 표준화되지 않는 점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시범사업에 브랜드경영체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까지 참여케 하고, 한우중심에서 육우까지 참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축종을 다양화함으로써 시범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소 관련 정책사업간 정보연계를 통한 일선에서의 중복입력을 방지토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며, 소 귀표 탈락율 감소를 위해 한쪽 부착에서 양쪽 2조 부착으로 변경하고, 장래확장성, 국제표준화 등을 고려 기존 9자리에서 12자리로 확대하며, 귀표의 규격, 도안, 재질 등은 ICAR(국제가축기록위원회) 규정을 고려하여 단일화 등) 하는 등 소 귀표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정책의 주요내용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의 추진체제로 정부(농림부 축산물위생과)는 사업계획 수립, 총괄적인 추진상황 점검, 예산확보, 집행상황 감독, 법령 제정 등을 관장하고, 사육단계 시행기관인 농협중앙회는 사업소요 귀표구입·배부, 신고사항 접수·관리, 교육·홍보 및 현지 지도점검 등을 담당한다. 유통단계 등을 담당하는 축산물등급판정소는 도축장·가공장·판매장에서 이력추적관리, 동일성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DNA 동일성검사, 전산시스템 구축, 소 및 쇠고기정보의 DB화 관리, 인터넷·휴대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시·도(시·군)은 관내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축협, 관련협회, 브랜드경영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가지도 등을 담당하며, 특히 소 귀표부착 및 출생(폐사)·이동(전입·전출·출하신고) 등 농가의 신고내용을 전산 입력할 단체를 지정·운영하고 (농가가 직접 입력 가능), 시·도 위생검사기관은 도축장에서 귀표 부착확인 및 도축검사결과 전산입력, 가축

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등 농가들의 질병관리·지도, 도축자, 가공업자, 판매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행한다.

아울러 시스템 적정 작동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실시하는 DNA 동일성 검사를 위해 도축장에서 등급판정사가 도체별로 소량의 샘플을 채취하여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서 검사기관인 축산물등급판정소로 이송하여 보관하고, 가공장·판매장 등 유통되는 쇠고기를 대상으로 무작위 채취한 샘플과 검사기관에 보관중인 샘플이 일치하는지 검사하여 동일성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방지 등 쇠고기 유통 투명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의 추진체계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추진 체계



동 제도의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04.10월에 9개 우수 브랜드경영업체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체 착수하였으며, '05.8월에는 그 동안의 시범사업 실시 상황을 평가하여, 그 개선방안으로 브랜드경영체 외에 지역단위 추가, 소귀표체계 개편, 도축장·가공장·판매장 등 연계사업장을 확대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이 일환으로 '05~'06년도에 시범사업 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05.12월에는 5개 신규 브랜드와 파주·김제·김해 등 3개 지역을 추가하였고, '06.7월에는 한우람 광역브랜드 등 6개 브랜드경영체를 추가로 참여시켜 사업규모 확대를 도모하고, 이와 병행하여 도축장·가공장·판매장 등 연계사업장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06년 12월말 기준 도축장 21, 가공장 23, 판매장을 93개로 확대하여, 총 20개 브랜드경영체, 3개지자체에서 210천두의 소에 대해 이력추적이 가능케 되었다.

'07년 현재 추진현황으로 '08년 본사업 시행에 대비해 1개도(경기도) 전체, 22개 브랜드, 25개 시·군, 650천두로 참여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07.1~3월중으로 관계자 교육 등 시행준비를 완료하고, 4월부터 사육단계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7월 중으로 유통단계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책추진 성과

그동안 식품안전 측면에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추진 전에는 유럽, 일본,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등으로 인해 축산농가들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팽배하였으며, 수입고기·젓소고기의 원산지 둔갑판매로 한우고기 불신율이 40.5%에 이르렀고('04, YTN조사), 이는 쇠고기 소비량 급감과 가격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우리나라 소 산업의 위기 국면에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통해 소비자 안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식품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으며('06.10월, 소비자연맹 조사, 소비자만족도 81.4%), DNA 동일성 검사를 통한 부정유통 원천차단, 이를 통한 국내산 쇠고기 소비량 증가 및 가격상승, 혈통, 사양, 경영정보 등을 개체식별번호에 의해 통합관리가 가능케 됨으로써 축산농가들의 소득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향후 계획

'07년은 '08년도 본사업 시행을 위한 중요한 시기로서 약 650천두에 대해 '07.4월부터 사육단계, '07.7월부터 유통단계 등 각 단계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07.10월경에 전체 시범사업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마련, 본사업 시행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07년 7~12월 기간중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본사업 시행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하여,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기본계획 수립, 근거법령 시안마련, 전담기구를 지정 또는 신설하고, 기관별 역할분담, 사육·가공·판매단계 세부추진방안 등을 마련하며, DB관리 등 전산운영체계와 사육단계 DNA검사 추진방안 등 본 사업 실시를 위한 총괄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하여 정보관리의 공공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07년 말까지 이력제 DB를 농림부 Agrix로 통합·운영할 예정이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소 귀표 전산관리시스템과 DNA검사결과 DB관리 시스템을 추가하고, 현재 사육→도축→가공→판매단계별 순차 입력 및 검색에서 가공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매과정으로 정보가 입력되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현재 쇠고기 이력추적제 정보입력 및 검색 프로그램을 실제 쇠고기 유통 상황과 부합되게 조정(프로그램 Upgrade) 하는 등 전산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여 사업추진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다. HACCP 강화

(1) 도입 배경 및 의의

사람이 먹는 식품에 대한 의미는 최근 20~30년 사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생존을 위한 영양보충의 의미에서 음식 자체를 즐기는 먹거리 문화까지 차츰 변화하면서 양보다는 질을 우선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과 요구도 깨끗하고 안전하며 품질 좋은 식품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식품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이에 대한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와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의 공급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축산물은 일반식품과 다르게 쉽게 변질, 부패하는 특성이 있고 인수공통전염병을 전염시킬 수 있어 보다 강력한 위생 정책이 요구 되었다.

그 동안 축산물 위생관리는 최종제품 검사에 의존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는 모든 축산물을 검사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쳐 보다 근본적인 위생관리 방안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우주 비행사용 식품을 생산하던 방식인 생산과정에서 사전에 위해한 요소를 파악하여 집중관리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를 국내 축산물 위생관리에 도입하여 적용하게 되었다.

(2)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국내 축산물에 대한 HACCP 제도의 적용은 '97. 12월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개정으로 도축장과 가공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최초 적용되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8조 및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위생관리기준(SSO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정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HACCP 적용지침에 부합되도록 기준서를 작성, 운용하도록 하였다. 도축장은 '00.7 ~ '03.7월까지 HACCP 의무적용을 소, 돼지, 닭, 도축장에 대하여 도축실적에 따라 규모별로 차등하여 4년동안 순차적으로 의무적용토록 하였고, 식육 및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축산물가공장에 대하여는 희망 작업장에 한해 자율 적용토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 후 최종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 HACCP을 적용하기 위해 '04. 1월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하여 보관, 운반, 집유, 판매 단계 적용 근거를 마련하였고, '06. 3월 같은 법 개정을 통해

사육단계에도 HACCP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단계에 HACCP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료에도 HACCP을 적용하기 위해 사료관리법을 개정('01.3월)하였다. 이로써 지난 3년간 국내 축산물 HACCP는 가축 사육단계부터 소비단계에 이르는 8단계(농장, 사료, 집유, 도축, 가공, 운반, 보관, 판매)의 축산물 안전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관련 법령의 개정 이후 작업장에서 실제 적용할 HACCP 지침과 모델 개발을 추진하였다. 도축장('99.6월)을 시작으로 포장육('02.1월), 유가공품('02.8월), 알가공품('02.8월), 판매업('06.5월), 보관·운반·집유업('07.2월), 돼지 농장('06.6월), 소 농장('07.6월)에 대한 모델 개발을 완료하였고,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작업장이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 등 HACCP을 적용하는데 활용토록 하였다.

또한, 사육부터 판매까지 모든 단계로 HACCP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HACCP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 조직의 설립이 요구되었다. 이의 추진을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을 '06. 3월 개정하여 HACCP의 작업장 적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운영토록 규정하고, '06.10.31일부터 기관의 운영과 함께 해당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면서 국내 축산물 HACCP 제도 적용을 더욱 강화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3) 정책의 주요내용 및 정책 추진 성과

HACCP는 축산물이 소비될 때 공중위생상 안전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생산, 가공, 제조, 판매중에 공중위생상 위해의 확인, 평가 및 통제에 대한 하나의 과학적, 논리적 그리고 체계적인 접근법이다. HACCP 체계에서 축산물 안전성 통제는 최종 검사제품 검사라는 비효율적 체계보다는 작업공정에 대한 체계적, 과학적 관리에 의해 행해진다. 그러므로 HACCP는 축산물 안전성 측면에 있어 예방적이고 비용-효율적인 위생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도축장의 경우 HACCP 의무화('03.7.1일)시행 전후의 식육중 미생물검사 결과에서 일반세균수가 시행 전에 105-6개에서 의무화 시행 후에는 102-3개로 개선되어 도축과정 중 위생관리가 개선되었음을 나타냈다. 사육단계 HACCP 도입은, '06년말부터 돼지 농장에 적용된 이후 기록관리 유지로 인해 사양관리의 표준화와 질병방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동물용의약품 사용량 감소, 산자수 증가 등이 나타나 농가소득이 증가하고 보다 안전한 돈육생산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 가공단계와 판매단계에 대한 HACCP 적용 성과에 대해서는 '08년 연구사업 추진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관련 기관에 알려 HACCP 적용 작업장의 확대를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4) 향후 계획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HACCP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의무적용대상인 도축장은 매년 HACCP 운용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한층 높여나갈 것이다. 아울러 자율적용 대상(도축장이외의 작업장)의 확대를 위하여 축산물 HACCP 컨설팅 대상 확대(3개→7개), 실험실 요원의 무료 미생물검사 교육 실시, HACCP 작업장의 시설·운영자금 지원 대상 확대(2개→6개), 가축농장의 경우 HACCP 지정 조건으로 축사 현대화 시설 자금 지원 등 HACCP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HACCP 적용 작업장의 차별화를 위해 HACCP 적용과 미적용 작업장 평가 연구사업실시, 학교급식, 군납시 HACCP 제품 사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HACCP 제도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정책수행으로 2017년까지 HACCP 적용 대상(약 64,000개)의 약 20%수준까지 HACCP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라. 농산물 안전성 조사

(1) 도입 배경 및 의의

의의

유해물질이 주로 오염되는 생산단계의 안전성조사를 통하여 부적합한 농산물이 시중에 출하·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공급함으로써 농가소득향상에 기여 하게 되고, 수입 농산물과의 품질경쟁 및 수출시장의 강화된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인증농산물·수출농산물·인삼(수삼) 안전성조사 등 지속적인 안전성 관리정책사업과 연계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유도로 우리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게 됨.

법적 근거

농산물안전성조사의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생산·저장·출하단계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친환경 농업육성법, 식품위생법, 토양환경보전법, 지하수법 등을 참고하고 있다.

(2)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추진경과

1단계 : 도입기, '94 ~ '99년

WTO 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처, 우리농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농산물 품질인증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인증품의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약 안전성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며('94),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 시험연구소의 분석인력을 16명을 배치와 GC, ICP 등 안전성 분석 장비 37종 197대를 확보하여 본격적인 안전성조사에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95).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업무처리요령을 제정('96.8)하였고, 잔류농약 검사를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는 농산물 품질관리 차원의 조사로 전환하였다('96). 또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 품질관리에관한법률에 안전성조사 실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성조사 업무가 제도적으로 정착하였으며('97),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정·시행('99.7)으로 법적근거가 변경되었고, 동 법률에 근거하여 생산단계에 적용할 농약잔류허용기준 마련하였다('99).

2단계 : 정착기, '00 ~ '03년

농산물 안전성관리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실험실정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은 시험연구소의 정밀분석실과 81개 출장소를 연계하는 분석실 정보관리시스템(LIMS) 국내 첫 도입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석체계 구축하였다('00).

그리고 안전성 조사 수요 증가로 분석 물량이 대폭 늘어나고, 대상 성분도 농약, 곰팡이독소에서 중금속, 식중독균으로 점차 확대되었으며, 지자체도 안전성조사를 추진토록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였다('02. 7).

3단계 : 확산기, '04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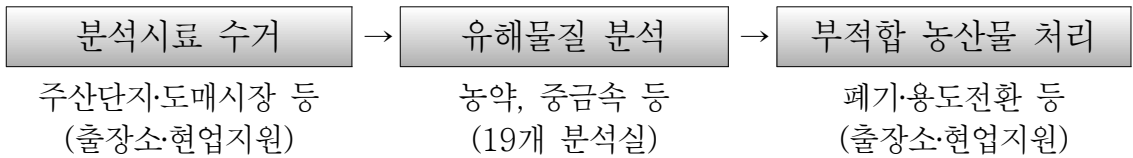
농산물안전성 조사에 대해 늘어나는 분석 수요에 맞춰 분석시설, 인력, 장비 등을 확대하고 시·군까지 정밀분석을 이 '04년 3개소, '05년 3개소, '06년 4개소를 각각 신설하여 누계 10개소의 지역 분석실을 확대하였다.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여 친환경·GAP 등 안전성 관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인증 농산물에 대해 확대조사 하였으며, 조사 성분도 잔류농약 중심에서 김치 기생충란('05), 폐광산 중금속('06) 사건 발생으로 중금속(납, 카드뮴), 식중독균 등 조사를 확대 실시하였다.

평가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사인 농산물 안전성을 확대하기 위한 주요한 제도로서 정착되었고, 농산물 안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3) 정책의 주요내용

농산물 안전성조사 대상을 살펴보면,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 곰팡이 독소,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유해물질을 조사한다. 농산물 안전성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품목의 생산 및 출하특성에 따라 재배포장, 보관창고, 시장출하, 유통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특히, 친환경·GAP 인증품 사후관리 및 소비자단체 요구 품목에 대한 잔류 농약 조사는 주로 유통단계에서 조사되어진다. 조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은 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 조치로 시중출하 및 유통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한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의 절차는 아래에 나타냈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 절차

(4) 정책추진 성과

지난 10년간 안전성 조사 분석

안전성조사 결과

지난 10년간('96~'06)의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건수에 따른 부적합 건수 및 부적합 비율을 표 1에 나타내었으며, 해마다 품목, 조사건수(정밀분석, 간이분석)가 증가하였다.

< 표 1 > 지난 10년간 안전성 조사 건수 및 부적합 건수

연도별	품 목	조 사 건 수			부적합건수 (B)	부적합비율 (B/A)
		정밀분석	간이분석	계(A)		
	품목	건	건	건	건	%
'06	178	27,652	38,238	65,890	750	1.1
'05	155	23,689	40,035	63,724	730	1.1
'04	138	20,371	40,196	60,567	770	1.3
'03	135	19,328	40,242	59,570	880	1.5
'02	134	17,011	38,999	56,010	600	1.1
'01	128	15,110	40,234	55,344	636	1.1
'00	124	11,672	31,056	42,728	525	1.2
'99	111	8,154	20,527	28,681	473	1.6
'98	80	6,400	5,036	11,436	448	3.9
'97	75	4,192	-	4,192	107	2.6
'96	53	1,314	-	1,314	38	2.9

부적합 농산물 처리내역

안전성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은 폐기, 출하연기, 현장 계도 등의 조치를 취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출하 및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였다. 지난 10년간 부적합 농산물의 품목, 건수, 처리 내역은 표 2와 같다.

< 표 2 > 지난 10년간 부적합 농산물 처리내역

연도별	품목	건수	부적합 농산물 처리내역
	품목	건	
'06	68	750	고발 1건, 폐기234, 출하연기452, 현장계도 등 63
'05	64	730	고발 8건, 폐기144, 출하연기434, 현장계도 등 144
'04	72	770	고발 1건, 폐기 161, 출하연기 535, 현장계도 등 73
'03	66	880	고발 1건, 폐기 216, 출하연기 581, 현장계도 등 82
'02	57	600	폐기 296건, 출하연기 244, 현장계도 등 60
'01	61	636	폐기 243건, 출하연기 281, 현장계도 등 112
'00	56	525	폐기 209, 출하연기 228, 현장계도 등 88
'99	47	473	폐기 117, 출하연기 237, 현장계도 등 119
'98	47	444	폐기 124, 출하연기 201, 현장계도 등 119
'97	27	93	폐기 15, 출하연기 35, 현장계도 등 43
'96	6	13	폐기 1, 출하연기 11, 용도전환 1

2006년 안전성조사 결과

조사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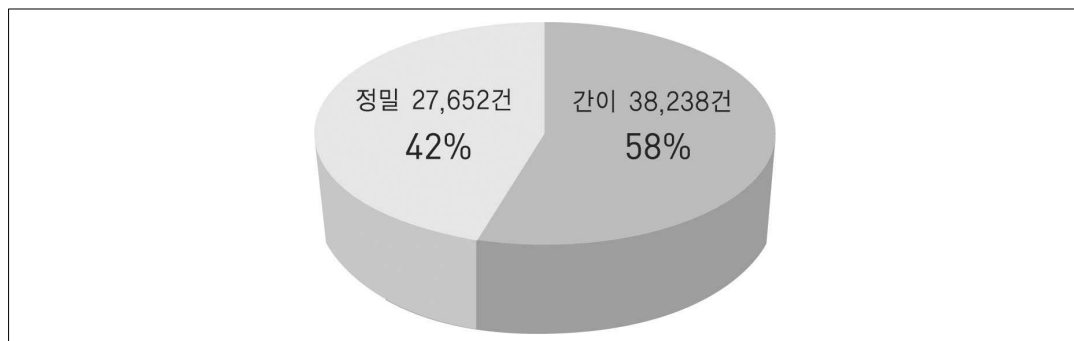
'06년도의 안전성 조사물량은 '05년도 63,724건에서 65,890건으로 전년대비 3.4% 증가 하였으며, 부적합은 750건(1.1%)로 '05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표 3). 부적합 농산물의 발생시기는 농산물 생산량이 많은 9월에서 10월사이 43%가 발생하였고, 생산량이 많은 지역과 시설채소 재배가 많은 지역에서 부적합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 표 3 > 2006년도 안전성 조사 실적

조사품목	조사 건 수			부적합건수 (B)	부적합비율 (B/A)
	정밀분석	간이분석	계(A)		
178	27,652 건	38,238 건	65,890 건	750 건	1.1 %

조사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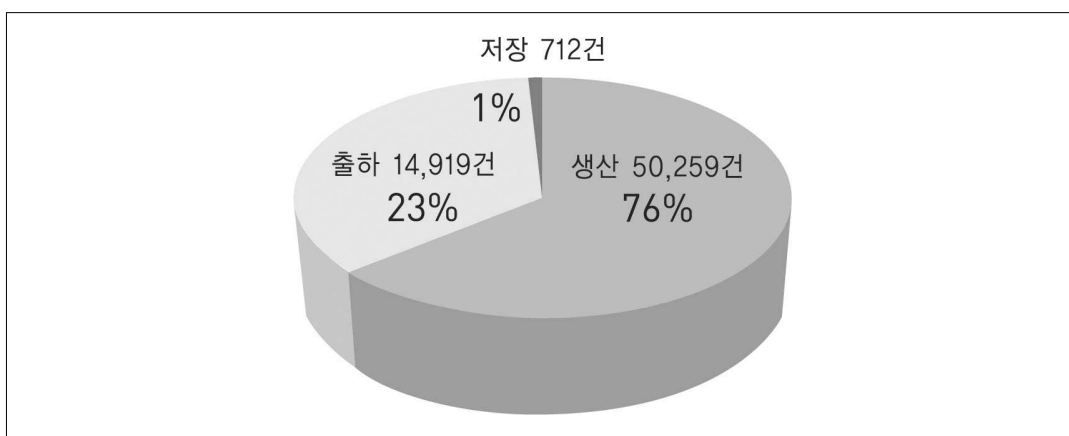
안전성 조사 방법은 정밀분석 방법이 27,652건(42%)이었고, 간이분석이 38,238(58%)로 전체 조사 물량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조사대상은 농산물 65,454건(99.3%), 축산물184건(0.3%), 용수 102(0.2%), 자재 101(0.2%), 토양 49건(0.07%)를 조사하였다.



안전성 조사 분석 방법(2006년)

수거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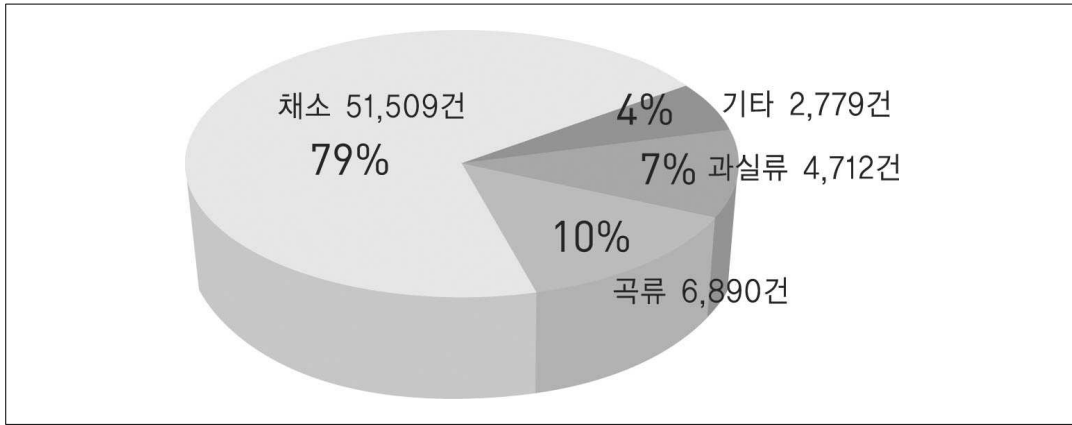
안전성 조사 단계별로는 생산 50,259건(75.9%), 출하 13,448(20.4%), 유통 1,471(2.2%), 저장 692(1.1%), 기타 자재 등 252(0.4%)의 단계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유해물질 중 잔류농약이 64,307건(97.6%), 중금속 948(1.4%), 식중독균 351(0.5%), 향생물질 184(0.3%), 곰팡이독소 49(0.1%), 특정유해물질 51(0.1%)가 조사되었다.



안전성 조사 단계별(2006년)

안전성 조사 종류

안전성 조사 대상으로는 일반농산물, 인증농산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일반농산물 48,061건(72.9%), 인증농산물 8,792(13.4%), 쌀소득보전 4,493(6.8%), 수출농산물 3,373(5.1%), 학교급식 농산물 735(1.1%), 재배환경 252(0.4%), 축산물 184(0.3%)를 조하였으며, 조사 작물은 채소류 51,509건 (79%), 곡류 6,890건(10%), 과일류 4,712건(7%), 기타 2,779건(4%)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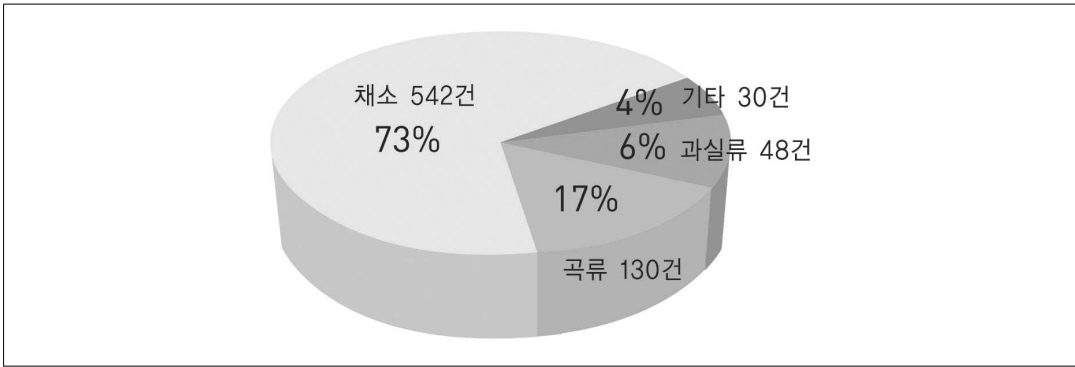
안전성 조사 단계별(2006년)

- 부적합 농산물 세부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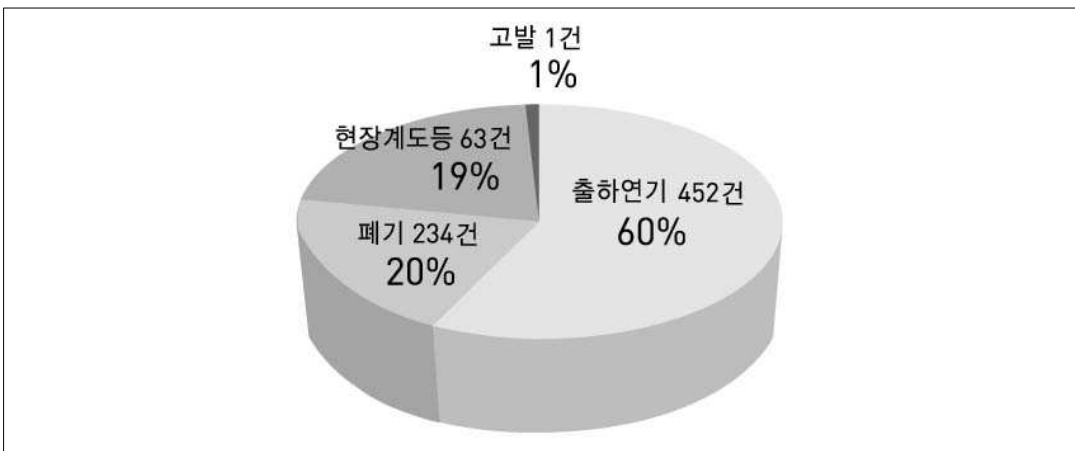
2006년 안전성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 세부내역은 68품목 750건이었다. 부적합 농산물중 채소류가 542건(73%)으로 가장 많았고, 곡류 130건(17%), 과실류 48건(6%), 기타 30건(4%)로 나타났다. 이중 고발 1건, 폐기 234건, 출하연기 452건, 현장계도 등 63건이 조치되었다. 또한 부적합 발생 상위 농산물 현황으로는 쌀 128건(17%), 깻잎 71건(9%), 수삼 57건(8%), 쪽갓 32건(4%), 배추 30건(4%), 상추 29건(4%), 시금치 29건(4%), 부추 28건(4%), 기타 346건(46%) 등으로 조사되었다.

< 표 4 > 주요 품목별 부적합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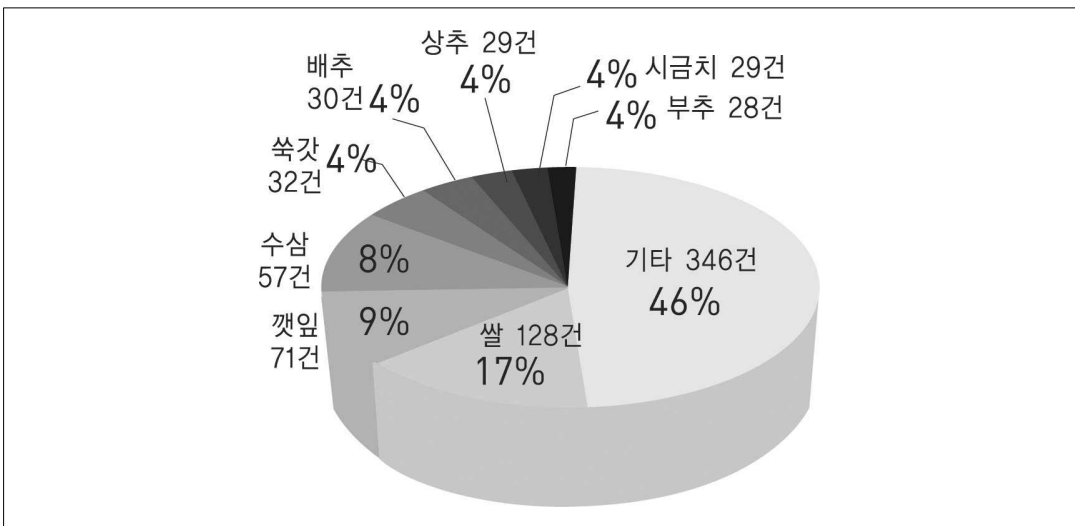
구분	부적합 품목 및 건수	조치내역
68품목 750건	쌀128, 깻잎71, 수삼57, 쪽갓32, 배추30, 상추29, 시금치29, 부추28, 취나물27, 풋고추23, 사과20, 대파17, 파세리16, 콩15, 참나물14, 쪽파14, 근대13, 미나리13, 열갈이배추13, 열무8, 머위대8, 파리고추8, 느타리버섯7, 방울토마토7, 붉은고추7, 복숭아6, 비름6, 포도6, 참당귀5, 콩나물5, 양상추4, 케일4, 가지4, 겨자채4, 셀러리4, 고춧잎4, 메론4, 곤드레나물4, 참다래4, 치커리3, 신선초3, 파프리카3, 돛나물3, 단감3, 머루3, 씬추2, 배2, 오이2, 아욱2, 양송이2, 토마토2, 갓2, 참쌀2, 방풍나물2, 자두2, 방아2, 피망1 등	◦고 발 1건 ◦폐 기 234건 ◦출하연기 452건 ◦현장계도등 63건



농산물 종류별 부적합 내역(2006년)



부적합 농산물 조치 내역(2006년)



부적합 발생 상위 농산물 현황(2006년)

- 정밀분석에 의한 안전성조사 결과

농산물 안전성 조사 중 잔류농약 조사대상은 일반농산물(10,898건), 인증농산물(8,682), 쌀소득보전직불제농산물(2,281), 수출농산물(3,373), 학교급식농산물(735), 인삼(505), 콩나물(543) 등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성조사 25,969건 중 643건이 부적합을 보였으며, 주로 학교급식 농산물 등에서 부적합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안전성조사 단계별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안전성취약 품목 위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는 생산단계에서 부적합률이 높았고, 출하단계, 저장단계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중점관리 30개 품목 중 총 6,329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셀러리, 파세리, 썩갯, 머위대 등 소면적 재배 작물에서 부적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요 품목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콩나물은 다소비 품목으로 생육 주기가 짧아 중점관리가 요구되는 품목이며, 일반농산물 보다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절기에 부적합률이 높았으며, 인삼(수삼)은 부적합 발생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일반 품목에 비해 높은 편이며, 일부 주산지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프리카, 배, 방울토마토 등 수출농산물 22개 품목 3,911건 조사결과 수출대상국 기준 부적합 231건(5.9%) 발생하였다. 특히, 일본의 PLS 및 미국의 Zero tolerance 시스템 등 수입 국가들의 강화된 농산물 안전성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부적합율이 높았다. 주요 품목의 부적합은 배 120건, 단감 51건, 포도 29건, 방울토마토 8건, 깻잎 7건, 파리고추 6건, 파프리카 4건, 홍삼 2건, 가지 2건, 딸기 1건, 메론 1건으로 조사되었다.

농지의 기능 및 형상 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한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접지불금 대상자에 대한 잔류농약 조사는 2,281건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37건 발생하였고, 학교급식 납품농산물은 깻잎, 썩갯, 참나물, 대파, 얼갈이배추 등에서 36건의 부적합 발생하였다.

반면 인증농산물인 친환경, GAP, 품질인증, 지리적표시 등 인증표시 농산

물의 잔류농약은 가장 낮은 부적합률을 보였다. 총 9,039건 조사결과 35건만 부적합이 발생하였으며, 유기인증·무농약 인증은 0.1% 이하의 부적합률로 매우 낮았다.

농산물 중 중금속 조사 10종 품목은 쌀, 옥수수, 콩, 팥, 시금치, 무, 배추, 고구마, 감자, 파 등을 조사하였으며, 조사품목 중 쌀이 전체 조사량의 63%를 차지하는 5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적합률은 쌀, 콩, 배추, 파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하지만, 옥수수, 팥, 고구마, 감자, 무, 시금치 등 6품목은 부적합이 조사되지 않았다. 그리고 농산물중 곰팡이 독소(아플라톡신 B1)는 쌀, 땅콩, 옥수수, 수수 등 4품목 49건 조사결과 부적합 없었다.

농산물 조사 중 식중독균 및 기생충란은 생식채소류 및 김치원료 배추를 조사하였으며, 식중독균은 생식채소류 100건 중 13건 검출되었으며, 대장균 5건, 황색포도상구균 1건, 바실레우스 7건, 리스테리아 0건, 살모넬라 0건이 검출되었으며, 기생충란은 김장원료 배추 200건 중 26건 검출되었다.

축산물 중 항생물질은 품질인증 계란 186건 조사결과 부적합 없었으며, 재배환경 중 잔류농약, 식중독균, 중금속, 특정유해물질 등 모니터링 차원에서 252건 조사하여 부적합 없었고, 잔류농약(토양, 용수, 자재) 100건, 식중독균(용수) 51건, 중금속(자재) 50건, 특정유해물질(용수) 51건이 조사되었다.

- 간이분석에 의한 안전성조사

간이 분석에 의한 조사물량은 38,238건으로 저해율초과 1,040건(2.7%)으로 나타났으며, 점유비율은 일반 94.1%, 쌀소득보전직불제 5.8%, 인증 0.1%로 조사되었다.

- 민원검정(10,913건)

민원 검정 대상은 토양 5,638건(51.6%), 농산물 5,253(48.1), 자재 22(0.3) 등이 조사되었으며, 유해물질은 중금속 5,583건(51.2%), 잔류농약

5,329(48.8), 아플라톡신B1(0.02) 등이 검출되었다. 검정목적은 인증신청용 7,838건(71.8%), 자체확인용 1,576(14.4%), 납품처 제출용 1,042(9.5%), 수출용 457(4.3%) 등의 용도로 조사되었다.

- 추진성과

- 소비자·수요자 지향적 농산물 안전관리 확대로 안전성 기준 적합을 향상

농산물 안전성 조사 건수는 '06년도 178품목 65,890건으로 전년도 63,724건 대비 3.4%가 증가하였으며, 부적합 농산물 조치는 750건(고발 1, 폐기 234, 출하연기 452, 기타 63)이었고, 기준 부적합률은 '03년 1.48%, '04년 1.27%, '05년 1.14%, '06년 1.13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생산·저장·출하단계 조사확대로 농산물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민원시스템 도입으로 민원편의 도모하였으며, 총 검정의뢰 10,913건('06) 중 10,534건(96.5%)이 인터넷으로 의뢰하여 처리되어 민원검정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민원검정 실적은 '04년 12,031건, '05년 14,359건, '06년 10,913건이었다. 또한, 검정증명서 진위확인 시스템, 분석결과 문자서비스, 인터넷으로 분석성적서의 진위여부 확인, 재출력 기능 도입, E-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전자통보로 결과통보시간 단축하였다.

소비자가 불안해하거나 안전성 취약 품목에 대한 생산·출하단계 중점관리로 부적합률 감소하기 위해 부적합 발생이 많은 30개 안전성 취약품목에 대해 중점관리를 실시하였다. 중점관리 된 품목의 조사건수는 '03년 6,286건, '05년 6,876건, '06년 8,222건으로 확대조사 하였다. 특히,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 재료에 대한 농산물의 잔류농약 조사로 735건('06) 조사, 부적합 36건(4.9%)은 관련기관, 납품업체 등에 통보하였다. 그리고 안전성조사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시중유통 농산물 합동수거조사(98건), 농·소·정 위원 합동조사(203건), 등 소비자 참여 확대 실시하였다.

- 수출농산물, 인증농산물 사후관리 등 농업정책 지원

친환경, GAP, 품질인증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지원하기 위해 9,040건 잔류농약조사 실시하였고, 이에 허용기준 초과 35건과 농약이 검출된 건은 인증기준에 따라 조치하였다. 또한,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관련 잔류농약검사로 친환경농업 유도하기 위해 사업신청 농가 중 2,281건의 잔류농약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37건(1.6%)에 대해 출하연기 조치하고 사·군 등에 통보하여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제외토록 하였다.

수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로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대일 수출 파프리카 등 수출농산물 3,911(민원검정 의뢰 포함)건을 조사하여 부적합 농산물 231건 수출보류 조치하였으며, 인삼 안전성조사 및 농가 교육·홍보로 '04년 411건, '05년 508건, '06년 505건으로 부적합 비율이 계속 감소하였다.

- 모니터링 조사 확대 및 중금속 안전성 조사

국내 생산량을 기준으로 출하단계 농산물의 농약잔류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 국내농산물의 안전성확보 수준점검 하였으며, 22품목, 1,531건 조사결과 부적합 26건(부적합률 1.7%)이었다. 부적합 농산물 생산 농가를 역 추적 조사하고 사·군 등에 통보조치 하였다. 농산물 재배환경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 실시로는 주산단지, 시설재배단지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에서 재배토양, 농업자재, 농업용수를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특정유해물질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252건 허용기준 초과 없음을 확인하였다.

생식채소류에 대한 식중독균(병원성미생물) 및 기생충란 모니터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식채소류와 농업용수에 대해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포도상구균 등 및 김치 원료배추 기생충란 조사하였으며, 식중독균은 생식채소류 100건 중 13건 검출되었고, 기생충란 : 배추 200건 중 26건 검출되었다.

휴·폐광산 인근 농산물 중금속(Cd, Pb) 안전성 조사하기 위해 쌀, 대두

등 10품목 898건에 대해 허용기준(잠정)이 설정된 카드뮴, 납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부적합 107건에 대해 138톤 폐기조치 하였다. 휴폐광산 인근 농산물 중금속(Cd, Pb) 안전성 조사 10품목은 쌀, 옥수수, 대두, 팥, 감자, 고구마, 배추, 시금치, 파, 무 등이다.

▪ 분석 인프라 구축 및 정보서비스 확대

강원지원 분석실 증축 및 김포, 평창, 상주, 고창지역의 4개 거점 분석실 신설하여 '06년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정밀분석요원은 '04년 85명, '05년 89명, '06년 108으로 증원되었으며, 정밀분석장비 확보 또한 '04년 1,982대, '05년 2,310대, '06년 2,832대 증가 되었다. 또한 농식품 안전관리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문교수 1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Safe Q」에 생산·저장단계 안전성조사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며, 전국 38개 도매시장과 연동하는 부적합 정보공유 시스템 가동하고 있다.

향후 계획

농산물 안전성 향후 계획으로는 기존의 농약위주(99%이상)에서 중금속, 미생물, 농약 등 추가로 기준이 설정될 경우 그에 따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할 것이며, 민간 분석실 및 지자체의 분석실 등을 활용하여 시장 자율적으로 안전성 검사 능력 배양할 수 있도록 필요시 분석실 시설 설치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2013년까지 시·군단위 정밀분석실도 확대 설치(38개소)하고, 분석방법도 살충제 성분(약 20성분)만 조사가 가능한 간이분석에서 정밀분석으로 전환하고, 현재 총 조사물량(6.6천건) 중 간이분석이 차지하는 물량이 4만건정도 수준이나 매년 1만건씩 줄여나가 3년이내에 간이분석을 폐지하고 정밀분석으로 전환함에 따라 출장소의 분석인력을 정밀분석실로 전환 배치할 계획이다.

마.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1) 도입배경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1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초년도에 수입농산물 7개품목에서 시작하여 1995년도에 국산농산물 127개가 포함되었으며, 1996년도에 가공품이 51개품목이 추가로 포함되고 수입농산물도 175개로 늘어나 총 353개품목으로 확대된 이후, 10년이 지난 2006년도에 원산지표시대상품목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품목수를 국내농산물 160개품목, 수입농산물 160개품목, 가공품 211개품목으로 총 531개품목까지 확대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시판용 수입쌀 및 한·미FTA 체결로 인한 수입쇠고기의 수입이 급증할 것에 대한 음식점원산지표시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5년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고 식육의 원산지표시제도가 2007년도 처음으로 도입되어 식육의 경우 300㎡이상의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및 단속이 시행 중에 있으며, 2008년부터는 쌀까지 확대된다. 또한, 음식점원산지표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음식점의 규모를 100㎡까지로 축소하여 대상음식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동단속권을 가지고 정기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원산지표시대상품목

	'91	'95	'96	'02	'06
국산		127	127	145	160
수입산	7	178	175	176	160
가공품			51	121	211
계	7	305	353	442	531

(2) 주요추진내용

원산지표시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원산지표시 이행율이 2006년도 97.1%까지 이르고 있으나, 원산지표시 대상업소가 많고, 수입농산물의 물량 증가, 유통형태의 다양화, 위반유형이 지능화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속에도 한계가 있어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산지표시제의 실효성 제고와 원산지표시에 대한 범국민적 감시활동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1995년 신고포상금제를, 1996년에는 농산물 명예감시원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 및 인원수를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신고편의를 위하여 전국 어디서나 단일신고전화(1588-8112)를 운영하고 있다.

2002년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시·도지사의 경우에도 원산지표시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정기적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거 또는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능적이고 규모화된 위반사범 단속을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를 확대하고 250개반 50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구성하여 명절 및 성수기에 집중단속을 벌이는 등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00	'02	'04	'05	'06
원산지표시 이행율(%)	94.9	95.9	96.1	96.9	97.1
명예감시원 위촉(명)	2,008	2,600	2,800	17,482	25,353
특별사법경찰관(명)	325	378	390	400	400
포상금 지급액(백만원)	127	130	147	230	250

또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2005년에는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

하여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처분외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제를 도입하여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위반자에게는 시정하여 판매토록 하고, 허위표시 위반자 중 위반물량 100톤이상, 위반금액이 10억원(가공품 20억)이상, 3회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하였으며, 허위표시 위반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여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2006년에는 표시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하여 소비자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신고포상금액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허위표시의 경우 민간인 포상금액을 종전의 2배로 인상하여 공무원보다 민간인이 우선적으로 많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간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밖에도 원산지 자율관리제도(Clean mark)를 도입하여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단속회수를 감축하는 등 자율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생산자·소비자단체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여 범국민적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간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능적·조직적 대형위반사범에 대한 기획수사를 전담하는 기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대형부정유통 방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래시장 평가제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원산지관리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관련규정 등을 개정하여 가공품의 경우 원료농산물이 모두 국산일 경우에는 ‘국산’ 사용기준과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 중 이식·재배·사육하여 생산한 농산물의 판정기준을 새로이 규정하고, 국산농산물과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목을 혼합한 경우의 원산지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등 원산지표시관리를 명확히 하고, 제조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수입산’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3) 정책추진 성과

농산물원산지표시대상품목이 2002년 442개품목에서 2006년 531개품목으로 대폭 확대되고, 지속적인 단속·홍보 등을 통해 원산지표시 이행율이 97.1%까지 제고됨에 따라, 소비자는 믿고 우리농산물을 살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리가 한층 신장되었으며, 원산지단속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개발하여 가동하는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단속으로 원산지표시 부정유통이 근절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건수도 2002년 6,427건에서 2006년 3,634건으로 줄어드는 등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인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농산물원산지표시제도와 관련된 업체 및 생산자·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원산지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제도개선사항 및 표시제도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민간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자율적으로 원산지표시제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올바른 농산물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선진신뢰사회를 구축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

(4) 향후 추진계획

시판용 수입쌀, 쇠고기 수입재개 등에 따른 원산지 특별관리를 위한 음식점원산지표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수입쌀에 대한 단속상황실을 금년 2월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쇠고기에 대하여는 관세청과 협조하여 수입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특별관리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조 하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음식점판매단계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추적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추진시스템을 마련 중에 있다.

또한, 수입쌀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중국산 벼 DNA마크 개발등 과학적인

원산지식별기법을 개발하고, 명예감시원을 정예화하여 민관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가며, 첨단장비의 활용과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강화하여 수입농산물의 관리체계화로 수입농산물의 국내시장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등 유통질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관리기법을 도입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원산지표시제도가 수입→유통→음식점 판매단계까지 일관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수입·가공업체, 생산자·소비자에 대한 원산지표시제의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마. 포장유통 확대

(1) 배추·무 포장유통

도입 배경 및 의의

정부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99.1월)하여 생산자 등이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맞는 농산물을 출하토록 지도하여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러나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배추·무는 물동량이 많으나 생산농가에서 선별과 등급화를 전제로 한 상품성 제고를 위한 노력 없이 관행적인 산물형태로 유통하여 불투명한 수량계산, 속박이 발생 등 거래 불신을 초래하고 물류효율화에 장애가 되었다. 또한 도매시장 내에서 재다듬기, 재선별로 유통비용이 증가하고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여 오수·악취를 유발하여 도시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시범사업('06.9~10월)을 통해 배추·무 포장유통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07.1월부터 공영도매시장에서 전면

실시함으로써 생산농가 및 출하자는 정량거래, 상품성 향상으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은 산물출하시 다듬기 및 선별에 소요되는 추가적인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도매시장 내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오수·악취로 악화되던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소비자는 깨끗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배추·무 포장유통은 ‘농산물 물류혁신 종합대책(’05.12월)’의 세부추진과제로 ’06년도 연두업무 보고에 중점과제로 반영하여 추진하였으며, 농림부, 농협중앙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도매법인, 풀회사 담당자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시행방안 기초를 마련하고, 학계·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와 T/F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배추·무 포장유통 시범사업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수도권 8개 공영도매시장에 배추·무 포장유통 시범사업(’06.9~10월)을 추진하여 전량 포장유통이 달성되었으며 시범사업 평가회(’06.12.1) 결과 포장유통이 조기에 정착되어 이해관계자의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배추·무 포장유통 시행방안을 확정·발표(’07.12.13)하여 ’07.1월부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 배추·무 포장유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배추·무 포장유통에 따른 출하자 부담경감을 위해 포장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운영과정에서 포장출하에 따른 출하자의 추가발생 비용을 분석하여 정부의 적정 지원수준을 제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포장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각 유통주체의 협조체계 구축에도 기여하였다.

정책의 주요내용

배추·무 포장유통은 관행적인 산물유통을 포장유통으로 전환하여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상품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배추 출하물량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32개 공영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배추·무 포장유통을 추진하여 일반 도매시장 및 유사·재래시장으로 파급효과를 제고토록 하고 있다.

포장형태는 산지 수확 작업시 도매시장에서 다듬지 않고 판매할 수 있는 포장으로 지역·출하시기·품종별 수확여건에 따라 그물망, 골판지 상자, 플라스틱 상자 등 적정 포장재를 출하자가 선택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배추·무를 표준규격으로 포장하여 출하하는 생산자 등에게 포장재비를 지원한다.(포장재 가격의 60~90%)

배추·무 포장유통을 위한 포장재비 지원은 사업 시작후 2년간('07~'08)은 지원을 강화하여 출하자의 비용부담 완화를 통해 포장유통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중기적으로는 지원비율을 연차적으로 10~20%씩 하향조정하여 '11년에는 일반 품목의 포장재비 지원수준(30%)으로 정부지원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추진 성과

배추 포장유통 시범사업('06.9~10월)을 추진하여 각 유통주체는 포장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수도권 공영도매시장에 100% 포장배추가 반입되어 포장화 기조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산지에서부터 다듬기·선별·포장출하 함으로써 산지와 도매시장간 역할을 재정립하고, 산물유통에서 포장유통으로 물류체계를 개선하여 유통효율화에 기여하였다.

정량거래로 산물 출하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덤”이 발생하지 않고 속박이도 감소하여 가격결정이 투명해져 생산자는 포장출하에 맞는 재배형태

개선 등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가 수취가격 제고가 기대된다.

배추·무 포장유통으로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출하율이 향상되고 있으며, 재다듬기·재선별이 줄어들어 도매시장내 쓰레기 발생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깨끗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07년 1월부터는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으로 확대하여 현재 배추·무가 전량 포장되어 공영도매시장에 반입되어 포장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산지에서 선별 및 규격포장이 익숙하지 못해 품질관리가 미흡한 상황에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공영도매시장 배추·무 표준규격 출하율 추이

구 분	'98	'00	'02	'04	'05	'06
배추	0.0	1.2	1.0	0.9	2.8	55.3
무	0.0	5.3	2.7	1.2	2.8	67.3

가락시장 청과류 쓰레기 발생량 추이

	2001	2003	2005	2006
쓰레기 발생량(톤)	99,600	84,048	100,034	38,956
처리비용(백만원)	2,082	2,325	2,583	2,264

향후 계획

배추·무 포장유통으로 상품성 제고 및 유통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품질관리에 중점을 두고 도매시장 내에서 재다듬기 단속강화, 유통주체별 협조체계 구축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월동배추의 저장관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여름철 고랭지 배추

출하에 대비하여 다양한 포장재 사용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플라스틱 상자 등의 물류기기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상자 회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배추·무 포장유통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2)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도입 배경 및 의의

국내 닭고기 산업은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높고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백색육 소비가 증가하여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이 1990년 4kg에서 2005년 7.3kg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러한 시장변화에서 소비자들은 다른 식품에 비해 변질이 쉬운 닭고기의 위생수준을 보장하여 믿고 살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비포장 상태로 유통되는 닭·오리고기의 반출과정에 살모넬라 및 대장균 등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의 2차 오염이 가능하므로 소비자들의 보건 향상을 위해 닭과 오리고기의 체계적인 위생 안전성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닭고기 유통의 시발점인 도계장에서 닭고기의 상당부분이 벌크 상태로 출고 및 유통됨에 따라 판매단계에서 병원성 미생물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소비자가 닭을 고르는 과정뿐만 아니라 대형매장의 경우 통닭을 부분육으로 작업하는 등 오염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닭·오리고기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포장 유통이 요구되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 도계장에서 HACCP 인증 제품이 중간도매상에 공급되더라도 여러 회사 제품과 수입품이 섞여 중간도매상의 이해관계에 따라 원산지가 둔갑되어 공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포장지에 정확한 제조회사 표시로 수입산 닭·오리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것을 차별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국내산과 수입산을 확실히 구분

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요구되었다.

이러한 닭·오리고기에 대한 포장유통의 필요성과 한국소비자원, 한국계육협회 등의 포장유통 의무화 시행 건의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단계적인 포장유통 의무화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2003년 6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닭고기 및 그 가공식품에 대한 미생물 오염실태 조사 결과 살모넬라균, 캠필로박터균, 리스테리아균,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고, 이의 방지를 위한 위생관리 강화를 건의하였다. 또한 한국계육협회에서는 국내 닭고기의 위생적이고 믿을 수 있는 유통방안 마련을 위해 포장유통을 의무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04년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 수립시 ‘닭·오리고기 지육·정육의 포장 유통 의무화 추진’ 방안을 수립하게 되었고, 2005년에는 우리나라의 닭·오리고기 유통구조 등을 분석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포장유통 시스템 구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또한 실시하였다.

포장유통 의무화는 도축장에서 도축 후 가공 공장과 식육포장처리장 및 판매장에서 모든 닭·오리고기를 포장하여 유통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제도의 시행이 완전히 이루어질 경우 모든 소비자는 포장된 상태의 위생적인 닭·오리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포장유통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소비자와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 사전설명회('04.7.26) 및 기자단 브리핑('07.7.29), 보도자료 배포('04.7.29, '05.7.21), 전국순회교육('06.5월, 11월), 관련업계 대상 사전 설명회('06.9.29), 현장 간담회('07.2.7) 등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와 관련 업계에 제도 도입의 목적과 시행 방안 등에 대해 홍보를 실시하였다.

포장유통 의무화 제도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개정을 통해 제도화 되었

다. 2005년 정부입법과정을 통해 2006.3.24일 법령이 개정되어 포장유통 의무화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시행령 개정('06.9.22)시에는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와 영업자를 규정하였고, 시행규칙에는 포장방법을 포함시켜 개정함으로써 2007년 1월부터 1일 8만수 이상 도축하는 도축장에 대해 포장유통 의무화를 시행토록 하였다.

2005년 우리나라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7.3kg이며, 2003년 기준으로 일본은 14.5kg, 미국은 42.9kg이었다. 또한 외국의 경우 소득의 증가와 함께 적색육에서 백색육을 선호하여 닭고기의 소비량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 등을 볼 때 아직도 우리나라 닭고기 시장의 확대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비 형태를 볼 때는 미국의 경우 1962년에 80%이상이 통닭 형태로 소비되었으나, 그 후 통닭 형태의 소비는 줄고 부분육과 2차 가공육은 계속 늘어나 2002년에는 통닭이 15%, 부분육과 2차 가공육이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통닭의 소비량이 높은 우리나라 소비형태와 비교시 앞으로 부분육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부분육 소비 증가는 미포장 상태의 통닭유통에서 1차 가공된 단순 절단·포장된 제품의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 닭고기 시장에서의 포장유통 의무화 제도는 위생수준의 제고뿐만 아니라 닭고기 소비형태 변화, 시장 확대 등에 대한 향후 대비를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의 주요내용 및 정책추진 성과

포장유통 의무화 제도는 도축 후 유통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닭·오리고기를 포장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도축장에서 도축된 닭·오리고기는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1마리~5마리 등의 소매단위 포장 또는 25마리 단위로 한꺼번에 포장하는 벌크포장의 방법으로 포장되어 유통된다. '07년에는 1일 8만수 이상 도축하는 도축장이 의무화 대상으로 규

정되어 있으며, 전체 도축두수 대비 약 42%('06년 도축실적 기준)가 도축 후 포장유통 되고 있다.

포장유통 대상 영업자가 도축장, 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판매장까지 확대시행시에는 도축장에서 도축 후 소매단위로 포장된 닭은 판매장에서 그대로 포장된 상태에서 판매되어야 하며, 별크포장 후 가공장 및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소매단위로 재포장 되거나 부분육으로 단순 절단·포장된 경우에도 판매장에서 포장된 채로 판매되어야 하며 판매장에서는 임의로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하거나 절단하여 판매하지 못하게 된다.

향후 계획

포장유통 제도의 시행 목적인 유통중 재오염과 둔갑판매 방지를 위해서는 최종 판매까지 포장유통이 의무화 되어야 하나, 도축장 등 작업장에서 포장유통을 위한 시설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재 1일 도축두수 8만수 이상 도축장에 시행하고 있는 것을 '08년 이후에는 1일 5만수 이상 도축하는 도축장으로 '09년부터는 도축장, 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판매장까지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사. 식품산업 육성

(1) 도입배경 및 의의

식품산업은 첨단공학기술과 접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이며, 현지화 등이 용이하여 세계화 전략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증가에 따라 외식산업, 기능성 식품, 친환경 식품 등의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예고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개방화의 진전으로 식재료 뿐만 아니라 외식산업의 국제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산업은 농산물을 가공·처리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농산물의 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신선농산물로 수출이 어려운 원료 농산물을 가공함으로써 농산물의 간접수출을 유발하는 등 농산물 소비의 연장선상에 있는 산업이다. 이와 같이 식품산업은 농업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이며 식량안보와 직결되고 있어 농업정책의 한 부분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세계 각 국은 적정 수준의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동반발전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주정부별로 ‘농식품산업 성장발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하여 농업과 연계한 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영국은 지역 일자리 창출, 농식품 분야의 부가가치 증대를 통한 경제안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품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식품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높고 국가발전에 중요한 산업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식품위생법’이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위한 규제위주로 추진되어 산업육성 정책의 추진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지난 '93년에 제정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 있으나, 이는 농산물의 산지가공 및 전통식품 육성 등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등 식품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왔다.

따라서, 농업과 식품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농업성장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고 국민에게 다양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소득증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및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의 사회·문화적 여건 변화로 인해 식품의 소비패턴이 변화되고 있고, 그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수요에 맞는 정책추진이 필요하게 되었다. 과거 생산된 농산물을 신선 형태로 구입하여 취식하거나 조리하던 패턴이 가공식품이나 외식을 통한 소비가 늘어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가계의 식료품 지출비의 구성을 보면, 외식이 차지하던 비중이 지난 '95년에는 32%에 불과하던 것이 '05년은 49%까지로 확대되었다. 반면, 신선식품은 '95년의 45%에서 '05년 28%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농산물 생산 이후 유통의 흐름이 소비자의 직접적인 소비보다 외식 등을 통한 소비로 많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외식업 및 식품제조업 등이 농산물의 최대 소비처로 자리잡았음을 뜻한다. 이러한 여건에 맞도록 농업 생산자와 식품산업과의 연계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고, 국내 농산물 원료 사용의 확대를 위해서는 식품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식품산업 육성 정책은 이러한 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2)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정책입안 과정

FTA 확대 및 DDA 농업협상 등 새로운 국제농업 질서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한 향후 10년간의 농정 비전을 제시한 '농업농촌종합대책('04.2)'에 식품산업 육성을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과제로 채택하고, 원료생산에서부터 식품 제조·소비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연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정책 수립을 위해 농업과 연계한 식품산업 지원방안 연구, 식품산업 정보체계 구축 및 식품인증제도 개선, 농식품의 소비촉진 홍보전략 방안 연구,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 지원방안, 산지-식자재-외식업체를 연결하는 유통망 구축에 관한 연구 등의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지난 '04년 이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식품관련 학회의 학술활동을 지원하여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분야별 전문가들의 학술활동

을 지원해 오고 있다. 그리고 관련 업계나 학계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산학연이 참가한 식품산업 혁신 연찬회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이러한 연찬회를 통해 식품관련 단체와 업계에 수차례의 정책제안 기회를 부여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식품관련 업계, 학계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다.

평가

식품관련 업계와 학계에서는 그 동안 규제위주의 정책에 편중되고 산업적 측면에서 발전·육성을 위한 정부정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식품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외식업의 경우, 최근 그 시장규모가 급성장하여 '05년에는 52조원의 매출액을 나타내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해외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등 그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이에 맞는 정부의 적절한 정책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농업계에서는 식품산업이 농업과의 연계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반면, 농업 생산자들이 직접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3) 정책의 주요내용

농림부가 추진하는 식품산업 육성정책의 주요 내용은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관계법령 정비, 통계정보체제 구축 등 산업발전 인프라 조성, 농산물산지 가공산업의 육성 지원, 국산 농산물 원료를 사용하는 가공업체, 외식업체 등의 원료 구매자금 지원을 통한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지원, 식품가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품질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가공식품 KS, 지리적표시제 등의 식품표준화,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전통식품 명인지정 등 전통식품산업 육성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식품산업 발전 인프라 구축

우선 식품산업의 발전 토대를 다지기 위한 ‘(가칭)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농촌종합대책에 식품산업진흥법의 제정계획을 반영하여 '07년내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동 법에는 식품제조업, 외식업, 식자재업 등 식품산업 전반을 정책대상으로 포괄하고 식품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연구개발 강화, 식품업체의 경쟁력 강화, 식품의 품질향상 및 세계화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식품산업의 현황 및 원료조달 실태 등의 현황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식품관련 통계는 통계청이나 한국은행,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식품관련 통계들은 선진국에 비해 전체적으로 빈약한 수준이며 통계간 연관성 미흡, 자료 불일치 등 신뢰면에서 한계가 노정되어 있다. 또한 국내 농업과 연계발전을 위해 필요한 식품제조업, 외식업 등의 농산물 품목별, 원산지별 이용실적이나 조달실태 등은 누락되어 있어,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식품산업 현황조사를 '0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식품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기술개발사업중 가공분야에 '94년부터 '06년까지 총 564과제 730억원을 지원하였다. 최근에 들어서는 기능성·건강식품 개발 및 전통식품의 산업화와 관련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지난 '03년부터 '07년까지 총 3.6억원을 지원한 상황버섯 발효주 ‘천년약속’은 우수사례로 꼽을 수 있다.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지난 '93년 제정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근거로 하여 산지에서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치하고 가공식품을 생산코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공공장 시설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91년 이후에도 전체 1,108개소를 육성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가공원료 구매자금을 연 1,000억원 수준으로 융자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05년부터는 가공원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을 식품가공업체뿐만 아니라 외식업체와 전처리업체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외식산업의 매출액은 '05년 기준 52조원에 달할 만큼 시장규모가 커졌고, 그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최대 소비처로 자리잡게 되어, 이를 대상으로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을 유도함으로써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전통식품 산업 육성

전통식품 명인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전통식품 명인은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통식품을 계승·발전하는 전통식품 제조기능 보유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전통식품 명인은 식품이 우리나라 고유의 식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고(전통성), 기능보유자의 전승계보, 기능계승 여부(정통성), 기능보유자의 경력이나 활동상황, 조리·가공방법의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지정하고 있다. '02년까지 총 24명이 명인으로 지정되었고, 그중 20명이 활동하고 있었으나, '03년 이후에는 7명이 새로이 명인으로 지정되었다. 전통부각(오희숙, '04년), 한과(김규훈, '05년), 송순주(박홍순, '05년), 우전차(김동곤, '06년), 김치(김순자, '07년), 숙황장(김병룡, '07년), 죽로차(홍소슬, '07년) 등이 명인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김치와 숙황장의 경우, 우리의 대표적인 전통식품인 김치와 장 분야에서 최초로 전통식품 명인이 탄생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주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농업과 연계되도록 전통주 기술개발 및 다양한 홍보 행사들을 추진하고 있다. '06.8월에는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 등을 위해 산학연 점수가 회의 및 우리부 정책조정 실무회의를 거쳐 '전통주 산업 육성 종합 대책'을 수립하였다. '07.5월에는 전통술과 전통음식 만남 페스티벌을 서울

한옥마을에서 개최하여 내외국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 농민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류별 전용 누룩 제조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하는 등의 연구개발 분야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통주 관련 세제감면, 유통규제 완화 및 원료 원산지 표시 도입 등의 제도개선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전통식품의 하나인 김치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대표 건강식품으로 자리잡게 하는 한편, 국내의 김치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아왔다. '02년 김치의 국제식품규격인 CODEX에 공식 등록된 이후 김치의 세계화에 노력한 결과, '06년에는 미국의 대표적 건강잡지인 'Health志'에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김치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각종 해외 박람회 등을 통해 김치의 시식행사를 추진함으로써 김치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여 왔다. '05년에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요리전문학원인 르 꼬르동 블루와 김치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김치 퓨전요리를 개발하였고, 김치 퓨전 요리책은 '05년 국제 요리책 경연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07년에는 김치의 매운맛과 숙성도를 표준화함으로써 김치산업을 체계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김치의 매운 맛을 매운 맛을 내는 성분과 매운 맛 정도를 나타내는 성분을 기본으로 5단계로 구분하고, 숙성도는 pH와 산도 기준으로 3단계로 구분하였는데, 매운 맛과 숙성도는 김치의 특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를 잘 활용하면 김치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어린이, 학생, 환자 등 체질 특성에 맞는 맞춤형 김치 제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김치의 수출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 품질향상

식품 품질의 향상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종 농식품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가공식품의 KS(표준규격) 인증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추진하였다. 특히 '03년 이후 품질인증을 획득한 식품이 급격하게 늘어나 고품질의 식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었다.

가공식품의 KS 규격이 '02년까지 37개에 불과하던 것이 '06년까지 162개로 확대되었고, 전통식품 품질인증도 '02년까지 12개의 인증실적이 '06년에는 총 89개 식품으로 증가하였다.

농식품 지리적 표시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지리적 표시제는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지역 명칭을 고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호해 주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00년에 도입되었다. 지리적 표시를 등록한 농식품이 '02년까지는 보성녹차 1개뿐이었으나, '06년까지 34개로 확대되었다.

식품업체 경쟁력 강화

식품업체의 HACCP, ISO22000 등 식품안전 인증을 위한 시설자금을 지원하여 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06년부터 식품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10억원 한도내에서 품질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시설 개보수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특히 '07년부터는 금리를 기존 3~4%에서 2%로 낮추어 식품업체들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의 웰빙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고, '02년부터 식품가공업체들의 HACCP 의무적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식품업체들의 시설 현대화 수요가 늘고 있었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농안기금으로 가공업체의 시설현대화 자금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식품업체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상담센터'를 '06년부터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식품안전, 위생 및 경영상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기술에서 마케팅, 식품안전과 위생, 경영, 공장설립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들, 제품개발에서 생산까지 식품분야에 관련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해 주고 있다.

우리 음식의 세계화 지원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한류 열풍을 활용하여 우리 음식을 세계화하려는 노력들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우리 고유의 전통음식 조리법을 표준화하여 세계화 진출의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지역에 숨어있는 향토음식을 발굴하여 산업화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세계화 진출의 토대를 다지고 있다. '06년부터 시작된 전통음식 조리법 표준화 사업은 문화관광부와 농림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06년부터 '08년까지 총 300종의 우리 전통음식 조리법을 표준화하고 외국어로도 번역하여 책자, DVD 및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06년에 100종의 표준화된 조리법을 작성하였고 이의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07년부터는 지역별로 농산물 관련 축제와 연계하여 지역의 우수 향토음식을 발굴하기 위한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지원하고 중앙단위의 향토음식 발굴·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발굴된 음식은 조리법, 특성, 맛과 영양 등에 대한 자료를 DB화하여 이의 산업화 및 세계화를 촉진시키고자 한다.

기존에 우리 음식의 세계화를 위해 간헐적이고 분산되어 이루어지던 정책들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식 세계화 지원사업'을 마련하였다('07.2월). 세계화할 수 있는 대표 한식을 정하고, 한식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우리 한식을 알리는 첨병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해외 한식당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추진 및 우리 한식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국가의 한식당 실태조사를 통해 DB를 구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식당들을 국가가 인증토록 함으로써 해외 한식당 경쟁

력을 제고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07년 일본내 한식당 실태조사를 추진중에 있다.

우리 농식품 소비촉진 홍보사업

'03.7월 대통령님 지시로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광고·특집방송 등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사업을 대대적으로 개시하였다. 소비촉진 홍보사업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유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시작하였는데,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과 안전성, 이미지 향상 등을 집중홍보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05.7월에는 농식품 소비촉진 홍보를 전담하기 위한 '농촌정보문화센터'를 설립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계절별 건강농식품 등 다수의 다큐 방영(KBS 등), 우리 농식품 우수성 홍보 CF, 인기 인터넷 '사이월드'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해 우리 농식품의 건강·안전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미래 우리 농식품의 소비자인 어린이·청소년층을 타겟으로 한 맞춤형 홍보도 추진하고 있어, '05년부터 초등학교 식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제작·방송 등을 통해 우리 농식품의 미래 소비자들의 식습관을 올바르게 형성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4) 정책 추진 성과

'04.2월에 수립한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 식품산업을 농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정한 이래, 식품산업 진흥 관련 관련법령 정비를 비롯하여 통계정보체계 구축,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 식품업체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다.

아직 관련법령 정비는 추진중에 있지만, 통계조사 실시, 농식품 인증제도의 확대 등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있다. 농식품 인증제도가 확대되어 고품질의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KS 인증이나 품질인증을 획득한 식품이 '03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 가공식품 KS

및 품질인증 품목수가 '02년의 80개/175개에서 '06년 116개/269개로 증가하였고, 지리적 표시제 등록 농식품도 '02년까지 1개에 불과하던 것이 '06년 말 기준 34개로 확대되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도 '02년에 12개에서 '06년 89개 식품으로 증가하였다. 우리 전통음식의 세계화에 제약요인으로 지적되어 오던 조리법의 비표준화도 조리법 표준화 사업으로 '06년에 이미 100종의 표준화된 조리법이 만들어졌다.

식품외식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품외식업체 8개소가 '06년에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07년에는 약 20개 업체가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07년 예산 150억원).

우리 전통식품의 해외 진출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김치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된 식품으로 자리잡았으며,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06년에는 김치의 국제기준 채택에 이어 고추장과 인삼제품이 CODEX 채택 8단계중 4단계를 통과하였다.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가공원료 구매자금 지원은 '03년 760억원, '04년 916억원, '05년 1,165억원을 지원하여 국산 농산물 소비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5) 향후 추진계획

식품산업 발전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식품산업진흥 관련 법령 정비를 관계부처 협의 및 업계, 학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무리할 계획이며, '07년부터 추진중인 식품산업 현황조사를 향후 확대하여 식품산업 통계정보체계를 구축토록 할 계획이다.

'08년부터는 한식 세계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음식이 세계 5대 음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음식의 홍보, 한식당의 해외 진출 확대 및 경쟁력 제고, 우리 음식의 저변 확대 등에 치중할 계획이다.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를 위해 농업 생산자와 식품외식업체간의 교류 확대의 장을 조성하여 직거래, 계약거래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직접적인 계약거래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한편으로 지역농업과의 연계 속에 식품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연구기관, 식품기업체, 지원시설 등이 집적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08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유기가공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통해 유기농업과의 동반성장을 꾀하는 한편, 유기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최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유기식품의 표시제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로 이원화되어 있는 제도를 통합하는 한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의무화함으로써 유기식품의 차별화를 통해 유기농업과 유기식품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예정이다.

제 3 장

농업·농촌의 비전과 정책과제

제 3 장 농업·농촌의 비전과 정책과제

참여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수산업·어촌종합대책이라는 중장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06년에 ‘함께가는 희망한국 비전2030’을 수립하여 2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서는 농어촌의 비전과 정책 과제의 흐름을 정리하고자 한다.

1 | 농업·농촌의 중장기 비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농업도 머지않아 시장이 완전 개방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장개방 하의 산업경쟁력은 소비자의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국내 농산물이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면 농업도 살아남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외의 신시장·신수요에 대응하는 신상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통하여 한국 농업은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농업은 여러 측면에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농업을 둘러싼 여건을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으로 구분하여 (SWOT 분석),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며 위협 요인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기회 요인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국내 농산물·식품시장이 소비자의 구매력 향상과 함께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농산물의 국내시장은 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나 덴마크보다 훨씬 크며,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해외에 진출하는데 유리하다. 일

본,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수출시장이 확장되고 있으며, 중국도 고급 농산물의 수출시장으로 잠재력이 매우 크다. 더욱이 소비자의 품질·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품질 차별화와 마케팅 전략 등 비가격 경쟁 측면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둘째, 미래 농업을 선도해 나아갈 새로운 주체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업농이 농업 생산의 중심이 되고, 평생직장으로 농업을 선택하는 청년 후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직은 소수이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첨단기술·정보·지식을 응용하는 ‘신지식 농업인’이 지역농업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생산·가공·유통의 계열화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외소득을 창출하는 농기업(agri-business)이 새로운 경영주체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 농업경영체가 사업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영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자연조건과 기술·정보·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농업은 자연과 첨단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 응용과학이며,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생명공학(BT), 정보통신기술(IT) 등의 첨단 과학기술이 농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증대의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연구개발 투자는 미래 농업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 비전 2030 농업분야 실행계획 ■

2006년 8월에 발표된 「함께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에서는 농업인의 미래의 모습으로 ‘활력이 넘치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안정된 생활’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농업분야의 구체적인 정책목표로서 농가소득 안정, 농업체질 강화, 생산기반·유통 개선, 농어촌 생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 목표	실천과제	지표 전망				근거/국제비교
		지표명	'05	'10	'30	
농가 소득 안정	·직접지불제 확대	·직불제 투융자비율(%)	12.4	20.7	30.0	·농업농촌종합대책에 따라 직불비중 확대 * EU 69,미국26('05)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보험 가입률(%)	23.4	26.0	36.0	·매년 0.5% 증가 * 일본 25('01), 미국 72.7('00)
농업 체질 강화	·쌀 전업농 육성	·쌀 전업농 생산비중(%)	30	41	79	·일본 44('00) 60%(10계획)
	·친환경농업 확대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 비율(%)	4	10	20	·'11년 이후 유기 및 무 농약 농산물만 인증
생산 기반 · 유통 개선	·재해대비 안전 영농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	·배수개선율(%)	68.8	81.3	100	·전국의 상습침수 지역을 대상으로 2013년까지 배수 개선 완료
	·산지유통의 규모 화·전문화	·원예농산물의 산지유통전문 조직 처리비 중(%)	26.8	40.0	80.0	·'30년까지 산지 유통전 문조직이 전체물량의 80%처리
생활 기반 확충	·보건, 의료, 복지, 교육, 문화, 주거 등 농어촌 생활 인프라 확충	·농어촌마을개 발(권역)	36	216	1,000	·'17년까지 1,000권역 착수

출처 : 「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2030」 (정부·민간합동 작업단, 2006.8월)

미래의 농촌은 농업 생산만이 아닌 ‘복합생활공간’으로 변모하면서 농업·농촌의 가치가 재발견될 것이다. 최근 들어 생태나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웰빙(well-being)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듯이, 쾌적한 환경을 갖춘 농촌을 선호하는 도시민이 늘어나고 있다. 그 동안 농촌인구(읍면 인구)가 감소하여 현재 전국민의 18.5%이지만 2030년경에는 20%까지 증가하리라는 것도 무리한 전망은 아닐 것이다.

소득이 늘어나면서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과 건강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도 더욱 많아지고 있다.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면서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직거래 방식으로 찾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이고, 이에 맞추어 농산물이 생산되는 농촌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도시민도 늘어날 것이다. 이는 자연과 친환경 농산물 등과 연계된 농촌 체험 활동 및 여가 공간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관광(green-tourism)은 도농교류를 통하여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주 5일 근무제 및 주 5일 수업제의 확산으로 가족 단위로 농촌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체험과 전통을 중시하는 소비 경향에 따라 체험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도농교류는 ‘관계(relationship) 마케팅’을 통해 농가와 농촌 주민의 소득 기회를 증가시키고 농촌다운 환경과 경관의 관리에도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탈산업사회로 변모하면서 농업·농촌이 지닌 환경생태 공간문화 공간으로서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국민들의 여가와 문화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여 농촌지역의 경관·환경·자연을 잘 가꾸어 제공함으로써 농

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도시민들은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 농촌에 대한 투융자를 위한 납세 부담을 수용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국토균형 발전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산업사회 단계와 농업의 변화

농경사회	산업사회 (탈농경사회)	후기산업사회 (탈산업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급자족(먹을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소비일치 - 단순교환, 생계우선 ◦ 자연의 지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이용 - 자연재해의 최소화 ◦ 증산을 위한 생물학적, 화학적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형 다품목 소량생산 - 분산화, 다양화 - 통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화(값싼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적 이윤추구 - 시장경쟁, 판매우선 ◦ 자연의 정복, 약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약탈 - 생태계 파괴 ◦ 이윤추구를 위한 화학적·기계적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량생산의 단작화 - 규모화, 전문화 - 규격화,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시장화(좋은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와 소비자 교류확대 - 틈새시장, 지역시장화 ◦ 자연과의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의 관리 - 파괴된 생태계질서 복원 ◦ 안전한 식품을 위한 생물학적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 다품목 소량생산 - 유기적 통합화, 시스템화 - 탈규모화, 차별화

가.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WTO 체제는 시장개방에 덧붙여 국제규범에 따라 정부의 시장 개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농정의 국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농어업·농어촌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새로운 패러다임과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농정개혁의 지속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첫째, 소비자·도시민을 지향하는 농업·농촌으로 전환해야 한다.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품목과 품질의 농산물(식품)을 생산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소득기회를 확대하며, 농촌의 깨끗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를 창출하여 새로운 소득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정부 주도에서 시장지향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생산·유통·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부는 시장조성과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품목의 수급과 가격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작황이나 시황과 같은 관측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생산 중심에서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가격지지를 통한 ‘소비자 부담형’ 정책에서 정부가 다양한 직접지불을 통해 소득을 보장하는 ‘재정 부담형’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개별농가에 대한 투융자 지원이나 정부 구매 등 생산과 가격 지원정책에서 탈피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직접지불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넷째,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비자와 소비지 유통조직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품질 고급화와 마케팅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신기술 개발 및 수확후 관리기술 혁신으로 품질을 고급화하며, 대형 소매유통업의 확산 등 소비지유통 변화에 부응하여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연간 대량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브랜드파워를 높일 수 있는 산지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농촌을 열린 공간으로 개발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농촌지역 토지이용계획을 바탕으로 편리하면서도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을 정비하고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농촌 주민과 도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국토공간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또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농촌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도농간 생활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앞으로 동시다발적 FTA 협상, DDA 협상 등으로 시장개방이 가속화될 것에 대응하여 정책수단을 국제규범에 합치시켜 나가면서 농업·농촌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정부는 시장지향적 농정제도의 정착이라는 기본방향 하에 ①농업부문에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경쟁제도를 구축하고, ②경쟁력 있는 품목과 농가를 선택적으로 육성하면서, ③경쟁에서 탈락하는 계층과 지역에 대한 구조조정 보완대책을 수립하며, ④국토 균형발전에 맞추어 활력있는 복지농촌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가. 경쟁제도 구축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기능과 경쟁원리가 충분히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방향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규제완화에 동참하는 동시에 농정제도를 시장지향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농정의 기본 틀이라 할 수 있는 농지, 양정, 시장유통, 협동조합 등의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들 4대 농정제도는 지난 정부에서도 수 차례 개선된 바 있으나, 참여 정부는 이들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농지제도는 농지소유 규제완화, 장기임대차 활성화, 농지은행제도 정착 등을 통하여 농지유통화를 촉진하는 방향이다. 양정제도는 추곡 수매제 폐지와 공공비축제 정착, 민간유통 활성화 등을 통한 쌀시장의 정부 개입을 축소하는 방향이다. 농산물 시장유통제도는 시장도매인제, 정가수의매매 등 도매시장의 다양한 거래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방향이다. 협동조합 제도는 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을 분리하

고 부실조합의 구조조정과 함께 조합간 자율합병을 촉진시켜 경제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향이다. 농업금융제도는 농업종합자금제를 강화하여 농가에 지원되는 모든 정책자금을 점차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방향이다.

농업인의 자율적·창의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제도적 규제는 과감하게 축소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농업 진입장벽의 완화를 위하여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자격기준 완화, 농업의 범위 확대 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농가를 보완하는 다양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기업적 농업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기업 설립(제3섹터 방식, 공기업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농촌이 농업생산만이 아닌 다양한 산업이 공존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농촌지역 토지이용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가형 부업, 농촌관광, 농가민박, 도시자본 유치 등 농업인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나. 농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

농업구조조정의 핵심은 농가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프로그램을 통하여 ‘선택과 집중’을 추진하는 것이다. 즉, 전업농 대책으로 젊고 유능한 농업인을 선정하여 경영규모 확대 및 시설개선, 경영위험관리시스템 확충, 컨설팅 지원 등을 지원한다. 중소농 대책으로 규모화가 어려운 농가에 대하여 틈새시장을 겨냥한 친환경 유기농업 등 고품질·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전환하고, 경영 다각화, 농외소득 지원 등을 추진한다. 영세 고령농 대책으로 이농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은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전직 교육훈련,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선택적 농정을 위해서는 농업인 스스로의 진로를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품목별·산업별 전문조직체 육성이 중요하다. 개별농가는 농업 생산에 전념하고 전문조직체가 가공·유통을 계열화

함으로써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규모경제와 범위경제를 추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들 전문조직체를 ‘농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역농업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품목군이나 농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발굴하여 지역의 관련 산업체·대학과 연구소·지자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협력을 통하여 참여업체의 사업기회 확대와 지역농업 혁신의 상승효과를 도모하는 방향이다.

품목별로 산업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여 농업인을 비롯한 관련 종사자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즉, 쌀산업은 규모화된 전문경영체가 쌀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면서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연계하여 지역 단위의 산지브랜드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원예산업은 자본·기술집약적 농업으로 발전하여 주산지의 산지유통센터(APC) 중심의 계열화를 통한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질에 따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유통채널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축산업은 고품질·안전성 중심으로 생산구조를 재편하는 방향에서, 한우는 고급육 생산과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을 통한 냉장유통을 실현하고, 낙농은 고품질 우유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시유 공급체계를 확립하며, 양돈은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양계는 계열주체에 의한 수직적 계열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장래에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신상품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수확후 관리기술 개발, 식품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원료농산물 공급체계 등을 통해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고 부가가치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 특히 수출농업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로라는 점에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품목(예: 신선채소, 과일, 화훼, 인삼 등)을 발굴하여 수출 지향적인 생산자단체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출 상대국의 수요조사를 비롯한 시장개척을 지원하고, 수출의 안정성·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이나 수출금융 등의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

다. 농가소득 안정 및 영세농 대책

그 동안의 부채대책으로 농가부채 문제는 상당히 완화되었으나 고액부채의 고정화 등 경영안정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구조조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외환위기 이후 누적된 부채에 대해서는 부채 발생 원인에 따라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기, 상호금융자금 및 경영개선자금 금리 인하, 상호금융 대체자금 지원, 연대보증 해소자금 상환 연장,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규모 확대 등을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또한 회생이 어려운 농업경영체가 유연하게 퇴출할 수 있도록 자산처분과 부채정리 등의 퇴출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확충해야 한다. 시장개방이 진전될수록 전문화되고 고정자본 투자액이 많은 전업농일수록 경영위험이 크다. 앞으로 소득변동은 주로 가격 하락에 연유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격정책을 통한 시장개입은 UR 농업협정에서 감축대상(amber box)으로 분류되어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농업경영체 단위의 소득안정 방식으로 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농가별로 경영 실적을 감안하여 기준 소득을 설정하고, 실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소하게 되면 이를 보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소득안정 정책은 농가별로 수입과 지출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시행할 수 있으므로, 농가등록제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는 경영장부 기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고령농업인이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노후의 생계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영세농이라도 약간의 농지와 농가주택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유연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복지적 지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업인에 대한 국

민기초생활보장제를 재검토하여 농지자산은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업경영을 이양한 은퇴 후에도 생계비 수준의 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조금 + 경영이양직불 보조금 + 농지임대소득’의 지원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라. 활력있는 농촌사회 건설

농촌지역의 농외소득원을 확충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수단인 동시에 재촌탈농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동안 정부는 농공단지 조성을 비롯하여 농외소득원 확충을 위한 투융자를 추진해 왔으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취약하였다. 따라서 도시자본의 농촌 유치를 위한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농촌지역 투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농산물가공업의 입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원료, 판매 등의 규제를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농촌관광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농촌관광의 핵심은 경관과 환경을 가꾸고 보전하는데 달려 있으므로, 농지가 난개발되지 않도록 주민이 참여하여 농지전용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군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농촌관광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촌관광 경영을 제약하는 시설규제, 행위제한, 자격제한 등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현재 추진중인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의 사업 메뉴를 농촌공간 정비의 수준으로 확충하고,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사업 내용으로 기존에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던 주거지 정비, 도로·하수 등 생활기반시설 설치, 마을개발사업, 복지 및 여가시설 설치, 농촌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합할 수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농촌형 주거단지 개

발, 어메니티 증진, 농촌생태계 보전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모니터링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방식의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농촌정책에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이 있으며, 이들 시책은 농촌정책의 주무부처인 농림부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분담하여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부처별로 시행중인 사업의 중복 문제가 제기되어 농어촌정책(지역개발, 농어업인 복지정책 등)의 종합적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행히 2006년에 행자부의 신활력사업이 농림부로 이관되면서 유사사업의 통폐합까지 검토되고 있으나, 관련시책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대응적인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

농촌 문제는 경제·사회·문화 등의 복합적 요소를 가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시책을 통합하는 것보다는 각 부처의 성격에 따라 농촌 정책을 재조정하고, 각 부처는 해당 사업을 1~2개의 종합사업으로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포괄 보조를 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농림부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관련한 농촌공간 종합정비를 담당하고, 행정자치부는 농촌 중심도시의 육성을 담당하며, 환경부는 농촌 자연환경 보전사업을 담당하고, 건설교통부는 농촌토지이용 관리를 담당하는 것이다.

농촌복지정책 및 복지 서비스를 보강하는 제도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 농업인의 국민건강 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직접지불 방식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 장비의 보강과 의료인력 유치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영유아 보육시설과 노인 및 여성 복지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마. 재정정책과 투융자 조정

2004년 수립된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추진상황 점검과 함께 중장기 비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종합대책은 과거의 경험과 교훈을 반영하여 착실히 준비된 것이기는 하지만, 최근의 여건 변화와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시장개방 동향과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인과 소비자를 포함한 국민적인 시각에서 농업·농촌의 중장기 비전을 검토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관련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농정의 신뢰 회복에도 유익할 것이다. 먼저, 농업·농촌정책 점검의 일환으로 재정투융자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첫째, 정부사업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투자에 집중하고, 개별경영체의 이익에 직결되는 사업은 보조를 줄이고 융자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농업금융 체계를 개편하여 개별경영체와 생산자조직에 대한 지원을 효율화하고 농업인의 자력성장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소비자 지향적인 정책기조에 맞추어 생산 중심의 투융자를 유통 중심으로 전환하고, 생산기반투자는 기존시설의 보완·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장기 정책 방향 하에서 앞으로 투융자가 확대되어야 할 분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농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경쟁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특히 전업농의 농지유동화 지원, 경영희생 가능 농가에 대한 워크아웃 지원, 은퇴농업인 지원 등이 필요하다.

둘째, 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관련예산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 다만, 직접지불제의 목적과 대상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경영체 단위의 소득안정제도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농업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노력으로서 새로운 수요 개발과 시장 개척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수확후처리기술 관련자금, 수출인프라 구축, 농촌정보화, 농업기술개발 지원 등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복합생활공간 조성, 농공단지 활성화, 농촌관광 활성화 등을 비롯하여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문화, 노인·여성복지 등의 농촌 복지서비스도 확충되어야 한다.

특히 농촌정책과 관련하여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할 분야와 정책 개선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의 기초 생활환경 정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 서비스 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현 수준보다 투융자 사업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주 단계별로 서비스 표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농촌의 경관보전 및 창출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경관 보전직불제의 예산 확대뿐만 아니라, 농촌의 종합적인 생활경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과 문화적 건축물 등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 영역을 개척하고 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지원 및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농촌관광이 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반이 되는 시설이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넷째, 다양한 농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및 이주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기획되었으나 하나의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여러 부처의 예산이 반영되어야 함으로 예산 소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농촌의 인적자원 육성 및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를 확충해야 한다. 다양한 유형별로 인적자원을 세분하고 유형에 맞춘 교육·훈련사업 투자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농촌에 부족한 인적자원을 외부로부터 연계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재정투융자를 축소시켜 나가야 할 분야로서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듯이 생산기반 정비 및 농지조성 사업은 점차 축소되는 추세이며, 생산지원자금을 비롯한 품목 특정한 생산보조는 WTO 규정에 의해서도 감축되어야 할 대상이다. 또한 개별경영체에 지급되던 각종 보조금, 가격지지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국제규범에 맞게 감축시켜 나가야 한다.

농업·농촌종합대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농업인이 함께 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 인식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성숙될 때 비로소 우리나라 농업도 시장 지향적으로 변모하면서 선진국형 농정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게 될 것이다.

입법추진 일지

□ '05년도 통과법률

번호	법률명	주요개정내용	의결일 등
1	양곡관리법(개정)	- 정부수매제도 폐지 및 미곡의 공공비축 제 도입 -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	의결: '05.3.2 공포: '05.3.31 시행: '05.7.1
2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	-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 - 목표가격은 '05년산부터 '07년산까지 고정·3년 단위로 변경하고, 변경시 국 회동의를 얻도록 함	의결: '05.3.2 공포: '05.3.31 시행: '05.7.1
3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	-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방역조치 요구 →시·도가축방역기관장도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방역조치 요구 가능토록 개정	의결: '05.3.2 공포: '05.3.31 시행: '05.7.1
4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개정)	- 농림부장관이 추진하던 전통외식산업 의 연구·개발·보급 사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도 추진할 수 있는 근 거 마련	의결: '05.3.2 공포: '05.3.31 시행: '05.7.1
5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개정)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권자를 중앙 정부·시·도에서 시·군·구청장·국립산 림과학원장까지 확대	의결: '05.3.2 공포: '05.3.31 시행: '05.7.1
6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익 목적의 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 토지등 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의결: '05.3.2 공포: '05.3.31 시행: '05.7.1
7	농촌정비법(개정)	- 시의 동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 한 구역을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범 위에 포함	의결: '05.5.3 공포: '05.5.31 시행: '05.12.1
		- 농어촌민박관리의 강화	의결: '05.6.30

번호	법률명	주요개정내용	의결일 등
		-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공포: '05.8.4 시행: '06.11.5
8	한국마사회법 (개정)	- 광고에 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등에 관한 경고문구 표기 - 마사회·경마장·경마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 특별적립금의 사용용도 정함	의결: '05.5.3 공포: '05.5.31 시행: '05.12.1
9	수의사법(개정)	-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대학을 졸업한 경우만 수의사시험에 응시 -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발생시 수의사·동물병원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지도·명령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도 할 수 있도록 함	의결: '05.5.3 공포: '05.5.31 시행: '05.12.1
1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정)	-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나무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 강구	의결: '05.5.3 공포: '05.5.31 시행: '05.9.1
11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 보호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예외사유 확대 - 토지의 매수청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의결: '05.5.3 공포: '05.5.31 시행: '05.12.1
12	농산물품질 관리법(개정)	-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의결: '05.6.30 공포: '05.8.4 시행: '06.1.1
13	여성농어업인 육성법(개정)	-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도 시·도 여성농어업인육성계획 수립·시행	의결: '05.6.30 공포: '05.8.4 시행: '05.11.5
14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 조합 임·직원의 선거운동 제한에 관한 사항과 지역농협 임원선거의 후보자·배우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의결: '05.6.30 공포: '05.7.21 시행: '05.7.21
15	농지법(개정)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 완화	의결: '05.6.30

번호	법률명	주요개정내용	의결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 허용범위 확대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제도의 완화 	<p>공포: '05.7.21 시행: '06.1.22</p>
16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국가·지자체가 「해운법」에 의한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일부를 지원 	<p>의결: '05.6.30 공포: '05.8.4 시행: '05.11.5</p>
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자원의 조성관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산림경영 및 산불·병충해 방지에 대한 기준 정립 	<p>의결: '05.6.30 공포: '05.8.4 시행: '06.8.5</p>
1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10년마다 국유림종합계획 수립 - 시범림을 조성하여 선도적 산림사업 추진 - 공동산림사업 및 국민참여의 숲 제도 도입 	<p>의결: '05.6.30 공포: '05.8.4 시행: '06.8.5</p>
1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의 조성·관리 	<p>의결: '05.6.30 공포: '05.8.4 시행: '06.8.5</p>
20	산림조합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 임·직원의 선거운동 제한에 관한 사항과 조합 임원선거의 후보자·배우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등을 정함 	<p>의결: '05.6.30 공포: '05.7.21 시행: '05.7.21</p>
21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촌공사로 변경 - 농지은행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p>의결: '05.12.8 공포: '05.12.29 시행: '06.4.1</p>
22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년 제정된 이 법 제4조에 따라 저리 대체한 상호금융자금을 3년 또는 5년간 분할 상환 	<p>의결: '05.12.8 공포: '05.12.29 시행: '05.12.29</p>

□ '06년도 통과법률

번호	법률명	주요개정내용	의결일 등
1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	- 가축사육단계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도입 - 도축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	의결: '06.3.2 공포: '06.3.24 시행: '06.9.25
2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제정)	- 공익수의사는 농림부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수의과학검역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토록 함	의결: '06.3.2 공포: '06.3.24 시행: '06.9.25
3	친환경농업육성법(개정)	- 친환경농산물의 분류간소화(5종→3종) - 인증기관 유효기간 설정(5년)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1→2년) - 유통업자 인증제 도입	의결: '06.8.29 공포: '06.9.27 시행: '07.3.28
4	초지법(개정)	- 시행령에 규정된 초지전용 허용대상을 법에 규정 - 초지전용허가의 취소, 원상회복제도의 도입 - 신고로 초지전용 가능한 초지보유기간 단축(30→25년)	의결: '06.8.29 공포: '06.9.27 시행: '07.3.28
5	식물방역법(개정)	- 기초자치단체에 식물방역관 설치근거 마련 - 수입금지품의 수입허가요건을 규정한 대통령령의 법적근거 마련 - 검사장소지정 취소시 1년간 신청제한기간 신설	의결: '06.8.29 공포: '06.9.27 시행: '07.3.28
6	한국농업대학설치법(제정)	-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한국농업대학을 둬 - 농업인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부속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함	의결: '06.8.29 공포: '06.9.27 시행: '07.3.28
7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개정)	- 재선충병 추가확산방지를 위한 역학조사제도 도입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지정의 합리적 조정 - 소나무류이동제한과 단속 근거규정 신설	의결: '06.8.29 공포: '06.9.27 시행: '07.3.28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 축산폐수를 가축분뇨의 개념으로 재정립 - 가축분뇨의 발생저감을 위한 예방대책 마련 -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관리 강화	의결: '06.8.29 공포: '06.9.27 시행: '07.9.28

번호	법률명	주요개정내용	의결일 등
9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개정)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를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로 흡수·통합	의결: '06.12.1 공포: '06.12.30 시행: '07.1.1
10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개정)	- 법명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 - 거출금을 임의거출금과 의무거출금으로 구분 - 대의원 결원시의 보궐선거 근거 마련	의결: '06.12.1 공포: '06.12.28 시행: '07.6.29
11	농산물품질관리 법(개정)	-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 조사절차를 구체화 -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위반한 자 등을 신고·고발한 경우 포상금 지급	의결: '06.12.1 공포: '06.12.28 시행: '07.6.29
12	양곡관리법(개정)	- 양곡소유자·양곡매매업자·양곡가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의 요건·사전조사 절차 구체화	의결: '06.12.1 공포: '06.12.28 시행: '07.6.29
13	사방사업법(개정)	-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을 자에게 부과하는 수익자부담 제도 폐지	의결: '06.12.1 공포: '06.12.28 시행: '07.3.29
1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 공유림·사유림 등 토지의 매수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의결: '06.12.1 공포: '06.12.28 시행: '07.6.29
15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개정)	- 휴직 및 명예퇴직제도 신설 - 징계절차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준용	의결: '06.12.1 공포: '06.12.28 시행: '06.12.28
16	축산법(개정)	- 수정사 결격사유중 “정신병자·마약류중독자”를 “정신질환자”와 “수정사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마약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로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함 -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의 지정 기준·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결: '06.12.7 공포: '07.1.3 시행: '07.1.3

번호	법률명	주요개정내용	의결일 등
17	수의사법(개정)	- 수의사 결격사유중 정신지체자를 삭제	의결: '06.12.7 공포: '07.1.3 시행: '07.7.4
18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	- 관세청·검찰청에서 몰수한 농산물 등의 농 림부로의 이관 및 처분 - 도매시장법인간·시장도매인간 인수·합병 근거 마련 - 도매시장 개설자에 대한 출하자 신고 의무화	의결: '06.12.7 공포: '07.1.3 시행: '07.7.4
19	농지법(개정)	- 농지의 정의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를 포함	의결: '06.12.7 공포: '07.1.3 시행: '07.7.4
20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 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립수목원의 사 업을 법률에 명시 - 수목원운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	의결: '06.12.7 공포: '07.1.3 시행: '07.7.4
21	농작물재해 보험법(개정)	- 시행령에 규정된 보험대상 농작물 및 자연 재해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	의결: '06.12.22 공포: '07.1.26 시행: '07.7.27
22	동물보호법(개정)	- 동물의 등록제 도입 -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 - 유기동물에 대한 조치기간 단축(1개월 → 10일) - 동물장묘업 신고제 도입 및 장묘업 설치장 소 제한	의결: '06.12.22 공포: '07.1.26 시행: '08.1.27
23	산지관리법(개정)	-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 산지전용제도 개선 - 채석과 토사채취에 관한 각 규정을 토석채 취에 관한 규정으로 일원화	의결: '06.12.22 공포: '07.1.26 시행: '07.7.27

□ '07년도 통과법률

번호	법률명	주요개정내용	의결일 등
1	농지법(개정)	- 내용변경 없음 -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관련 용어 순화, 표현 한글화 등	의결: '07.3.6 공포: '07.4.11 시행: '07.4.11
2	축산법(개정)	- 내용변경 없음 -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관련 용어 순화, 표현 한글화 등	의결: '07.3.6 공포: '07.4.11 시행: '07.4.11
3	농어촌정비법 (개정)	- 내용변경 없음 -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관련 용어 순화, 표현 한글화 등	의결: '07.3.6 공포: '07.4.11 시행: '07.4.11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 내용변경 없음 -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관련 용어 순화, 표현 한글화 등	의결: '07.3.6 공포: '07.4.11 시행: '07.4.11
5	인삼산업법(개정)	- 인삼류제조업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 -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요건 강화(인삼의 종류별 자가제조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함) - 조사요건을 인삼류 안정성 확보·소비자 피해방지 등으로 구체화	의결: '07.6.20
6	농업협동조합법(개정)	- 조합의 사업범위에 농촌 및 농업인을 위한 정보화 지원사업을 추가	의결: '07.6.20
7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개정)	- 농산어촌 여성의 지위향상에 “보육 여건 개선” 추가	의결: '07.6.20
8	농촌진흥법 (개정)	-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 신설	의결: '07.6.20
9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부위원장을 농림부장관·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부차관·산림청장으로 조정	의결: '07.6.20

번호	법률명	주요개정내용	의결일 등
10	산지관리법(개정)	-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광해방지 시설 설치 허용	의결: '07.6.20
1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	- 보험사고의 요건 정비(“해산의결”에서 “해산의 인가”로 개정) - 부실발생이 우려되거나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조합에 대한 부실 사전예방 제도 도입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목적에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추가	의결: '07.7.2
12	종자산업법(개정)	-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의 품종보호권을 당해 국·공립학교가 승계 - 국가품종목록의 등재대상 작물의 범위축소 - 종자위원회에 품종보호권 분쟁조정 기능 추가	의결: '07.7.2
13	비료관리법(개정)	- 비료공급업무 대행기관 확대(농협중앙회 → 시·도지사 추가) - 비료생산업 등록·수입업 신고 등 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 - 등록·신고한 외의 물질을 사용한 비료에 대한 판매 등 금지	의결: '07.7.2
14	양곡관리법(개정)	- 정부관리양곡의 판매용도를 “관수용·가공용·공공용·민수용·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조정 - 허가대상미곡등 수입시 수입자격과 사용용도를 명시하여 농림부장관 허가를 받도록 함	의결: '07.7.2
15	축산법(개정)	- 가축의 종류중 “산양·면양”을 “양(염소등 산양을 포함한다)”로 개정	의결: '07.7.2
16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	- 법정 가축전염병의 종류 조정(1·2종 → 1·2·3종) - 면역요법의 제도화 - 가축전염병 신고의무자 확대(수의사	의결: '07.7.2

번호	법률명	주요개정내용	의결일 등
		에게 진단·검안의뢰한 가축소유자 등)	
17	산림조합법(개정)	- 국가나 공공단체 시행사업은 중앙회와 지역조합간에 경합하지 않는 것으로 봄 - 중앙회와 산림조합의 목적사업에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등 추가	의결: '07.7.2
18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이용 근거 마련 - 농업유전자원의 조사·수집 및 평가 - 농업유전자원의 분양승인제도 및 국외반출승인제도 도입	의결: '07.7.3
19	농어촌정비법(개정)	- 농업기반시설의 주요부분 손괴, 불법점용·사용 등 금지 및 벌칙부과 - 지방이양위원회 이양 확정사무 정비(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권한 등 이양)	의결: '07.7.3
20	사방사업법(개정)	- 사방사업 기본계획 수립 - 사방사업 실시전 사업사업의 타당성 평가 의무화 - 사방시설 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제도 도입	의결: '07.7.3
21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정)	- 부실조합 등의 기준·지정절차 마련 - 부실조합 등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마련, 적기시정조치 미이행시 임원 직무정지 등 행정처분 - 구조개선 촉진자금 지원 및 이행약정 체결	의결: '07.7.3

규제개혁 일지

규제심사 일정	대상 법령	심사내용	비고
제88차 '05. 4. 8.	인삼산업법	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 후 지정신청에 대한 경과규정	강화
		원형태극삼의 제조기준 및 검사기준 설정	내용 심사
제89차 '05. 5.	양곡관리법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기준, 매입자격 제한	내용 심사
		양곡의 표시사항 및 거짓·과대의표시·광고의 범위	내용 심사
제90차 '05. 7. 12.	친환경농업육 성법	인증기간의 지정	강화
		친환경농산물의 부정행위 금지	강화
		인증신청의 자격 제한	강화
		지위의 승계	신설
		표시변경의 명령등	강화
		보고 및 점검	신설
		과태료의 부과범위	강화
제91차 '05. 8. 24.	축산물가공처 리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설정	강화
		가축의 도살·처리기준 설정	강화
		육류중 유해성 잔류물질 검출시 제재	강화
		영업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강화
		품목제조 보고	강화
		허가의 취소	강화
		과징금 처분	강화
		축산물의 취급 영업자 및 종업원의 위생교육 의무	강화
		판매등의 금지	강화
		영업소 폐쇄	강화

규제심사 일정	대상 법령	심사내용	비고
		미신고 수축도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강화
제92차 '05. 9. 8.	동물용의약품 등취급규칙	신약등의 재심사	신설
		동물용의약품등 품목허가 제한	강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강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강화
		동물용의약품등 수입품목허가	강화
		동물용의료기기의 수입업허가	신설
		동물용의약품등 판매질서 준수	신설 및 강화
		동물용의료기기의 수리업 신고	신설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등의 신고	강화
		수입자등의 준수사항	강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절차 등	강화
		농어촌민박의 규모 및 시설 기준	강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위반행위 처분	강화
제93차 '05. 10. 26.	농산물품질관 리법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규정 마 련	신설
수의사법시행 령·시행규칙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규 정 마련	신설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를 위한 처분 및 공표 명령 도입 세부규정 마련	신설	
	수의사회 윤리위원회 설치	신설	
	수의사·동물병원에 대한 지도·명령	강화	
	수의사 면허효력 정지	강화	
	동물병원의 시설기준	내용 심사	

규제심사 일정	대상 법령	심사내용	비고	
제94차 '05. 11. 24.		진단서 등 교부 제한	강화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강화	
		수의사 국가시험 과목	내용 심사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경마장 개보수시 장관승인 후 다른 경마장에서 경마시행	내용 심사	
	동물보호법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	내용 심사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	내용 심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내용 심사
			반려동물의 등록	신설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
			동물학대행위 등 금지	강화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설치			신설	
축산물의소비 촉진등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감시관등 직무거부금지	신설	
		동물판매업자등에 대한 지도·명령 등	신설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신설	
		유사명칭 사용금지	내용 심사	
		거출금의 구분 및 조성	내용 심사	
		경고문구 표시 내용 및 방법	내용 심사	
제95차 '06. 2. 3.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과태료 징수 절차	내용 심사	
		수입금지식물·금지지역 및 금지병해충에 관한 별표1을 보완	내용 심사	

규제심사 일정	대상 법령	심사내용	비고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 관한버률	매매참가인의 신고	신설
		유통조절명령	누락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요건 강화	강화
		인수·합병의 승인	신설
		중도매업의 허가요건 강화	강화
		경매사의 임면 및 신고	강화
		경매사자격시험 및 경매사자격의 취소	신설
		출하자 등록 의무화	강화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내용 심사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신설
		시장도매인의 지정요건 강화	강화
		수탁거부금지의 예외	강화
		안전성 검사	신설
		거래질서의 유지	누락
제96차 '06. 3. 10.	축산법시행령· 시행규칙	축산업의 등록	강화
		가축의 검정	강화
		종축등의 수출입 신고	강화
		수수료의 납부	강화
	농업기반공사 및농지관리기 금법시행령	농지은행사업 등의 시행계획 승인	내용 심사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매입농지등의 임대기간	신설
		농지의 임대·사용대·매도의 수탁관리	신설
제97차 '06. 6. 14.	인삼산업법	인삼류 제조업 영업폐쇄	내용 심사
		인삼류 검사	내용 심사

규제심사 일정	대상 법령	심사내용	비고
		부정행위의 금지	개선 권고
	비료관리법	비료수입제한	내용 심사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 · 폐업 및 비료 수입업의 폐업신고	내용 심사
		비료의 양도, 진열, 판매제한	내용 심사
	농산물품질관리법	우수농산물인증취소	내용 심사
		지리적표시등록사항변경	내용 심사
		품질관리 및 생산계획서 제출	내용 심사
		지리적표시권의 이전 및 승계 금지	내용 심사
제98차 '06. 7. 12.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닭·오리고기 포장유통의무	내용 심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	내용 심사
		위해평가의 대상 · 방법 및 절차	내용 심사
		과태료상한액 인상등에 따른 부과기준 조정	내용 심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대상에 가축사육 단계추가 등에 따른 절차·방법·교육 등	내용 심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미운용 도축장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내용 심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내용 심사
		자가생산원유 직접사용 유가공품 생산지 집유	강화

규제심사 일정	대상 법령	심사내용	비고
		업 허가대상 제외에 따른 원유검사 보완등	
		상습범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강화
		영업자 준수사항 보완	강화
제99차 '06. 9. 5.	농어촌정비법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강화
		지정된 지역·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강화
	가축전염병예 방법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강화
		가축병성감정기관 지정	내용 심사
		검사·주소·약물목록·혈청요법 또는 투약의 실 시 등	강화
		소독설비 및 실시 등	강화
		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강화
		수입금지	강화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내용 심사
		검역시행장	내용 심사
		검역물의 관리인지정 등	내용 심사
		과태료	내용 심사
		제100차 '06. 11. 21.	사료관리법
우주제조관리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강화		
사료검정기관의 지정등	내용 심사		
농업유전자원 의보존·관리및 이용에 관한법률	분양승인 및 승인의 제한 취소 등		신설
	국내 농업유전자원의 국외반출 제한		신설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의 지정취소 등		신설

규제심사 일정	대상 법령	심사내용	비고
제101차 '06. 12. 19.	중자산업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징 수규칙	품종보호출원 등에 관한 수수료 현실화	강화
		품종보호료 현실화	강화
		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	강화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에 관한 수수료	강화
		종자보증 등에 관한 수수료	강화
		기타 수수료	강화
제102차 '07. 1. 30.	검역시행장지 정 및 검역물의 관리요령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 채용신고	내용 심사
		식물방역법	식물검역대상물품 안전관리 의무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입식물검사장소 지정대상 확대	강화
		검역처분 대상확대	강화
		수출입열처리업에 대한 영업신고 및 영업정지 처분	신설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강화
제103차 '07. 2. 9.	친환경농업육 성법 시행령 · 시행규칙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	내용 심사
		인증기관의 지정	내용 심사
		친환경농산물의 표시인증 및 기준	내용 심사
제104차 '07. 3. 8.	축산법 시행령·시행규 칙	가축개량기관의 지정	신설
		가축의 등록	내용 심사
		가축의 검정	내용 심사
제105차 '07. 4. 27.	농산물품질관 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강화
		지리적표시의 등록	내용 심사

규제심사 일정	대상 법령	심사내용	비고
		농산물원산지 표시	내용 심사
		우수농산물인증	내용 심사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내용 심사
제106차 '07. 5. 15.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경마장의 설치허가	강화
	도시와 농어촌의교류 촉진에관한 법률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 사업자의 지정, 취소, 운영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	신설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및 취소	신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 칙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
		경매사 임면 및 자격시험 관리	강화
		과징금의 부과기준 신설, 과태료의 부과 · 징 수절차	강화
		수탁거부 금지 등	개선 권고
		유통조절명령	강화
		중도매업의 허가, 인수·합병	강화
		매매참가인의 신고	내용 심사
		출하자 신고	내용 심사
		안전성 검사기준 및 방법	내용 심사
		표준정산서, 표준송품장의 사용	내용 심사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조정	강화
도매시장에 대한 평가의 실시		내용 심사	

현장과 함께한 희망 정책

박홍수 농림부장관 정책사례집

2007년 10월 발행

발행처 : 농 립 부

인쇄처 : (주)경 성

(비매품)

